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 책임연구원 : 김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이준일(고려대학교 · 교수)
방은령(한서대학교 · 교수)
강현철(호서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곽종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박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우리나라의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1.5% 수준으로 이는 프랑스, 스웨덴 등 주요 OECD 국가가 50%를 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도 결혼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 규범을 벗어난 심각한 일탈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임신 상당수가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기 보다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나 입양으로 귀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문제 등 주요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높은 학업중단율과 한부모가족의 빈곤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사회 안에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많고, 생활 전반에서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한부모의 특성 뿐 아니라 청소년기라는 특성이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산 후 양육지원 단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입양, 자녀양육을 연장선상에서 접근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개발과 범부처적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임신은 반복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이들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출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양육 청소년 한부모 뿐 아니라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생활주기별 정책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고 총괄보고서와 세부보고서 2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인 김지연 박사를 포함한 세 기관의 연구진과 연구 과정에서 자문과 여러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정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연구위원	황여정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은령 교수(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협력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연구위원	김동식(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인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	이소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2차년에 걸쳐 수행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다. 2차년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을 이론적 틀로 삼아, 임신 이후 시점부터 출산 단계, 입양보내기 및 양육 단계 등 생활주기를 고려해 청소년 한부모 및 그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 입양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가(在家)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법·판례 등 문헌 분석, OECD 국가 통계자료 분석,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조사, 관계자 FGI,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실태 분석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실태는 미흡한 수준이고,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업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강하고,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한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달 체계의 경우, 시설 중심 정책 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청소년정책 전달체계화의 괴리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시설 중심의 지원 정책 전달은 입양을 보낸 청소년 한부모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에서는 청소년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해,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위기가족 지원 강화,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입양 미혼모에 대한 인권 보호, 양육 지원 강화,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방향에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핵심어: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임신·출산, 청소년 한부모 기본권, 입양, 학습권 보장, 자립지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년 동안 추진되는 다년 연구로, 2차년에 추진되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주기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임신 이후 시점부터 출산 단계, 입양보내기 및 양육 단계 각각에서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2. 연구체계

-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참여하였음. 총괄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실태 및 현황 분석과 자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양적조사, 질적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추진을 총괄하였음.
- 협동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입양제도 변화에 따른 쟁점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재가(在家)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음.
- 효과적인 협동연구 추진을 위해 설문 문항은 연구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되 실태조사는 총괄기관에서 담당하고 협동연구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효율을 제고하였고, 공동세미나 및 협의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상시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

3. 연구내용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여건을 분석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다양한 유형과 생활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및 자녀를 입양 보냈거나 입양을 고려중인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에 따른 생활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청소년 한부모 생활주기에 따른 학업, 진로 및 직업훈련(교육), 취업 및 자립여건, 자녀 양육, 지원정책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주거 등 생활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이를 위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3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였음. 또한 50개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1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조사(Focusing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음.
-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자녀양육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사회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분석틀로 삼아,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일반 청소년(중·고교생) 및 학부모의 인식 조사 결과와 청소년 한부모의 인식 조사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였음. 이를 위해 일반 청소년 6,543명(중학생 3,036명, 고등학생 3,507명) 및 중·고생 학부모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복지 전달체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 서비스 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였음.
- 입양특례법 시행 및 입양기관의 미혼모 시설 운영 금지 등 입양 관련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또는 양육 선택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들이 직면하는 사회·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지니고 있는 제약요인과 취약성, 필요와 욕구 사항을 파악하였음. 이를 토대로 입양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4. 연구결과

○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 인권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갖기 때문에, 임신·출산과 관련한 인권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청소년도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됨.
-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임의규정 개선, 「학교보건법」의 실효성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 조치 마련,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입양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 자녀 양육 지원 강화·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지역사회 서비스 접근권 강화 등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 청소년 한부모 생활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

-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수준은 양호하지 못함. 정부지원 및 부모·가족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전체의 70%를 초과한 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16.6%에 불과함. 최종학력은 중졸 이하가 40.7%이며 연령이 만 19세를 넘는데도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경우가 25.7%임. 학업을 지속하는 사례는 22.0%이며, 학업중단은 임신·출산 이후 발생하기보다 학교를 그만둔 뒤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사례가 더 많았음. 임신·출산 이후 학업을 그만둔 경우는 대부분 임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만두는 것으로 파악됨.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확대, 양육과 교육이 병행되도록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 등을 희망하였음.
- 임신·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4을 차지했고, 진로·직업교육(훈련) 참여의 애로 사항으로는 경제적 문제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대표적인 요인으로 거론되었음. 청소년 한부모들은 취업·창업과 직결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훈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였고, 직업교육 이전에 진로탐색, 적성파악 등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이 충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였음.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준비수준이나 자립 성공에는 정서적 안정이나 심리적 건강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약 10%로 파악되었고, 입양을 고려중이라는 응답까지 포괄하면 그 비율은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입양을 보냈거나 입양 결정을 내린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입양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과 수혜율, 만족도, 정책적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 양육지원제도와 출산지원제도의 경우 인지율과 수혜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인지율과 수혜율이 모두 낮게 도출되었음. 또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 역시 인지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고 수혜율도 30%에 미달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책 전달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인식 조사 결과

- 일반 청소년 가운데 주변에서 임신·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났고, 학생 임신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이미지 조사 결과에서는 학부모와 일반 청소년 모두 학생 임신에 비해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다 수용적이며 친화적인 태도를 나타냈음.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일반 학생 10명 중 8명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학생 임신부가 내가(혹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일반 청소년 60.5%, 학부모 45.9%로 나타나, 부정적 의견보다 높게 파악되었음.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데는 학부모의 70.6%, 학생의 65.2%가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냈음.

○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세부 보고서)

- 입양허가제도에 따른 출생 신고 및 입양 숙려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인지하고 있고, 입양숙려제도가 입양을 포기하고 양육을 선택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었음. 그렇지만 양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오히려 고통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 입양을 고려중인 청소년 한부모는 입양을 고려하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에 비해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입양을 보낸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 위탁제도 활성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요구됨. 입양숙려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임신 초기부터 양육 및 자립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입양허가제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지나친 개인 정보 제공이나 친양자관계등록부 상의 친모 정보 제공, 출생 신고에서 양성 차별 문제 시정을 검토해야 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세부 보고서)

-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82.8%)과 구청·주민센터(65.9%)로 파악됨.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가장 정보를 많이 얻은 경로 역시 ‘한부모복지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이용한 경험은 41.3%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영양플러스, 출산 전 진료비 등의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보건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음. 또한 청소년상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전체의 13.0%에 불과함.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 정책 전달체계에 시설중심의 정책 전달,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낮은 친화력, 재가 한부모서비스 전달체계의 부족, 청소년 전달체계와의 괴리 등의 문제가 내재해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공복지전달체계 내 여성·가족복지 전담팀 및 전담인력 배치, 미혼모 전담 온라인 상담창구 설치,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강화 및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정보제공 및 연계 기능 강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계 강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5. 정책제언

-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음.
- ①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①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체계 정비, ②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충, ③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①주민센터 복지허브화, ②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 ③모바일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음.
- ②위기가족 지원 강화(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①양육비 지급 이행 모니터링, ②제한적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①근거 법제 정비, ②이행 강제기관 설치를 제안함.

- ③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를 위한 정책과제로 ①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임의규정 개선, ②위기청소년과 가족지원 인프라 간 연계, ③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①청소년 피임 실천율 성과 관리, ②성평등 피임교육 및 피임접근성 강화를 제안하였음.
- ④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를 위한 정책과제로 ①미혼모 전담 상담창구 설치, ②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보장, ③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계 기능 강화, ④청소년 한부모 공동주거시설 확보, ⑤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 신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①취약가족 가족기능 회복 및 기능보강 예산 확보, ②주거복지 강화, ③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반영을 제안함.
- ⑤입양 미혼모 인권 보호(국정과제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관련 정책과제로 ①입양 미혼모 상담 및 지원 마련, ②보호동의와 입양동의 분리 운영, ③베이비박스 국가 관리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①개인정보 보호 강화, 가정위탁 지원제도 개선을 제안함.
- ⑥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국정과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①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②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부활, ③맞춤형 생계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를 제안함.
- ⑦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를 위한 정책과제로 ①수업대체를 통한 출석 인정, ②위탁형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 개선, ③임신·출산을 경험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④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 ⑤교내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사항을 다루는 기구 설치, ⑥미혼모 대상 대안학교(기숙형 국립 대안학교) 설립, ⑦검정고시학습비 지원제도 개선, ⑧청소년 한부모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⑨성평등교육법 제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①보건교사 직무에 학생 임신·출산에 관한 사항 명시, ②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지정 확대, ③교육청 평가 및 학교 컨설팅에 임신·출산을 경험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관련 내용 반영, ④청소년의 임신·출산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교사 연수 실시, ⑤시간제 일자리와 연계한 취업 지원 등을 제안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8
4. 연구방법	10
II. 이론적 배경	15
1. 연구 대상의 범위와 규모	17
2.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쟁점	22
3.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	33
III.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	67
1. 청소년 한부모 설문조사	69
2.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조사	143
3.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FGI)	222
4.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 조사	244
5. 요약 및 시사점	270
IV.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모색	279
1. 유형에 따른 지원: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지원 확대	281
2. 생활주기에 따른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	290
V. 정책제언	295
1. 정책제언 배경	297
2. 정책과제 및 제언	299

참고문헌	327

부 록	335

표 목 차

〈표 II-1〉 24세 이하 한부모 장래 가구 추계	17
〈표 II-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18
〈표 II-3〉 국내 입양아동 유형	20
〈표 II-4〉 해외 입양아동 유형	21
〈표 II-5〉 입양 의뢰 미혼모의 연령 현황	21
〈표 II-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현황(여성가족부)	23
〈표 II-7〉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24
〈표 II-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013년)	26
〈표 II-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연도별 운영현황	26
〈표 II-10〉 기본생활지원시설 연도별 입·퇴소별 현황	27
〈표 II-11〉 기본생활지원시설 입소자 연령별 현황	27
〈표 II-12〉 기본생활지원시설 입소자 학력별 현황	28
〈표 II-13〉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2.12.31. 현재)	29
〈표 II-14〉 학급당 보건수업 실시현황(창의적 체험활동)	49
〈표 II-15〉 보건과목 선택 현황(창의적 체험활동 이외)	50
〈표 II-16〉 국가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형태 비교	61
〈표 II-17〉 OECD 국가의 가족수당(2010년)	63
〈표 II-18〉 OECD 국가의 주거수당(2010년)	64
〈표 II-19〉 OECD 국가의 한부모가족 수당(2010년)	65
〈표 III-1〉 설문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71
〈표 III-2〉 생활비 총당 방법	80
〈표 III-3〉 최종 학력	81
〈표 III-4〉 학업 지속 여부	82
〈표 III-5〉 받고 있는 교육 수준	83

〈표 Ⅲ-6〉 받고 있는 교육의 유형	83
〈표 Ⅲ-7〉 (학업중단이 임신출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학업을 그만두게 된 가장 주된 이유	87
〈표 Ⅲ-8〉 학업중단자가 희망하는 학업 지속 방법	88
〈표 Ⅲ-9〉 학업 지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적 지원(모든 응답자)	90
〈표 Ⅲ-10〉 임신이나 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91
〈표 Ⅲ-11〉 직업훈련을 받는데 어려운 점	92
〈표 Ⅲ-12〉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주된 이유	94
〈표 Ⅲ-13〉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택 시 중시하는 요인	95
〈표 Ⅲ-14〉 현재 근로 여부	98
〈표 Ⅲ-15〉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	102
〈표 Ⅲ-16〉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	104
〈표 Ⅲ-17〉 일자리 지원횟수	104
〈표 Ⅲ-18〉 일을 구할 때 중시하는 항목(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106
〈표 Ⅲ-19〉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107
〈표 Ⅲ-20〉 학교 재학 중일 때 임신 경험 여부	109
〈표 Ⅲ-21〉 임신 또는 출산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렸는지 여부 및 그 대상 ..	110
〈표 Ⅲ-22〉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 여부	112
〈표 Ⅲ-23〉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113
〈표 Ⅲ-24〉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	114
〈표 Ⅲ-25〉 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114
〈표 Ⅲ-26〉 도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5

〈표 III-27〉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116
〈표 III-28〉 일상 생활 스트레스	118
〈표 III-29〉 입양 보낸 경험 혹은 보낼 계획	119
〈표 III-30〉 입양 결정과정에서 어려운 점	120
〈표 III-31〉 변경된 입양 관련 제도 인지 정도	122
〈표 III-32〉 출산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건보공단 및 보건소)	125
〈표 III-33〉 양육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구청 또는 주민센터)	125
〈표 III-34〉 양육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등)	126
〈표 III-35〉 주거 및 생활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구청 또는 주민센터)	127
〈표 III-3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구청 또는 주민센터) ..	128
〈표 III-37〉 위기청소년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	129
〈표 III-38〉 투입 변인 및 기술통계치	131
〈표 III-39〉 변인(다항목 척도)별 신뢰도 검증 결과	133
〈표 III-40〉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35
〈표 III-41〉 청소년 한부모의 진로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37
〈표 III-42〉 청소년 한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39
〈표 III-43〉 청소년 한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40
〈표 III-44〉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42
〈표 III-45〉 청소년 한부모 면접대상자의 집단별 범주와 사례수(N=20)	143
〈표 III-46〉 심층면접진행과정에 대한 개요	144
〈표 III-47〉 양육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 주요 내용	145
〈표 III-48〉 심층면접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양육 1년 이상 한부모)	146
〈표 III-49〉 심층면접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동거 사례)	147
〈표 III-50〉 심층면접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청소년 미혼부·모)	147

〈표 Ⅲ-51〉 1년 이상 양육 경험자 면접조사 내용 결과 요약	171
〈표 Ⅲ-52〉 동거커플 면접대상자들의 면접조사 내용 결과 요약	184
〈표 Ⅲ-53〉 청소년 미혼부·모 면접조사 내용 결과 요약	221
〈표 Ⅲ-54〉 전문가집단 면접조사 참여자	223
〈표 Ⅲ-55〉 지역별 조사 대상 학교 및 학생 수	246
〈표 Ⅲ-5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 청소년)	247
〈표 Ⅲ-5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부모)	248
〈표 Ⅲ-58〉 주변에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학생) 접촉 경험	249
〈표 Ⅲ-59〉 임신, 출산 관련 부정적 인식(절대안됨+안됨) 비율	250
〈표 Ⅲ-60〉 친구가 출산 후 입양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254
〈표 Ⅲ-61〉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255
〈표 Ⅲ-62〉 자녀는 마땅히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	262
〈표 Ⅲ-63〉 임신, 출산한 학생의 학업지속 방법	263
〈표 Ⅲ-64〉 임신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은 인권침해이다	264
〈표 Ⅲ-65〉 학생 임신부의 재학에 대한 인식	264
〈표 Ⅲ-66〉 학생 미혼모의 재학에 대한 인식	265
〈표 Ⅲ-67〉 임신한 학생이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	266
〈표 Ⅲ-68〉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 경험(중복응답)	269
〈표 Ⅲ-69〉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와 정책 여건 요약	274
〈표 Ⅳ-1〉 개정 입양 관련 제도의 쟁점과 의견	282
〈표 Ⅳ-2〉 개정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청소년 한부모)	283
〈표 Ⅳ-3〉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지원 요구	284
〈표 Ⅴ-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325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연구추진체계	7
【그림 Ⅰ-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그림 Ⅰ-3】 연구의 개요 및 추진 절차	14
【그림 Ⅱ-1】 OECD 국가 청소년 출산율(2011, 1997)	19
【그림 Ⅱ-2】 본 연구의 청소년 한부모 대상 범위	22
【그림 Ⅱ-3】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	24
【그림 Ⅱ-4】 상황별 스트레스 빈도	30
【그림 Ⅱ-5】 청소년 한부모의 청소년기 가정환경	32
【그림 Ⅱ-6】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과 관련 제도	57
【그림 Ⅱ-7】 양육비 비요구 사유 및 지급 여부	60
【그림 Ⅲ-1】 청소년 한부모 발생단계별 이슈에 따른 연차별 조사 영역	70
【그림 Ⅲ-2】 출산 경험 및 횟수	76
【그림 Ⅲ-3】 양육 중인 자녀수	76
【그림 Ⅲ-4】 자녀의 연령	76
【그림 Ⅲ-5】 현재 생활하는 곳	77
【그림 Ⅲ-6】 시설에서의 총 거주기간	77
【그림 Ⅲ-7】 (시설생활인) 시설 퇴소 후 거주 계획	77
【그림 Ⅲ-8】 재가생활인 주거 형태	78
【그림 Ⅲ-9】 재가생활인 주거비 마련 방법	78
【그림 Ⅲ-10】 재가생활인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78
【그림 Ⅲ-11】 경제적 생활 실태	79
【그림 Ⅲ-12】 생활비 충당 방법 (중복응답)	81
【그림 Ⅲ-13】 학업 지속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복응답)	84
【그림 Ⅲ-14】 학업 지속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	84

【그림 Ⅲ-15】 학업 중단 시기	85
【그림 Ⅲ-16】 학업중단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닌 기관	85
【그림 Ⅲ-17】 학업중단 이유가 임신 출산 때문인지 여부	86
【그림 Ⅲ-18】 학업 지속 방법 인지 여부	87
【그림 Ⅲ-19】 학업을 지속하기 싫은 이유	89
【그림 Ⅲ-20】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중복응답)	90
【그림 Ⅲ-21】 직업훈련 받았던 기관의 종류(중복응답)	92
【그림 Ⅲ-22】 직업훈련을 받는 데 어려운 점(중복응답)	93
【그림 Ⅲ-23】 희망하는 직업훈련(교육) 여부	94
【그림 Ⅲ-24】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택 시 중시하는 요인(중복응답)	95
【그림 Ⅲ-25】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것 ...	96
【그림 Ⅲ-26】 진로 발달 수준 학력 비교	97
【그림 Ⅲ-27】 근로 기간(week)	98
【그림 Ⅲ-28】 고용 형태	99
【그림 Ⅲ-29】 주당 근로시간	100
【그림 Ⅲ-30】 취업 경로	100
【그림 Ⅲ-31】 일을 하면서 힘든 점	101
【그림 Ⅲ-32】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102
【그림 Ⅲ-33】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103
【그림 Ⅲ-34】 일을 구할 때 중시하는 조건	105
【그림 Ⅲ-35】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107
【그림 Ⅲ-36】 차별 경험	109
【그림 Ⅲ-37】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을 때 반응	110
【그림 Ⅲ-38】 학교 또는 교사로 받은 도움(1순위 및 중복응답)	111

【그림 Ⅲ-39】 학교에서의 차별경험 여부 및 그 대상(중복응답)	111
【그림 Ⅲ-40】 직장을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	112
【그림 Ⅲ-41】 원가족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경험 여부	113
【그림 Ⅲ-42】 영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117
【그림 Ⅲ-43】 입양 결정 사유, 입양 결정 시 영향을 준 사람	119
【그림 Ⅲ-44】 입양 보낸(결정) 이후 정신적 후유증 및 대처	121
【그림 Ⅲ-45】 입양 이후 필요한 지원	121
【그림 Ⅲ-46】 입양숙려제도 기간, 입양숙려제의 양육 결정 영향 여부	123
【그림 Ⅲ-47】 입양숙려제 개선사항	124
【그림 Ⅲ-48】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 인지율 및 수혜율	130
【그림 Ⅲ-49】 지원제도 만족도(5점)	130
【그림 Ⅲ-50】 임신 및 출산 관련 집단별 부정적 인식	251
【그림 Ⅲ-51】 학생 임신에 대한 느낌('그렇다' 응답)	252
【그림 Ⅲ-5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느낌('그렇다' 응답)	253
【그림 Ⅲ-53】 청소년의 낙태, 입양, 양육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54
【그림 Ⅲ-54】 대상별 차별여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256
【그림 Ⅲ-55】 우리사회의 우선적인 보호대상	257
【그림 Ⅲ-56】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58
【그림 Ⅲ-57】 낙태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59
【그림 Ⅲ-58】 청소년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60
【그림 Ⅲ-59】 출산휴학 및 성교육 부족에 대한 의견('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61
【그림 Ⅲ-60】 입양보내기 및 출산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62
【그림 Ⅲ-61】 학생 임신부 및 미혼모 재학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	265
【그림 Ⅲ-62】 본인 의사 및 사회지원에 대한 의견('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267

【그림 Ⅲ-63】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 비교	268
【그림 Ⅲ-64】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상황적 위기 경험 비교	269
【그림 Ⅳ-1】 희망마루(보건복지부) 사업 내용	287
【그림 V-1】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기반	298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父 혹은 母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인 가구는 12,848가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대비 0.07% 수준이다(통계청, 2010a). 사회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로 이들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15년에는 16,140가구, 2017년에는 16,64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통계청, 2010b).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중 청소년(12~24세)의 혼외자 및 미상 출산 건수를 분석한 결과 ‘혼외자’는 매년 1천여 명에서 1천 700여 명, ‘미상’은 매년 9백 여 명에서 1천 500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훨씬 상회하며 이는 매년 전체 분만 건수의 5~6%에 달하는 규모이다(통계청, 2011).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도 증가하여, 2010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한 첫 해 지원가구는 1,222가구였으며, 2011년 1,620가구, 2012년 1,831가구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임신, 출산은 여전히 일탈 행위이자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낙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임신 단계에서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 후 입양보내기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원치 않는 임신은 개인의 불이익은 물론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기 임신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학교 보건교육을 포함한 예방정책의 실패를 반증하는 결과이며, 급변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조망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1)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한편 이 연구의 1차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피임을 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79.1%), 출산 이후 양육을 결정한 경우 주된 사유는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까봐 걱정이다’는 응답률도 53.8%에 달하였다(백혜정 외, 2012a: 108~132). 특히 이들은 학업, 주거, 심리상태, 경제상황 등 모든 여건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제도적 지원이 실제적인 자립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개별적인 상황과 출산 이후 자녀의 성장을 감안한 생활주기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스스로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의 부모됨의 경험은 자존감과 회복, 사회통합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Dalla & Gamble, 2000: 243; Breheny & Stephens, 2008: 761).

이와 같이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청소년 출산의 상당수는 여전히 입양으로 종결되고 있다. 출산 장려가 주요 정책 아젠다로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천 여 명에 달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²⁾ 특히 입양통계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 아동 10명 중 9명은 ‘미혼모 아동’이며 매년 입양보내기를 희망하는 미혼모의 절반 이상이 청소년 미혼모인 상황이다. ‘입양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외입양에 대한 최근의 반성적 성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친생모인 청소년 미혼모가 자녀를 입양보내기보다는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정책 환경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런데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입양허가제,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어 입양절차와 입양공개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친자관계를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 낙태, 영아유기, 불법입양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미혼모에 한해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창설 절차를 허용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경우 숙려기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된 상태이다(2013. 1. 18). 또 다른 쟁점은 개정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은 2015년부터 운영이 중지된다는 것이다.

2) 2011년까지 총 240,569명의 아동이 입양되었고 국내입양은 75,957명(31.6%), 해외입양은 240,569명(68.4%)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2012 국내외입양통계). 2007년 이후 해외입양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외입양 쿼터 등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 시행에 따른 결과이다.

이로 인해 2012년 현재 33개소인 미혼모자시설 가운데 16개소가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향후 2년 내에 미혼모자의 증가 추세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들 시설은 청소년 미혼모가 심리·정서·신체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므로 주거 및 자립지원보다는 일시보호,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자립지원, 지역사회 내 통합을 위해서는 당장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넘어서 시설보호의 새로운 형태와 지역사회 내 재가(在家)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법제는 당사자인 청소년의 기본권에 관한 논의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 가입 유보를 철회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권리 증진 측면에서는 분명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실제적인 주체이며, 청소년기의 과업과 자녀양육이라는 성인기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과업 수행자이다. 따라서 입양과 자녀양육이라는 사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토대로 법제의 방향과 틀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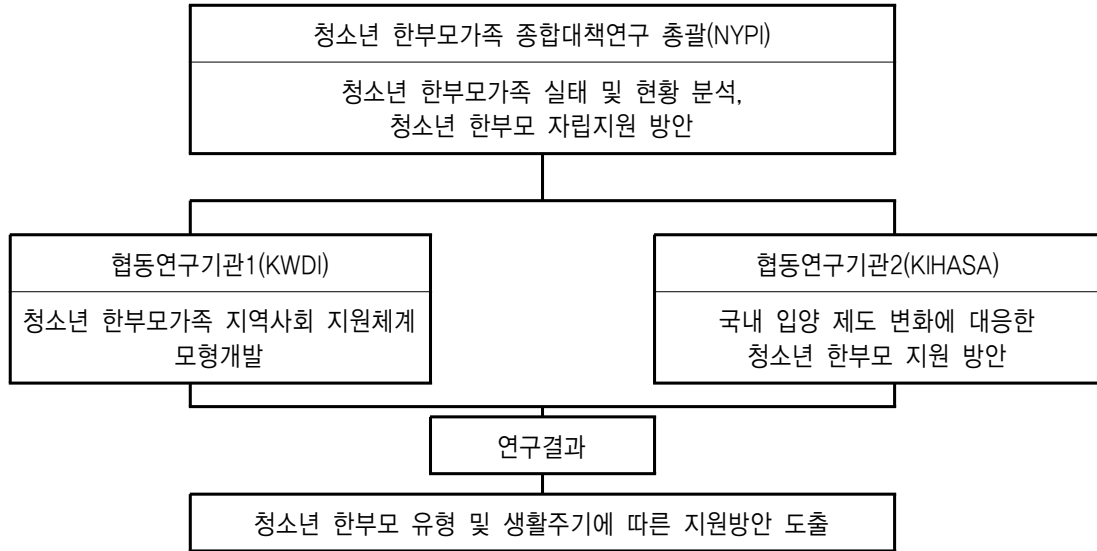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다년 연구로 기획되었다. 1차년에는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이슈를 제기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경로 및 제도적 여건을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OECD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경향과 가족지원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방향을 제안하였다. 2차년인 올해는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과 생활주기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 진로, 자립 등 청소년기 발달과제와 자녀양육, 생계 부양이라는 성인의 역할 수행을 동시에 요구받는다라는 점에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고, 부모의 혼인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자체가 정책 타당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은 아동의 인권 보호와도 배치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취약·위기청소년 지원과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그림 I-1】과 같은 연구추진체계로 운영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은 청소년 한부모 종합대책 연구를 총괄하며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등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에 따른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의 기본권과 인권을 토대로 현행 관련 법률 및 제도, 쟁점 사안들을 조망하여 정책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하였다.

협동연구기관 1(KWDI)은 양육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재가(在家)보호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시설 퇴소 이후 지원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현행 한부모 가족 지원체계 내에서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동연구기관 2(KIHASA)는 입양 청소년 미혼모와 관련한 쟁점 및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현행 입양 절차 내에서 입양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현황 분석을 담당하였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에게 입양과 양육, 재가 및 시설보호는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주요 정책이슈라는 점에서 협동연구기관에서 각각 입양, 재가보호 주제를 담당하고, 총괄기관은 양육, 시설보호를 포함한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균형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는 총괄기관에서 담당하고 협동연구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중복조사로 인한 폐해를 막고, 추진과정에서 공동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진행과 성과를 상시 공유하는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이 연구의 각 연도별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 【그림 I-2】이다.



【그림 I-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연구추진체계

1차년도 (2012년)	목적	· 청소년 한부모 현황 및 실태 파악 · 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
	주요내용	· 청소년 한부모 관련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 청소년 한부모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및 정책 요구도 분석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청소년 한부모 예방 및 지원정책 방향 제안
2차년도 (2013년)	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족 맞춤형 정책과제 발굴 및 실천과제 제안
	주요내용	· 임신 이후 출산단계, 출산 후 양육과 입양보내기단계, 양육 지원 단계 별 정책 이슈와 정책과제 도출 ·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인권을 분석틀로 현행 법제 분석 및 제시 (학습권, 근로권 보장 및 자립지원 방안 포함) · 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역사회 재가(在家)지원체계 구축방안 도출 · 국내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입양 청소년 미혼모 지원방안 도출 ·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주기별 정책 수요 및 지원방안 로드맵 제시

【그림 I-2】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3. 연구내용

1)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실태 분석 (총괄보고서)

(1) 1차년도(2012년) 연구내용

1차년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출산·자녀양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와 정책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19세 미만)을 기준으로 (미혼)모자 관련시설 입소 경험, 성교육, 성경험 및 피임 경험, 임신 및 낙태 경험, 출산 및 자녀양육 여건,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인지 및 수혜 경험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 관련 정책 및 서비스 현황과 OECD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경향과 한부모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경로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2) 2차년도(2013년) 연구내용

2차년 연구에서는 1차년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여건을 분석하여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유형에 따른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주기에 따른 학업, 진로 및 직업훈련(교육), 취업 및 자립여건, 자녀양육, 지원제도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주거 등 생활여건 전반의 정책 이슈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2차년에는 중·고생과 중·고교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에 관한 인식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에 있어서 또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세대(학부모)가 주요 환경체계로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2)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 실태 및 여건 분석(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자녀양육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사회권)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기본권 보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 중·고교생 및 학부모의 인식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 여건을 다면적으로 검토하였다.

3) 입양 청소년 미혼모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세부보고서)

2010년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으로 미혼모 입장에서는 입양보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2015년부터는 입양기관의 미혼모 시설 운영이 금지되는 등 입양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결정 요인, 입양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심리 변화 추이, 입양숙려제 및 변경된 입양 절차 등 개정 「입양특례법」이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보내기와 양육 결정에 미치는 영향, 입양숙려제 운영 개선 방안,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지원 수준 및 여건, 입양 후 심리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4) 양육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세부보고서)

현행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지원체계와 동일하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가족지원 중심 전달체계가 재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퇴소 이후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범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타 서비스기관을 포함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5) 청소년 한부모가족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방안 도출(총괄보고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정과제에 따른 임신·출산·자녀 양육의 생활주기별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양육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 과제와 현행 아동·청소년정책, 가족정책 및 관련 법제의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국내 입양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입양 선택 영향 요인과 입양 결정 후에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차별적인 요소를 도출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미혼모의 권리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포함하였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 한부모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고 법제 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학술논문과 관련법, 판례, 정책 자료를 고찰하였다. 둘째, OECD 국가의 청소년 임신·출산 실태와 가족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family database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임신·출산(낙태)·자녀양육(입양)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였다.

2) 양적연구(설문조사)

(1) 청소년 한부모 실태조사

1차년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의 임신·출산·입양·자녀양육·자립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보장 및 자립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한부모는 모집단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목표 표본을 정하고 조사 기간 내에 최대한 목표수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3년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 등), 대안위탁교육기관, 가정 등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중인 24세 이하 여자 청소년으로 하였다.

특히 2차년에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의 만족도, 기본권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 여건 개선 여부 등 전년도와 조사 목적 및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1차년도 조사 참여자를 우선 포함하고, 대상자의 누수를 고려하여 350명을 목표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재가(在家) 대상자와 입양 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미혼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조직, 인터넷 카페, 조사 참여자 및 기관 종사자의 소개 등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병행하였다. 자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2013년 5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대면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총괄기관에서 입력 오류를 포함한 검수작업을 실시하였고 협동연구기관 간 연구 영역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는 총괄보고서 및 세부보고서에 각각 수록하였다.

(2)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 조사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포함한 기본권과 청소년의 임신·출산·자녀양육에 대한 또래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일반 청소년 대상 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추출법으로 6,182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6,543명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사전문기관에 의하여 2013년 5월부터 7월 중 조사원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학부모 인식조사는 지역별, 중·고등학생의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 5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여 총 510명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부터 8월 중 웹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3) 기관 종사자 대상 서비스 연계 현황 조사

청소년 한부모 지원체계 실태와 서비스 연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는 연계 경험, 연계의 장애요인,

연계 방식, 연계가 필요한 기관 등이며 자료 수집은 면접조사원이 청소년 한부모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대상 시설에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50개 기관의 설문지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분석 결과는 세부보고서에 기술하였다.

3) 질적연구(면접조사)

(1) 양육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

심층면접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양화시키기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의 의식, 생활 장면에서의 다채로운 경험과 행위 양상,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특히 양적조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부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정책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소년 미혼부와 1차년도 면접조사 참여자를 심층면접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동거를 포함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면접대상으로 일부 포함하였다. 1차년도 면접 참여자의 경우 연구진이 전화 접촉을 시도하여 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청소년 미혼부를 포함한 나머지 대상자는 시설 및 기관 담당자에게 면접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추천을 통해 확보한 대상자 가운데 유의표집하였다.

(2) 입양 청소년 미혼모 심층면접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임신 중이면서 입양 보내기를 고려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과 정책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입양허가제, 입양숙려제와 관련한 입양 절차에 관한 의견과 입양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후유증 여부, 지원 욕구 파악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심층면접 내용은 세부보고서에 기술하였다.

(3) 전문가 집단 면접(FGI)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입양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방안, 임신·출산 단계에서의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전달체계의 개선 요구도 파악을 목적으로 관계자에 대한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청소년 한부모 대안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관계자, 현직 교원(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기관(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담당자, 입양기관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회

연구 방향 설정, 설문 문항 개발, 정책 현안 분석을 목적으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교사,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과제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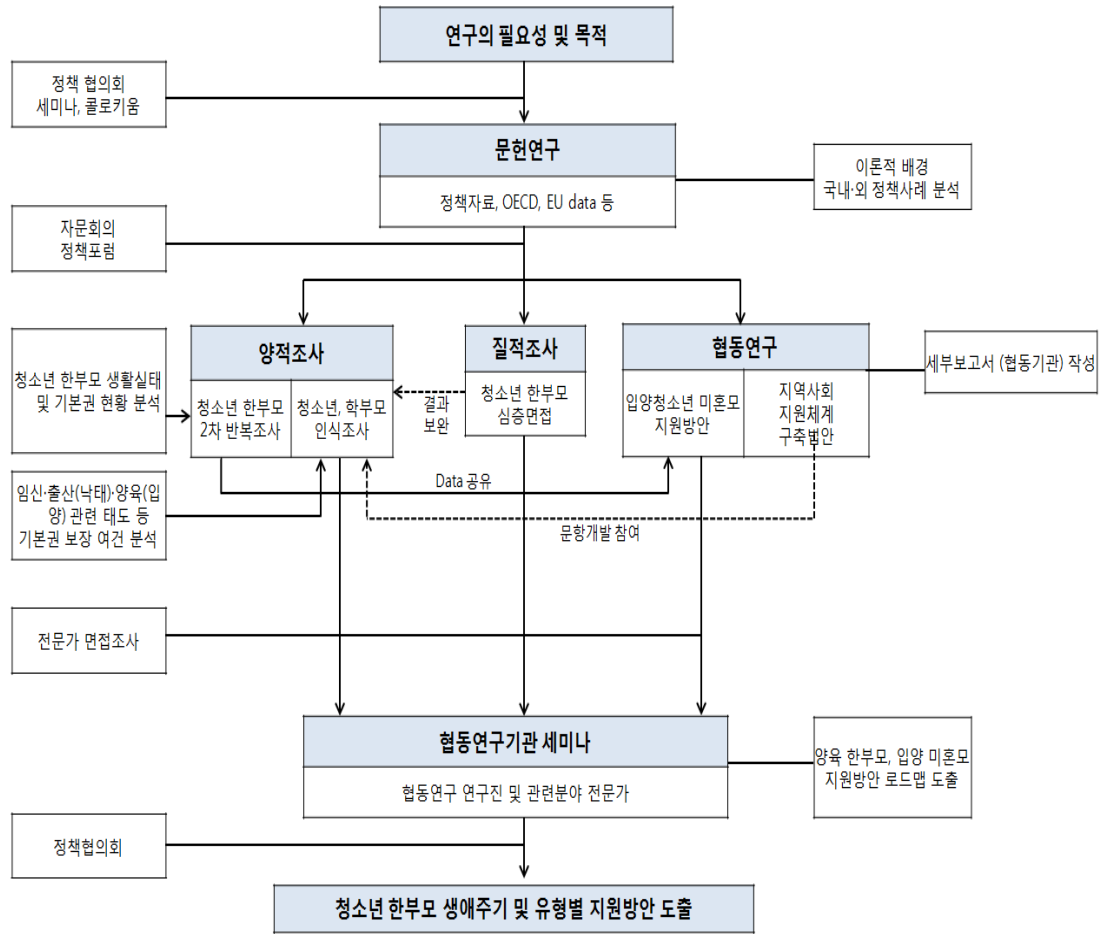
5) 2차 자료 분석

청소년의 임신·출산·자녀양육 이슈와 관련한 실태와 지원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기존의 행정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경찰통계(경찰청) 등을 분석하였다.

6) 협동연구기관 세미나

협동연구기관의 과업 범위와 내용을 협의하고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협동연구기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추진 절차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I-3】**이다.



【그림 1-3】 연구의 개요 및 추진 절차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연구 대상의 범위와 규모
2.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쟁점
3.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제 II 장 이론적 배경³⁾

1. 연구 대상의 범위와 규모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母 혹은 父'로 정의된다(제4조 제1항의 2). 최근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로 청소년 한부모 가구 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14,976가구에 달하며,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표 II-1). 그러나 친생모인 청소년이 출생자의 언니, 누나로 가족관계가 정리되거나 출생 신고 자체가 누락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그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구 통계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친생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도 출생아의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에 출산통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표 II-1 24세 이하 한부모 장래 가구 추계

단위: 가구

구 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19세 이하	부+자녀	305	312	316	317	319
	모+자녀	950	950	866	820	777
20~24세	부+자녀	2,457	2,457	2,911	3,105	3,259
	모+자녀	11,264	11,694	12,047	12,249	12,285
계		14,976	15,413	16,140	16,491	16,640

* 출처: 통계청(2010). 장래가구추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a, p.25.

3) 이 장의 1절, 2절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절은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지연 연구위원이 집필함. 이 장의 집필초고는 국회 주관 정책세미나(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2013.5.21; 새 정부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 방안 정책세미나, 2013.5.24)와 본 원 세미나(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013.2.13)에서 활용한 바 있으므로 일부 중복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4) 이와 함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중 청소년(12~24세)의 '혼외자 및 미상' 출신 건수를 분석한 결과 혼외자는 매년 1천명에서 1천 700여 명, 미상은 매년 9백 여 명에서 1천 5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의 분만 건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4세 이하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매년 2만 건을 넘고 있고, 이는 전체 분만 건수와 비교할 때 5%에 달하는 수준이다(표 II-2). 특히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상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낙태율을 파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생존 출산율(live birth rate)을 활용하기 때문에 임신 중 낙태 건 수가 고려되지 않아 결국 청소년의 임신, 출산 사안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전히 출산은 합법적 혼인과 혈연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일탈행위로 접근하는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표 II-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령별 분만 건수

단위: 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9세 이하	2,334(0.49)	2,064(0.45)	2,123(0.49)	2,489(0.54)	2,585(0.56)
20~24세	26,144(5.45)	23,620(5.20)	21,343(4.92)	21,203(4.62)	21,759(4.71)
총 분만 건수	479,647	454,247	433,467	459,284	461,197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총괄부; 통계청, 초·경산별제왕절개 분만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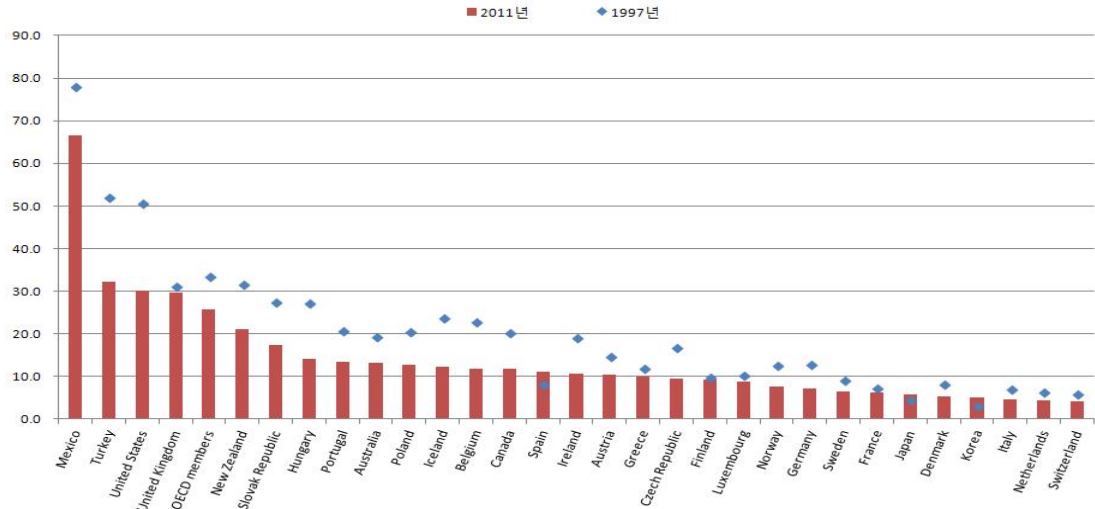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354&tblId=TX_354_2009_H1014&conn_path=3&path=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기관별급여적정

* 주: 1) ()안의 수치는 총 분만건수 대비 비율임.

2) 2011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자료이며 다른 연도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함.

한편 최근 40년 동안 OECD 국가 가입 여성의 출산율은 1970년 2.76명에서 2010년 현재 1.74명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출산율은 1.94명에서 1.98명으로 약간 부분 증가한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였고, 우리나라는 4.53명에서 1.23명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OECD, 2013). OECD 국가별 청소년(15~19세) 1,000명 당 출생아 수는 가입 여성의 출산율과 비교할 때 더 큰 편차를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청소년 출생아 수가 66.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터키(32.1), 미국(30.1명), 영국(29.7명) 순이다. 반면 청소년 1,000명 당 출생아 수가 5~7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하는 국가는 스위스(4.06명), 네덜란드(4.42명), 이탈리아(4.52명), 한국(5.09명), 덴마크(5.29명), 일본(5.82명), 프랑스(6.26명), 스웨덴(6.42명), 독일(7.06명) 등이다(그림 II-1). 같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2.95명 수준이던 10대 청소년의 출산율이 2009년 3.68명, 2010년 4.38명, 2011년 5.09명으로 스페인, 일본과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인다(World Bank, 2012).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증가 가능성과 함께 청소년기

임신 예방 및 출산 이후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⁵⁾



* 출처: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중 OECD 국가만 추출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ADO.TFRT?display=default>(2013.2.12 검색)

* 주: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

【그림 II -1】 OECD 국가 청소년 출산율(2011, 1997)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간 OECD 국가의 청소년 출산은 대체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출산율은 개별 국가의 경제 및 복지수준과 같은 거시적 요인으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임신 예방 정책의 성공 이면에 낙태의 허용 여부,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 용인과 지원 정도, 청소년 및 가족지원정책의 수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청소년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조차 청소년기 출산을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이유는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사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 출산율 감소 이면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공과 함께 낙태 허용에 따른 결과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5) 특히 심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저체중, 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 진료를 받는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백혜정 외, 2012a; Raatikainen, Heiskanen, Verkasalo, & Heinonen, 2006:157).

청소년의 성 경험에 대한 용인과 임신·출산에 대한 시각은 나라마다 상이하고 이는 교육정책,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예로 미국의 경우 청소년의 성행동 자체를 문제행동으로 접근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청소년의 성행동에는 개방적이지만, 낙태를 허용하면서까지 출산은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성행동, 임신, 출산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인 여부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임신 자체가 개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청소년이 임신 단계에서 불법을 감행해서라도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하더라도 상당수는 입양으로 종결되고 있어 생명윤리문제, 아동의 인권문제, 청소년의 건강·보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외 입양 아동 상당수는 미혼모 아동이다. 2011년의 경우 국내·외 입양아동 2,464명 가운데 91.8%(2,262명)가 미혼모 아동이며⁶⁾, 같은 해 입양 의뢰 미혼모 1,9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24세 이하 청소년이다(표 II-3, II-4, II-5). 또한 출산 장려가 주요 정책 아젠다로 자리잡고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천 명에 달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양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친생모인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아동과 미혼모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임신과 출산단계의 지원과 출산 후 양육지원이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여기에 입양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 II-3 국내 입양아동 유형

단위: 명

연도	입양 신청자	입양아동유형						보호유형	
		계	미혼모 아동	시설(유기) 아동	빈곤 가정	결혼(한부모) 가정	기타	시설보호 아동	위탁보호 아동
2009	1,760	1,314	1,116	70	82	27	19	636	678
2010	1,733	1,462	1,290	46	73	27	26	643	819
2011	1,947	1,548	1,452	34	46	9	7	649	899
2012	1,599	1,125	1,048	19	34	7	17	462	663

*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국내외 입양통계.

6) 국내외 입양통계는 보건복지부(각년도) 입양통계 참조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4&page=1&CONT_SEQ=284892&SEARCHKEY=TITLE&SEARCHVALUE=입양

표 II-4 국외 입양아동 유형

단위: 명

연도	계	성별		발생유형별			아동상태별	
		남	여	미혼모아동	유기/빈곤	한부모/기타	비장애	장애
2009	1,125	722	403	1,005	8	112	1,028	97
2010	1,013	675	338	876	4	133	808	205
2011	916	629	287	810	9	97	706	210
2012	1,125	410	715	1,048	53	24	1,073	52

* 출처: 보건복지부(각년도), 국내외 입양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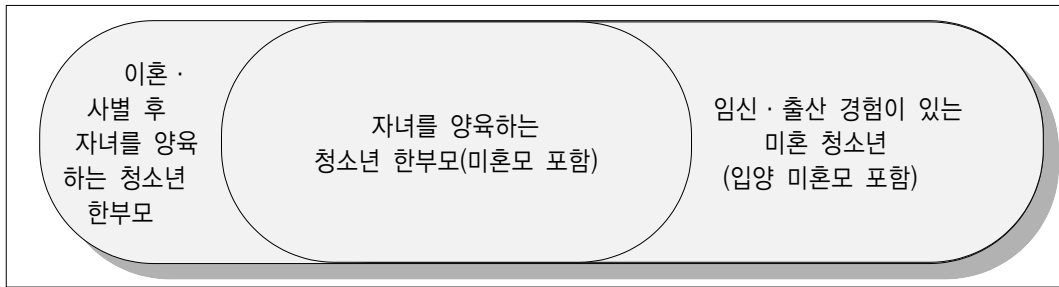
표 II-5 입양 의뢰 미혼모의 연령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만18세 이하			만19~24세 이하			만25세 이상		
		소계	병원 및 직접방문	미혼모 시설	소계	병원 및 직접방문	미혼모 시설	소계	병원 및 직접방문	미혼모 시설
2011	1,925	135	74	61	985	528	457	805	514	291
2012	1,612	210	123	87	806	442	364	596	387	209

* 출처: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양육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 취지임을 감안할 때 임신, 출산 단계 뿐 아니라 출산 이후 양육과 입양 단계의 지원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임신·출산은 반복되는 문제이고, 입양 미혼모도 위기상황에서 짧게나마 부모됨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생애 전반에 복잡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임신, 출산, 부모됨의 경험은 청소년 개인의 일탈과 선택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과 입양 미혼모를 포함한다(그림 II-2). 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청소년기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며, 임신과 출산단계에서의 지원과 출산 후 지원이 연장선상에서 분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 출처: 백혜정 외, 2012a, p.20.

【그림 II-2】 본 연구의 청소년 한부모 대상 범위

2.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에 따른 쟁점

1) 양육 한부모와 입양 미혼모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민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중등학교 재학 연령에 속하는 청소년 뿐 아니라 19세 이상 성년에 이르러 성인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혼재하고, 심지어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자인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학업중단, 가출, 가정 해체, 빈곤 상황에 있는 취약·위기청소년이며 인권 보호에 취약한 소수자(minority)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임신, 출산(낙태 포함), 자녀양육(입양 포함) 전반에서 이들의 인권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는 정책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11년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지원 가구 규모는 전체 청소년 한부모 가구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1만 2천 여 가구로 볼 때 12% 수준이다(표 II-6). 관련 예산은 2010년 첫 해만 120억이 편성되었으나 실 집행은 844백 만 원으로 집행율(6.99%)로 저조하였고, 다음해 63억 여 원으로 대폭 수정되어 1,812백 만 원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가 과대 추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책 대상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 수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실제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사업의 각 항목별 인지 비율은 최소 26.8%에서 최대 73.2%의 수준에 불과하다(백혜정 외, 2012a: 153). 2010년과 비교할 때 2011년의 사업비 집행액은 전년 대비 46.5%, 실 지원 가구수는 398가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증가한 데 비해 예산액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2,425백만원 수준으로, 아동의료비 지원도 중단되어 지원내용과 지원 규모가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표 II-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현황(여성가족부)

단위: 백만원, 가구, %

구 분	2010			2011			2012		
	예산	집행	지원	예산	집행	지원	예산	집행	지원
전체	12,080 (100.0)	844 (6.99)	1,222 ¹⁾	6,380 (100.0)	1,812 (28.4)	1,620 ¹⁾	2,425 (100.0)	1,873 (77.2)	1,831 ¹⁾
아동양육비	1,808	275	1,013	2,510	868	1,286	1,410	1,148	1,607
검정고시 학습비	5,298	27	76	1,094	99	180	145	82	146
자산형성지원	4,147	173	550	1,682	87	196	158	157	217
아동의료비	434	85	708	657	336	430	-	-	-

* 출처: 여성가족부, 2013 내부자료를 재구성함.

* 주: 1) 중복지원을 제외한 실 지원 가구 수

2) 2011년 신설된 자립촉진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예산은 289백만원(313가구)임.

3) 전체 예산에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 친자확인소송비, 연구사업비 등 제외

한편, 그간 입양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였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최근 들어서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데다 청소년보다는 전 연령에 걸친 미혼모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지금까지 미혼모에 관한 연구는 미혼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자녀 양육비, 비양육부모의 부모역할을 주제로 하였다. 최근에는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 요인, 경로 및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출산 및 양육 실태와 지원 방안, 그리고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제석봉, 석창훈, 차명진, 이해정, 윤효정, 2008; 홍순혜 외, 2007)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미혼모에 초점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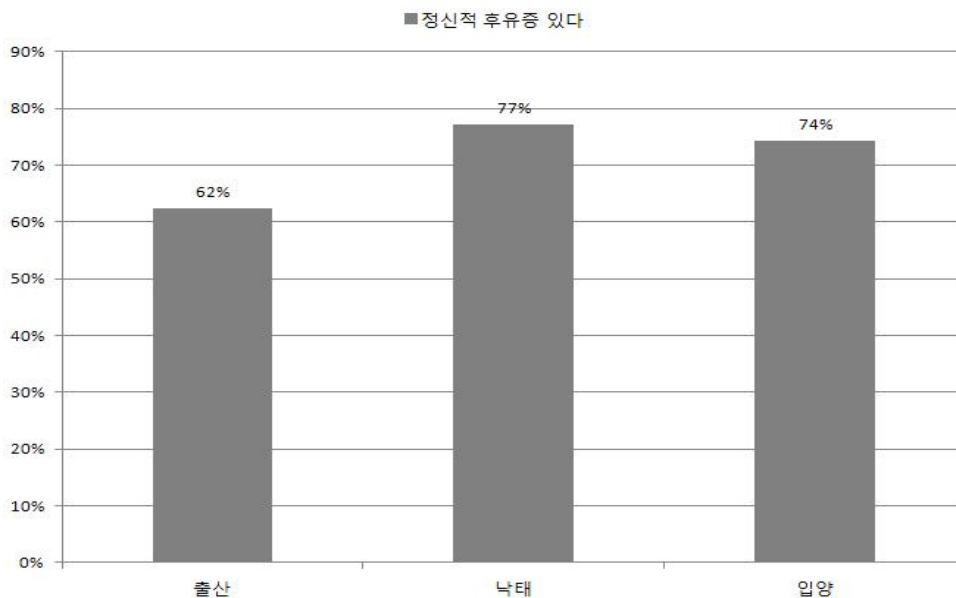
청소년은 물리적, 심리적 측면에서 취약하며 낮은 학력과 어린 나이로 인해 경제활동도 쉽지 않아 출산 이후 생활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Reid & Meadows-Oliver, 2007: 289~296). 준비되지 않은 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영아살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내부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11년까지 영아살해로 검거된 범죄자 총 83명

가운데 25세 이하 청소년은 48명(57.8%)으로 과반을 넘었고, 10대도 16명(19.2%)이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1차년 조사 표본에서 입양 보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77.1%가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였고, 출산 경험 보다 후유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표 II-7, 그림 II-3).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의 후유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입양을 보낸 청소년은 상실감, 죄책감, 우울 등 정서적 후유증이 크고,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감정과 증상이 억압되고 부인되어 정상적인 슬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허남순, 노충래, 2005; 최승희, 2008). 특히 임신은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며,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등 최근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출산 이후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II - 7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후유증 있다	후유증 없다	계
출산	212(62.4)	128(37.6)	340(100.0)
낙태	64(77.1)	19(22.9)	83(100.0)
입양	113(74.3)	39(25.7)	152(100.0)



* 출처: 백혜정 외, 2012a의 1차년 데이터를 활용함.

【그림 II - 3】 출산, 낙태, 입양의 정신적 후유증

2) 시설 및 지역사회 보호의 균형

이 연구의 1차년도 조사에서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상당수가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가 낮고 지역사회 내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부 확인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입소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시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거점사업기관 등 2개 유형에 불과하다. 이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와 정보로부터 소외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안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양육 및 자립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지역사회 내 보호의 균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가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중앙단위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확산하고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망 구축이 요구된다.

현행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제도에서 시설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청소년 한부모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전국 124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과 단기보호시설인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생활시설 121개소, 이용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3개소)로 기능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II-8).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서 출산하고, 공동생활지원형(구,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중간의 집)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거나, 일부는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로 옮겨 자녀가 아동·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생활하기도 한다.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4세 미만 청소년이다. 기본생활지원형의 입소 대상은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해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이며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공동생활지원형의 입소대상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자공동생활지원형)’,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이다. 보호기간은 2년 이내이며 각각 1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13, 221~223). 이들 시설에서 보호하는 미혼모자 가구는 매년 2천 명 내외이며,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당해 연도 입소자와 퇴소자 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표 II-9, 표 II-10).

표 II-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2013년)

시설유형		시설수 121개	입소대상 및 기능	보호기간 (연장기간)	입소 정원
모자가족 복지시설 (46)	기본생활지원	41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	3년(2년)	1,057세대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	2년(1년)	40세대
	자립생활지원	3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 모자보호 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41세대
부자가족 복지시설 (3)	기본생활지원	1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 가족	3년(2년)	20세대
	공동생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	2년(1년)	15세대
	자립생활지원	-	부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58)	기본생활지원	33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보호를 요하는 여성	1년(6월)	784명
	공동생활지원	25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1년) 2년(6월)	217세대 10명
일시지원 복지시설(14)		1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387명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3)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p.217.

표 II-9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연도별 운영현황

연 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연도말 기준)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시설수	정원(명)	현원(母, 子)	시설수	정원(세대/명)	현원(세대/명)
2008	27개소	703명	557명(485, 72)	21개소	118세대(26명)	89세대(15명)
2009	32개소	768명	586명(493, 93)	24개소	174세대(10명)	127세대(10명)
2010	33개소	780명	614명(528, 86)	25개소	212세대(10명)	165세대(9명)
2011	33개소	782명	615명(477, 138)	25개소	222세대(10명)	189세대(8명)
2012	33개소	784명	613명(447, 166)	25개소	217세대(10명)	176세대(6명)

* 출처: 여성가족부(2013) 내부자료.

표 II-10 기본생활지원시설 연도별 입·퇴소별 현황

연도	시설수	연도 중 입소(명)	연도 중 퇴소(명)
2009	32	2,462	2,452
2010	33	2,799	2,747
2011	33	2,460	2,448
2012	33	1,962	1,949

* 출처: 여성가족부(2013) 내부자료.

기본생활지원시설 입소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입소자 10명 가운데 6명은 만 23세 이하 청소년이며, 2009년 62.6%에서 '12년에는 66.1%로 증가하였다. 학력별 현황을 보면 입소자 10명 가운데 4명은 고졸 미만 학력자로, 같은 기간 고졸 미만자 비율은 42.4%에서 40.8%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11, II-12). 기본생활지원시설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설치 목적 상 무료 숙식제공, 분만의료 혜택, 컴퓨터·홈패션·양재·미용 등의 직업교육, 인성교육 및 상담지도를 지원 내용으로 하고 있어 학력취득을 포함한 청소년 미혼모의 실질적인 자립준비와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2011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2015년부터 미혼모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별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 시설의 주 입소 대상인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즉 추가 시설 확보를 통해 시설보호의 공백을 보완하거나, 지역사회 내 재가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표 II-11 기본생활지원시설 입소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만12세 이하	만13~15세	만16~18세	만19~23세	만24~28세	만29세 이상
09년	2,462(100)	2(0.1)	87(3.5)	544(22.1)	908(36.9)	558(22.7)	363(14.7)
10년	2,799(100)	3(0.1)	120(4.3)	757(27.0)	1,007(36.0)	511(18.3)	401(14.3)
11년	2,460(100)	0(0)	93(3.8)	629(25.6)	965(39.2)	433(17.6)	340(13.8)
12년	1,962(100)	0(0)	63(3.2)	478(24.4)	755(38.5)	348(17.7)	318(16.2)

* 출처: 여성가족부(2013) 내부자료.

* 주: 1) 입소자 중 만23세 미만의 비율은 62.6%(09년) → 67.4%(10년) → 68.6%(11년) → 66.1%(12년)

표 II-12 기본생활지원시설 입소자 학력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무학	초등퇴	초등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졸	대학원 이 상
2009년 (32개소)	2,462 (100)	4 (0.2)	5 (0.2)	31 (1.3)	212 (8.6)	252 (10.2)	540 (21.9)	875 (35.5)	273 (11.1)	257 (10.4)	13 (0.5)
2010년 (33개소)	2,799 (100)	2 (0.1)	0 (0)	33 (1.2)	215 (7.7)	274 (9.8)	649 (23.2)	1,013 (36.2)	356 (12.7)	245 (8.8)	12 (0.4)
2011년 (33개소)	2,460 (100)	2 (0.1)	3 (0.1)	33 (1.3)	195 (7.9)	275 (11.2)	560 (22.8)	907 (36.9)	266 (10.8)	213 (8.7)	6 (0.2)
2012년 (33개소)	1,962 (100)	2 (0.1)	0 (0)	34 (1.7)	122 (6.2)	223 (11.4)	420 (21.4)	805 (41)	177 (9)	173 (8.8)	6 (0.3)

* 출처: 여성가족부(2013) 내부자료.

* 주: 1) 입소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고졸미만 학력자임(42.4%(09년) → 41.9%(10년) → 43.4%(11년) → 40.8%(12년))

아동·청소년복지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내 보호로 ‘탈시설화’의 경향에 따라 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보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에서 시설보호 뿐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등 재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2013년 현재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서울 2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다.⁷⁾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은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과 임신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 기관 연계지원을 실시한다.⁸⁾ 그러나 생활시설에 비해 시설 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인적, 물적 인프라의 부족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접근성 자체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재가 청소년 한부모의 발굴과 아웃리치, 사례관리, 자원 연계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소년소녀가정 제도를 가정위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기준으로 460세대 총 613명의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였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연령을 보면 미취학, 초등학교 재학 연령의 아동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의

7) 사업수행기관은 서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부산(부산미혼모·부자지원센터), 대구(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인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울산(울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새생명지원센터), 충남(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경남미혼모지원센터), 제주(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8)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은 연간 70만원 이내의 생필품 지원을 포함하며, 기타 상담, 친자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자조모임 운영지원,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지원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20세 이상 성인기에 접어든 아동(36명)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재 소년소녀가정세대는 15세 미만이 181명, 15~17세 이상 370명, 18세 이상 245명 등 총 796명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2, <http://stat.mw.go.kr>). 즉, 아동 인권 보호 차원에서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력으로 ‘아동이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현행 재가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는 가정위탁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지원 체계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18세 이하 아동에 해당하는 재가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가정위탁과 같은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19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필요시 가정위탁이나 후견인제도를 병행하는 등 지역사회 내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II -13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2.12.31. 현재)

단위 : 명, 세대

구분	계	위탁가정 유형			가정위탁보호아동 유형 ¹⁾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령			
		대리 양육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소년 소녀 가정에서 전환	시설 보호에서 전환	기타	1~13 초등 이하	14~16 중등	17~19 고등	20세 이상
세대수	11,030	7,230	3,037	763	460	112	9,310	-	-	-	-
아동수	14,502	9,732	3,831	939	613	153	12,252	4,943	4,814	4,709	36

* 출처: 보건복지부(2012).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http://stat.m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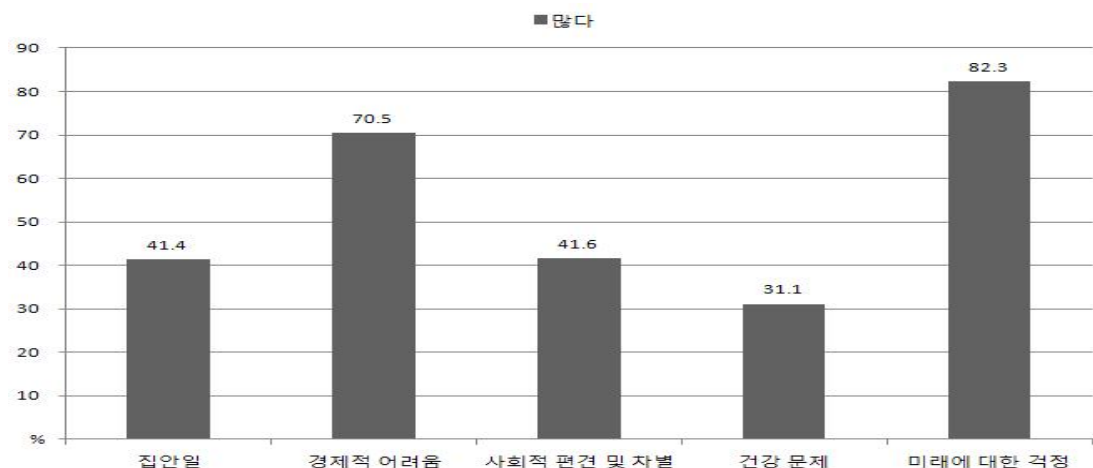
* 주: 1) 기말 현재 현황만 제시하여 총 세대수 9,882, 아동수 13,018명 기준임.

3)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주기와 쟁점 : 청소년기, 성인기 이중과업 지원

출산 이후 자녀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업중단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저학력, 비숙련 상태에서 자녀양육, 학업,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가족의 지원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면 성인기 이후 만성 빈곤상황에 놓이기 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임신, 출산 여부에 관계없이 학습권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양육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자립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부모됨’ 경험 자체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심리·정서, 교육, 직업 훈련, 경제활동 전반에서 순기능적인 측면도 존재하며(Duncan, 2007: 307), 청소년 역할과 양육자의 역할 가운데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를 수행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갖는 정도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Dalla et al., 2000: 242).

현재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정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가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빈곤 가구의 가장이라는 점에서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은 양육이라는 성인기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학업과 자립, 활동과 참여라는 청소년기 기본 과업을 유예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 내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주거 불안전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인의 지도 감독 및 보호와 주거 독립성을 함께 감안한 주거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Harding et al, 2004: 16; Giullari et al., 2005: 414; Eshbaugh, 2008: 105~106). 이 연구의 1차년 조사에서도 양육 부담보다는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4). 특히 양육 중인 경우 학업중단 비율이 더욱 높아져 양육 한부모의 72.9%, 양육 계획 중인 경우의 69.5%, 양육 포기 경우의 62.5%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 출처: 백혜정 외, 2012a의 데이터를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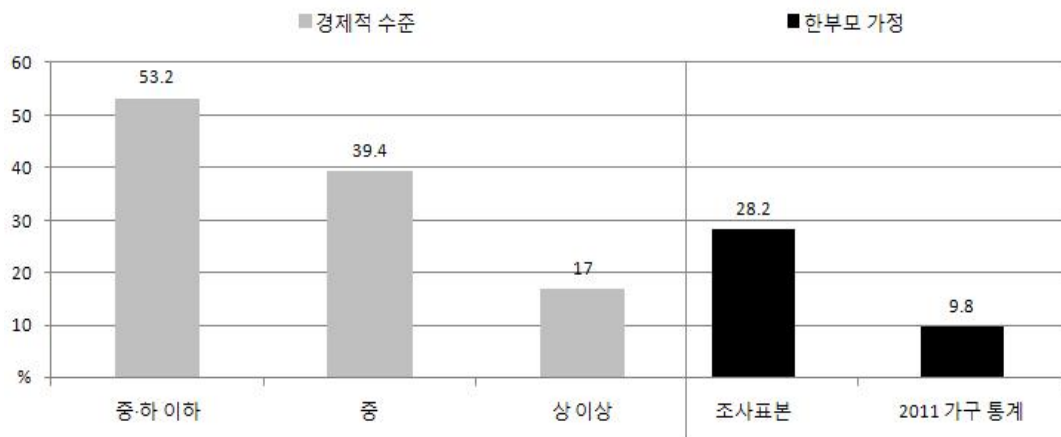
【그림 II-4】 상황별 스트레스 빈도

선행연구에서도 이들의 교육 및 직업 열망과 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1차 조사에서도 ‘학업 지속의지가 없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하여, 81%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업을 마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홍순혜 외(2007)의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지속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제석봉 외(2008)의 연구에서도 ‘학업 지속 의지가 약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로개발도 중요한데, 이 연구의 1차 조사에서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의 78.8%가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제석봉 외(2008)의 연구에서도 직업탐색 및 직업훈련 등 진로개발의 정책 요구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실제 교육과정 이수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제도의 전달체제와 지원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직업열망에 비해 학교현장에서의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수준은 어떠한지, 출석을 포함한 교육과정 이수과 활동에의 참여, 교복이나 좌석배치 등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Brosh, Weigel, & Evans, 2007: 577; Vioent, 2009: 225; 홍봉선 외, 2011: 25). 또한 10대 미혼모의 학업 목표를 성취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중 하나는 공식적, 비공식적 관계(Brosh et al., 2007: 565; Cooke, j. & Owen, J., 2007: 64)이고, 교사의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우울 정도가 학업 유지와 관련이 있으며(Kalil et al., 2008: 524; Vincent, 2009: 229) 현재 학업 지속 여부와 사회적 지지 정도가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어(Budd et al, 2006: 557) 학업, 사회적 지지, 양육 스트레스를 연관선상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은 26.7%로 스웨덴 7%, 덴마크 6.8% 수준과 비교할 때 4배에 달한다. 부모의 연령이나 혼외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 내에 아동이 있다는 것은 양육자의 근로 참여를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경험과 숙련도 등 소득능력(earning capacity)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자가 생계부양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모든 상황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부모가구 여부가 아동 빈곤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 한부모를 통해 이들이 성장한 가정 환경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 후 성인기로 이행하는 경로를 12년 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한부모는 성인기 이후 전문적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 집단(15%), 심리적 취약 집단(42%), 일반 집단(43%) 등으로 서로 다른 경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Oxford et al., 2005: 479).

이 연구의 1차년도 조사 표본 457명 가운데 양친가정(52.7%)에서 자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부모가정(28.2%), 조손가정(5.9%)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비율이 9.3%임을 감안하면(통계청, 2011) 본 표본의 한부모가족 비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하 이하'라는 응답이 53.2%에 달해 저소득 취약 가정의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II-5). 적어도 본 표본에서는 부모의 빈곤과 가족 유형까지 대물림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저소득 취약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가족기능의 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아동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 편익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 선제적인 지원과 보조가 요구된다(Lynch, 2004: 9~18; Barn et al., 2007: 23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단편적인 교육, 고용, 직업 훈련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는 수준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Yardley, E., 2009: 254~256).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a)의 데이터를 분석함.

【그림 II-5】 청소년 한부모의 청소년기 가정환경

3.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⁹⁾

인권은 보편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권의 출발점은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권이며 이러한 자유권은 권리의 동등한 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에 의해서 보완되며, 사회권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 인권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이다. 즉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며 나이와 관계없이 청소년은 인권의 주체가 된다.¹⁰⁾ 같은 맥락에서 임신·출산과 관련된 인권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청소년은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 특히 청소년의 성(性)과 건강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한 청소년의 인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불가피하겠으나¹¹⁾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임신·출산과 관련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1) 임신·출산·양육 관련 자기결정권

(1)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9) 이 절의 1), 2), 3) 항은 이준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항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이 절의 집필초고는 국회 주관 정책세미나(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2013.5.21; 새정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정책 방안 정책세미나, 2013.5.24)와 본 원 세미나(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013.2.13)에서 활용한 바 있으므로 일부 중복이 있음을 밝혀둡니다.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책임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있으나 생물학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한가에 의해 서로 다른 입장에 놓일 수 있고 권리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남성, 여성을 포괄하는 한부모의 기본권을 의미한다. 다만 임신·출산은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보장된 인권은 대부분 성인도 향유하는 인권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아동권리협약도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4조: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① 내용과 근거 및 주체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임신·출산 여부, 임신의 지속·중단에 관한 선택, 임신·출산의 횟수, 임신·출산 간의 기간 조절(터울조절) 등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보장된 ‘모성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6조 제2항)을 근거로 한다.¹²⁾ 헌법이 보장한 모성은 다른 아님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할 수 있는 특성, 즉 임신·출산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³⁾ 물론 헌법의 체계상 모성에 관한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헌법 제31조에서 제36조의 부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교육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1조 제1항)이나 근로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32조 제1항)의 경우에도 교육에 관한 자유권과 근로에 관한 자유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처럼 모성에 관한 기본권도 모성에 관한 자유권으로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모성에 관한 기본권이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한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면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헌법 제37조 제1항)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은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을 최종적 근거로 하여 일반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이 보장되어 있는

12)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낙태의 자유를 의미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된다고 한다.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판례집 24-2상, 471면 이하, 480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내재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의 발달단계나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임부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 즉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개별적 기본권인 모성에 관한 기본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기본권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행복추구권에서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도출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13) 헌법재판소는 모성에 관한 기본권에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면 이하, 790면: “특히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다. 헌법은 실질적 평등,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함을 여러 곳에서 천명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 외에도, 위에서 본 헌법 제32조 제4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3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5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2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을 말한다.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고, 일반적 자유권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으로서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과 대등한 지위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모든 여성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인 여성도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임신·출산에 관한 적극적 결정권

우선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적극적 측면’에 따라 청소년인 여성도 본인이 원하면 임신할 수 있고, 임신을 지속하여 출산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하거나 본인이 원하여 임신한 여성 청소년에게 임신의 중단(낙태)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임신한 청소년에게 부모나 교사가 낙태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임신·출산에 관한 적극적 결정권의 의미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한다. 이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임신과 출산은 자퇴나 퇴학을 강요받아야 할 일탈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이다.¹⁴⁾ 물론 미성년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하므로

14)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한 여학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사건에서 이것은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인 권위 2009. 7. 6. 09진차535결정: “①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서 기본권적 인권 중에서도 핵심임. 또한 임신으로 인해 학습을 중단할 경우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인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학업중단(낮은 교육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들의 자립성을 높이고 미래를 위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청소년 임신이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로 청소년 학생에게서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충분한 이유 또한 될 수 없음. 따라서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휴학 또는 자퇴를 종용하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퇴를 결정했다면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② 피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신한 학생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임신사실이 다른 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학교 당국이나 교사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청소년 임신 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님. 하지만 막연히 동료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임신한 학생에게 전학 또는 휴학을 종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③ 피해자는 이러한 이성교제 및 임신행위로 학교의 수업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성교제 및 임신이 학교생활규정 상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불미스런 행동’ 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해당되어 퇴학에 이르게 될지 여부는 기성의 관념에 따라

미성년인 자녀가 출산한 경우에 아이에 대한 친권은 그 부모가 대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민법 제910조)¹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가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그 친권을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이 허용되어 있는 사안임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에 관한 소극적 결정권

또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소극적 측면'에 따라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신하지 않을 수 있고, 비록 본인이 원하여 임신한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이것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 청소년에게 임신을 강요할 수 없고, 여성 청소년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을 강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임신의 중단, 즉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다. 현행 형법상 낙태는 금지되고 처벌되어 범죄로 취급되고 있고,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¹⁶⁾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낙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자녀를 양육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라도 낙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며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은 임신·출산에 관한 소극적 결정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¹⁷⁾ 그러나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43차 유엔사회권규약

속단할 수 없음. 설령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이라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교육 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15) 민법 제910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孫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16) 「모자보건법」에 따라 낙태가 정당화되는 사유로는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17)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낙태가 정당화되는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지적했듯이 출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청소년이 불법 낙태와 입양 강요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대안적인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낙태 예방을 위한 접근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이 아닌 종교단체 주도하에 생명권, 생명존중에서만 조망되고 있어 여성의 죄의식만 가중하는 역효과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2: 49).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낙태율은 12% 정도이며, 이 가운데 1/3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례이다(Grossesse mineure, <http://www.doctissimo.fr>).

한편 낙태를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측면에서 이해함으로써 낙태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 의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에서도 낙태수술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1항). 다만 본인의 동의와 함께 ‘배우자의 동의’도 함께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속한다는 사실과 일부 충돌하는 면이 있으나 배우자가 사망·실종·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만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동법 제14조 제3항)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

여성은 출산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양육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출산한 자녀의 양육 여부나 양육의 방법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육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의 입양은

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이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이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능하지만 형법에 따라 자녀의 유기는 처벌 대상이다.¹⁸⁾ 여기서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여 사망하게 하거나 출산한 자녀를 불법적으로 유기하여 유기된 아동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아의 유기가 합법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¹⁹⁾ 합법적 영아유기는 일정한 안전장비가 갖춰진 시설에 영아를 유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를 유기한 여성의 신원비밀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의 경우 베이비 박스 개수가 10년 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UN은 베이비 박스(baby box, baby hatches) 자체가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은 원하지 않는 아이(unwanted baby)를 안전한 장소에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베이비 박스는 독일 99개, 폴란드 45개, 체코 45개, 헝가리 26개, 슬로바키아 16개, 리투아니아 8개, 이탈리아 8개, 벨기에 1개, 네덜란드 1개, 스위스 1개, 캐나다 1개, 말레이시아 1개 이 외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등에 설치되어 있다(BBC News, 2013. 3. 13).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은 생명을 보호받는 자신의 부모와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²⁰⁾ 일각에서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여성에게 출산 이후 불법유기 대신 양육을 포기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성 권리 측면에서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낙태권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베이비 박스 운영이 아동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인권침해 진정에 대하여 ‘베이비 박스에 아동이 신고되면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3) 입양에 관한 자기결정권

입양의 당사자는 ‘입양되는 아동’과 ‘입양하는 양부모’다. 입양되는 아동의 친부모는 아동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아동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

18)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72조).

19) 영아유기의 합법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준일, 영아유기의 합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한국법제연구원), 제40호(2011), 337면 이하를 참조할 수 있다.

20) 관련하여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4항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모와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성, 본 창설을 허용하고 있다.

입양되는 아동이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부모가 아동을 대신하여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었다(민법 제869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민법에 따르면 친부모가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는 13세 미만으로 낮춰졌다. 이는 본인의 입양에 대하여 스스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한편 종래에 15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입양에 대하여 승낙할 수 있고, 다만 부모의 동의를 필요하였다(동법 제870조 제1항).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입양에 대한 승낙을 할 수 있는 아동의 나이는 13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이처럼 친부모는 자녀의 입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를 대신하여 승낙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입양에서 친부모의 의사는 중요하다. 문제는 친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다.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동법 제910조) 친부모가 청소년인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은 청소년인 친부모의 부모가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친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출산한 자녀의 입양에 관한 승낙권을 행사하게 된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에 요보호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동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외에도 입양될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다(동조 제3항). 13세를 기준으로 그 미만인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친부모의 승낙이나 동의로 충분하지만 그 이상인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민법에 따른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차이가 없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에도 친부모가 미성년자이면 그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자녀의 입양에 관한 동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입양되는 아동의 친부모나 그 부모가 승낙권이나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아동의 입양에서 아동의 복리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친부모나 그 부모의 이익이 우선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모든 아동의 입양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되었다.²¹⁾ 그만큼 미혼모의 입양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입양보내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21) 우선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제2항). 다음으로 「입양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①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명 서류, ② 제9조(양자가 될 자격) 및 제10조(양친이 될 자격)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③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④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특히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동의를 자녀를 출산하고 1주일 후에만 가능하게 하는 ‘입양숙려제’가 시행되게 되고, 사회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자녀를 보호 의뢰 할 때 친권포기 의사가 기재되지 않고 입양동의로 친권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²²⁾ 그리고 입양기관이 미혼모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어 현행 시설 수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입양의 목적은 아동의 복리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입양의 당사자는 입양시키는 친부모가 아니라 입양되는 아동이라는 점에서 「입양특례법」이 입양되는 아동의 관점에서 개선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입양절차 상의 문제로 입양 대신 유기를 선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동의 복리를 우선시 하는 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미혼모의 의사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2)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

(1) 차별금지사유로서 임신과 출산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는 ‘성별’과 ‘종교’ 및 ‘사회적 신분’으로 국한되어 있으나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의 사유는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헌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대표적인 것만 예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²³⁾ 따라서 임신과 출산은 헌법상 금지된 (열거되지 않은) 차별사유로 보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제2항).

22)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데(동법 22조 제1항) 이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3) 헌법재판소는 종래에 평등심사를 하면서 헌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에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실시하여 헌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헌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차별금지사유인 것처럼 이해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면: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열거된 차별금지사유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차별금지사유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은 여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성차별)로 볼 수도 있다.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19가지 차별금지 사유²⁴⁾ 가운데 하나로 임신 또는 출산을 열거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그밖에도 「여성발전기본법」,²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²⁶⁾ 등에서도 임신이나 출산은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행위는 허용된다.²⁷⁾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이나 법률에 비추어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임신·출산한 여성 청소년을 차별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한 여성 청소년을 차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출산한 여성 청소년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차별로부터 임신·출산한 여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차별금지에 관한 조직법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법

예시적인 것임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553면 이하; 2011. 6. 30. 2010헌마460, 판례집 23-1하, 519, 525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4)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 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이 있다.

25)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문: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7)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1991. 2. 11. 90헌가27, 판례집 3, 11, 24면: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인 것이다.”

의 형태로 된 일반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으로는 고용, 거래, 교육 등의 영역이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차별의 의미를 “특정한 사람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이에 따라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 청소년을 고용, 거래, 교육 등의 영역에서 배제 또는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특히 임신이나 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정적 우대조치가 지금까지 차별받아온 집단에 대하여 잠정적으로만 취해질 수 있는 우대조치이기 때문에 임신·출산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여 왔어야 하고,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는 데 잠정적 우대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차별이 시정될 때까지만 제공될 수 있는 잠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차별금지사유로서 나이와 혼인 여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임신하거나 출산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기보다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임신하거나 출산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일 수 있다. 여성이면 누구나 임신할 수 있지만 청소년인 여성의 임신은 도덕적으로 금기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신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나이(연령)’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이해될 수 있다. 나이 어린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편견이 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차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청소년에게 도덕적으로 금지된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차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여성은 성행위의 여부와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다.²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28)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유사하다.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등, 판례집 14-2, 390면 이하, 397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일정한 연령 이하인 여성과의 성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되기는 하지만²⁹⁾ 모든 여성 청소년과의 성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청소년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받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청소년의 경우에 대체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이므로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혼인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차별, 즉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일 수 있다. 이처럼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본질적으로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행위는 정당화되는데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청소년은 모성보호조치나 적극적 우대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기본권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이 향유해야 할 기본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헌법에서 특별히 청소년에 국한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은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국가의 의무(헌법 제34조 제4항),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헌법 제32조 제5항)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단지 참정권과 같은 기본권에서 연령에 의한 제한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특별히 청소년만이 향유해야 할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다. 동일한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임신·출산, 양육, 생계·주거, 교육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과 더불어 청소년이 향유해야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한다.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29) 형법은 13세 미만의 부녀와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같이 처벌한다(형법 제305조).

(1)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임신·출산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으로 생계, 교육, 주거, 보건(의료), 모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모성, 즉 임신·출산은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기본권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자유권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제공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³⁰⁾ 모성에 한정해서 본다면 모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 제공해주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모성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이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모성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신과 출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고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³¹⁾ 따라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성인인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과 다른 점은 없다. 만약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예방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배제한다면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것은 나이나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양육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

임신이나 출산은 양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한다.³²⁾ 특히 청소년의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 해당 청소년이 상대방인 남성 또는 심지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홀로 생계를 꾸리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계나 양육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미혼모인 청소년(24세 이하)이 보호대상자

30)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준일,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제10권 제1호(2004), 453면 이하 참조.

3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32) 헌법재판소도 양육권에 포함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2008. 10. 30. 2005헌마1156, 판례집 20-2상, 1007면 이하, 1018면: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로 인정되는 경우에³³⁾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과 같은 복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1항). 그밖에도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게는 복지자금 대여(동법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우선고용(동법 제14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시설에 대한 우선적 허가(동법 제15조), 공공시설의 우선적 이용(동법 제16조), 가족지원서비스(동법 제17조), 국민주택의 분양이나 임대 시 우선권 부여(동법 제18조)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대부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행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거나 한부모가족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이행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갖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생계 및 주거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

임신·출산이나 양육과 함께 청소년 한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은 생계와 주거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임신·출산을 수치로 여기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생계와 주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계와 주거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므로(동법 제5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에 따라 결정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모든 청소년 한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존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부모에게 손자녀의 부양까지 책임을 강제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역기능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의 예외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3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5조 제1항), 여성가족부령인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시행규칙 제3조).

(4) 여학생의 사회적 기본권

한편, 학생인 여성 청소년이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이 임신이나 출산한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임신이나 출산한 여학생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신이나 출산한 여학생을 위한 특수한 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지원에는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③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④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³⁴⁾이 포함된다(동법 제17조의2 제1항). 이와 같은 교육지원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4)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실현을 위한 법제의 방향³⁵⁾

청소년의 출산은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상이하게 접근되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집시 사회, 북아프리카 지역 마그레브 사회의 경우 여성의 출산은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며 임신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접어드는 관례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출산은 축하의 대상이자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가장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미혼모이며, 청소년으로서 특정 기본권이 제한되는 법적 지위에 있는 소수자 집단이다(정다영, 2009: 2). 청소년의 성행동이 여전히 지위비행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고,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 미혼모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이들에 대한 전향적인 보호와 지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그들의 기본을 제한한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으며, 그간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학습권), 양육권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 관한 논의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홍순혜 외, 2007; 정다영, 2009; 이준일, 2011a, 2011b, 2012).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한부모(미혼모 포함)가 차별에 더욱 취약한 이유는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34)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에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동시행규칙 제9조의2).

35) 이 부분의 독일 사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김은지 외)의 협동연구 세부보고서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지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임신·출산(낙태)·자녀양육(입양)의 전 과정에서 기본권의 의미와 구조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현행 청소년 한부모 지원 관련 주요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

(1) 취약·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 임의규정 개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가출청소년과 미혼모,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특별지원은 다른 제도 및 법의 의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합적인 욕구와 다양한 문제를 동반한 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양 청소년 미혼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입양 미혼모의 위기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가 초기에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청소년국(Jugendamt)이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인 사회법 8권에 기초한 지자체 행정의 한 조직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 69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서비스의 주체는 주 정부법(Landesrecht)에 의해 규정되므로 각 지자체별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에는 편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주 정부의 청소년국이 보편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서비스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는 가족국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과는 별도로 청소년국에서 별도 지원을 받게 된다.

청소년국은 아동과 청소년, 해당 부모에게 법률문제, 양육문제, 위기나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이나 아동주거시설에 보내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을 취할 수 있고 상담소의 역할도 담당한다. 특히 임신 초기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임신한 청소년이 아동과 관련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적 후견인들이 어떠한 지원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결정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국이 다루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자녀양육비에 관한 문제이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1610조부터 1613조에 규정되어 있다. 미혼모가 혼자 아동을 양육해야 한다면 미혼부자 자녀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양육비는 부양대상자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미혼부가 학생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국이 양육비 선급지원(Unterhaltsvorschuss) 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선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국은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권 보장, 거주지원, 가족관계 개선, 일상생활조직 지원 등을 지원하며 모부자시설(Mutter/Vater und Kind Einrichtung), 공동생활가정(Betreute Wohnformen) 입소와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을 돕고 있다.

이 외에 민간위탁 임신 관련 상담소(Schwangerschaftsberatungsstelle)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신 관련 상담소는 「임신분쟁법(Schwangerschaftskonflikt)」 2조에 근거하여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담은 공인된 상담소에서 전문상담인력에 의해 무료로 행해진다. 상담소는 피상담자에게 심리적인 지지와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소는 재정지원 신청, 주거지원, 구직지원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연방모자재단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된 상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과정도 돕는다. 양육·가족상담소(Erziehungs-und Familienberatungsstelle), 부부·생활상담소(Ehe-und Lebensberatungsstelle), 청소년 상담소(Jugendberatungsstelle) 등은 청소년 한부모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담소이다. 연방보건교육중앙회(BZgA) 상담소 데이터베이스에는 「임신분쟁법」에 따라 국가 공인된 상담소만 등록되며, 2013년 현재 등록된 공인 상담소는 약 1,600개에 달한다. 청소년정책 내에서 청소년의 출산 및 자녀양육 지원은 크게 사회교육적 개별돌봄(sozialpädagogische Einzelbetreuung)과 시설서비스(stationäre Angebote)로 나뉜다. 특히 사회교육적 개별돌봄은 재가 대상자를 위한 아웃리치를 위한 찾아가는 구조(Gehstruktur)로, 일상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학업 지속과 직업교육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자지체별로 600개가 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인 청소년국

(Jugendamt)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법률, 양육,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기초지자체별로 우선 설치 완료하고, 읍면동주민센터에 여성·가족팀 혹은 담당자를 추가 배치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여 아동·보육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② 「학교보건법」 실효성 강화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보건교육이 사실상 의무화되었다(동법 제9조 제2항).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은 초·중등교육과정에 근거하는 것으로 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군에서, 중·고등학교는 선택교과(보건)와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주제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보건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 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보건교과 채택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12.7%, 고등학교는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4, II-15).

표 II -14 학급당 보건수업 실시현황(창의적 체험활동)

단위: 개, 시간

구분	학교수	연간 평균 수업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5,840	3.78	3.73	4.17	3.97	16.97	17.22
중학교	3,151	8.17	7.01	6.08	—	—	—
고등학교	2,305	7.68	5.63	3.53	—	—	—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3년 4월 25일 정보공개청구)

표 II-15 보건과목 선택 현황(창의적 체험활동 이외)

단위: 개, %

중학교		고등학교										계	
		일반계		전문계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총 학교수	선택 학교수
3,169	401 (12.7%)	1,545	66 (4.3%)	-	-	514	35 (6.8%)	131	3 (2.3%)	113	2 (1.8%)	5,472	507 (9.3%)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2013년 4월 25일 교육부 정보공개청구)

* 주 1) 근거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군(선택교과)

2) 선택교과는 주당 1단위(2단위) 운영, 연간수업시수=34시간(68시간) × 학급수

법적으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적 취지와 실상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 학교장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보건교육 의무화제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보건교육을 선택과목으로 편성한 학교는 학급단위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한 토론식 성교육이 진행된 반면, 비 선택 학교는 학년 혹은 전교생 단위의 집단 강의 중심의 형식적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과목 편성 원칙과 성교육 시수를 보장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³⁶⁾ 성교육은 생물교과와 기타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초등학교의 성교육은 일반 교사와 보건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며, 중·고등학교는 1년에 최소 3회 이상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는 교사, 간호사, 교육상담가가 팀으로 실시하며, 외부 강사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윤리적(도덕적) 원칙을 기반으로, 성생활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과 피임에 대한 정보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다.

한편, 모든 고등학교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콘돔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부모 동의나 의사의 처방없이 무료로 응급피임약(pilule de lendemain)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도 약국과 가족계획센터를 통해 피임약, 피임기구 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있고, 15세부터 17세까지의 미성년자의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 비용이 면제된다. 다만 약 지급 시 교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가는 대상 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응급피임약이 규칙적인 피임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복용 양과 여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6) 프랑스 사례는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의 집필 원고를 발췌한 것임.

(2)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치 마련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청소년의 임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령기에 학생이 아닌 부모됨을 선택하여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학령기를 학생신분으로 보낸 청소년도 취업하지 않고 부모나 사회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즉 인생의 발달과업이 획일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먼저 부모가 되고 나중에 공부하고 자립해서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 다만 사회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언제 임신과 출산을 언제 부모가 되느냐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는 자기결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은 ‘성숙한 판단능력을 가진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을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숙하고 합리적인 판단만을 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도 성인에 못지 않은 충분하고 성숙한 판단능력이 가능한 존재로 본다면 연령을 기준으로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³⁷⁾ 이를 법률과 제도로써 지원하는 것이 순서이다.

한편 헌법은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11조 제1항).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성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19가지 차별금지사유로 임신 또는 출산을 포함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3호),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임신이나 출산은 차별금지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차별은 나이(연령)를 이유로 한 차별,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이 외 청소년의 성행위를 이유로 한 차별 역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 특히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37) 현재 2002. 10. 31. 99헌바40 등. 판례집 14-2, 390면 이하, 397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으로 생계, 교육, 주거, 보건(의료), 모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임신·출산은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대표적인 예이다(동법 제41조 제1항). 양육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양육 관련 복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중 일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행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거나, 한부모가족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게 이행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교육지원도 의무사항이 선택사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함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별 편차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의 낮은 제도 접근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자기결정권, 평등권, 사회보장수급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및 생활의 전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골자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현재 의원 발의 된 「아동·청소년인권법」, 「차별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대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³⁸⁾

(3)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학습권 역시 임신·출산과 관계없이 청소년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사회 인식과 학교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임신·출산에 의한 학업중단과 학교 이탈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임신한 청소년의 경우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중단 비율이 10배 이상 높고, 임신 기간 중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도 50~75% 정도이며 이후 구직과 생계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⁹⁾ 또한 임신한 청소년 커플의 3/4이 5년 안에 결별하고, 이들 커플 중 35%가 첫 임신 후 2년 안에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며, 청소년 한부모는 혼자 힘으로 본인과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임신한

38)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의안번호 : 1904411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3. 4. 5),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 1903793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 3. 30),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 1902463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 11. 6)

39) Prevention du dechrochage scolaire: Analyse du phenomene, <http://eduscol.education.fr>

청소년이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⁴⁰⁾

현재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생 미혼모 교육위탁기관이 전국 1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60조 제3항). 그러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보통교과(40%)의 성적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역청 혹은 개별 학교의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 해당 학생을 위탁교육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원칙 학교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을 권유하여 전학했다가 출산 이후 본교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1개 학년 평균 204시간의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168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 간 전학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권고 전학 문제와 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안학교의 경우 본교 수업에 20일 이상 출석 이후 대안학교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 자녀가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즉 학생 미혼모 대안학교의 경우 3월에는 사실상 수업 공백이 발생하여 오히려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출석수업 대체’의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을 참고할 수 있다.

다섯째, 「초·중등교육법」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은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정도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래 시행령 제54조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이 학교장 재량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학습권이라는 고유의 권리가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40) 외부 집필자의 원고에서 발췌하였으며 원문은 Jacques Michel, psychologue, 3eme journee humanitaire de la sante des femmes, organisee le 4 mars 2011, <http://www.doctissimo.fr> 참조.

지원사업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대한 제재와 직간접적인 처벌 조항이 빠져있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가 학습부진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적용 자체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 시킬 경우 인권, 권리에 비해 보호, 시혜가 앞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은 학습권 향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임신·출산과 같은 사안에 있어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가칭 「성평등교육법」의 별도 제정도 검토 될 수 있다.

대만의 「성평등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에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Article 14-1에는 “학교는 적극적으로 임신한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성평등교육법」 14-1에 규정된 보조는 임신을 하거나 최근에 자녀를 출산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캠퍼스 내·외의 자원을 사용하고, 교육을 완료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유연한 조치를 개발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LEAP 프로그램), 콜로라도 덴버시 등에서 공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사례와(학점 및 학위 취득, 교내 보육 시설 운영, 양육 및 아동발달 교육, 10대 아빠와의 가족 유대감 형성 등), 영국 교육부의 십대 부모에 대한 지원(출산 전후 결석 허용,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수당 지원, 취업준비(New Deal of Lone Parents), 18세 이하 10대 미혼모에 대한 임대 주택 할당 등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⁴¹⁾

(4) 입양 미혼모에 대한 지원 강화⁴²⁾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41) <http://ilorencecrittenton.wikispaces.dpsk12.org/>

42) 이 부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윤정 외)의 협동연구 세부보고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췌·요약한 내용을 포함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이하 “헤이그협약”)에 비준하고 협약 당사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헤이그협약은 국제 입양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의 매매 혹은 약취 행태가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것에 대한 우려 하에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국제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93년 국제사법에 관한 제17차 헤이그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1986년 국제 연합이 채택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 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과 이를 기초로 1989년에 마련 및 채택되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연합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도 이에 근거한다(석광현, 2012). 본 협약은 1993년에 체결된 후 1995년부터 발효되어 2013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90개 국가가 가입한 상태이다. 한국과 국제 입양을 진행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 6개 국가가 모두 협약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요 입양국가 중 유일하게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헤이그협약의 주요 목적은 국제 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및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입양을 통한 유괴 및 인신 매매를 방지하고, 체약국 간의 중앙 당국에 의한 입양 승인을 통해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다(헤이그국제사법위원회, 2011, 노충래 2012에서 재인용). 주요 내용은 첫째, 가정 보호 우선 정책을 추진하여 친가정 보호 및 입양 및 가정 위탁을 포함한 국내가정보호를 적극 추진한 후 여의치 않을 때 아동을 해외 입양 보내는 것을 고려할 것, 둘째, 입양 대상은 일상 거소(habitual residence)의 이동의 필요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할 것, 셋째, 친양자 제도의 추구, 넷째,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중앙 당국을 지정할 것, 다섯째, 입양 아동 출신국의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진행된 입양은 아동 수령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한다. 입양의 효력은 입양국의 입양 결정이 다른 체약국에서도 인정되며,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과 주요 내용을 볼 때 헤이그 협약이 갖는 주요 의의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강조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친 가정보호를 우선시 하며 협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의 책임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즉 협약 전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입양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근본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해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

서 「입양특례법」 및 민법을 개정하고 대표적인 제도로써 ‘가정법원허가제’와 ‘입양숙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즉 입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라는 숙려기간 이후 ‘입양동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친생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숙려기간 이후 입양동의를 위하여 친생 부모의 입양동의서, 친생 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입양허가제, 입양숙려제가 도입되어 친생모의 입장에서 입양절차와 입양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예로 청소년 미혼모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자관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기피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낙태, 영아유기, 불법입양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에 최근에는 청소년 미혼모에 한해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창설 절차를 허용하고, 청소년 미혼모가 동의하는 경우 숙려기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의원 발의 된 상태이다.⁴³⁾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미혼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모인 아동과 출생아동의 권리가 상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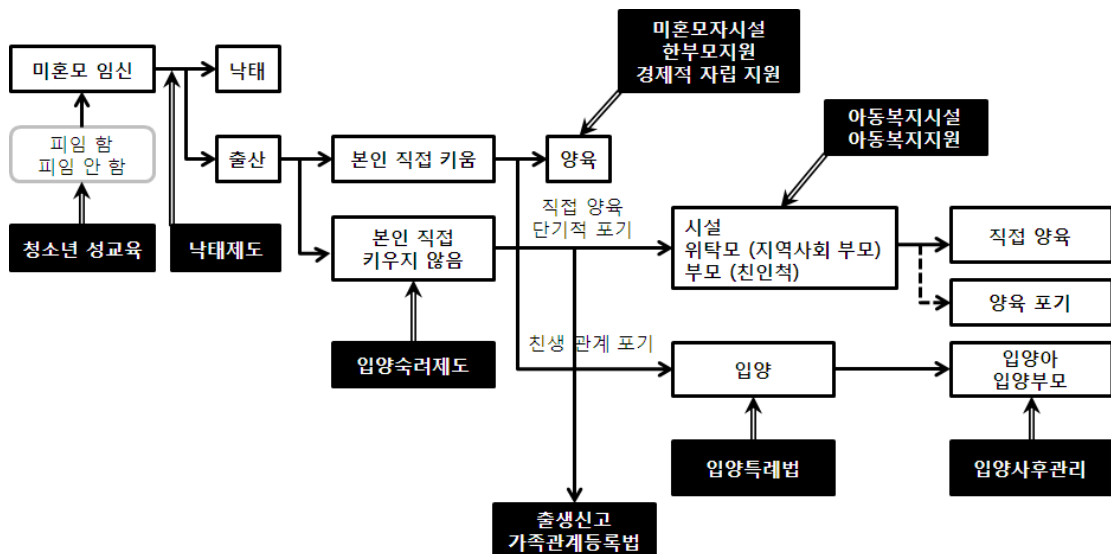
둘째, 친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를 대신하여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법 제910조). 따라서 친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출생아의 친권을 조부모가 행사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와 관련한 문제이다. 최근 입양 신고 시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정 민법에 맞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다.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와 폐쇄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록사항의 열람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입양 청소년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과양이 되거나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기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되는 ‘일부사항’, ‘전부사항’이라는 정보 자체가 낙인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항 혹은 기초사항 등으로 개선하고, 기록사항의 열람범위와 청구가능한 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2015년 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지되어 현재 33개소인

4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03353 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3. 1. 18)

마지막으로 입양숙려제 기간의 문제이다. 최근 복지부는 입양숙려기간을 전후로 산후 돌봄비로 최대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모성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입양보내기와 양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 1주일의 숙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현행 학업중단 숙려기간도 15일에 달한다. 반대로 성폭력에 의한 임신을 포함하여 '개인적·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자녀 양육이 불가능한 청소년에게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경우 숙려기간 동안 산후조리 외에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출생아에 대한 '보호동의'와 '입양동의'를 분리하여, 친생모가 숙려기간 동안 보호동의 할 경우 출생아를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고, 이를 입양동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숙려기간 이후 '입양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미혼모의 입양선택 과정과 쟁점, 그리고 관련 법제를 도식화 한 것이 **【그림 II-6】**이다.



57

(5)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강화

①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최근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지원법」을 근거로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최근 일부 개정안도 발의되었다.⁴⁴⁾ 이 법률안은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맞벌이 가정에 대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제공하여 일가정양립과 한부모가족의 나홀로 아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 개정안에는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보육교사가 방문하여 1대 1로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는 경기도에서 기 시행한 제도로, 그간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에 가정보육이 배제되어 보육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이 불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기본형(기존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서비스가 다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맞춤형 보육서비스, 무상보육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추가 비용부담으로 정책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국 확산을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⁴⁵⁾ 기존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의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시보육 이용 총 시간에 제한을 둘 지 여부와 야간 보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반면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권’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및 경제활동 대신 자녀 양육을 선택할 경우 자녀가 일정 연령(3세 정도)에 달할 때 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는 부모의 소득지위와 무관하게 이들의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기초생계비를 지급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업 및 취업지원, 취업상담 및 알선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4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902863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2012. 11. 29)

4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 1904806 보건복지위원장, 2013. 5. 3)

아동이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적인 생계비 지원을 보장하되 근로소득은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예치케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이광희 외, 2009).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OECD 국가들과(평균 47.2%)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2011년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81천명 규모로 이 가운데 재학·수강(학교 통학, 학원 수강) 인구가 87.1%로 압도적으로 많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83천명(1.8%) 정도이다(여성가족부, 2012: 311). 즉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립을 목적으로 당장의 경제활동 참여를 종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도 경제활동보다 학생신분으로 부모에 의존해서 지내는 경우가 더 많고 의존 기간 역시 이 또한 사회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먼저 되고 난 뒤에 공부하고 자립해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우리사회의 열린 시각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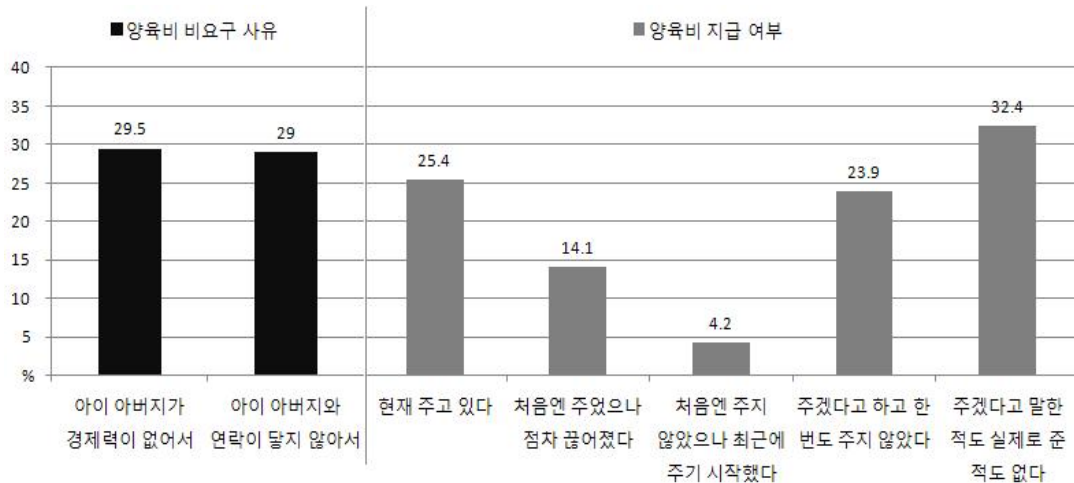
② 양육비 지급 이행 강화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0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등이 제공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7만원의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 정도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⁴⁶⁾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었으나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원 발의된 상태다.⁴⁷⁾ 한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OECD국가 중 17개국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리 차원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다.

46)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월 12만원),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월 15만원)과 비교할 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47)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903818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2013. 2. 21),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 190166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12. 9. 7).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근로소득을 포함한 월 평균 총 소득은 68.02만원(19세 미만 60.18만원, 19세 이상은 70.86만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25.4%에 그쳤다(그림 II-7). 따라서 생계, 자녀양육, 자립 준비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 지원제도는 더욱 의미가 클 수 있다.



* 출처: 백혜정 외, 2012a의 데이터를 분석함.

【그림 II-7】 양육비 비요구 사유 및 지급 여부

이 연구의 1차년 조사 표본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응답한 176명의 사유 살펴보면, 연락하기 싫다(2.8%)는 응답에 비해 아이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거나(29.5%), 연락이 닿지 않아서(29.0%)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상대 남성의 75%가 청소년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거나 ‘비양육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의무자(보호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력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또한 향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설치 등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절차 마련 시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국의 양육비 이행체계를 비교한 것이 아래 표이다(표 II-16).

표 II -16 국가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형태 비교

국가	기관명	기관형태	소관부처	관련규정	비고
미국	OCSE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국가소속 기관	보건복지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사회보장법	대지급 미도입 행정기관-법원분리 모델
영국	CSA	국가소속 기관	고용연금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자녀 양육비법	제한적 대지급 행정기관 우선모델
독일	법원 및 아동복지청	법원 및 지방정부 소속기관	법원 및 지방정부 (아동복지청)	민법	대지급 도입 법원 우선모델
호주	CSA (Child Support Agency)	국가소속 기관	복지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자녀 양육비법	대지급 미도입 행정기관 우선모델
뉴질랜드	국세청 (아동지원국)	국가소속 기관	국세청(IRD)	자녀 양육비법	대지급 미도입 행정기관 우선

* 출처: 박동혁, 2013, p. 77.

③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1차적인 생계 지원(주거·의료·교육·해산·자활급여 포함)이 가능하다. 이 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경우 아동양육비(월 15만원), 고교생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기초수급권자), 자산형성계좌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 의료비(2011년 폐지), 자산형성계좌(2010년 기 가입자만 유지) 지원이 사실상 폐지되어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복지급여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상당한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대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시행규칙에서는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과 같이 여성가족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권리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중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 우선입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제52

조)상 공동생활가정의 특성화 운영 및 가정위탁 등 대안가정 우선 위탁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자립을 포함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 생계급여와 보육·의료비(의료급여) 지원 뿐 아니라, 진로·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취업애로 청소년에 특화된 진로교육(교육급여)을 제공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에 성공하여 근로소득 등을 저축할 경우 일정 금액 내에서 후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계좌지원 제도 운영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24세 이후에는 기존의 ‘희망키움통장’과 연계하여 성인기 등 전 생애에 걸쳐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면 자립지원정책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학업중단 숙려제’가 임신·출산을 사유로 하는 학업중단 예방의 1차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하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혹은 「아동·청소년인권법」⁴⁸⁾내「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책무에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최저생계비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의 경우, 청소년기에 출산을 한 경우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입양 청소년 미혼모 상당수가 학업중단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급여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제2항(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직간접적인 차별조항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한부모는 모든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결국 계층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1차년 연구에서도 빈곤과 한부모가족이라는 가족 형태가 대물림되는 양상이 부분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 이전 단계 즉, 취약계층의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가족수당 및 주거수당을 살펴보면, 가족수당의 경우 아동 한 명 당 원화 기준으로 월 평균 최소 34,000원부터 최대 440,000원 정도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청소년기에 달할 때까지 지급하고 있다(표 II-17). 주거수당의 경우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가구의 형태와 가족수, 소득, 지역적 위치, 주택의 실 임대비용 등을 포함한다. 수당액의 규모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5 ~ 22%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I-18).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 내 아동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급되어 보편성을 기반으로

48) 국제사회는 통합적인 아동·인권법을 제정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최근 김상희의원 대표발의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이 발의되어 있다(의안번호 : 4411, 2013.4.5).

하며, 주거수당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선별성을 기반으로 한다.

표 II -17

OECD 국가의 가족수당(2010년)

단위: 원, %, 세

	3-12세 아동 한 명에 대한 최대 수당			아동의 지급제한 연령
	자국 통화	환산(원)	사적 영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호주 ²	4,803	5,363,606	7	20 (24)
벨기에	1,266	1,822,862	3	17 (24)
캐나다	1,348	1,451,459	3	17
덴마크	13,448	2,595,464	4	17
핀란드	1,200	1,727,831	3	16
프랑스	747	1,075,575	2	19
독일	2,208	3,179,210	5	18 (25)
헝가리	146,400	723,216	6	18 (22)
아일랜드	2,298	3,308,798	7	15 (18)
이탈리아 ³	1,092	1,572,327	4	17
일본	156,000	1,817,977	3	15
한국	-	-	-	-
네덜란드	1,114	1,604,004	2	17
노르웨이	11,640	2,262,699	2	17
포르투갈	568	817,840	3	15 (23)
스페인	291	419,000	1	17
스웨덴	12,600	2,147,544	3	15 (19)
스위스(Zurich)	3,000	3,508,620	4	15 (24)
영국	1,056	1,765,357	3	15 (18)
미국(Michigan) ³	1,068	1,150,777	2	-

* 출처: OECD, Family benefits에서 가공, <http://www.oecd.org/els/benefitsandwagespolicies.htm>(2013.2.13 인출)

* 주: 1) 수당액은 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수당은 환급형 세액공제(non-wastable tax credits)를 포함함. 단, '-' 는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은 과세하지 않음.

2) 한부모 수당 참고

3) 첫째 아이에 대한 수당액은 가족수에 따라 다름.

4) 자산 조사 요건 및 추가 아동 등 자격 요건은 국가별로 상이함.

5) 원화 환산은 2013. 2. 15 환율 기준임.

표 II -18

OECD 국가의 주거수당(2010년)

단위: %

	자격 조건					사적 영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최대 수당(%)
	가구형태 /크기	소득	주거면적	지역적 위치	임대비용	
호주	○	○	—	—	○	5
벨기에	—	—	—	—	—	—
캐나다	—	—	—	—	—	—
덴마크	○	○	○	—	○	10
핀란드	○	○	○	○	○	15
프랑스	○	○	—	○	○	15
독일	○	○	—	○	○	16
아일랜드	○	○	—	○	○	16
이탈리아	—	○	—	○	○	—
일본	—	—	—	—	—	—
한국	—	—	—	—	—	—
네덜란드	○	○	—	—	○	8
노르웨이	○	○	—	○	○	11
포르투갈	○	○	—	—	○	6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11
스위스	—	—	—	—	—	—
영국	○	○	—	○	○	22
미국	—	—	—	—	—	—

* 출처: OECD, Housing benefits에서 가공

<http://www.oecd.org/els/benefitsandwagespolicies.htm>(2013,2,13 인출)

* 주: 1) 임대비 보조를 위한 현금수당임. 단, 지원 상세 요건 및 운영방식, 기타 현금보조는 국가별로 상이함.

2) 수당액은 연간을 기준으로 함. 단, '—' 는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부족 부분에 대한 보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추가 수당을 편성하고 있다. 수당의 성격은 각 국가별로 상이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저소득 한부모가구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아동에 대한 보충 수당 성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충 수당을 편성하고는 있으나 수당의 총액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비, 생계비, 주거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여 가족의 취약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수당의 성격(형태)	아동 한명 당 최대 보충 수당 ²			조건여부 (소득 / 재산)
		자국 통화	환산(원) ⁴	사적 영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대비 최대 수당(%)	
호주	저소득 가구의 보육비 지원	3,601	4,022,713	5	소득, 재산
벨기에	가족 수당 보조	255	367,697	1	소득
	세금 공제	[1,370]	[1,975,471]	[3]	-
캐나다 (Ontario)	아동 보조: 높은 비율	210	226,235	0	가족 소득
	자녀, 배우자 공제(연방, 비환급금)	1,557	1,677,371	3	
	상품 및 서비스 세액 공제(연방, 환급)	120	129,277	0	
	자녀, 배우자 공제(지방 정부, 비환급금)	383	412,609	1	
	판매 세금 전환 수당	460	495,562	1	
덴마크	가족 수당 보조	9,824	1,900,452	3	×
핀란드	가족 수당 보조	559	806,505	5	×
프랑스	한부모에 대한 RSA 보조	1,723	2,484,479	5	과세 소득
독일	세금 공제	[1,308]	[1,886,070]	[3]	-
	실업 수당 II 보조	1,551	2,236,464	4	
	이혼 수당 대체 지급	1,596	2,301,352	4	
헝가리	가족 수당	18,000	88,920	1	×
아일랜드	한부모 수당	5,096	7,348,177	16	수당 제외 소득
	한부모 수당(비환급 세금 공제)	1,830	2,638,768	6	-
	다른 소득 세율표	840	1,211,238	3	-
이탈리아	비환급 세금 공제	720	1,038,204	3	-
일본	한부모가족 수당	500,640	5,832,155	10	소득
한국	아동양육비	840,000	840,000	2	소득, 재산
	추가아동양육비(자치단체)	600,000	600,000	-	
	학용품비(중·고생)	50,000	50,000	-	
	생활보조금(시설입소가구)	600,000	600,000	-	
네덜란드	한부모 및 추가 세금공제(비환급금)	945	1,362,642	2	-
노르웨이	전환 수당	151,282	29,462,169	32	
	가족 수당	11,640	2,266,890	2	×
	가족 수당 보조	7,920	1,542,420	2	소득
	보육 수당 보조	39,888	7,768,188	9	
	아동 수당 보조	16,200	3,154,950	3	수당 포함 소득
포르투갈	비환급금 세금 공제	119	171,592	1	-
	가족 수당	105	151,404	1	-
스웨덴	한부모 수당	15,276	2,607,613	4	×
영국	한부모 근로 세금 공제	1,890	3,164,351	6	
미국	세금 공제	[2700]	[2,911,950]	[6]	-
	다른 소득 세율표	-		-	-

* 출처: OECD, Lone-parent benefits / <http://www.oecd.org/els/benefitsandwagespolicies.htm>(2013.2.13 인출)

* 주: 1) 수당은 연간총액, []는 세금공제액임. ‘-’는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x는 소득, 재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임.

2) 근로소득공제액, 수당 지급 기준, 한부모의 실업수당 지급 여부 및 지원액은 국가별로 상이함.

3) 한국은 2012년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은 2013. 2. 15 환율 기준임.

④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 : 서비스 접근권 강화

청소년 한부모가족 전달체계를 특화하여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고 가족정책 전달체계 내에서 일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강혜규, 2012; 지은구, 2012; 백종만, 2012; 이재완, 김승용, 2012) 이들 연구 역시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초점을 둔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관한 논의는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모형에서 최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흐름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읍·면사무고, 주민자치센터에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충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행 읍면동 단위의 16명 수준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두 배 가량 증원배치 하여 지역사회 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간 우선순위 등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에 있어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차원의 민간위탁 중심의 가족복지 전달체계에서조차 청소년 한부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세부 단위사업의 대상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정책 관문(gate-way)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학업중단과 빈곤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취약·위기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정책, 가족-청소년정책, 중앙-지역사회 전달체계 간의 연계를 통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정책 대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는 안전행정부 중심의 주민센터(읍·면사무소 포함), 여성가족부 중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부 산하 일선 지역청과 학교 및 위탁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중심의 보건소 등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임신 이전 단계에서의 지원과 임신 및 출산단계, 그리고 양육 및 자립단계에 대한 지원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 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위에서 언급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조사 대상 시설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연계 현황과 장애요인 등을 제한적이거나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세부보고서에서 기술하였다.

제 III 장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

1. 청소년 한부모 설문조사
2.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조사
3.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FGI)
4.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 조사
5. 요약 및 시사점

제 III 장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정책여건 분석⁴⁹⁾

1. 청소년 한부모 설문조사⁵⁰⁾

1) 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 중인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조사 시점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 또는 임신 중인 청소년이며, 2차년도 연구 목적에 따라 1차년도 조사 참여자를 우선 포함하고 대상자의 누수(attrition)와 조사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350명을 목표 표본수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재가 대상자 및 입양을 고려중이거나 경험한 청소년 미혼모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총 3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조사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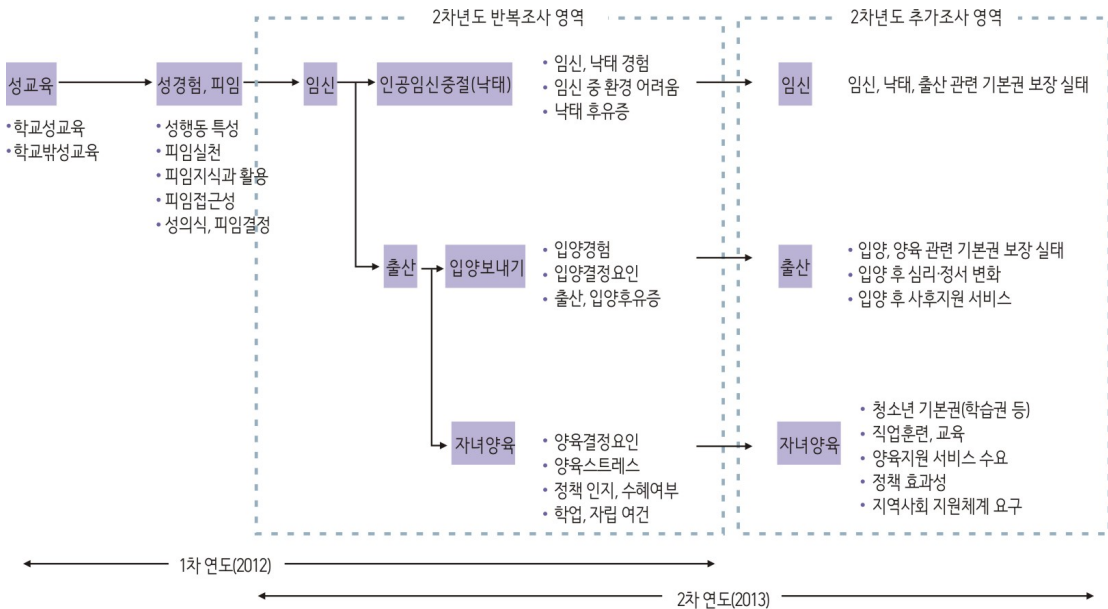
① 설문 조사 도구 개발 절차

2차년도 연구의 주요 조사내용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이론적 기반으로, 청소년의 임신·출산·입양·자녀양육과 관련된 이슈와 생활실태 및 자립 여건과 지원정책의 효과를 파악할

49)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방은령 교수(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 응용통계학과)가 집필함.

50) 이 절은 김지연 연구위원, 황여정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그림 III-1). 구체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진로 및 직업훈련(교육), 취업, 심리·정서, 출산 및 양육 환경, 가정 및 환경, 권리, 지원정책, 입양, 생활여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림 III -1】 청소년 한부모 발생단계별 이슈에 따른 연차별 조사 영역

설문지 개발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총괄하고 협동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원 정책 영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입양 영역의 설문 문항 개발에 참여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먼저 2차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임신·출산·자녀양육의 과정에서 1차년 연구에 이어 반복 조사할 영역과 2차년도에 새롭게 추가 조사할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 영역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1차년도 연구결과를 비롯한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각 영역별로 기존 문항을 보완하고 신규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 수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통해 설문 내용과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학계 전문가, 청소년 한부모복지 시설 종사자, 유관기관 전문가, 정책 담당자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위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설문 문항의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표 III-1에는 1, 2차년도 연구의 설문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을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1 설문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1차년 설문 영역 및 주요 항목		2차년 설문 영역 및 주요 신규 항목
미혼모자시설	입소기준, 입소사유, 입소기간 적절성, 서비스 만족도 등	제외
학업/자립	학업중단 여부·사유, 학업지속 형태, 계획, 고용형태, 직업훈련(교육) 경험 등	학습권 보장(교육적 지원 요구, 차별 경험), 직업훈련(교육), 진로성숙도, 경제활동 특성, 구직 탐색 관련 특성 등
성교육/성경험/피임	성교육 경험, 성경험, 피임실태 등	제외
임신	임신사유, 검진여부, 관계변화 등	임신으로 인한 차별 경험, 권리 인식 등
낙태	낙태 횟수, 낙태 사유, 후유증 등	제외
출산	출산 결정요인, 후유증 여부 등	출산으로 인한 차별 경험, 육아스트레스, 권리 인식 등
입양	입양 횟수, 입양 사유, 후유증 등	입양 후 지원 요구, 입양 관련 제도 인지 등
자녀양육	양육 결정 사유, 자녀수, 양육태도, 지지체계, 관계변화, 부모효능감 등	생계 및 주거 여건, 가정환경 및 특성, 지지체계 여부 및 만족도 등
지원정책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 여부, 도움이 된 지원 등	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 지원제도 만족도, 정책 요구도 등
심리정서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 심리적 부적응(우울·불안), 편견 인식 등	스트레스, 차별 및 권리 지각, 정신건강, 청소년기 위기경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성별, 교육수준, 거주상태, 정부지원 여부, 경제수준, 가족구성 등	좌동

② 문항 내용

○ 학업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

학업에 관한 설문 문항은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와 중단한 경우, 그리고 학업 지속 여부와 상관없이 답할 수 있는 공통문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응답자에게는 현재 교육 수준(**문 1-1**), 학업 지속의 방법(**문 1-2**), 학업 지속의 촉진요인 및 방해요인(**문 1-3**, **문 1-4**) 등을 조사하도록 구성하였고, 학업 중단자의 경우에는 최종학력(**문 1-5**), 학업중단 시기(**문 1-7**), 학업중단 사유(**문 1-8**, **문 1-8-1**, **문 1-9**), 학업지속 방법에 대한 인지 여부(**문 1-10**), 학업지속 욕구(**문 1-11**, **문 1-11-1**) 등을 조사하되, 1차년도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공통문항은 임신·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

는 데 필요한 교육적 지원(**문 1-12**), 학력 획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문 1-13**), 학교로부터 받은 지원 또는 차별(**문 1-15**~**문 1-17**)과 관련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홍순혜 외(2007)의 연구에서 개발된 항목 및 문항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진로 및 직업훈련(교육)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2**)

진로 및 직업훈련(교육) 영역에서는 진로발달 수준, 직업훈련(교육) 경험, 직업훈련(교육) 참여의 장애요인, 불참 이유, 직업훈련(교육) 관련 수요,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진로발달 수준(**문 2-1**)에 관한 문항 가운데 1)~3)의 문항은 진로 관련 자기 이해 수준을 묻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수집하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설문지에서 발췌하였고, 4)~12)의 문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청년패널 2010」의 중·고등학생 유형 설문지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여타 문항 가운데 직업훈련(교육) 경험(**문 2-2**), (**문 2-4**), 직업훈련(교육) 참여의 장애요인 및 불참이유(**문 2-5**), (**문 2-6**), 직업훈련(교육) 관련 수요(**문 2-7**)는 1차년도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문 2-8**)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포함된 문항을 토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연구진이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기대효과(**문 2-9**)는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취업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3**)

취업 관련 문항은 현재 근로여부를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를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문항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직업(**문 3-1**), 근로 기간(**문 3-2**), 근로 조건(**문 3-3**), 일자리에 관한 정보의 획득 경로(**문 3-4**), 근로 과정에서의 장애요인(**문 3-5**), 차별 경험(**문 3-6**), 직업만족도(**문 3-7**) 등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직업, 근로 기간은 1차년도 조사에 사용되었던 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였고, 근로 조건, 일자리 정보의 획득 경로, 근로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차별 경험, 직업만족도 문항은 연구진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자체 개발하였다. 한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현재 구직 여부 및 과거의 구직 경험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구직 여부(**문 3-9**)는 1차년도에

사용되었던 문항이며, 나머지 항목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통문항에서는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과 그 이유(문 3-11, 문3-11-1), 구직 과정에서의 장애요인(문 3-13), 직업 가치(문 3-12), 희망 직종(문 3-14) 등을 조사하였다. 구직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직업가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개인의 심리 및 정서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4** ~ **문 7**)

개인의 심리 및 정서 상태를 포착하기 위해 자아존중감(문 4 1)~4)문항), 자기효능감(문 4 5)~7)문항), 정서조절능력(문 4 8)~9)문항), 낙관성(문 4 10)~12)문항), 우울(문 5), 주관적 행복감(문 6),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문 7)를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우울, 일상생활 스트레스 문항은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주관적 행복감 문항은 「한국복지패널」에 사용된 문항을 활용하였다.

○ 권리 인식과 차별 경험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8** ~ **문 10**)

청소년 한부모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와 사회 지원에 대한 인식(문 8),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기본권에 대한 인식(문 9), 임신·출산·자녀양육 관련 차별 경험(문 10)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 문항은 1차년도 연구결과,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출산 및 양육 환경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1**)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살펴보는 문항에는 출산 여부와 횟수(문 11, 문 11-1), 양육하는 자녀 수(문 11-2), 부모효능감(문 11-3 1)~3))과 양육 스트레스(문 11-1 4)~6)), 자녀 양육 의지(문 11-1 7)),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과 도움에 대한 만족도(문 11-5)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부모효능감과 양육 스트레스는 1차년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백혜정 외, 2012a)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가정 및 환경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2** ~ **문 18**)

가정 및 환경 관련 문항에는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경험 여부(문 12), 부모의 학력(문 13),

부모-자녀관계(문 14), 부모의 경제수준(문 15),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위기 경험(문 16 ~ 문 17), 청소년기에 미흡했던 지원(문 18)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부모-자녀 관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집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 패널조사에 포함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그 밖의 모든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지원 정책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19 ~ 문 23)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제도의 인지 여부, 지원 경험, 지원에 대한 만족도 문항(문 19 (문 19-1) ~ (문 19-3)),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지역사회 내 주요 기관의 이용 경험과 장애 요인(문 20 ~문 21), 정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의 이용 경험(문 22), 향후 희망하는 정보 제공 경로(문 23)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제도의 인지 여부, 지원 경험에 포함된 일부 문항은 1차년 연구에 사용된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입양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24)

입양 경험과 고려 여부(문 24, (문 24-1)), 원하는 입양 유형(문 24-2), 입양 결정 사유(문 24-3), 입양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문 24-4), 입양 결정 시 어려웠던 점(문 24-5), 정신적 후유증(문 24-6), 입양 후 지원 욕구(문 24-7), 개정 「입양특례법」 관련 의견(문 24-8) ~ (문 24-12)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입양 결정 사유, 입양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 입양 결정 시 어려웠던 점, 정신적 후유증은 1차년 연구에 사용한 문항이며, 나머지 문항은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 생활여건 관련 문항(설문지 문항번호: 문 25 ~ 문 28)

현재 주거 여건 및 환경(문 25), 생활비 충당 방법(문 26), 월 평균 저축액 및 부채(문 27 ~ 문 28) 등의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였다.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분석 자료는 상술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설문지를 통해 전문조사기관에서 수집하였다. 조사대

상자 섭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차년도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진이 전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시설 거주자 및 재가 대상자를 전화로 접촉하여, 2차년도 조사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 한부모가 머물고 있는 시설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조사기관이 재접촉하여 조사일시를 확정하고 조사원을 파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재가(在家) 신규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위드맘” 사이트와 미혼모 대상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를 병행하고, 기 확보된 대상자가 친구나 지인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눈덩이 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 및 미혼모 당사자조직과 시설 종사자의 소개로 시설 퇴소자도 조사대상자로 확보하였다.

조사기관의 자료 수집 과정은 1차년도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우선 확보한 뒤, 35세 이상의 여성 가운데 청소년 조사 대상 유경험자를 추가로 선발하였다. 선발된 조사원을 대상으로 연구진 참관 하에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사는 시설 및 기관, 가정으로 방문하여 조사 지침에 따라 2개월에 걸쳐 대면 면접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완료 후 자가 검증 및 조사원 확인을 거쳤다. 이후 수거된 설문지에 대해 수퍼바이저와 전문 검증팀에서 2차 검증을 실시하였고, 총괄연구기관 연구진이 설문지 전량을 대상으로 편차오류를 점검하였다. 또한 회수된 설문지의 10%를 무작위 선정하여 조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총괄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연구진이 협의를 통해 주요 배경변인을 선별하고 이를 적용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총괄과제와 세부과제 간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에 따라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χ^2 test),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 같은 통계 분석에는 SPSS 20.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협동연구기관별로 담당하는 연구 주제에 대해 별도로 이루어졌으며, 총괄보고서 및 세부보고서에 각각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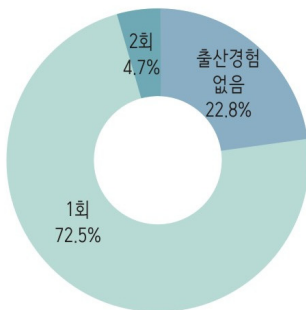
2) 조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기본생활 실태

① 출산 및 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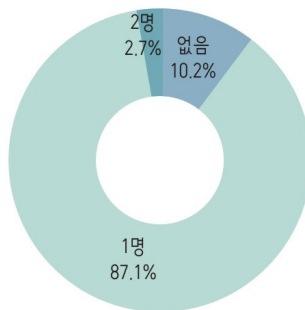
먼저 출산 경험과 횟수를 살펴보면, 현재 임신 중(출산 경험 없음)인 사례가 22.8%, 출산 경험이 있는 사례는 77.2%였다(그림 III-2). 이를 출산 횟수별로 살펴보면, 1회 출산한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72.5%로 대부분이었고, 2회 출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였다. 특히 출산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현재 양육 중인 자녀수를 조사한 결과(그림 III-3), 양육 중인 자녀가 1명(8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수지만 2명 이상(2.7%)을 양육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출산 후 양육 중인 자녀가 없다는 응답은 10.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양육 중인 자녀의 연령을 살펴보면, 자녀 연령은 양육 중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고, 임신 중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는 현재 양육 중인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응답자 가운데 자녀 연령이 만 0-1세라는 응답이 53.9%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임신 중 24.1%, 만 2세 이상이 22.0% 였다(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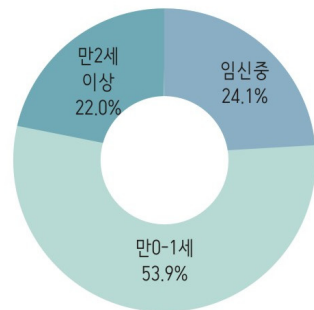
* 주: 1) n=378

【그림 III-2】 출산경험 및 횟수



* 주: 1) n=295

【그림 III-3】 양육 중인 자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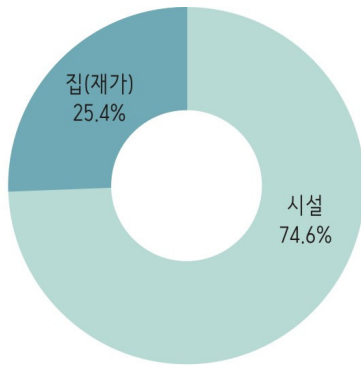


* 주: 1) n=345

【그림 III-3】 자녀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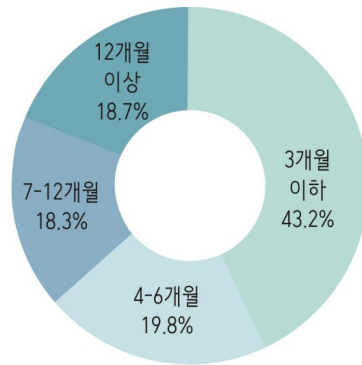
② 주거

현재 거주하는 곳이 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74.6%로 전체 응답자의 3/4를 차지하였고, 집이라는 응답은 25.4%였다(그림 III-5). 시설 생활인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을 조사한 결과 총 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6개월 이하(19.8%), 12개월 이상(18.7%), 7~12개월(18.3%) 순으로 파악되었다(그림 III-6).



* 주: 1) n=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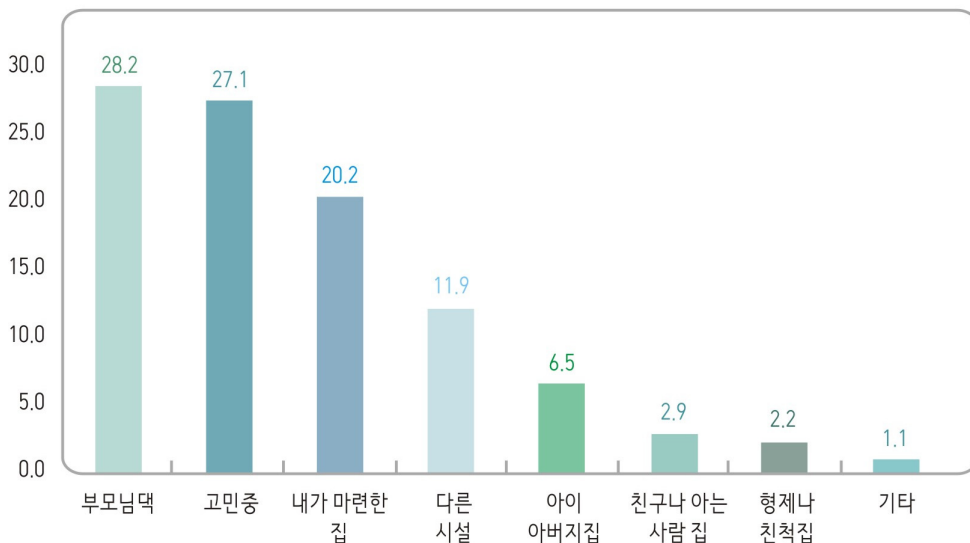
【그림 III-5】 현재 생활하는 곳



* 주: 1) n=278

【그림 III-6】 시설에서의 총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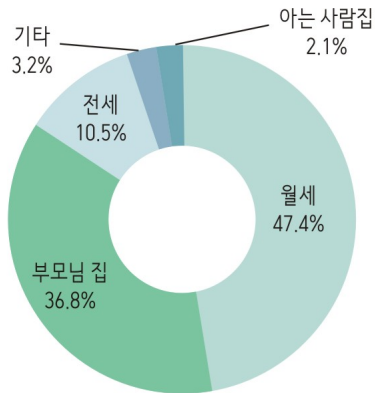
특히 시설 생활인의 경우 시설을 퇴소한 후 어디에서 거주할 계획인지를 파악한 결과, 부모님 댁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으나 아직 주거지를 정하지 못해 고민 중이라는 응답도 27.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마련한 집으로 갈 계획이라는 응답이 20.2%였다. 그러나 다른 시설로 갈 예정이라는 응답도 11.9%로 나타나 시설 생활을 전전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아이 아버지 집(6.5%), 친구나 아는 사람 집(2.9%), 형제나 친척집(2.2%), 기타(1.1%)의 응답을 보였다(그림 III-7).



* 주: 1) n=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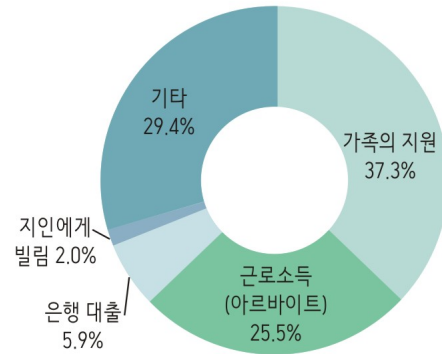
【그림 III-7】 (시설 생활인) 시설 퇴소 후 거주 계획

다음으로 재가 생활인 경우 주거 형태는 월세(47.4%)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 집 거주(36.8%), 전세(10.5%) 순이었다(그림 III-8). 주거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가족 지원(37.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으로 마련했다(25.5%) 순이었다. 이 외에 은행 대출(5.9%), 지인에게 빌렸다(2.0%), 기타(29.4%) 등의 방법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하였다(그림 III-9).



* 주: 1) n=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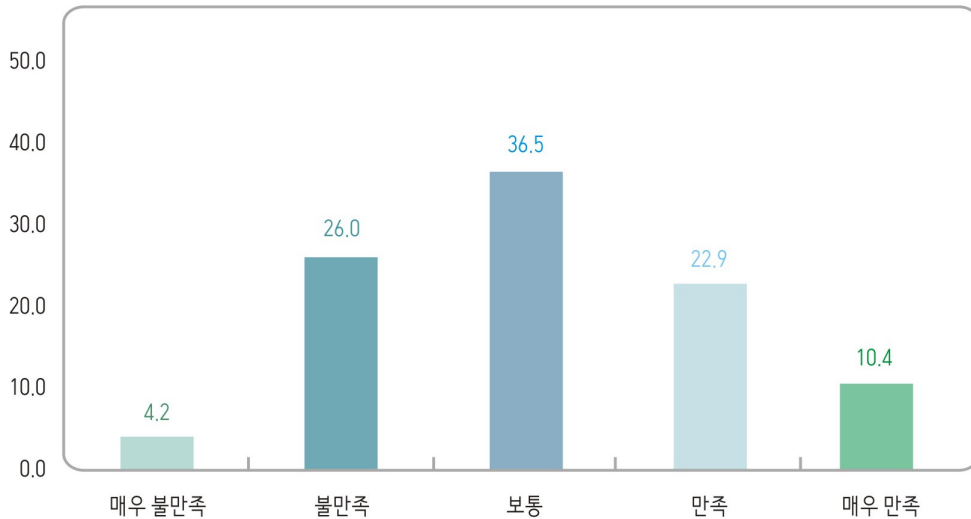
【그림 III-8】 재가생활인 주거 형태



* 주: 1) n=51

【그림 III-9】 재가생활인 주거비 마련 방법

재가 생활인의 경우 현재의 주거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통(36.5%),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 33.3%),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 포함, 30.2%)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가 현재의 주거 환경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 n=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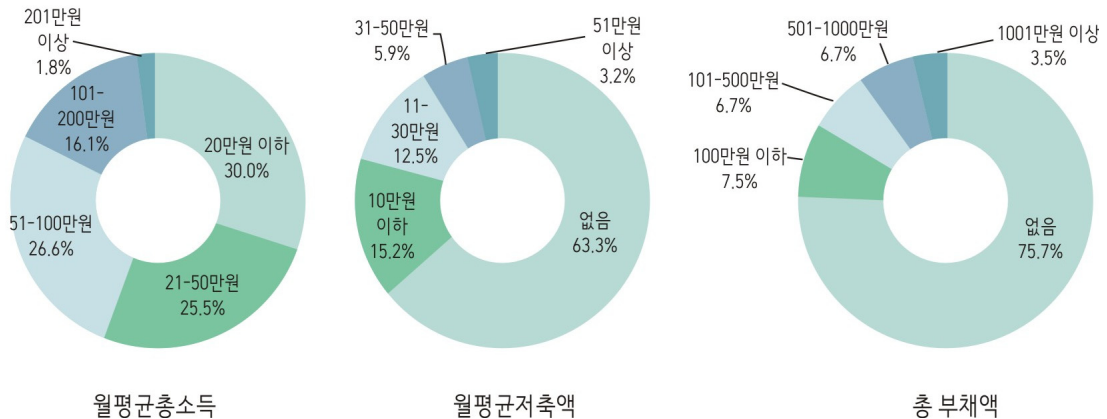
【그림 III-10】 재가생활인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③ 경제상황

월 평균 총수입, 월 평균 저축액, 총 부채액을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그림 III-11).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포함), 정부지원금(시설·기관 지원 포함), 부모님과 가족의 지원, 아이 아버지와 그 가족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 월 평균 총수입이 2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게 많았다. 뒤이어 51~100만원(26.6%), 21~50만원(25.5%), 101~200만원(16.1%) 순으로, 2명 중 1명이 총 수입이 월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 572,168원, 2인 가구 974,231원임을 감안하면 생활여건이 취약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월 평균 저축액의 경우 저축이 없다(63.3%)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하(15.2%), 11~30만원 이하(12.5%), 31만원 이상(9.1%)이 뒤를 이었다. 이는 월수입이 적은 상황에서 저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과,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과 경제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한다.

부채의 경우 없다(75.7%)가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7.5%), 101~500만원, 501~1000만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6.7%로 대다수는 부채가 없는 상황이지만, 부채 규모가 이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 월평균총소득 n=353
 2) 월평균저축액 n=376
 3) 총 부채액 n=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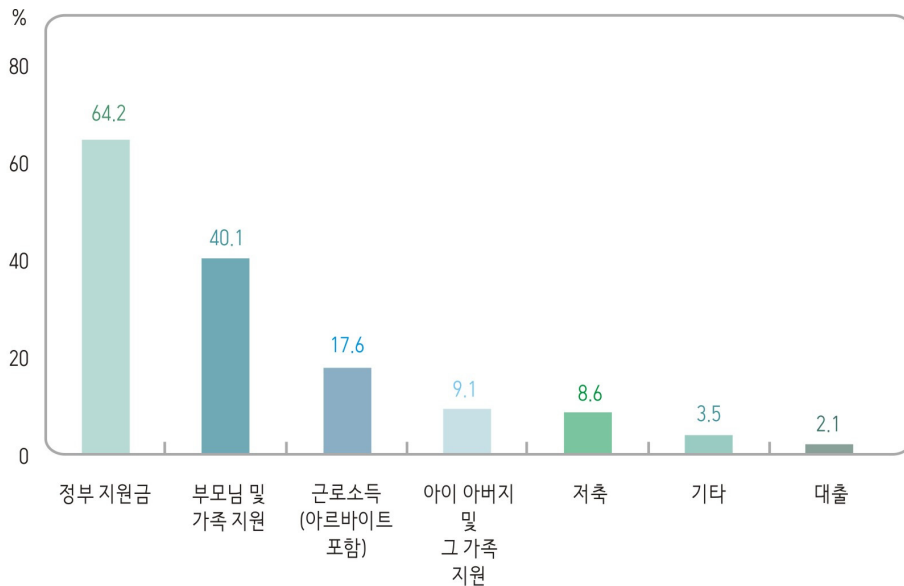
【그림 III-11】 경제적 생활 실태

생활비 충당 방법(1순위)은 정부지원금(48.9%), 부모 및 가족 지원(22.5%), 근로소득(16.6%) 순으로, 일부는 아이 아버지 및 그 가족의 지원(6.1%), 저축(3.7%), 대출(0.5%)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거주 장소(시설/재가), 본인 연령, 최종 학력, 기초생활수급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시설 거주자가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고 재가 생활자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였다. 19세 미만은 부모와 및 가족 지원에, 19세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주된 재원이라는 응답이 8.7%에 그친 반면, 고졸 이상은 21.9%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및 가족 지원에 의존한다는 응답은 중졸 이하(30.0%)의 경우 고졸 이상(17.4%)에 비해 더 많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수가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었고(63.9%), 비수급자는 정부지원(38.0%)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표 III-2 생활비 충당 방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포함)	정부 지원금	부모님 및 가족 지원	아이 아버지 및 그 가족 지원	저축	대출	기타
거주 장소	시설	278	10.4	52.5	22.3	8.3	4.0	0.4	2.2
	재가	96	34.4	38.5	22.9	0.0	3.1	1.0	0.0
	계	374	16.6	48.9	22.5	6.1	3.7	0.5	1.6
	χ^2	38.305*** (d.f.=6)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107	8.4	49.5	29.9	9.3	0.9	0.9	0.9
	만19세 이상	267	19.9	48.7	19.5	4.9	4.9	0.4	1.9
	계	374	16.6	48.9	22.5	6.1	3.7	0.5	1.6
	χ^2	16.256* (d.f.=6)							
최종 학력	중졸 이하	150	8.7	46.7	30.0	9.3	2.0	1.3	2.0
	고졸 이상	224	21.9	50.4	17.4	4.0	4.9	0.0	1.3
	계	374	16.6	48.9	22.5	6.1	3.7	0.5	1.6
	χ^2	25.449*** (d.f.=6)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자	216	18.1	38.0	29.2	8.8	3.7	0.5	1.9
	수급자	158	14.6	63.9	13.3	2.5	3.8	0.6	1.3
	계	374	16.6	48.9	22.5	6.1	3.7	0.5	1.6
	χ^2	29.553*** (d.f.=6)							



*주: 1) n=374

【그림 III-12】 생활비 총당 방법 (중복응답)

(2) 학업 실태

① 학업지속 여부

본 조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40.7%가 중졸 이하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고졸 41.8%, 대학 재학 이상 17.5%로 나타나,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전체의 59.3%에 불과하였다. 19세 이상의 경우에도 고졸 이상 학력자는 74.2%(고졸 52.2%, 대학 재학 이상 22.0%)에 불과하고, 중졸 이하 학력(25.7%)도 상당수였다. 한편,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92.6%,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68.4%에 달한다.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99.7%,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도 71.3%에 달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는 중등교육은 사실상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하며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3 최종 학력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중졸 이하	고졸	대학 재학 이상
만 19세 미만	110	77.3	16.4	6.4
만 19세 이상	268	25.7	52.2	22.0
계	378	40.7	41.8	17.5

$\chi^2=85.779^{***}$, d.f.=2

다음으로,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78%에 달하였다. 19세 이상이(17.2%) 19세 미만(33.6%)에 비해 학업 지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만 2세 이상인 경우 학업을 지속한다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1세 이하인 경우 18.3%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집중 보육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피해 학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일부 시사한다.

표 III-4 학업 지속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학업 지속 여부	
			예	아니요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110	33.6	66.4
	만19세 이상	268	17.2	82.8
	계	378	22.0	78.0
	χ^2	12.349*** (d.f.=1)		
자녀 연령	임신중	83	20.5	79.5
	만0-1세	186	18.3	81.7
	만2세이상	76	35.5	64.5
	계	345	22.6	77.4
	χ^2	9.455** (d.f.=2)		

② 학업지속 특성

앞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2%(83명)으로 이들의 교육 수준, 유형, 학업에 도움이 되는 요인, 애로 사항 등 학업지속 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49.4%)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이상(41.0%), 중학교(9.6%) 순이었다. 다만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9세 미만은 고등학교 교육(67.7%), 19세 이상은 대학 이상(60.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II-5 받고 있는 교육 수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37	16.2	67.6	16.2
	만19세 이상	46	4.3	34.8	60.9
	계	83	9.6	49.4	41.0
	χ^2	17.440*** (d.f.=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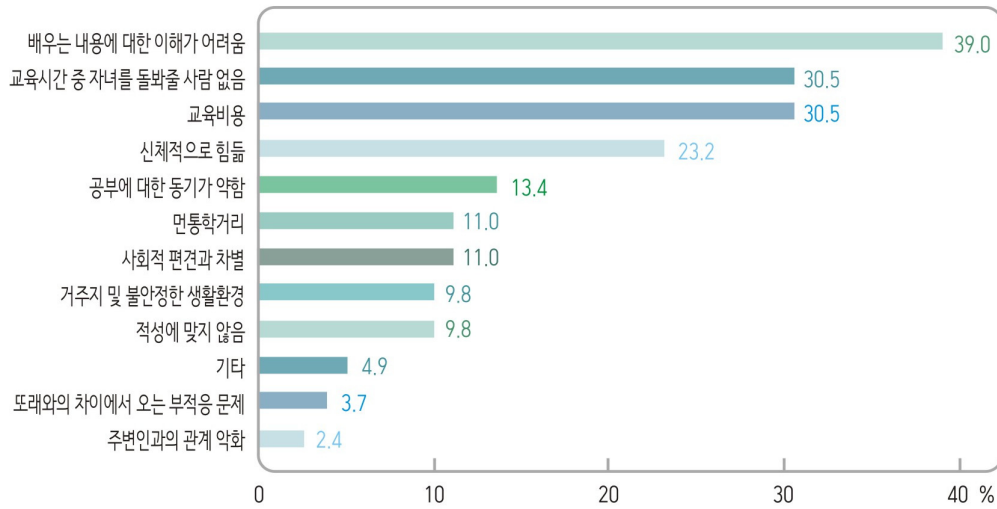
교육 형태는 일반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응답(38.6%)이 가장 많고, 동영상 강의·방송통신학교·사이버 강의 등 원격교육(22.9%), 대안학교(1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19세 미만은 원격교육(13.5%)보다 대안학교(29.7%)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19세 이상은 원격교육(30.4%)이 대안학교(4.3%)보다 많았다.

표 III-6 받고 있는 교육의 유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반 정규 학교	대안 학교	원격교육 (동영상, 방송통신, 사이버 등)	검정고 시학원	독학	기타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37	35.1	29.7	13.5	8.1	5.4	8.1
	만19세 이상	46	41.3	4.3	30.4	6.5	6.5	10.9
	계	83	38.6	15.7	22.9	7.2	6.0	9.6
	χ^2	11.478* (d.f.=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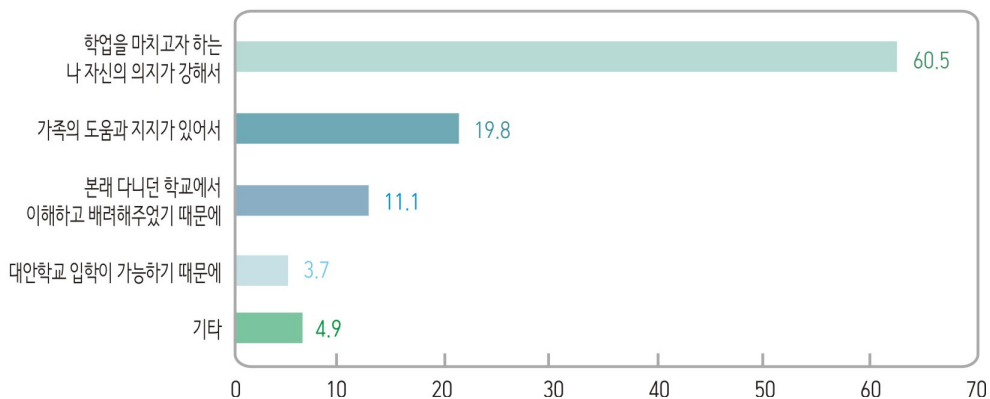
학업 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1순위)은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30.8%)이 가장 많았고, '교육 비용' 17.8%, '교육시간 중 자녀를 돌봐줄 사람 없음' 15.4%, '신체적으로 힘들' 9.05%, '먼 통학 거리'와 '사회적 편견과 차별' 6.4% 순이었다.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만 0~1세는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만 2세 이상인 경우 '교육 비용'이 33.3%로 가장 많았다. 반면, '교육 시간 중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만 2세 이상(14.8%)보다 만 0~1세(23.5%)에서 더 많았다. 이는 신생아, 영아기 자녀의 경우 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자녀가 커 가면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교육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 1) n=82

【그림 III-13】 학업 지속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복응답)

한편, 학업 지속 동기는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60.5%)이 가장 많았고,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있어서’(19.8%), ‘본래 다니던 학교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었기 때문’(11.1%)이 뒤를 이었다. 이는 사실상 학업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와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동기 자체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가족, 친구, 친지, 이웃, 기관 종사자 등 주변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고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설/재가, 연령 등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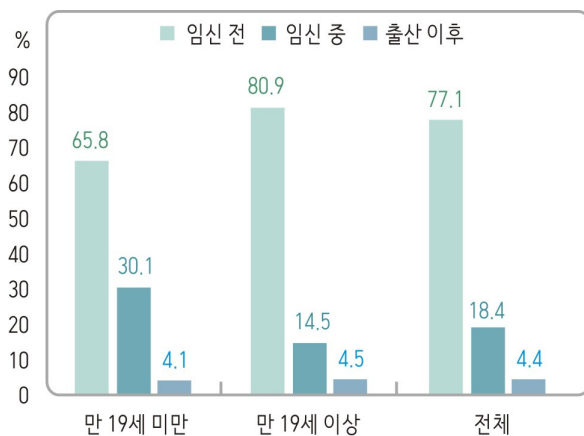


* 주: 1) n=81

【그림 III-14】 학업 지속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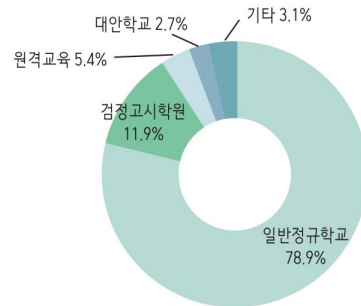
③ 학업 중단 실태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시기와 사유, 학업에 대한 요구와 수요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업중단자 10명 중 7명이 임신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였고(77.1%), 임신 중 중단(18.4%), 출산 후 중단(4.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임신 중 학업중단은 19세 미만(30.1%)이 19세 이상(1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1차년도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2.6%, 19세 미만 응답자의 60%가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III-15). 또한 학업중단 이전에 다닌 교육 기관은 일반 정규학교(78.9%), 검정고시학원(11.9%) 등으로 10명 중 8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단하고 임신을 경험하는 경로를 보였다(그림 III-16). 이는 학교가 임신이라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학생의 학업중단 예방 노력 자체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임신 중 학업중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 1) 만 19세 미만 n=73, 만 19세 이상 n=220
2) $\chi^2=8.886^*$, d.f.=2

【그림 III-15】 학업 중단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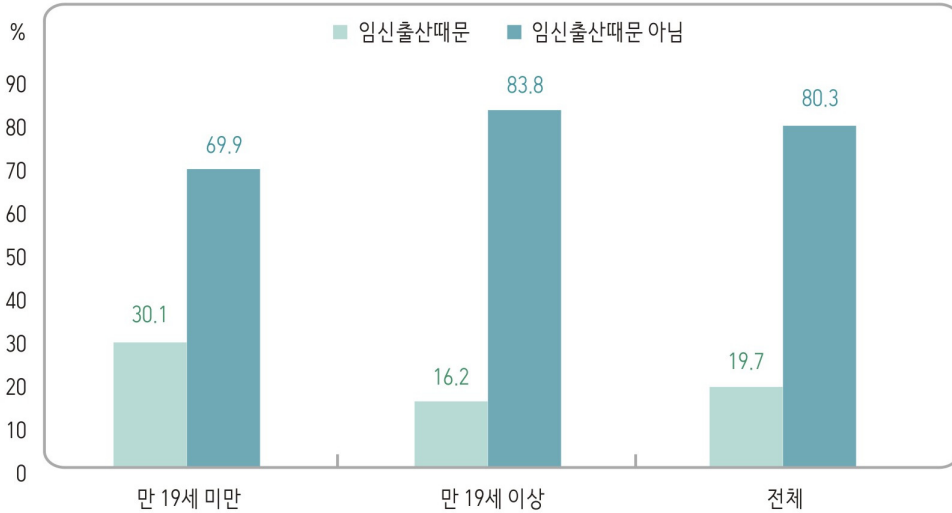


* 주: 1) n=294

【그림 III-16】 학업중단 이전에 최종적으로 다닌 기관

학업중단 이유가 임신, 출산 때문이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그렇지 않다(80.3%)고 응답하였다. 다만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는 응답의 경우 19세 이상(16.2%)에 비해 19세 미만(30.1%)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에도 임신, 출산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 1) 만 19세 미만 n=73, 만 19세 이상

2) $\chi^2=6.740^*$, d.f.=1

【그림 III-17】 학업중단 이유가 임신 출산 때문인지 여부

임신,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두었다(39.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25.9%), 부모님이나 가족의 권유로 그만두었다(10.3%)가 뒤를 이었다. 배경변인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시설 거주자(52.5%)가 재가 대상자(11.1%)에 비해 많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반대로 시설 거주자(20.0%)보다 재가(38.9%) 대상자가 더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경우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많았다(표 III-7). 이는 청소년 임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고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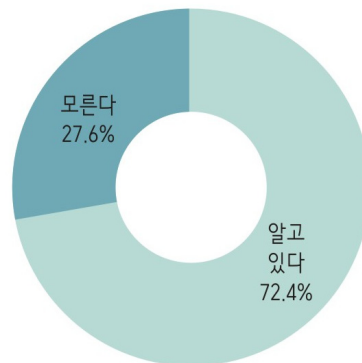
표 III -7

(학업중단이 임신출산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학업을 그만두게 된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몸조리를 위해 스스로 그만둠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둠	임신 사실이 알려져 주위로부터 차별이나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	부모님 가족의 권유로 그만둠	학교의 징계나 강요 때문에 강제로 그만 둠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녀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벌기위해	기타
거주 장소	시설	40	2.5	52.5	5.0	15.0	0.0	20.0	2.5	2.5
	재가	18	5.6	11.1	11.1	0.0	11.1	38.9	11.1	11.1
	계	58	3.4	39.7	6.9	10.3	3.4	25.9	5.2	5.2
	χ^2	18.787** (d.f.=7)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22	9.1	50.0	0.0	22.7	0.0	13.6	4.5	0.0
	만19세 이상	36	0.0	33.3	11.1	2.8	5.6	33.3	5.6	8.3
	계	58	3.4	39.7	6.9	10.3	3.4	25.9	5.2	5.2
	χ^2	17.058* (d.f.=7)								

현재 학업 중단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추후 본인이 희망하면 학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학업 지속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에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학업 지속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학업 지속 방법을 알고 있다(72.4%)는 응답이 모른다(27.6%)에 비해 많았지만, 응답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 1) n=293

【그림 III -18】 학업 지속 방법 인지 여부

현재 학업중단 중인 경우는 학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26.1%), 고민중(23.4%)이라는 부정적,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경우가 절반에 달하였다. 특히 19세 이상 시설 거주자인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였다(표 III-9). 학업지속 방법으로는 ‘독학 또는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14.9%), ‘정규 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13.6%), ‘원격교육을 이용해서 학력을 얻고 싶다’(9.8%), ‘미혼모 시설로 교사가 와서 수업을 받고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고 싶다’(3.7%) 등 다양한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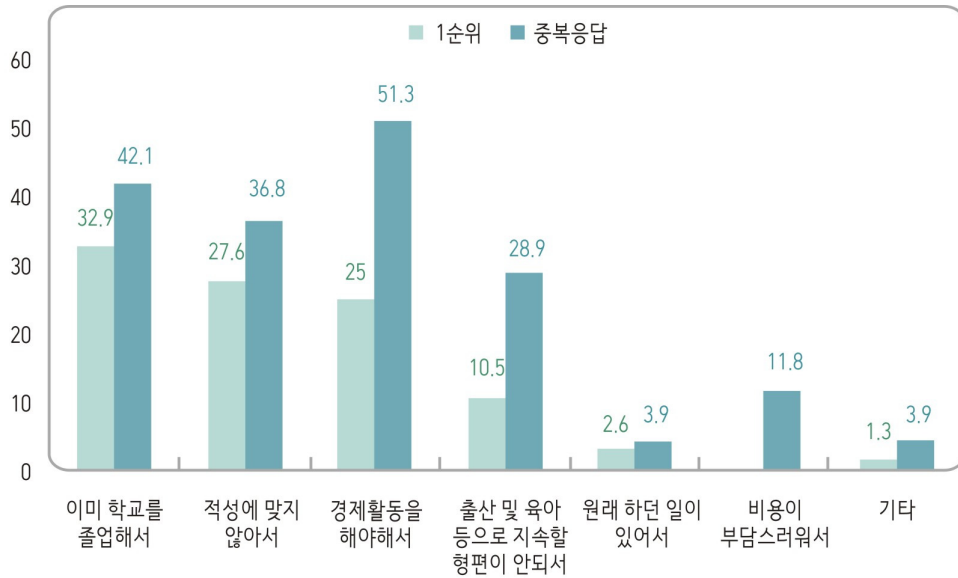
표 III-8

학업중단자가 희망하는 학업 지속 방법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학업을 계속 하고 싶지 않다	정규 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	원격교육을 이용해서 학력을 얻고 싶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학력을 취득하고 싶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독학 또는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시설로 교사가 와서 수업 받고, 동일 학력을 인정받고 싶다	아직 고민 중이다	기타
거주 장소	시설	224	28.6	9.8	9.8	0.4	2.2	15.2	4.9	25.0	4.0
	재가	71	18.3	25.4	9.9	2.8	4.2	14.1	0.0	18.3	7.0
	계	295	26.1	13.6	9.8	1.0	2.7	14.9	3.7	23.4	4.7
	χ^2	21.135** (d.f.=8)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73	16.4	16.4	4.1	1.4	4.1	35.6	4.1	15.1	2.7
	만19세 이상	222	29.3	12.6	11.7	0.9	2.3	8.1	3.6	26.1	5.4
	계	295	26.1	13.6	9.8	1.0	2.7	14.9	3.7	23.4	4.7
	χ^2	39.714*** (d.f.=8)									

학업중단자 중 학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76명) 그 이유(1순위)는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32.9%), ‘적성에 맞지 않아서’(27.6%),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25.0%), ‘출산 및 육아로 지속할 형편이 안되서’(10.5%) 등이었다. 1순위, 2순위 중복응답에서는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51.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그림 III-19). 즉, 학업중단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학업 재개에 유보적인 반면, 교육비 자체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주: 1) n=76

【그림 III-19】 학업을 지속하기 싫은 이유

④ 학업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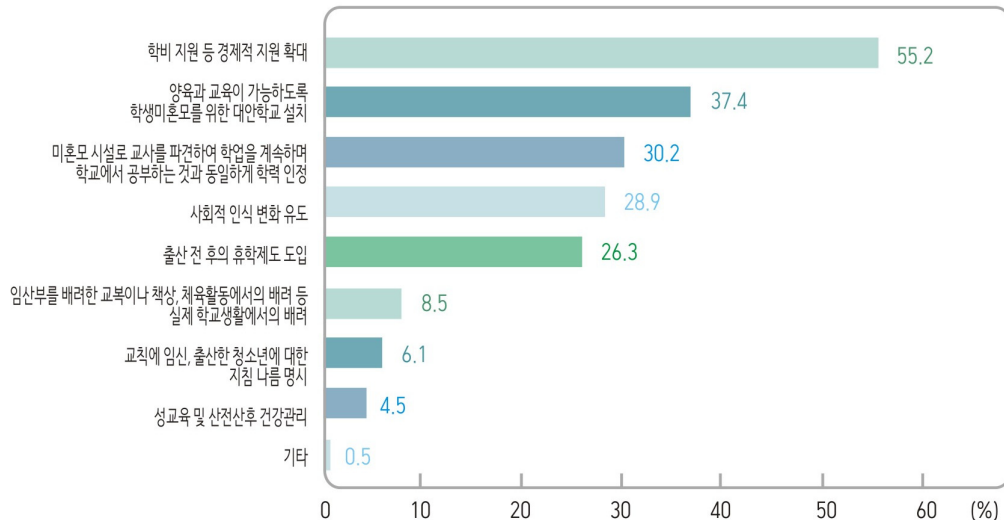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질문한 결과(1순위), ‘경제적 지원 확대’(33.2%), ‘양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24.4%) 요구가 가장 많았다. 뒤 이어 ‘교사를 파견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해주면 좋겠다’(14.9%), ‘출산 전후 휴학제도 도입’(13.0%) 등의 의견을 보였다. 특히 시설 거주자의 경우 대안학교나 교사 파견 등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재가 대상자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19세 미만은 정규 학교, 대안학교 등 제도권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인 경우보다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학업 지속을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았다(표 III-9, 그림 III-20).

표 III -9

학업 지속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적 지원(모든 응답자)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양육과 교육이 가능하도 록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	교사 파견, 학교 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학력 인정	출산 전후 휴학 제도 도입	성교육 및 산전산후 관리	경제적 지원확 대	교직에 지원내용 명시	실제 학교생 활에서 의 배려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기타
거주 장소	시설	281	26.7	17.1	13.2	2.5	28.1	1.8	0.7	9.6	0.4
	재가	96	17.7	8.3	12.5	0.0	47.9	1.0	3.1	9.4	0.0
	계	377	24.4	14.9	13.0	1.9	33.2	1.6	1.3	9.5	0.3
	χ^2	20.664** (d.f.=8)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110	29.1	18.2	14.5	3.6	20.0	1.8	1.8	10.0	0.9
	만19세 이상	267	22.5	13.5	12.4	1.1	38.6	1.5	1.1	9.4	0.0
	계	377	24.4	14.9	13.0	1.9	33.2	1.6	1.3	9.5	0.3
	χ^2	16.394* (d.f.=9)									
자녀 연령	임신중	83	28.9	20.5	14.5	3.6	18.1	1.2	1.2	12.0	-
	만0-1세	185	25.9	15.1	13.5	1.6	33.5	1.1	1.1	8.1	-
	만2세 이상	76	18.4	5.3	10.5	0.0	50.0	2.6	2.6	10.5	-
	계	344	25.0	14.2	13.1	1.7	33.4	1.5	1.5	9.6	-
	χ^2	27.086* (d.f.=14)									



* 주: 1) n=377

【그림 III -20】 학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중복응답)

(3)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 실태

①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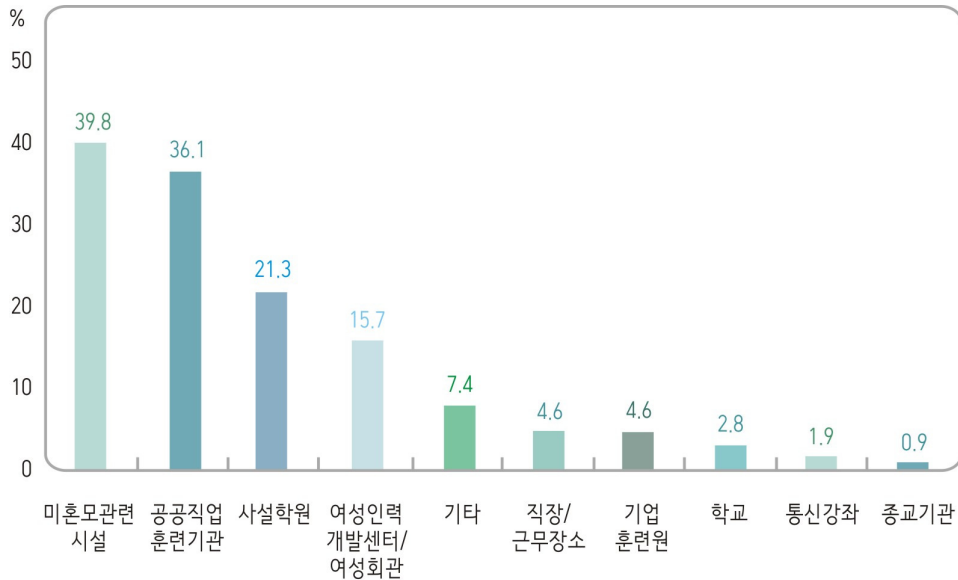
임신, 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28.6%)은 매우 저조하였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현재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어릴수록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더 적었다.

표 III-10 임신이나 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110	17.3	82.7
	만19세 이상	268	33.2	66.8
	계	378	28.6	71.4
	χ^2	9.705** (d.f.=1)		
최종학력	중졸 이하	154	20.8	79.2
	고졸 이상	224	33.9	66.1
	계	378	28.6	71.4
	χ^2	7.732** (d.f.=1)		
자녀연령	임신중	83	8.4	91.6
	만0-1세	186	25.3	74.7
	만2세이상	76	57.9	42.1
	계	345	28.4	71.6
	χ^2	49.677*** (d.f.=2)		

*p<.05, **p<.01, ***p<.001

한편 임신, 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108명), 미혼모 관련 시설(39.8%), 공공직업훈련기관(36.1%), 사설 학원(21.3%),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회관(15.7%) 등을 이용하였다(그림 III-21). 이는 시설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교양강좌 수준에서 벗어나 취업,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 1) n=108

【그림 III-21】 직업훈련 받았던 기관의 종류(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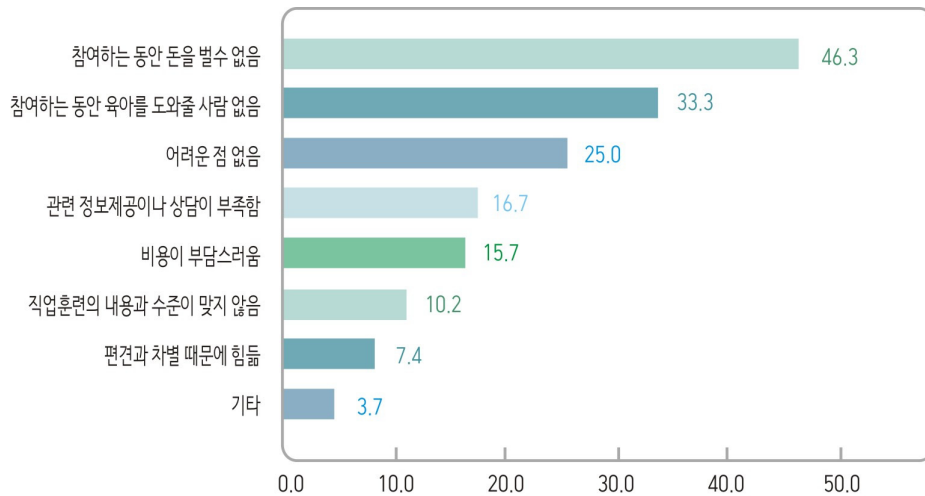
직업훈련(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1순위)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돈을 벌 수 없다’(33.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어려운 점이 없다’(24.5%),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22.4%) 등이 뒤를 이었다(표 III-12, 그림 III-21).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교육) 시 아이돌봄과 같은 서비스를 반드시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

표 III-11 직업훈련을 받는데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어려운 점이 없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돈을 벌 수 없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직업훈련의 내용과 수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스럽다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상담이 부족하다	편견과 차별 때문에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힘들다	기타
자녀 연령	임신중	7	14.3	28.6	14.3	0.0	14.3	0.0	14.3	14.3
	만0-1세	47	29.8	36.2	25.5	2.1	4.3	2.1	0.0	0.0
	만2세이상	44	20.5	31.8	20.5	6.8	9.1	9.1	2.3	0.0
	계	98	24.5	33.7	22.4	4.1	7.1	5.1	2.0	1.0
	χ^2	26.273* (d.f.=14)								

*p<.05, **p<.01, ***p<.001



*주: 1) n=108

【그림 III-22】 직업훈련을 받는 데 어려운 점 (중복응답)

②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 비참여 실태

진로·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28.1%),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받을 형편이 안 돼서’(23.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 ‘원래 하던 일이 있어서’(15.2%), ‘원하는 분야의 훈련이 없어서’(10.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시설 생활인, 중졸 이하의 저학력, 임신중인 경우 정보 접근에 더 취약하였고, 재가 대상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2).

③ 진로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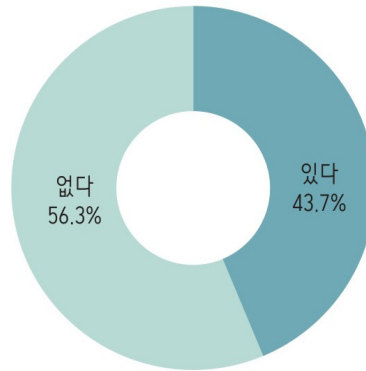
앞서 진로·직업교육(훈련) 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을 나누어 관련 실태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전체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진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없다(56.3%)는 응답이 있다(43.7%) 보다 더 많았다. 특히 시설 생활 여부, 학력, 자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도 않아서 상당수의 청소년 한부모가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III-23).

표 Ⅲ -12 직업훈련 받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직업훈련 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원하는 분야의 훈련이 없어서	직업훈련 을 받고 싶지 않아서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받을 형편이 안되서	비용이 부담스러 워서	원래 하던 일이 있어서	체력 혹은 건강 문제로 참여 하기 어려워	기타
거주장소	시설	205	31.7	11.2	8.8	18.5	5.9	15.1	1.5	7.3
	재가	65	16.9	6.2	9.2	36.9	7.7	15.4	4.6	3.1
	계	270	28.1	10.0	8.9	23.0	6.3	15.2	2.2	6.3
	χ^2	16.258* (d.f.=7)								
최종학력	중졸 이하	122	37.7	9.0	9.8	22.1	9.0	4.9	1.6	5.7
	고졸 이상	148	20.3	10.8	8.1	23.6	4.1	23.6	2.7	6.8
	계	270	28.1	10.0	8.9	23.0	6.3	15.2	2.2	6.3
	χ^2	26.245*** (d.f.=7)								
자녀연령	임신중	76	34.2	10.5	14.5	6.6	6.6	19.7	1.3	6.6
	만0-1세	139	27.3	11.5	5.0	31.7	6.5	10.8	2.2	5.0
	만2세이상	32	21.9	6.3	6.3	31.3	3.1	18.8	3.1	9.4
	계	247	28.7	10.5	8.1	23.9	6.1	14.6	2.0	6.1
	χ^2	26.333* (d.f.=14)								

*p<.05, **p<.01, ***p<.001



* 주: 1) n=378

【그림 Ⅲ -23】 희망하는 직업훈련(교육)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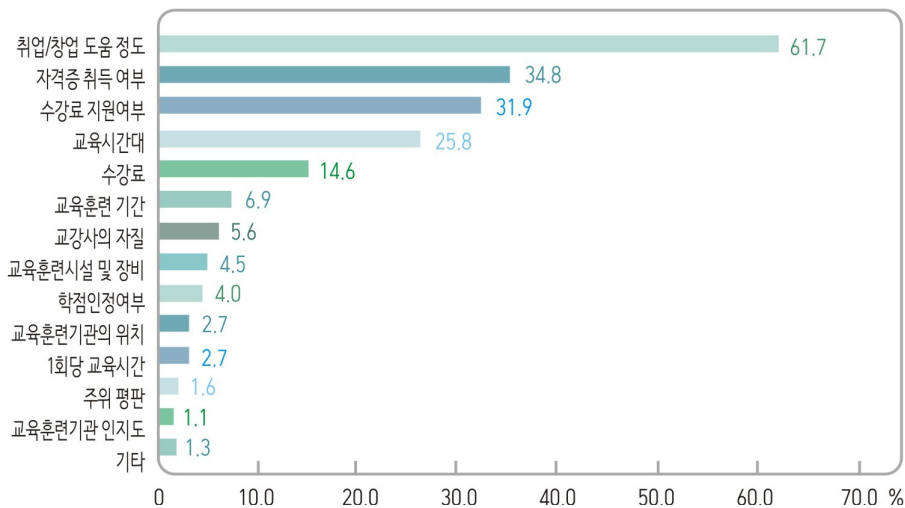
한편, 진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취업·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50.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강료 지원 여부’(13.8%),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교육 시간대’가 각각 11.4%였다. 또한 재가 대상자의 경우 시설 생활인에 비해 교육 시간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였는데 이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표 III-14, 그림 III-24).

표 III -13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택 시 중시하는 요인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취업 창업 도움 정보	교육 시간 대	1회당 교육 시간 대	교육 훈련 기간	교육 훈련 시설 장비	교육 훈련 기관 위치	수강 료 지원 여부	수강 료	강사 자격	교육 훈련 기관 인지 도	주위 평판	학점 인정 여부	자격 증 취득 여부	기타
거주 장소	시설	282	53.5	8.5	1.4	1.8	0.4	1.1	13.5	3.9	1.1	0.0	－	1.1	12.8	1.1
	재가	94	39.4	20.2	0.0	2.1	0.0	0.0	14.9	8.5	4.3	1.1	－	1.1	7.4	1.1
	계	376	50.0	11.4	1.1	1.9	0.3	0.8	13.8	5.1	1.9	0.3	－	1.1	11.4	1.1
	χ^2	25.662* (d.f.=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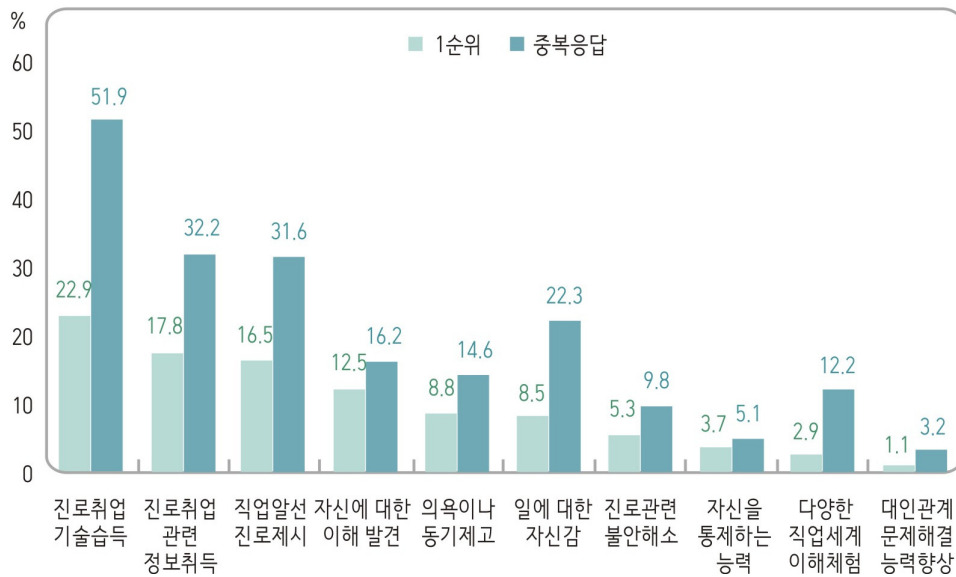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1) n=376

【그림 III -24】 직업훈련 프로그램 선택 시 중시하는 요인(중복응답)

진로·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것은 ‘진로나 취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22.9%), ‘진로나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17.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실질적인 직업의 알선이나 진로 제시’(16.5%),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발견’(12.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그림 III-25). 즉 진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자신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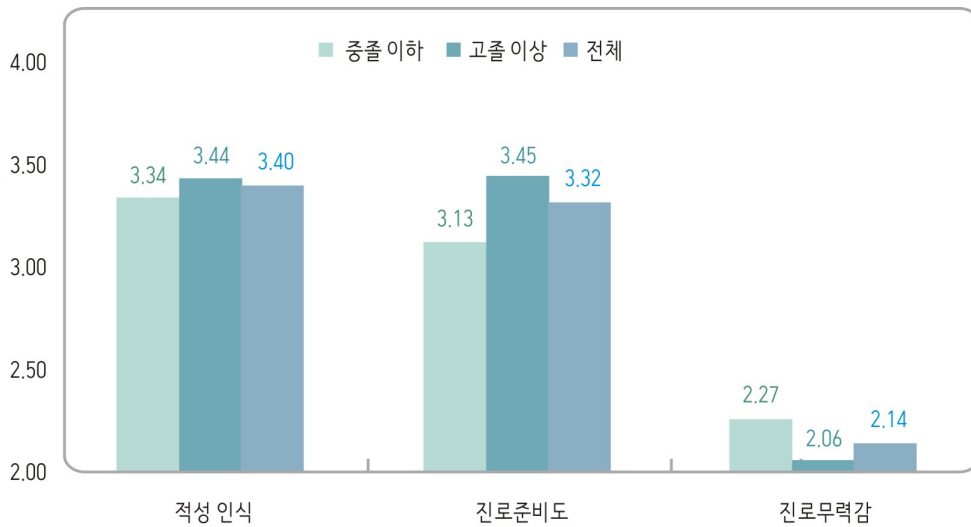


* 주: 1) n=376

【그림 III-25】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얻고 싶은 것

④ 진로성숙도

자신의 장점과 소질,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적성 인식’과 뚜렷한 진로 계획이나 원하는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진로 준비도’는 각각 3.4점, 3.3점(5점 척도)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직업 결정에 대한 의욕이 없고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며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진로 무력감’은 2.1점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그림 III-26). 다만 학력이 높은 경우 진로준비도가 높고, 학력이 낮은 경우 무력감이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 1) n=378(중졸 이하 154명, 고졸 이상 224명)
 2) 진로 준비도 $t=-3.627(p<.001)$, 진로 무력감 $t=2.842(p<.01)$

【그림 III-26】진로 발달 수준 학력 비교

(4) 자립 준비 실태

① 취업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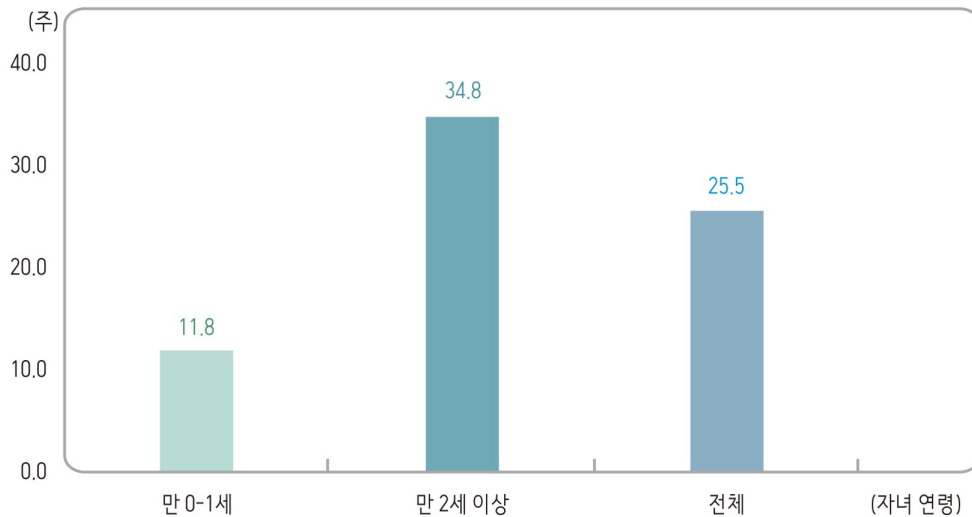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86.8%로 다수였다. 그러나 취업 여부는 자녀 연령, 거주 장소, 본인 연령, 최종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재가 대상자(33.3%)가 시설 생활인(6.4%)에 비해 ‘취업 중’이라는 응답이 5배 정도 더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III-15).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경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의 여성은 취업과 직종에 제한이 있어 취업률은 연령에 따라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평균 근로기간은 약 25주 정도였다. 특히 거주 장소, 본인 연령,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자녀가 만 0~1세인 경우 근로기간이 약 12주에 불과하였고, 만 2세 이상인 경우 약 35주로 차이를 보였다(그림 III-27).

표 III -14 현재 근로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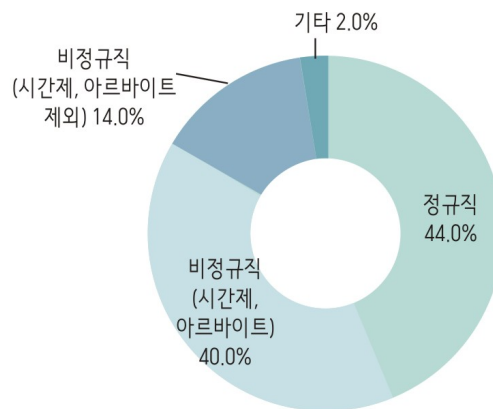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근로 함	근로 안함
거주장소	시설	282	6.4	93.6
	재가	96	33.3	66.7
	계	378	13.2	86.8
	χ^2	45.321*** (d.f.=1)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110	5.5	94.5
	만19세 이상	268	16.4	83.6
	계	378	13.2	86.8
	χ^2	8.167** (d.f.=1)		
최종학력	중졸 이하	154	5.8	94.2
	고졸 이상	224	18.3	81.7
	계	378	13.2	86.8
	χ^2	12.343*** (d.f.=1)		
자녀연령	임신중	83	0.0	100.0
	만0-1세	186	9.1	90.9
	만2세이상	76	32.9	67.1
	계	345	12.2	87.8
	χ^2	43.626*** (d.f.=2)		



* 주: 1) n=42
 2) t=-2.809(p<.001)

【그림 III -27】 근로 기간(week)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44.0%, 비정규직 및 기타 56%(시간제·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이 40.0%, 시간제·아르바이트를 제외한 비정규직이 14.0%, 기타 2.0%)였다(그림 III-28). 나이가 많을수록,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이상인 경우 정규직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사례수가 과소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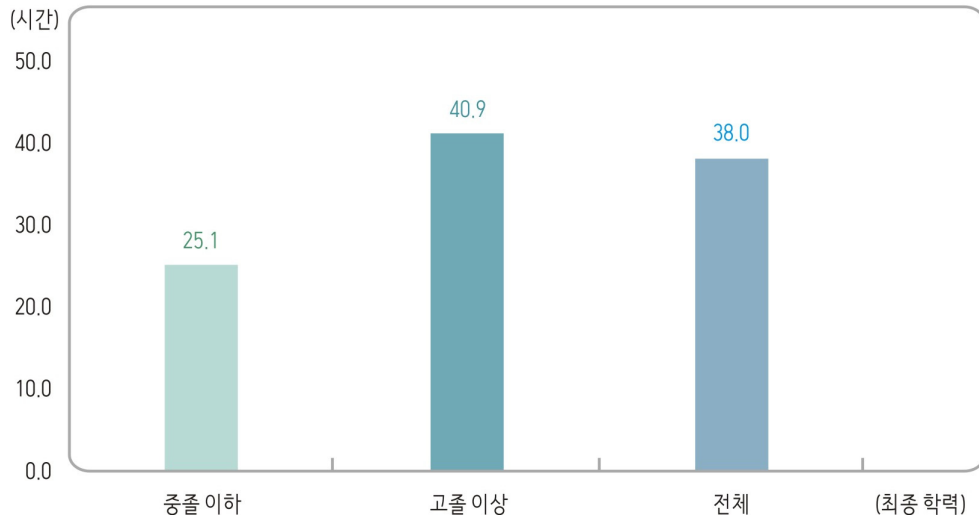


* 주: 1) n=50

【그림 III-28】 고용 형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8시간 정도였다(그림 III-29). 다만 거주장소, 본인 연령, 최종 학력, 자녀 연령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졸 이하(평균 25시간)보다 고졸 이상(평균 41시간)의 경우 근무시간이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이는 학력과 고용형태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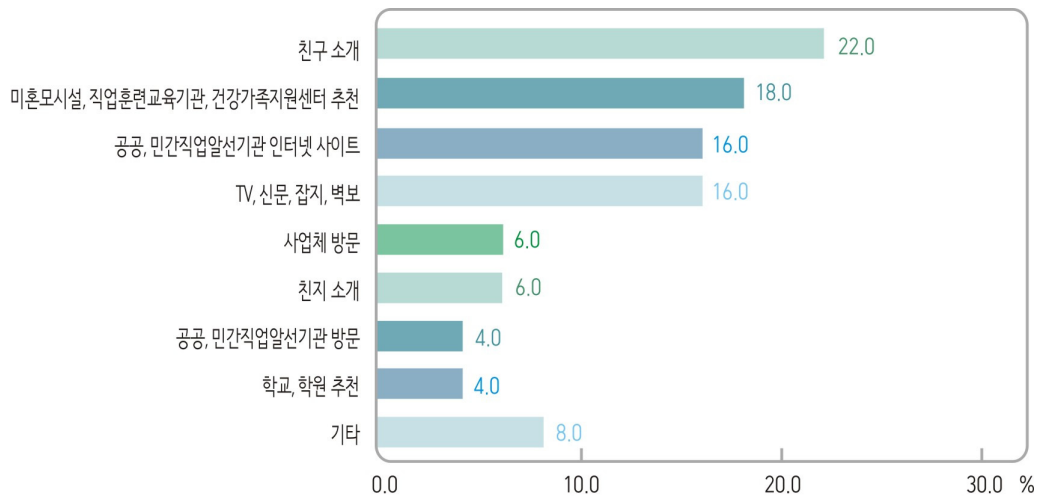
한편,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를 구한 경로를 보면 '친구의 소개로'(2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혼모 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추천을 통해서'(18.0%)가 많았고, '공공·민간직업알선기관의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TV, 신문, 잡지, 벽보 등을 보고'라는 응답이 각각 16.0%로 제도적인 통로보다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III-30).



* 주: 1) n=49

2) $t=-2.589(p<.05)$

【그림 III-29】 주당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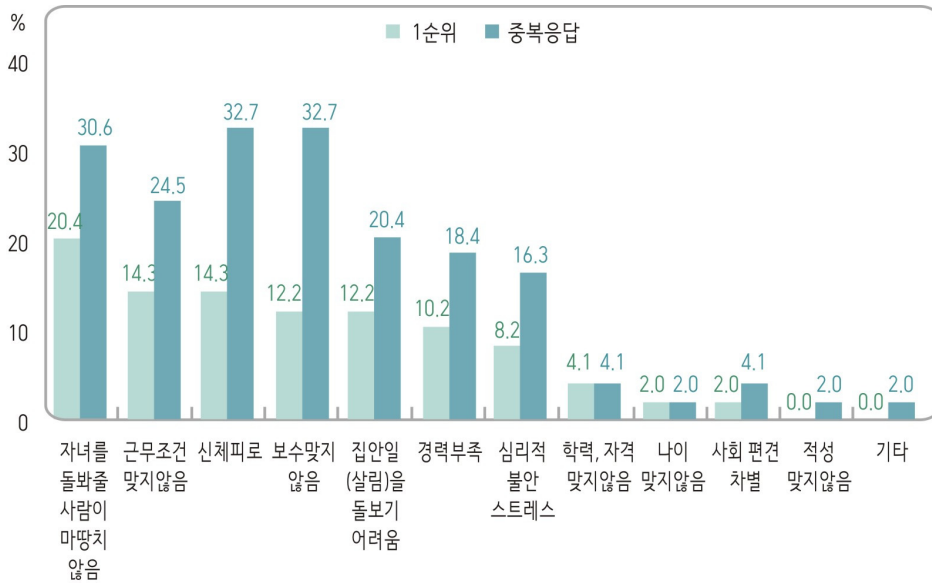


* 주: 1) n=50

【그림 III-30】 취업 경로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1순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20.4%)가 가장 많았고, ‘근무조건(시간이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 ‘신체적으로 피로해서’가 각각 14.3%로 그 뒤를 이었다. 1순위, 2순위 응답을 모두 반영한 중복응답 분석에서는 ‘보수(수입)가 맞지 않아서’, ‘신체적으로

피로해서'가 각각 32.7%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30.6%), '근무조건(시간이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24.5%)가 뒤를 이어 근로소득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I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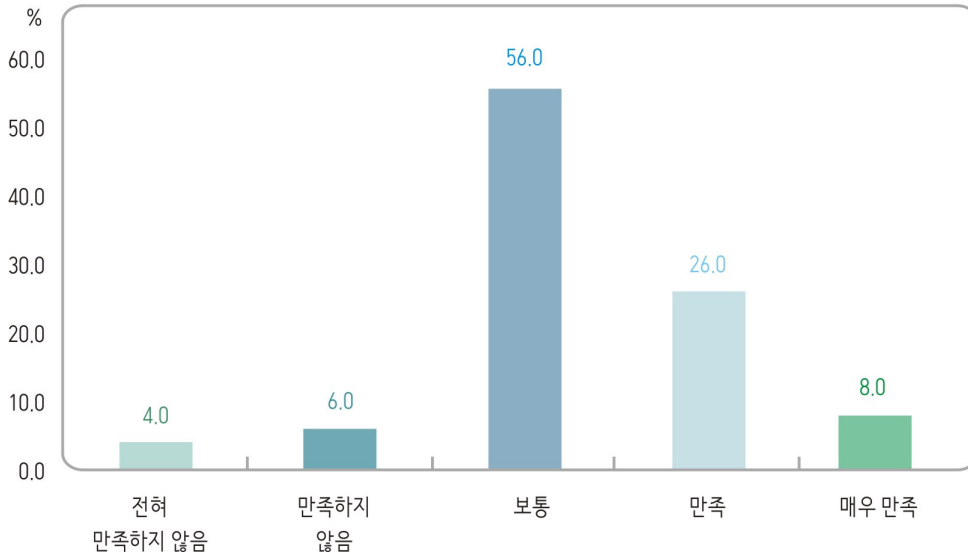
* 주: 1) n=50

【그림 III-31】 일을 하면서 힘든 점

다음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56%)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다만 '만족(매우 포함)'하는 경우(34.0%)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포함)'는 경우(10.0%)보다 많았지만, 역으로 보면 응답자 중 1/3만이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는 상황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그림 III-32).

② 미취업 특성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328명)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1순위)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라서 산전·산후 관리를 위해'(39.9%),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해서'(2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외 '자격(학력, 경력 등)이 부족해서'(9.1%), 기타(12.5%) 순이었다. 특히 시설 생활인, 19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산전·산후 관리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재가 대상자와 19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 양육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III-15, 그림 III-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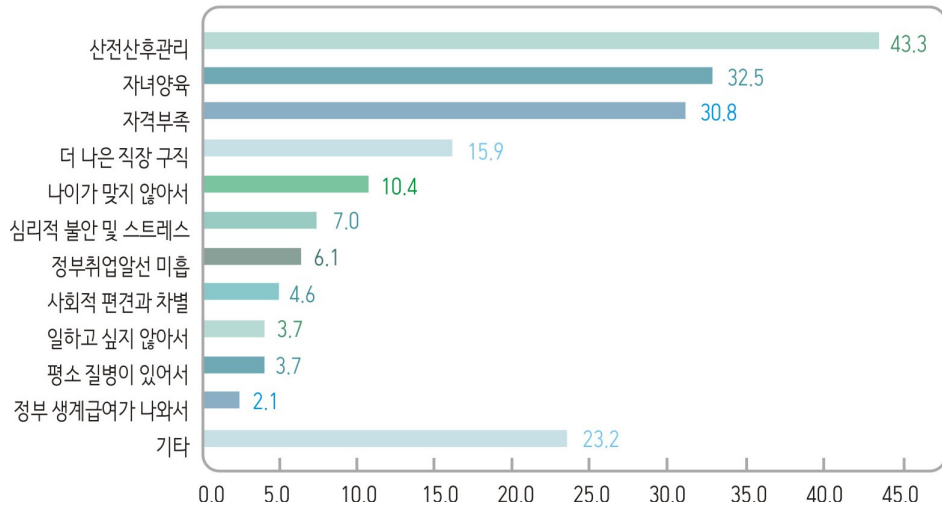
* 주: 1) n=50

【그림 III-32】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표 III-15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산전 산후 관리	평소 질병	자녀 양육	나의 자격 부족	나이	정부 취업알선 부족	정부 생계급여가 나와서	나은 직장 구직 중	일하기 싫음	사회 편견 차별 때문	심리 불안 스트레스	기타
거주 장소	시설	264	48.5	1.5	17.0	9.5	4.5	1.1	0.4	1.9	1.1	1.5	11.4
	재가	64	4.7	0.0	43.8	7.8	4.7	6.3	0.0	9.4	0.0	4.7	17.2
	계	328	39.9	1.2	22.3	9.1	4.6	2.1	0.3	3.4	0.9	2.1	12.5
	χ^2	62.078*** (d.f.=11)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104	53.8	0.0	15.4	4.8	13.5	1.0	1.0	0.0	1.0	0.0	9.6
	만19세 이상	224	33.5	1.8	25.4	11.2	0.4	2.7	0.0	4.9	0.9	3.1	13.8
	계	328	39.9	1.2	22.3	9.1	4.6	2.1	0.3	3.4	0.9	2.1	12.5
	χ^2	56.736*** (d.f.=11)											
최종 학력	중졸이하	145	45.5	1.4	20.0	8.3	8.3	0.7	0.0	2.8	1.4	1.4	10.3
	고졸이상	183	35.5	1.1	24.0	9.8	1.6	3.3	0.5	3.8	0.5	2.7	14.2
	계	328	39.9	1.2	22.3	9.1	4.6	2.1	0.3	3.4	0.9	2.1	12.5
	χ^2	20.523* (d.f.=11)											
자녀 연령	임신중	83	88.0	0.0	0.0	0.0	2.4	0.0	0.0	0.0	2.4	0.0	4.8
	만0-1세	169	26.0	1.2	36.7	10.1	5.3	1.8	0.0	2.4	0.0	3.0	12.4
	만2세이상	51	3.9	2.0	19.6	17.6	3.9	5.9	2.0	11.8	2.0	3.9	25.5
	계	303	39.3	1.0	23.8	8.6	4.3	2.0	0.3	3.3	1.0	2.3	12.5
	χ^2	163.506*** (d.f.=22)											



* 주: 1) n=328

【그림 III-33】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직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구직 중’이라는 응답은 27.4%에 그친 반면,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는 72.6%에 달하였다. 특히 재가 대상자, 만 19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 자녀 연령이 만 2세 이상인 경우 구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표 III-16).

한편,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지원해보지 않았다’가 56.6%로 과반을 차지했고, 1~3회 지원했다는 응답이 31.5%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 4~9회(8.0%), 10회 이상(4.0%)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다만 임신중인 경우 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비해 구직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표 III-17).

표 III -16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	
			예	아니요
거주장소	시설	264	24.6	75.4
	재가	64	39.1	60.9
	계	328	27.4	72.6
	χ^2	5.396** (d.f.=1)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104	19.2	80.8
	만19세 이상	224	31.3	68.8
	계	328	27.4	72.6
	χ^2	5.153** (d.f.=1)		
자녀연령	임신중	83	18.1	81.9
	만0-1세	169	27.2	72.8
	만2세이상	51	43.1	56.9
	계	303	27.4	72.6
	χ^2	9.984** (d.f.=2)		

표 III -17 일자리 지원횟수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0회	1-3회	4-9회	10회 이상
자녀연령	임신중	83	32.5	49.0	16.9	3.6
	만0-1세	169	65.7	27.8	3.6	3.0
	만2세이상	50	66.0	16.0	8.0	10.0
	계	302	56.6	31.1	7.9	4.3
	χ^2	39.708*** (d.f.=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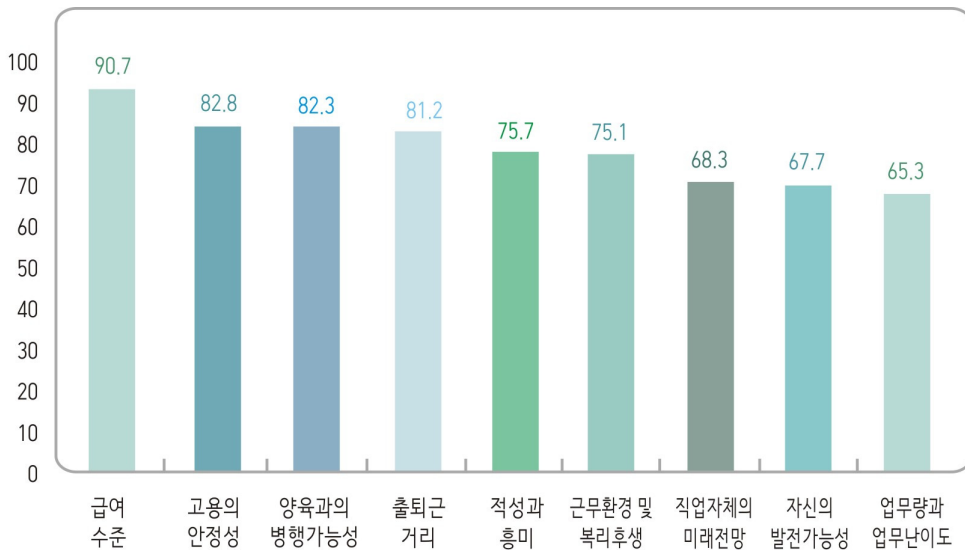
***p<.001

③ 구직 조건 및 장애요인

응답자 378명을 대상으로 구직 조건을 질문한 결과 급여 수준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0.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용의 안정성(82.8%), 양육과의 병행가능성(82.3%), 출퇴근 거리(81.2%) 순이었고, 뒤 이어 적성과 흥미(75.7%),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75.1%), 직업자체의 미래전망

(68.3%), 자신의 발전가능성(67.7%), 업무량과 업무난이도(65.3%) 순이었다(그림 III-34). 특히 재가 대상자,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이 많은 경우 양육과의 병행 가능성, 출퇴근 거리 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중졸이하의 경우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급자의 경우 급여 수준, 업무량과 업무난이도, 적성과 흥미, 자신의 발전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많았다(표 III-18).

마지막으로 구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확인한 결과 '근무조건(근무시간이나 환경)이 맞지 않아서'(21.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19.9%), '경력 부족'(8.2%), '학력·자격이 맞지 않음'(8.2%), '나이가 맞지 않음'(6.9%), '보수가 맞지 않음'(6.4%) 순이었다(그림 III-35). 특히 나이가 어리고 중졸 이하인 경우 학력, 자격의 제약을 많이 받았고, 나이가 많고 자녀가 어린 경우 근무조건과 양육 부담이 컸다(표 III-19).



* 주: 1) n=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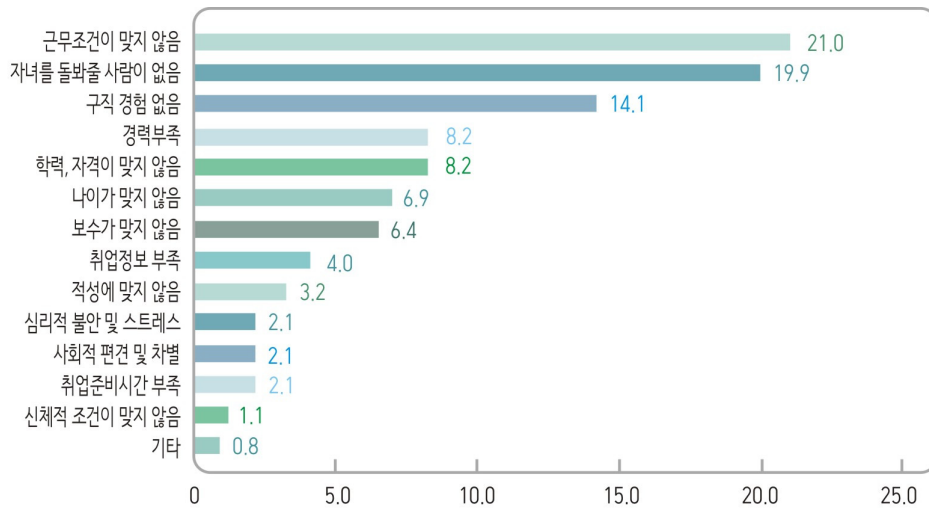
【그림 III-34】 일을 구할 때 중시하는 조건(단위: %)

표 III -18

일을 구할 때 중시하는 항목(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	업무량 업무 난이도	적성 흥미	직업 미래 전망	근무 환경 복리 후생	양육 병행 가능성	출퇴근 거리	자신의 발전 가능성
거주 장소	시설	282	90.1	83.3	66.3	79.1	70.6	73.8	79.4	79.4	69.5
	재가	96	92.7	81.3	62.5	65.6	61.5	79.2	90.6	86.5	62.5
	계	378	90.7	82.8	65.3	75.7	68.3	75.1	82.3	81.2	67.7
	χ^2	—	.593	.218	.460	7.039**	2.743	1.121	6.152*	2.359	1.607
본인 연령	만19세미만	110	90.9	81.8	62.7	77.3	68.2	70.0	73.6	74.5	65.5
	만19세이상	268	90.7	83.2	66.4	75.0	68.3	77.2	85.8	83.9	68.7
	계	378	90.7	82.8	65.3	75.7	68.3	75.1	82.3	81.2	67.7
	χ^2	—	.005	.106	.469	.219	.000	2.187	7.940**	4.455*	.366
최종 학력	중졸이하	154	90.3	80.5	68.2	73.4	64.9	66.9	78.6	78.4	64.3
	고졸이상	224	91.1	84.4	63.4	77.2	70.5	80.8	84.8	83.0	70.1
	계	378	90.7	82.8	65.3	75.7	68.3	75.1	82.3	81.2	67.7
	χ^2	—	.072	.953	.924	.737	1.321	9.465**	2.444	1.261	1.406
기초 생활 수급 여부	비수급자	219	88.1	79.9	59.8	71.7	65.3	73.5	79.0	80.4	60.3
	수급자	159	94.3	86.8	73.0	81.1	72.3	75.1	86.8	82.3	78.0
	계	378	90.7	82.8	65.3	75.7	68.3	75.1	82.3	81.2	67.7
	χ^2	—	4.231**	3.066	7.022**	4.460*	2.101	.728	3.840	.220	13.223***
자녀연령	임신중	83	86.7	72.3	48.2	74.7	63.9	68.7	62.7	66.3	59.0
	만0-1세	186	91.4	85.5	68.3	76.3	68.3	74.2	91.4	86.6	71.0
	만2세이상	76	93.4	88.2	76.3	78.9	77.6	88.2	97.4	88.2	76.3
	계	345	90.7	82.9	65.2	76.5	69.3	75.9	85.8	82.0	69.3
	χ^2	—	2.317	8.950*	15.501***	.406	3.725	8.918*	49.631***	18.518***	6.109*



*주: 1) n=377

【그림 III-35】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표 III-19

구직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구 분		사례 수	구직 경험 없음	취업 정보 부족	취업 준비 시간 부족	근무 조건 맞지 않음	보수 맞지 않음	학력 자격 맞지 않음	경력 부족	나이 맞지 않음	신체 조건 맞지 않음	적성 맞지 않음	자녀 양육 자가 없음	사회 편견 차별	심리 불안 스트레스	기타
본인 연령	만19세미만	110	21.8	1.8	2.7	10.9	2.7	8.2	6.4	23.6	0.9	0.9	16.4	2.7	0.9	0.0
	만19세이상	267	10.9	4.9	1.9	25.1	7.9	8.2	9.0	0.0	1.1	4.1	21.3	1.9	2.6	1.1
	계	377	14.1	4.0	2.1	21.0	6.4	8.2	8.2	6.9	1.1	3.2	19.9	2.1	2.1	0.8
	χ^2	89.327*** (d.f.=13)														
최종 학력	중졸이하	154	16.9	4.5	1.9	14.9	2.6	13.0	8.4	14.9	0.0	1.3	18.2	1.9	1.3	0.0
	고졸이상	223	12.1	3.6	2.2	25.1	9.0	4.9	8.1	1.3	1.8	4.5	21.1	2.2	2.7	1.3
	계	377	14.1	4.0	2.1	21.0	6.4	8.2	8.2	6.9	1.1	3.2	19.9	2.1	2.1	0.8
	χ^2	52.622*** (d.f.=13)														
자녀 연령	임신중	82	13.4	4.9	1.2	23.2	11.0	4.9	7.3	13.4	3.7	6.1	3.7	3.7	1.2	2.4
	만0-1세	186	16.1	2.2	1.6	18.3	3.2	8.6	7.0	5.9	0.5	2.2	30.6	1.6	1.6	0.5
	만2세이상	76	13.2	2.6	3.9	27.6	11.8	7.9	9.2	0.0	0.0	1.3	19.7	1.3	1.3	0.0
	계	344	14.8	2.9	2.0	21.5	7.0	7.6	7.6	6.4	1.2	2.9	21.8	2.0	1.5	0.9
	χ^2	60.653*** (d.f.=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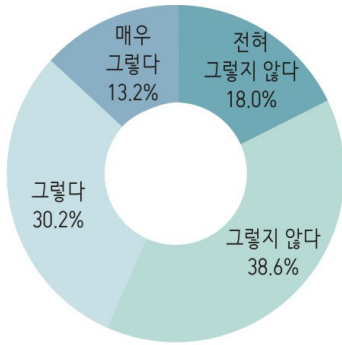
(5) 차별 경험

①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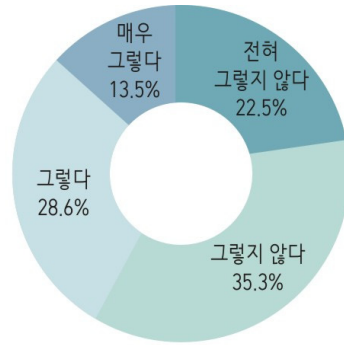
먼저,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43.4%(그렇다 30.2%+매우 그렇다 13.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6%(그렇지 않다 38.6%+전혀 그렇지 않다 18.0%)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청소년’이라서 임신·출산에서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차별 받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57.8%)이 더 높았다. 다만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20.5%, 생활 전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32.5%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차별 경험은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III-36).

② 학교에서의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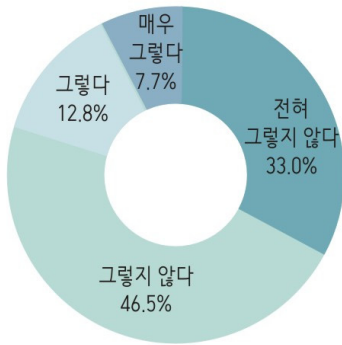
전체 대상자 가운데 재학 중 임신을 경험한 경우는 28.6%로 연령이 낮은 경우 더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표 III-21). 재학 중 임신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이 41.7%에 달하여 10명 중 4명은 임신 사실을 학교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알린 경우 친구(35.2%), 담임교사(29.6%), 상담교사(6.5%), 보건교사(0.9%) 등에게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1). 또한 교사에게 알린 경우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고, 휴학 권유 10.0%,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 복학 권유 7.5% 순이었다. 다만 기타라는 응답이 42.5%에 달하여 학생 임신 사안에 있어 교사의 반응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III-37). 따라서 학생 임신 사안에 있어 적극적인 학습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매뉴얼 개발, 보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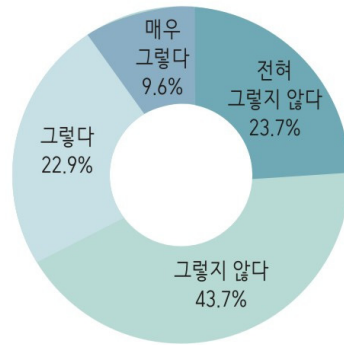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경험



청소년이라서 임신, 출산에서 차별 경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학업에서 불리한 대우 경험



임신, 출산을 이유로 생활전반에서 불리한 대우 경험

- * 주: 1)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 경험 n=378
 2) 청소년이라서 임신·출산에서 차별경험 n=377
 3)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업에서 불리한 대우 경험 n=376
 4) 임신·출산을 이유로 생활전반에서 불리한 대우 경험 n=375

【그림 III-36】차별 경험

표 III-20 학교 재학 중일 때 임신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임신 경험 여부	
		예	아니오
만 19세 미만	110	45.5	54.5
만 19세 이상	268	21.6	78.4
계	378	28.6	71.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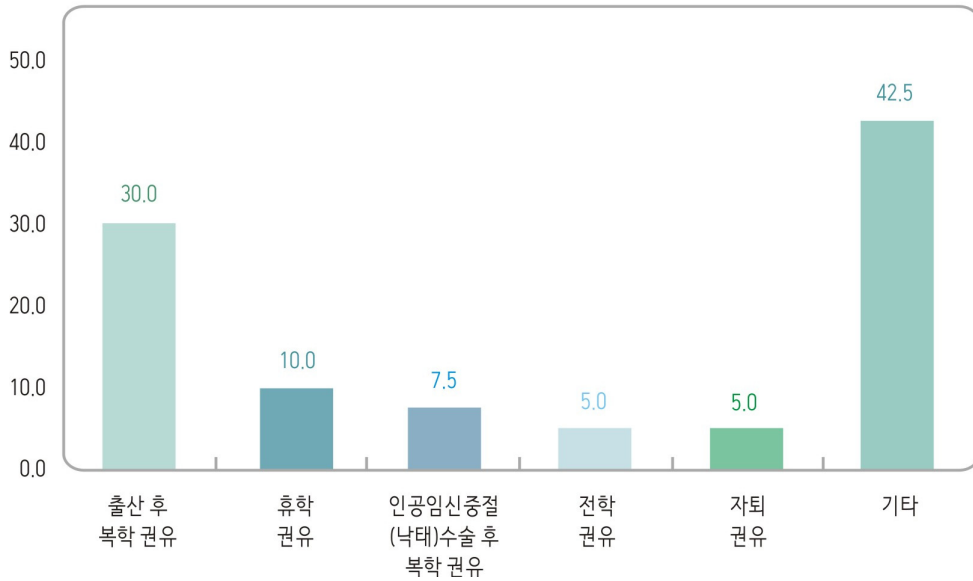
$\chi^2=21.670^{***}$, d.f.=1

표 III -21

임신 또는 출산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렸는지 여부 및 그 대상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알리지 않았다	학교 친구들	담임 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교감 혹은 교장선생님	기타
만 19세 미만	50	42.0	32.0	42.0	10.0	2.0	18.0	4.0
만 19세 이상	58	41.4	37.9	19.0	3.4	0.0	1.7	15.5
계	108	41.7	35.2	29.6	6.5	0.9	9.3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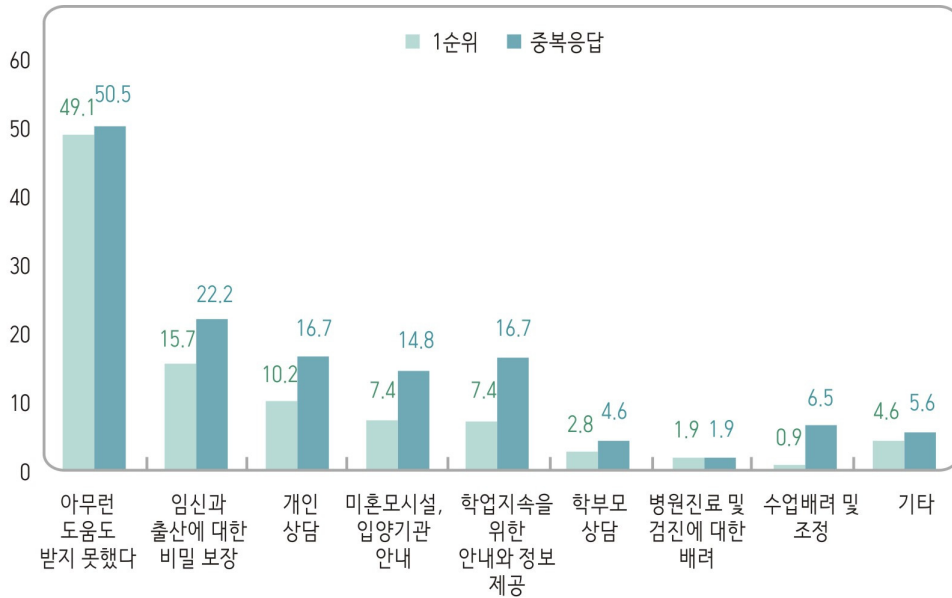


* 주: 1) n=50

【그림 III-37】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을 때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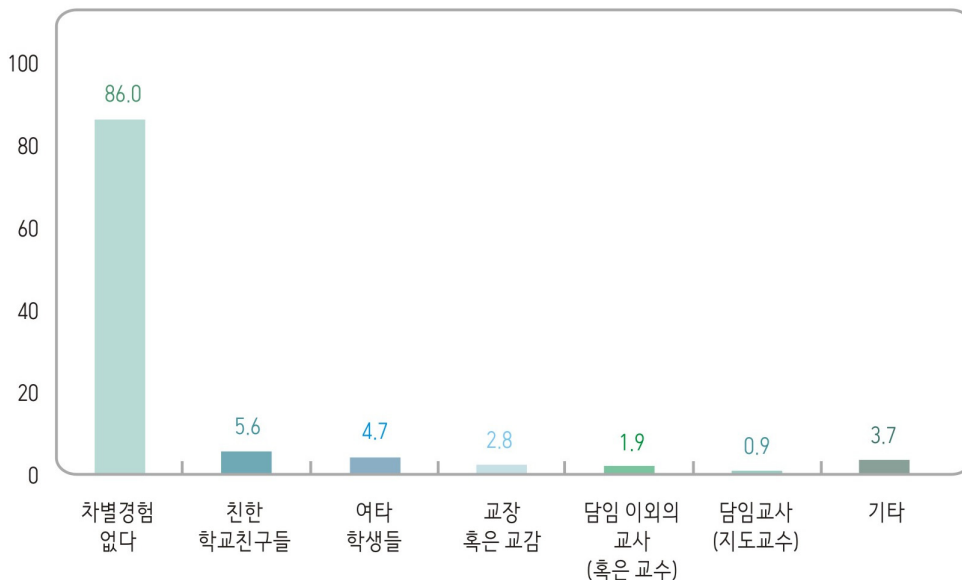
재학 중 임신·출산을 경험한 경우, ‘교사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9.1%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밀 보장’(15.7%), ‘개인 상담’(10.2%) 순이었다.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미혼모 시설·입양기관 안내’(7.4%), ‘학업지속을 위한 안내와 정보 제공’(7.4%)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그림 III-38).

한편, 학교에서 임신, 출산으로 차별을 당했는지 확인한 결과 ‘차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6.0%로 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III-39). 즉, 임신, 출산으로 학교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차별을 당하지도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 스스로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칙과 제도로써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학교가 미온적, 방임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권고가 요구된다.



* 주: 1) n=108

【그림 III-38】 학교 또는 교사로 받은 도움(1순위 및 중복응답)



* 주: 1) n=107

【그림 III-39】 학교에서의 차별경험 여부 및 그 대상(중복응답)

③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는 전체의 44.2% 정도였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는 19세 미만의 경우 근로 비율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이해된다(표 Ⅲ-22). 특히 직장을 그만 둔 주된 이유는 ‘임신 사실이 알려 질까봐 스스로 퇴직했다’가 44.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그림 Ⅲ-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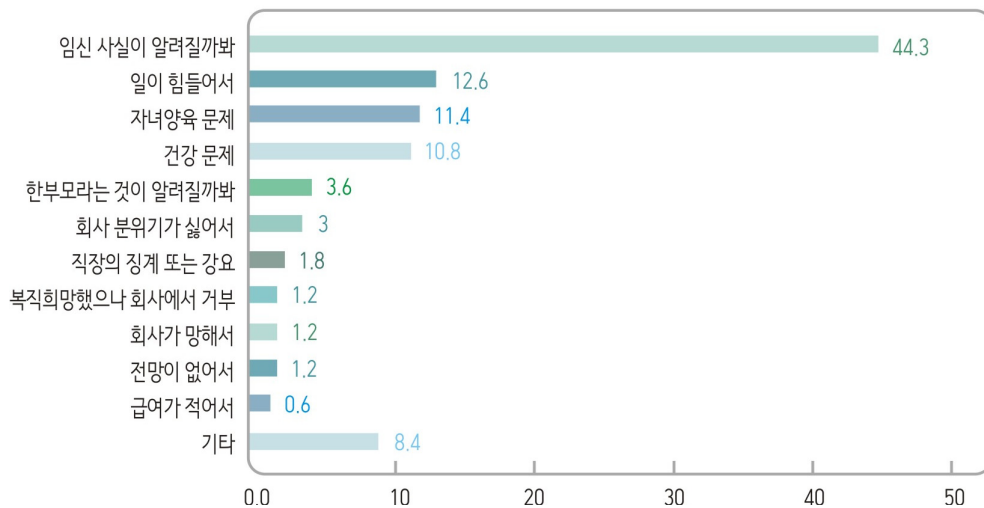
표 Ⅲ-22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 여부	
		예	아니오
만 19세 미만	110	30.9	69.1
만 19세 이상	268	49.6	50.4
계	378	44.2	55.8

*p<.05, **p<.01, ***p<.001

$\chi^2=11.080^{**}$, d.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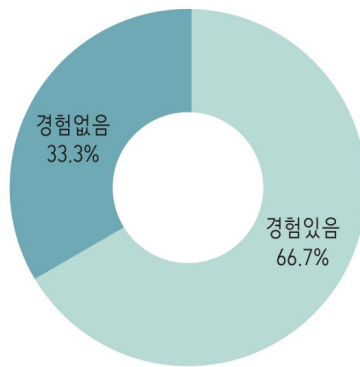


* 주: 1) n=167

【그림 Ⅲ-40】 직장을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

(4) 사회적 지지

청소년 한부모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10명 중 6명은 '부모의 이혼, 별거, 또는 사별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I-41). 반면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 결과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응답은 8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79.5%), 형제자매(71.3%), 기관종사자(69.1%), 지인 (62.0%), 친지(54.7%) 순이었다. 시설 생활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관종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이가 어린 경우 학교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3배 이상 많았다(표 III-23).



* 주: 1) n=378

【그림 III-41】 원가족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경험 여부

표 III-23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단위 :명, %

구 분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친구	지인	기관종사자	학교교사
거주 장소	시설	231(82.2)	201(71.8)	127(45.8)	225(80.4)	175(62.5)	207(74.2)	45(16.2)
	재가	83(86.5)	67(69.8)	54(56.3)	73(76.8)	58(60.4)	52(54.2)	11(11.5)
	계	314(83.3)	268(71.3)	204(54.7)	298(79.5)	233(62.0)	259(69.1)	56(15.0)
	χ^2	.929	.139	.127	.537	.132	13.408***	1.280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97(88.2)	76(69.7)	62(57.4)	91(83.5)	72(66.1)	78(72.2)	32(29.6)
	만19세 이상	217(81.3)	192(71.9)	142(53.6)	207(77.8)	161(60.3)	181(67.8)	24(9.1)
	계	314(83.3)	268(71.3)	204(54.7)	298(79.5)	233(62.0)	259(69.1)	56(15.0)
	χ^2	2.671	.181	.452	1.522	1.088	.707	25.452***

부모, 형제자매, 친지, 친구, 지인, 기관종사자, 학교교사 각각에 대하여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지’ 5점 척도로 확인한 결과 ‘친구’(59.5%)가 가장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종사자(45.9%), 부모(37.9%), 지인(34.9%), 형제자매(34.3%), 학교교사(32.7%), 친지(19.7%) 순이었다. 즉, 앞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고민은 친구 혹은 기관종사자와 의논하며, 이러한 경향은 나이가 많을수록 뚜렷하였다(표 III-25).

표 III -24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단위 :명, %

구 분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친구	지인	기관종사자	학교교사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54(55.7)	30(39.5)	16(25.8)	60(65.9)	30(41.7)	37(47.4)	12(37.5)
	만19세 이상	65(30.0)	61(32.3)	24(17.0)	116(56.6)	51(31.9)	82(45.3)	6(26.1)
	계	119(37.9)	91(34.3)	40(19.7)	176(59.5)	81(34.9)	119(45.9)	18(32.7)
	χ^2	18.836***	1.246	2.101	2.285	2.095	.100	.792

‘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부모(50.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관종사자(33.2%), 친구(31.4%), 형제자매(30.6%), 지인(23.0%) 순이었다. 특히 재가 대상자, 나이가 어린 경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재가 대상자의 경우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나이가 많은 경우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표 III-25).

표 III -25 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비율) 단위 :명, %

구분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친구	지인	기관종사자	학교교사
거주 장소	시설	111(48.1)	60(29.9)	22(14.8)	65(29.1)	34(19.7)	67(32.7)	6(13.3)
	재가	47(57.3)	21(32.8)	10(18.5)	27(38.6)	19(33.3)	18(35.3)	3(27.3)
	계	158(50.5)	81(30.6)	32(15.8)	92(31.4)	53(23.0)	85(33.2)	9(16.1)
	χ^2	2.078	.201	.421	2.196	4.525**	.126	1.273
본인 연령	만19세미만	65(67.0)	29(38.2)	13(21.0)	32(35.6)	23(32.4)	27(34.6)	7(21.9)
	만19세이상	93(43.1)	52(27.5)	19(13.5)	60(29.6)	30(18.9)	58(32.6)	2(8.3)
	계	158(50.5)	81(30.6)	32(15.8)	92(31.4)	53(23.0)	85(33.2)	9(16.1)
	χ^2	15.366***	2.894	1.821	1.042	5.065**	.101	1.864

각각의 도움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하여 긍정 응답('만족'+매우 만족)을 비교한 결과 기관종사자의 도움에 만족한다는 응답(45.1%)이 가장 많았다. 이는 기관종사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 외에 부모(43.4%), 친구(41.7%), 형제자매(36.0%) 순이었고,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도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표 III-26).

표 III-26 도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친구	지인	기관종사자	학교교사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54(56.3)	32(42.7)	13(21.3)	43(48.3)	25(35.2)	35(44.9)	10(32.3)
	만19세 이상	81(37.7)	63(33.3)	26(18.8)	78(38.8)	43(27.6)	81(45.3)	6(25.0)
	계	135(43.4)	95(36.0)	39(19.6)	121(41.7)	68(30.0)	116(45.1)	16(29.1)
	χ^2	9.322**	2.030	.164	2.294	1.360	.003	.345

(5) 양육 여건 및 스트레스

① 양육 여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나는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83.7%에 달하였다.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역시 87.2%로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학력이 높은 경우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는 아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의 경우 95.7%가 긍정적으로 답하여 자녀와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반면,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는 문항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59.3%에 달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양육 부담과 관련하여 '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의 경우 24.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4명 중 1명이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는 경우 58.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 문항의 경우 근로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하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는 10명 중 9명이 긍정 응답을 보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 응답률이 더 높았다(표 III-27).

표 III-27

자녀 양육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나는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59	83.1	81.4	91.5	61.0	32.2	61.0	84.7
	만19세 이상	199	83.9	88.9	97.0	58.8	22.1	57.3	97.5
	계	258	83.7	87.2	95.7	59.3	24.4	58.1	94.6
	χ^2	—	.025	2.349	3.323	.093	2.512	.260	14.39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94	79.8	79.8	92.6	69.1	29.8	66.0	90.4
	고졸 이상	164	86.0	91.5	97.6	53.7	21.3	53.7	97.0
	계	258	83.7	87.2	95.7	59.3	24.4	58.1	94.6
	χ^2	—	1.679	7.303**	3.671	5.941**	2.309	3.714	4.958*
근로 여부	근로 안함	216	84.3	85.6	95.4	61.1	25.5	61.6	94.0
	근로중	42	81.0	95.2	97.6	50.0	19.0	40.5	97.6
	계	258	83.7	87.2	95.7	59.3	24.4	58.1	94.6
	χ^2	—	.282	2.899	.436	1.799	.784	6.431*	.907
자녀 연령	임신중	—	—	—	—	—	—	—	—
	만0~1세	182	85.7	85.7	96.7	59.3	23.6	57.1	92.3
	만2세이상	75	80.0	92.0	94.7	60.0	25.3	60.0	100.0
	계	257	84.0	87.5	96.1	59.5	24.1	58.0	94.6
	χ^2	—	1.293	1.925	0.589	.010	.085	.178	6.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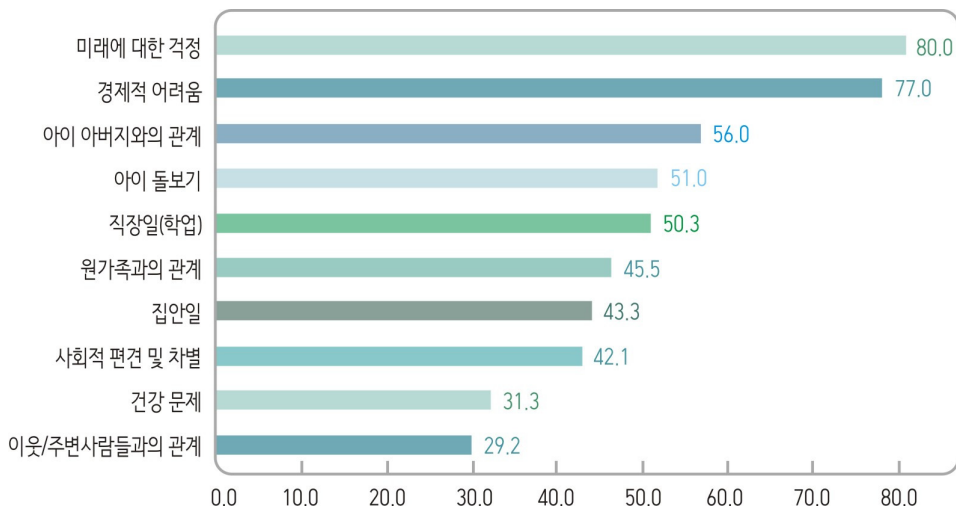
② 일상생활 스트레스

청소년 한부모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한 달 간 다음 각 상황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느꼈는지를 파악해보았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각 항목에 대해 4점 척도(①거의 없다, ②적은 편이다, ③많은 편이다, ④매우 많다)로 조사된 문항을 활용하여,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끼는 응답(③많은 편이다+④매우 많다) 비율을 합산한 뒤, 여타 응답과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응답(80.0%)이 가장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77.0%),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56.0%), 아이 돌보기(51.0%), 직장일(학업, 50.3%) 순이었다.

이는 1차년도 연구 결과와 동일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III-42). 특히 각 영역별 스트레스 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재가 대상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집안일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중인 경우보다 자녀를 양육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기의 경우에도 재가 대상자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이에 반해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주 장소, 연령 등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원가족(부모 및 형제자매)과의 관계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45.5%에 달하였다. 특히 임신중일 때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52.9%), 자녀가 만 0~1세(48.8%)인 경우보다 만 2세 이상(31.4%)인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또한 자녀 연령별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만 0~1세일 때 가장 높았고(34.9%), 만 2세 이상(26.9%), 임신 중(17.9%) 순이었다. 이 밖에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의 경우 거주 장소, 연령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II-28).



【그림 III-42】 영역별 스트레스 인지율

표 III-28

일상 생활 스트레스

단위 :명, %

구분		집안일	직장일 (학업)	경제적 어려움	아이 돌보기	아이 아버지와 의 관계	원가족 (부모 및 형제자매) 과의 관계	이웃/주 변사람 들과의 관계	사회적 편견 및 차별	건강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주 장소	시설	94(39.3)	105(47.9)	203(76.0)	99(47.1)	119(55.9)	116(47.5)	72(29.5)	100(40.5)	73(29.7)	214(78.7)
	재가	49(53.8)	45(57.0)	75(79.8)	52(60.5)	35(56.5)	34(39.5)	25(28.4)	42(46.7)	33(35.5)	78(83.9)
	계	143(43.3)	150(50.3)	278(77.0)	151(51.0)	154(56.0)	150(45.5)	97(29.2)	142(42.1)	106(31.3)	292(80.0)
	χ^2	5.655*	1.888	.554	4.333*	.007	1.644	.038	1.034	1.060	1.169
본인 연령	만19세 미만	30(32.3)	44(48.4)	68(67.3)	34(41.5)	45(54.2)	38(41.8)	24(26.7)	45(48.9)	26(28.9)	82(78.1)
	만19세 이상	113(47.7)	106(51.2)	210(80.8)	117(54.7)	109(56.8)	112(46.9)	73(30.2)	97(39.6)	80(32.1)	210(80.8)
	계	143(43.3)	150(50.3)	278(77.0)	151(51.0)	154(56.0)	150(45.5)	97(29.2)	142(42.1)	106(31.3)	292(80.0)
	χ^2	6.469*	.206	7.424**	4.139*	.153	.692	.388	2.383	.323	.334
자녀 연령	임신중	15(23.4)	27(42.9)	47(61.0)	5(16.1)	33(51.6)	36(52.9)	12(17.9)	21(31.3)	15(21.4)	56(70.9)
	만0-1세	76(45.2)	62(45.9)	148(82.7)	101(58.4)	86(60.6)	81(48.8)	59(34.9)	84(48.3)	57(34.1)	152(83.5)
	만2세이상	44(58.7)	44(61.1)	60(80.0)	41(54.7)	21(44.7)	22(31.4)	18(26.9)	31(43.7)	26(35.6)	61(82.4)
	계	135(44.0)	133(49.3)	255(77.0)	147(52.7)	140(55.3)	139(45.7)	89(29.4)	136(43.6)	98(31.6)	269(80.3)
	χ^2	17.637***	5.680	14.737**	18.989**	4.098	7.822*	6.945*	5.641	4.390	5.828

(6) 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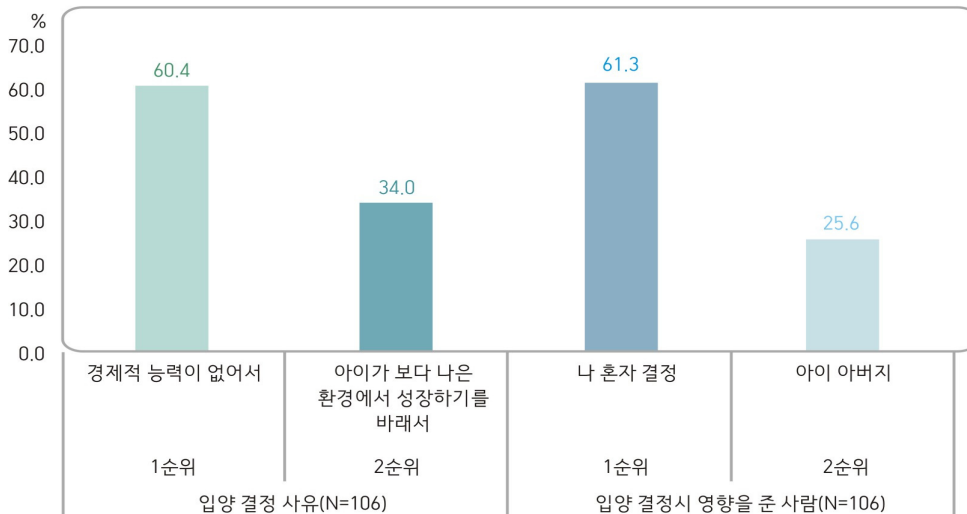
먼저 입양을 보낸 경험과 계획을 보면 응답자 378명 가운데 자녀를 '입양 보냈다' 36명(9.5%), '고려중이다' 67명(17.7%), '입양 보낸 경험도 있고 현재도 고려중이다' 3명(0.8%)으로 106명(28%)이 입양 경험이 있거나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보낸 경험은 19세 미만의 경우 8.2%, 19세 이상은 10.8%에 달하였고, 현재 자녀를 양육중인 청소년(263명)의 3.4%가 과거에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입양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상당수임이 일부 확인되었다.

표 Ⅲ-29 입양 보낸 경험 혹은 보낼 계획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경험있음(%)	계획중(%)	경험있음 +계획중(%)	경험없음 +계획없음(%)
계		378	9.5	17.7	0.8	72.0
연령	19세 미만	110	8.2	29.1	0.0	62.7
	19세 이상	268	10.8	13.1	0.4	75.7
양육여부	임신중	83	0.0	53	0.0	47
	양육중	263	3.4	8.4	0.4	87.8
	임신+양육중	2	0.0	0.0	0.0	100.0
	기타	30	96.7	3.3	0.0	0.0

다음으로 입양 경험이 있거나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106명을 대상으로 입양을 결정한 사유를 보면 연령과 현재 자녀의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60.4%), 2순위는 '아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년도 조사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입양을 결정할 때 영향을 준 사람 역시 연령과 자녀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는 '나 혼자 결정했다'(61.3%)였다. 반면 2순위 응답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19세 미만은 '아이 아버지', 19세 이상은 '기관/시설의 상담원'이었다.



* 주: 1) 입양 결정 사유 n=106

2) 입양 결정 시 영향을 준 사람 n=106

【그림 Ⅲ-43】 입양 결정 사유, 입양 결정 시 영향을 준 사람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연령과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아기에 대한 미안함’(43.9%)이 많았고, ‘입양과 양육여부에 대한 갈등’(31.7%), ‘입양가정에 대한 불신’(14.6%) 등이 뒤를 이었다(표 III-30).

표 III-30 입양 결정과정에서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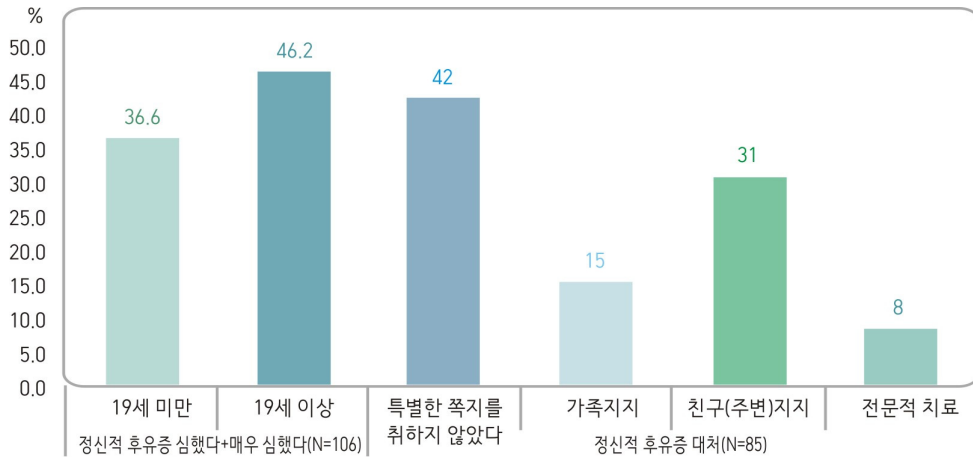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아기에 대한 미안함	입양과 양육여부 갈등	입양가정 불신	입양절차의 까다로움
계		106	9.8	43.9	31.7	14.6	0.0
연령	19세 미만	41	9.8	43.9	31.7	14.6	0.0
	19세 이상	65	0.0	70.8	12.3	10.8	3.1
양육여부	임신중	44	6.8	47.7	29.5	13.6	0.0
	양육중	32	0.0	71.9	18.8	9.4	0.0
	기타	30	3.3	66.7	6.7	13.3	6.7

* 주: 1) 기타는 출산 후 자녀를 이미 입양 보냈거나 시설에 맡긴 경우 등을 포함함.

이들 가운데 입양을 보냈거나 입양 결정 이후에 후유증이 (매우+약간 포함)있다는 응답은 80.1%에 달하여 10명 8명이 정신적 후유증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후유증이 (매우)심했다는 19세 미만 36.6%, 19세 이상 46.2%로 19세 이상에서 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면서 과거에 입양 보낸 경험이 있거나 입양을 결정한 경우(36명) 정신적 후유증이 있다는 응답은 90.7%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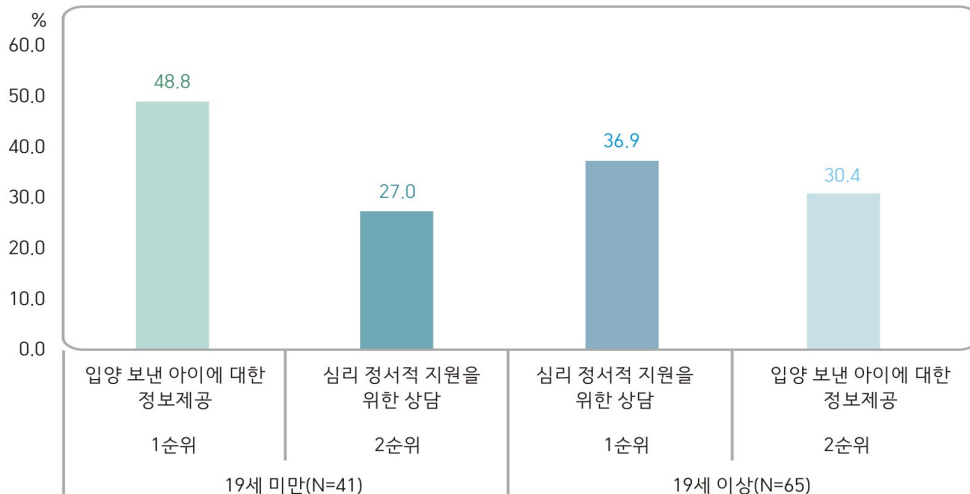
반면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대처에 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85명 가운데 병원이나 상담기관으로부터 ‘전문적 치료를 받았다’는 8.2%에 불과하였고 42.4%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의 1차년 조사에서도 입양 보낸 경험은 출산 자체보다 더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심각한 위기 상황임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후 개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녀를 입양 보낸 이후 부정적인 경험이 생애 전반에 걸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고려와 모성보전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그림 III-44).



* 주: 1) 정신적 후유증:심했다+매우 심했다 n=106
2) 정신적 후유증 대처 n=85

【그림 III-44】 입양 보낸(결정) 이후 정신적 후유증 및 대처

입양을 보낸 이후 필요한 지원에 대하여 1, 2순위 응답을 살펴본 결과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정보제공’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45). 앞서 자녀를 입양 보낸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정신적 충격과 이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 1) 19세 미만 n=41
2) 19세 이상 n=65

【그림 III-45】 입양 이후 필요한 지원

2012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입양숙려제도, 입양허가제도의 인지 정도를 확인한 결과 본 조사 표본에서 제도 인지율은 각각 78.3%, 74.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3명은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는 경우였고, 입양허가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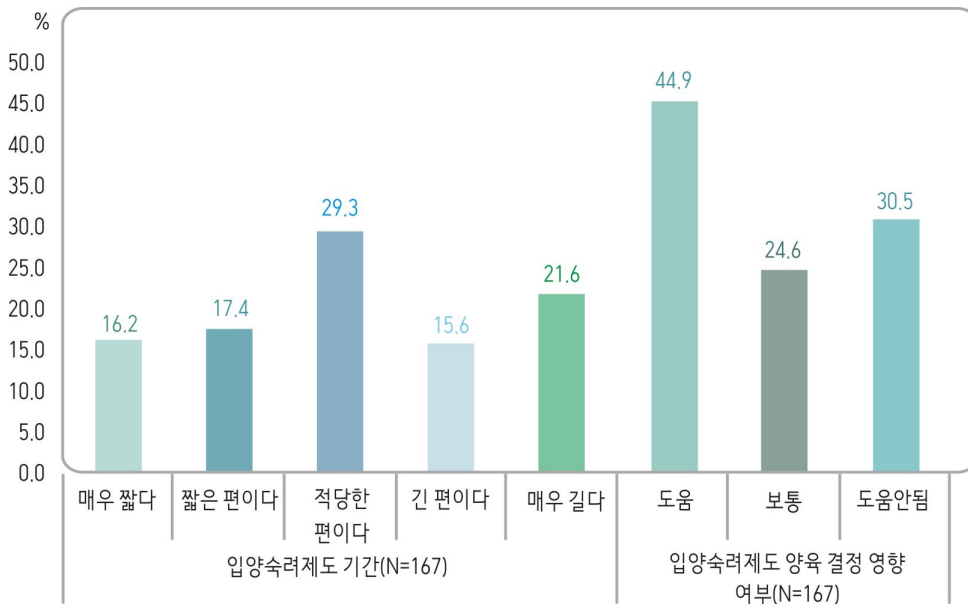
표 III-31 변경된 입양 관련 제도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비인지	인지	
			들어봤지만 내용은 모름	잘 알고 있다
입양숙려제도	378	21.7	33.6	44.2
입양허가제도	378	25.7	46.8	27.0

한편 전체 응답자 가운데 입양숙려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44.2%), 입양숙려제도의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확인하였다. 대체적으로 연령, 입양경험과 관계없이 현행 1주일인 숙려기간이 ‘(매우 포함)긴 편이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다만 현재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가 임신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숙려기간이 ‘적당하다’, ‘짧다’는 응답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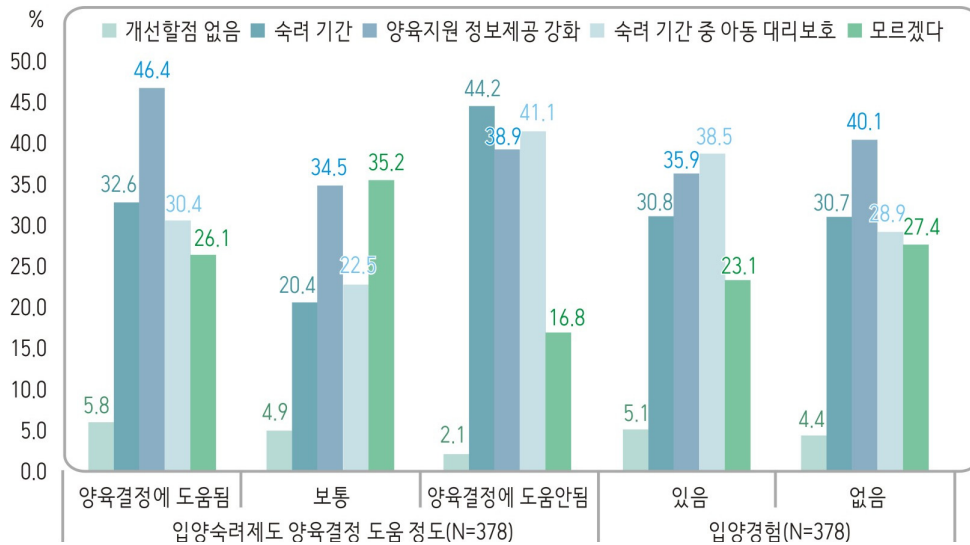
한편 입양숙려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44.2%), 입양숙려제도가 양육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령, 입양경험, 양육여부에 관계없이 숙려제가 양육 결정에 ‘(매우 포함)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률(44.9%)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46). 이는 출산 직후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입양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을 선택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 주: 1) 입양숙려제도 기간 n=167
2) 입양숙려제의 양육 결정 영향 여부 n=167

【그림 III-46】 입양숙려제도 기간, 입양숙려제의 양육 결정 영향 여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행 입양숙려제도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앞서 입양숙려제도가 양육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138명)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에 대한 응답률(46.4%)이 가장 높았다. 반면 양육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숙려기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44.2%)이 많았다. 입양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률에 차이를 보였는데, 과거 입양경험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 중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38.5%)이 가장 높았고, 입양 보낸 경험이 없는 경우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40.1%)이 많았다(그림 III-47). 이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를 수는 있으나, 숙려기간 동안 양육지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숙려기간 중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 지원 제도의 신설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주: 1) 입양숙려제도의 양육결정 도움 정도 n=378
2) 입양경험 n=378

【그림 III-47】 입양숙려제 개선사항

(7)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 수혜 및 만족도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제도, 양육지원제도,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각각에 대하여 서비스 인지도, 수혜율,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① 출산지원제도

출산지원제도의 인지 및 수혜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은 시설 생활인의 73.8%, 재가 대상자의 74.0%가 인지하고 있었다. 산전 진료비 지원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수혜율은 각각 75.7%, 70.4%였으며 수혜자 10명 중 6명 정도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지역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영양플러스에 대한 인지도와 수혜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재가 대상자의 만족도는 85.7%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표 III-32).

표 III-32 출산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건보공단 및 보건소)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인지(%)	수혜(%) ¹⁾	만족(%) ²⁾	만족도 ³⁾
출산 전 진료비 (건강보험공단)	시설	282	73.8	75.7	67.5	3.90
	재가	96	74.0	70.4	64.0	4.06
	계	378	73.8	74.2	66.7	3.94
산모신생아도우미 (보건소)	시설	282	37.9	24.3	61.5	3.77
	재가	96	42.7	12.2	60.0	3.80
	계	378	39.2	20.9	61.3	3.77
영양플러스 (보건소)	시설	282	25.2	18.3	53.8	4.23
	재가	96	49.0	29.8	85.7	4.71
	계	378	31.2	22.9	70.3	4.48

* 주: 1) 각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혜여부임.
 2) 매우만족 포함
 3)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② 양육지원제도

주민센터(구청)로부터 신청, 지원받을 수 있는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 제도의 인지 및 수혜율은 재가 생활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재가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것을 의미하나, 만족도는 출산지원제도에 비해 낮았다(표 III-33).

표 III-33 양육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구청 또는 주민센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인지(%)	수혜(%) ¹⁾	만족(%) ²⁾	만족도 ³⁾
영유아보육료	시설	282	72.0	51.7	54.3	3.64
	재가	96	86.5	74.7	58.1	3.69
	계	378	75.7	58.4	55.7	3.66
양육수당지원	시설	282	66.3	55.1	45.6	3.41
	재가	96	84.4	63.0	56.9	3.59
	계	378	70.9	57.5	49.3	3.47

* 주: 1) 각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혜여부임.
 2) 매우만족 포함
 3)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다음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심리검사, 친자검사비, 위기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의 양육지원제도의 인지 및 수혜율을 살펴보았다. 시설 및 재가 거주자들의 제도 인지율은 40.8% ~ 71.9% 수준이었으며 인지율과 달리 수혜율은 각 제도별로 편차를 보였다. 특히 친자검사비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돌보미의 경우 오히려 재가 대상자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요금, 이용시간 등 서비스 불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III-34).

표 III-34 양육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미혼모부자 거점기관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인지(%)	수혜(%) ¹⁾	만족(%) ²⁾	만족도 ³⁾
심리상담	시설	282	53.2	67.3	58.4	3.82
	재가	96	51.0	57.1	60.7	3.61
	계	378	52.6	64.8	58.9	3.78
친자검사비	시설	282	40.8	7.8	33.3	3.22
	재가	96	60.4	5.2	0.0	2.33
	계	378	45.8	6.9	25.0	3.00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	시설	282	55.0	51.6	73.8	4.16
	재가	96	71.9	65.2	82.2	4.27
	계	378	59.3	55.8	76.8	4.20
아이돌보미	시설	282	59.6	31.5	67.9	3.79
	재가	96	67.7	26.2	58.8	3.59
	계	378	61.6	30.0	65.7	3.74

* 주: 1) 각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혜여부임.

2) 매우만족 포함

3)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③ 취약가족 지원제도

주민센터(구청)로부터 신청,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및 생활지원제도의 인지 및 수혜율을 살펴보면, 각 제도별 인지율에 편차가 크고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I-35). 이는 각 제도별 지원 대상의 자격과 조건의 문제일 수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제도 접근성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지원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자금 대여, 전세자금대출 및 임대주택 지원의 경우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과 특성 상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 내에서도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II-35 주거 및 생활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구청 또는 주민센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인지(%)	수혜(%) ¹⁾	만족(%) ²⁾	만족도 ³⁾
저소득 한부모가구 복지자금 대여	시설	282	20.2	8.8	0.0	2.80
	재가	96	31.2	0.0	0.0	0.0
	계	378	23.0	5.7	0.0	2.80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시설	282	29.4	4.8	25.0	3.00
	재가	96	44.8	4.7	50.0	4.00
	계	378	33.3	4.8	33.4	3.33
임대주택지원	시설	282	41.5	7.7	55.5	3.44
	재가	96	58.3	21.4	83.3	4.58
	계	378	45.8	12.1	28.6	4.10
기초생활수급자책정	시설	282	77.7	50.7	45.9	3.56
	재가	96	88.5	54.1	45.7	3.24
	계	378	80.4	51.6	45.9	3.46

* 주: 1) 각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혜여부임.
 2) 매우만족 포함
 3)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④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주민센터(구청)로부터 신청,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의 인지 및 수혜율을 살펴보았다. 제도 각각의 인지 및 수혜율은 시설 생활인과 재가 대상자 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자산형성계좌지원을 제외한 제도 각각에 대한 만족도는 재가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III-36). 다만 아동양육비와 고교생교육비의 경우 인지율에 비해 수혜율이 낮은 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I - 3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구청 또는 주민센터)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인지(%)	수혜(%) ¹⁾	만족(%) ²⁾	만족도 ³⁾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최저생계비 150%이하)	시설	282	60.3	37.6	40.6	3.33
	재가	96	71.9	58.0	45.0	3.48
	계	378	63.2	43.5	42.3	3.38
검정고시학습비 (최저생계비 150%이하)	시설	282	55.3	22.4	60.0	4.14
	재가	96	67.7	29.2	68.4	3.95
	계	378	58.5	24.4	63.0	4.07
고교생 교육비 (최저생계비 150%이하)	시설	282	38.7	17.4	52.6	3.58
	재가	96	41.7	12.5	80.0	4.40
	계	378	39.4	16.1	58.3	3.75
자립촉진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282	33.0	41.9	48.7	3.62
	재가	96	33.3	37.5	66.7	4.00
	계	378	33.1	40.8	53.0	3.71
자산형성계좌지원 (2010년 가입자에 한함)	시설	282	16.3	17.4	75.0	4.25
	재가	96	30.2	34.5	70.0	3.90
	계	378	19.8	24.0	72.2	4.06

* 주: 1) 각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혜여부임.

2) 매우만족 포함

3)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⑤ 위기청소년지원제도

앞서 청소년 한부모가 일반 또래 청소년에 비해 정신건강에 있어 취약함이 노출된 위기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현행 국가차원의 위기청소년지원제도에 대한 인지 및 수혜율을 살펴보았다.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및 지역 교육청 내 Wee클래스와 Wee센터, 두드림존 자립지원사업의 제도 인지율은 12.3% ~ 40.0% 수준에 불과하였다. 수혜율 역시 17.9% ~ 53.3%에 불과하였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높은 학업중단율로 인해 교내 Wee클래스(센터)에 대한 인지율이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비해 낮았으나 수혜율은 오히려 높았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접근과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사업인 두드림존의 경우 이용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센터 접근성과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III-37 위기청소년지원제도 인지 및 수혜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명)	인지(%)	수혜(%) ¹⁾	만족(%) ²⁾	만족도 ³⁾
헬프콜청소년전화 1388	19세 미만	110	40.0	34.1	46.7	3.33
	19세 이상	268	31.3	17.9	53.3	3.53
	계	378	33.9	23.4	50	3.4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세 미만	110	34.5	26.3	60.0	3.80
	19세 이상	268	27.2	26.0	57.9	3.79
	계	378	29.4	26.1	58.6	3.79
Wee클래스(센터)	19세 미만	110	27.3	53.3	56.2	3.81
	19세 이상	268	12.3	33.3	45.5	3.64
	계	378	16.7	42.9	51.8	3.74
두드림존사업 (자립지원)	19세 미만	110	33.6	48.6	55.6	4.06
	19세 이상	268	27.2	50.7	64.8	3.86
	계	378	29.1	50	61.8	3.93

* 주: 1) 각 지원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이들의 수혜여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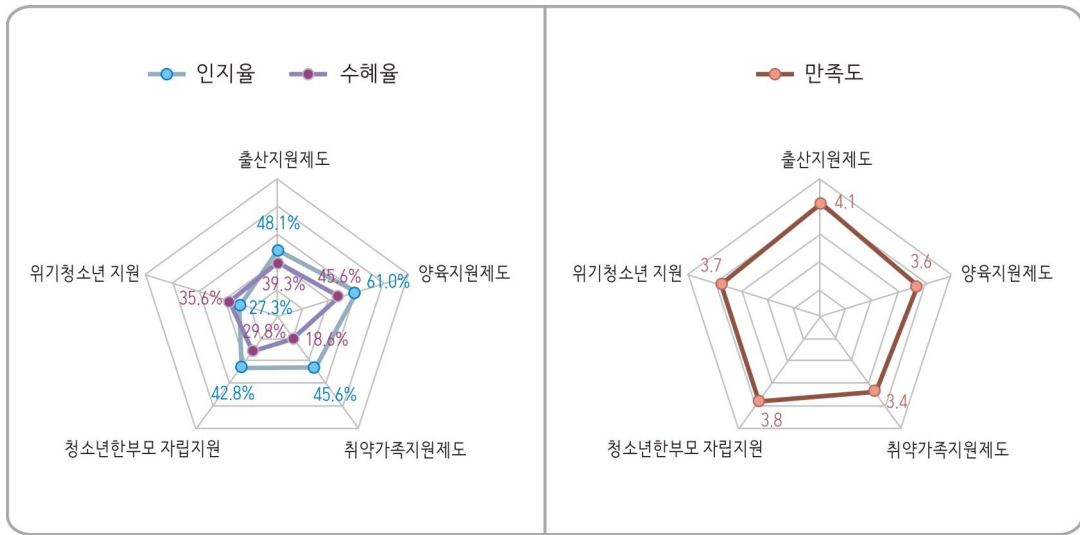
2) 매우만족 포함

3)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함.

이상에서 논의한 출산지원제도, 양육지원제도, 취약가족지원제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5개 영역의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율과 수혜율을 비교하였다(그림 III-48). 전반적으로 제도 인지율과 수혜율은 양육지원제도(61.0%, 45.6%), 출산지원제도(48.1%, 39.3%)가 높았고, 취약가족지원제도의 경우 제도 인지율(45.6%)과 수혜율(18.6%)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중단, 빈곤 등 고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위기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지원제도 인지율(27.3%)과 수혜율(35.6%)이 가장 낮았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역시 인지율(42.8%)과 수혜율(29.8%)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행 서비스 전달 및 지원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지원 제도의 인지율과 수혜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그림 III-49). 출산지원제도의 만족도(4.1점/5점)가 가장 높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위기청소년지원제도, 양육지원제도, 취약가족지원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출산지원제도의 경우 제도에 대한 인지율과 수혜율, 만족도가 동시에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양육지원제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위기청소년지원제도의 인지율, 수혜율은 낮으나 제도 이용 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취약가족지원제도의 경우 임대주택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등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대다수가 희망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인지율, 수혜율,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제도 이용을 위한 문턱을 낮추는 노력과 함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8】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 인지율 및 수혜율

【그림 III-49】 지원제도 만족도(5점)

(8)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영향 요인

① 변인 및 분석방법

여기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심층 분석에 사용된 변인과 기술통계치는 표 III-38에서 제시하였고, 이 가운데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정 결과는 표 III-39와 같다. 분석은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학업지속 여부의 경우 이분변수 형태를 띄므로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이 외 진로 계획 수준, 자아존중감, 우울, 양육효능감은 연속변수의 형태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OLS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III-38 투입 변인 및 기술통계치

변인명	변인 설명	N	M (S.D.)
종속 변인			
학업지속 여부	(더미변수)현재 학업을 지속 중인 경우=1; 현재 학업을 중단한 경우=0	378	0.22 (0.41)
진로 계획 수준	5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5개 문항의 평균값(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378	3.32 (0.84)
자아존중감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4개 문항의 평균값(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378	2.83 (0.51)
우울	지난 6개월 간 4점 척도(①거의 없었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 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로 측정된 11개 문항에 대한 평균값(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단, 일부 문항은 변수값이 클수록 심한 우울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함	378	2.33 (0.52)
양육효능감 1)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7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①전혀 아니다, ②아닌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것의 평균값(나는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단, 일부 문항은 변수값이 클수록 양육효능감이 양호한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함	258	2.98 (0.46)
독립 변인			
근로 여부	(더미변수)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면=1, 그렇지 않으면=0	378	0.13 (0.34)
연령	(더미변수) 만 19세 이상=1, 만 19세 미만=0	378	1.71 (0.45)
양육 여부	(더미변수) 현재 양육 중인 자녀가 있으면=1, 없으면=0	378	0.70 (0.46)
부모 학력	(더미변수) 원가족 부모 학력이 고등교육 이상이면=1, 고졸 이하면=0	335	0.16 (0.37)

변인명	변인 설명	N	M (S.D.)
진로무력감	진로에 대한 무관심이나 무기력을 측정하는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의 평균값(직업을 결정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 나의 진로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	378	2.14 (0.74)
사회적 지원의 종류	도움을 청할 부모, 형제자매, 친지, 친구, 지인, 기관종사자, 학교교사가 있는지 여부(있으면=1, 없으면=0)를 각각 조사한 뒤, 이를 합산하여 구성	377	4.33 (1.82)
사회적 지원의 정도	부모, 형제자매, 친지, 친구, 지인, 기관종사자, 학교교사에 대해 각각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지', '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한 문항의 평균값	370	3.01 (0.85)
부모와의 관계	5점 척도로 측정된 7개 문항의 평균값(부모님께서서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나와 서로의 일상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나와 진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분이다,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364	2.84 (1.05)
정책인지(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1, 모르면=0	378	0.58 (0.49)
정책인지(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1, 모르면=0	378	0.39 (0.49)
정책인지(자립촉진수당)	자립촉진수당 지급 정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1, 모르면=0	378	0.33 (0.47)
정책인지(심리상담 서비스)	심리상담(개인/집단 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으면=1, 모르면=0	378	0.53 (0.50)
정책인지(양육수당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36개월 미만) 양육수당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1, 모르면=0	378	0.71 (0.45)
정책인지(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월 15만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1, 모르면=0	378	0.63 (0.48)
정책인지(임대주택지원)	SH공사 또는 LH공사가 실시하는 임대(국민/영구)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으면=1, 모르면=0	378	0.46 (0.50)
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수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양육수당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의 합산값(최소값 0~최대값 3)	378	1.80 (1.14)

* 주: 1) 양육효능감은 현재 양육 중인 자녀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함.

표 III-39 변인(다항목 척도)별 신뢰도 검증 결과

	진로계획 수준	자아 존중감	우울	진로 무력감	사회적 지지 수준	부모와의 관계	양육 효능감
신뢰도 (Cronbach' α)	.791	.810	.759	.727	.816	.945	.733

② 분석 결과

가. 학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준비 수준 및 심리·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III-40에는 자립 준비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인 ‘학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양육 여부, 원가족 부모의 학력 등 기본 배경 변인이 투입된 모델 I에서는 연령이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19세 미만 집단에 비해 19세 이상 집단이 학업을 지속하고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낮게 추정되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19세 미만 집단에 비해 약 0.4배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exp-.948=0.388$). 그에 비해 양육 여부나 원가족 부모의 학력은 별다른 차이를 가져 오지 않았다.

모형의 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 단계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변인들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계획 수준, 진로무력감 등 심리적 특성 변인을 추가하여 모형Ⅱ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이전 단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연령 변인의 유의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투입한 변인 중에서는 우울 및 진로계획 수준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이 클수록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반면 진로계획 수준과 학업 지속 여부 사이에는 정적(positive)인 관계가 형성되어, 진로계획 수준이 뚜렷할수록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결과는 스스로 장래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고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모형Ⅲ에서는 모형Ⅱ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자아존중감과 진로무력감 변인을

제외하고, 사회적 지지 관련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지지의 종류와 정도, 부모와의 관계 변인을 투입해보았다. 분석 결과, 새로 투입된 변인들의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변인이 투입되면서 이전 단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우울 변인의 유의성이 상실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 간에 공변량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⁵¹⁾

다음으로 모형Ⅳ와 모형Ⅴ는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학업 지속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정책과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학업 지속에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는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반면,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고교생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응답자에 비해 알고 있는 응답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exp 0.696 = 2.007$).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여건에서, 학업을 계속하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일종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에 대해 정책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선순환을 야기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1) 이 같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우울과 사회적 지원 변인 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해보았다. 그 결과, 우울과 사회적 지원의 정도 변인 간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 = -.264, p < .001$).

표 III-40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b(se)	exp(b)
상수	.119 (.806)		.131 (1.474)		.200 (1.350)		.445 (.968)		.281 (.983)	
연령(19세 이상)	-.948** (.278)	.388	-.994*** (.266)	.370	-.932** (.279)	.394	-.993*** (.266)	.370	-1.012*** (.268)	.363
양육 여부(양육)	.379 (.301)	1.461	-	-	-	-	-	-	-	-
부모 학력 (전문대졸 이상)	.106 (.348)	1.112	-	-	-	-	-	-	-	-
자아존중감			-.118 (.964)	.889	-	-	-	-	-	-
우울			-.566* (.043)	.568	-.437 (.279)	.646	-.527* (.264)	.590	-.496† (.265)	.609
진로계획수준			.405* (.027)	1.499	.286† (.168)	1.331	.265(+) (.164)	.164	.284† (.165)	1.328
진로무력감			.240 (.192)	1.271	-	-	-	-	-	-
사회적 지원의 종류					.001 (.082)	1.001	-	-	-	-
사회적 지원의 정도					-.038 (.188)	.963	-	-	-	-
부모와의 관계					.085 (.146)	1.008	-	-	-	-
정책인지(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405 (.270)	1.500	-	-
정책인지(고교생 교육비 지원)									.696** (.260)	2.007
-2 log likelihood	353.836		375.889		360.497		375.449		370.534	
Nagelkerke R^2	.054		.087		.079		.089		.107	
N	335		378		356		378		378	

† p<.10, *p<.05, **p<.01, ***p<.001

나. 진로계획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으로 표 III-41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진로계획 수준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한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스스로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자립준비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배경 변인이 투입된 모형 I에서는 원가족 부모의 학력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부모가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소년 한부모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에 뚜렷하게 진로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배경과 진로 발달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가정배경과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수준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환식, 류창열, 1993; 차재권, 1998). 학력이 높은 부모가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데, 이처럼 사회적 위신이 높은 직업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진로 탐색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차재권, 1998).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 집단에서도 부모의 계층에 따라 재산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원가족 부모를 둔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진로계획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원과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 자원의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모형 II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변인들을 제외하고,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정서적 변인을 추가해보았다. 그 결과, 부모 학력 변인의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투입한 변인 중에는 자아존중감이 $p<.001$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보다 뚜렷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나갈 가능성이 큼을 보여준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들을 투입한 모형 III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부모와의 관계가 투입되면서 부모 학력 변인의 효과 크기와 유의도가 모두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 학력 변인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고학력 부모를 둔 청소년 한부모가 원가족 부모와의 관계도 더 원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⁵²⁾

마지막으로 정책 인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립촉진수당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를 변인으로 추가한 모형Ⅳ에서는 자립촉진수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모르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둔 지원프로그램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으면서 자녀의 연령이 만 24개월 이하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요체로 삼는다(백혜정 외, 2012a). 자립촉진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로계획 수준이 높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지원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표 III -41 청소년 한부모의 진로계획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b	se	b	se	b	se	b	se
상수	3.109***	.180	2.083***	.391	1.639***	.286	1.654***	.258
연령(19세 이상)	.063	.099	—	—	—	—	—	—
양육 여부(양육)	.133	.098	—	—	—	—	—	—
부모 학력(전문대졸 이상)	.307*	.120	.233*	.114	.206†	.116	.213†	.113
자아존중감			.495***	.090	.503***	.092	.478***	.087
우울			-.074	.089	—	—	—	—
사회적 지원의 종류					.016	.028	—	—
사회적 지원의 정도					-.019	.062	—	—
부모와의 관계					.084†	.047	.082*	.041
정책인지(자립촉진수당)							.227*	.090
Adj. R^2	.018		.119		.123		.139	
N	335		335		314		32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52) 실제로 부모 학력 변인과 부모와의 관계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자 간에 $r = .121(p < .05)$ 의 정적 상관계수가 도출되어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

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서 학업 지속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우울감이 심할수록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또한 진로계획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 상태가 자립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방증한다. 이에 여기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III-42에 정리되어 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 배경 변인이 투입된 모형 I에서는 연령, 양육 여부는 자아존중감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가족 부모의 학력은 $p<.10$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부모를 둔 경우에 비해, 원가족 부모가 전문대졸 이상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II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령과 양육 여부 변인을 제외하고, 청소년 한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새로 투입된 변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의 종류와 정도가 모두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집단의 종류가 다양하고,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변인들이 투입되면서 부모 학력의 유의성이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학력이 사회적 지원에 의해 매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⁵³⁾ 상대적으로 원가족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보다 풍부한 사회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상술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열악한 가정환경의 청소년 한부모는 자아존중감 발달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처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는 가족해체를 경험한 비율도 높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발달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할 개연성이 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의 종류와 정도가 투입되면서 부모 학력 변인의 유의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이 같은 가정환경의 효과를 사회적 지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53) 이 같은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부모 학력과 사회적 지원의 종류 및 정도 변인 간의 공변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의 종류와 부모 학력 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r=.109$, $p<.05$) 상술한 가능성을 뒷받침하였다.

즉 가정환경보다는 사회적 지지가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 친지, 선후배·이웃 등 지인, 기관 종사자, 학교 교사 등 청소년 한부모 주변의 유의미한 타인들(significant others)의 도움이 있다면, 가정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형Ⅲ에서는 정책 인지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한 지원 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p<.05$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2 청소년 한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b	se	b	se
상수	2.837***	.113	1.990***	.135	1.909***	.127
연령(19세 이상)	-.036	.063	-	-	-	-
양육 여부(양육)	.079	.062	-	-	-	-
부모학력(전문대졸이상)	.131 †	.075	.088	.071	-	-
사회적 지원의 종류			.073***	.017	.061***	.015
사회적 지원의 정도			.180***	.037	.192***	.030
부모와의 관계			-.007	.029	-	-
정책인지(심리상담 서비스)					.124*	.050
Adj. R^2	.006		.115		.127	
N	335		314		370	

† $p<.10$, * $p<.05$, ** $p<.01$, *** $p<.001$

라.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III-43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울의 경우에는 연령, 양육 여부, 부모 학력 등 기본 배경 변인들이 모두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모형 I 참조). 반면 모형Ⅱ에서 투입한 변인들 중에는 사회적 지지의 종류와 정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또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변의 유의미한 타인들과의 교류가 청소년 한부모의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무척 유효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 결과와는 달리, 심리상담 서비스 인지 여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모형Ⅲ 참조).

표 III-43 청소년 한부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b	se	b	se	b	se
상수	2.322***	.115	3.007***	.130	3.036***	.129
연령(19세 이상)	.008	.063	—	—	—	—
양육 여부(양육)	.004	.062	—	—	—	—
부모학력(전문대졸이상)	-.058	.076	—	—	—	—
사회적 지원의 종류			-.035*	.016	-.041**	.015
사회적 지원의 정도			-.153***	.036	-.176***	.031
부모와의 관계			-.024	.029	—	—
정책인지(심리상담 서비스)					.010	.051
Adj. R^2	.002		.074		.080	
N	335		356		370	

† p<.10, *p<.05, **p<.01, ***p<.001

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가 표 III-44에 정리되어 있다. 양육효능감이란 부모로서의 성공적인 수행 능력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내리는 판단 또는 기대감을 일컫는 개념으로, 양육행동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하지영, 서소정, 2010; 권정윤 외, 2013에서 재인용). 특히 영유아의 경우 성장 발달 과정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신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양육효능감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⁵⁴⁾ 먼저 모형 I에서는 연령, 부모학력과 같은 기본배경변인을 비롯해 학업지속 여부 및 근로 여부 등 자립 준비

54) 양육효능감에 대한 설문은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분석에 투입된 사례 수는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이라고 응답한 265명을 일차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아, 각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에 충실하게 응답한 사례들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노력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나 부모의 학력, 학업지속여부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근로 여부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169, p<.05$). 이러한 결과는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Ⅱ에서는 자아존중감, 우울, 진로계획 변인이 추가되었다. 모형Ⅱ에 대한 추정 결과, 이전 단계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된 근로 여부 변인의 유의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투입한 변인들 중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고 우울감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은 제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형Ⅲ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관련한 변인들이 추가되었다.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이나 우울에 대한 분석과는 달리, 양육효능감의 경우 사회적 지지 변인의 유의성은 감지되지 않았다.

모형Ⅳ~모형Ⅶ은 정책 인지 효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양육 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실제로 양육효능감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양육수당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효과를 살펴본 모형Ⅳ에서는 분석에 투입된 다른 변인들의 효과가 모두 통제된 후에도 양육수당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유의하게 제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175, p<.05$). 다음으로, 월 15만원씩 지급되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역시 양육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해당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모르는 경우에 비해 양육효능감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모형Ⅴ 참조, $b=.138, p<.05$).

모형Ⅵ에서는 임대주택지원과 같은 주거지원정책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가 간담회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일자리를 얻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중요한 선결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주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좀 더 안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갈 가능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이 자녀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지원정책 중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지율이 가장 높고 만족도도 가장 양호하게 도출된 임대주택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b=.089, p<.10$). 이러한 결과는 주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들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모형Ⅶ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 응답값을 합산하여, 좀 더 다양한 양육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양육효능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알고 있는 지원정책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양육효능감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b=.080, p<.01$).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다양한 공적 지원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일종의 심리적 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단지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써 양육효능감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III-44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모형 IV	모형 V	모형 VI	모형 VII
	b(se)	b(se)	b(se)	b(se)	b(se)	b(se)	b(se)
상수	2.860*** (.137)	2.201*** (.232)	2.226*** (.265)	2.164*** (.229)	2.178*** (.228)	2.272*** (.225)	2.154*** (.227)
연령(19세 이상)	.056(.074)	—	—	—	—	—	—
부모학력(전문대졸이상)	.043(.082)	—	—	—	—	—	—
학업지속여부	.007(.071)	—	—	—	—	—	—
근로여부	.169*(.081)	.166*(.068)	.154*(.072)	.151*(.067)	.172*(.067)	.153*(.068)	.152* (.067)
자아존중감		.308*** (.055)	.331*** (.058)	.330*** (.051)	.333*** (.051)	.328*** (.052)	.322*** (.051)
우울		-.124* (.051)	-.119* (.055)	-.128* (.051)	-.118* (.051)	-.128* (.051)	-.124* (.050)
진로계획		.050(.032)	—	—	—	—	—
사회적 지원의 종류			.012(.016)	—	—	—	—
사회적 지원의 정도			-.032(.038)	—	—	—	—
부모와의 관계			.042(.030)	—	—	—	—
정책인지(양육수당지원)				.175*(.072)	—	—	—
정책인지(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138*(.057)	—	—
정책인지(임대주택지원)						.089† (.051)	—
정책인지 수준							.080** (.027)
Adj. R^2	.009	.238	.217	.248	.248	.240	.257
N	231	258	243	258	258	258	258

† $p<.10$, * $p<.05$, ** $p<.01$, *** $p<.001$

2.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조사⁵⁵⁾

1) 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병행하여 양적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심도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은 미혼모/미혼부, 미성년/성년, 시설/재가, 자립성공 여부 등 상황별 분포를 고려하였으며 여성 15명, 남성 5명으로 총 20명이다. 연구대상은 2차년도 연구목적에 따라 유의표집하였다. 먼저, 2012년도 1차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 중 재가/양육 중인 사례를 6명 포함하였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의 양육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변화 등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둘째, 청소년 미혼부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청소년 미혼부 지원 사례를 파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명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졌다. 셋째,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재가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담당자, 앞서 표집된 청소년 한부모를 통해 눈덩이 표집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의 동거 커플이 포함되었으며(3개 커플, 총 6명) 이들은 법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들이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다양한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동거커플을 면접대상에 포함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의 범주와 사례 수는 표 III-45와 같다.

표 III - 45 청소년 한부모 면접대상자의 집단별 범주와 사례수 (N=20)

집단별	범주	사례 수	비고
미혼모/미혼부	미혼모	15	
	미혼부	5	
배우자비동거/ 배우자동거	비동거	14	
	동거	6	3개 커플
재가/시설*	재가	16	
	시설	4	

* 주: 1) 모자가족복지시설

55) 이 절은 방은령 교수(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가 집필함.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진(이하 면접원)이 직접 진행하였으며⁵⁶⁾ 수차례 연구진 회의를 통해 면접내용과 면접과정에서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기간은 2013년 7월 16일에서 8월 13일까지이며 피면접자의 집이나 거주지 인근의 공원, 카페, 시설의 상담실 등에서 면 대 면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한 사례 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모든 면접과정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고, 녹음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질문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⁵⁷⁾.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응답자가 처한 상황과 의도하는 바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내용을 가능한 그대로 기술하였다. 심층면접의 진행과정에 대한 개요는 표 III-46와 같다.

표 III-46 심층면접진행과정에 대한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면접참여자 표집과정	- 2012년 1차년도 심층면접 대상 중 최종 6명 유의 표집 - 시설 및 기관 추천 등 신규 면접 참여자 14명 확보
면접참여자 수	- 청소년 미혼모 15명, 청소년 미혼부 5명 등 총 20명 - 동거중인 세 사례(총 6명) 포함
면접참여자 특성 개요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미혼부 또는 미혼모
면접방식	반구조화 개별 면접
면접 시간 및 횟수	사례당 1~2시간, 사례당 평균 1회 (필요시 2회까지 추가 면접)
면접자료 기록 및 녹취	피면접자의 사전 동의 하에 기록 및 녹취, 전사
면접원	연구진 3명

2) 심층면접 내용 및 면접대상 집단별 특성

심층면접은 청소년 한부모의 전반적인 생활실태,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보장 실태, 학습권을 포함한 자립 여건에 대한 파악, 정책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험을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과 배우자와의 관계 및 사회지원에 초점을 두고 전반적인 양육과정, 학업, 경제적 자립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양육에

56) 면접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내부 연구진 2인, 외부 공동연구원 1인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었다.

57) 면접을 진행하기예 앞서, 피면접자에게 연구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사후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면접내용을 연구목적에 위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면접자의 동의를 구하였다.

대한 부분은 2012년도 1차 면접에 참여하였던 청소년 한부모(양육 1년 이상 한부모)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2013년도에 새롭게 표집한 청소년 한부모는 동거 중인 커플과 청소년 미혼부와 청소년 미혼모 집단으로 구분하여 임신배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양육 상황을 질문하였다. 심층면접에 필요한 질문은 구조적/반구조적으로 구성하여,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피면접자가 직접 응답지에 기술하게 하고, 심층문항에서는 면접원이 피면접자의 진술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면서 진행하였다. 모든 면접내용은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고, 추후 전사 후 녹음내용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하였다. 내용분석의 분석범주는 양육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제반 경험들과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실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체감 효과 및 요구사항 등이다. 면접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 III-47이다.

표 III-47 양육 청소년 한부모 심층면접 주요 내용

시간	항목	내용	세부 내용
↑ 임신 전 · 임신 중 · 출산 · 양육 · 현재 · 미래 ↓	본인과 원가족	생활환경	· 임신 전·후 환경(1년차) 지난 1년간 변화(2년차) · 가족과 주변의 지지체계 등
		기본권	·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배경, 자기결정능력 · 차별 경험, 차별에 대한 인식 · 학습권, 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등
	배우자(가족) (미혼부/모)	책임 공유	· 현재 교류 상태 · 양육비 지원 상황 등
	사회지원	서비스	· 사례별 수혜 내용
		자립여건	· 양육, 취업, 주거 등 자립 여건, 학업, 구직 상황 · 진로, 미래 준비, 자립 (성공)요인 등
		정책요구	· 서비스 내용 및 전달체계 만족도, 서비스 이용 불편 · 전반적인 제도 개선 요구

면접대상자는 사례별로 고유번호 C1-C20을 부여하였고, 남자 청소년 한부모는 M(예, C14M), 여자 청소년 한부모는 F(예, C1F)로 표시하였다. 고유번호별 양육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은 표 III-48~50과 같다. 연령분포는 만 16세에서 24세이며, 이 중 18명은 양육 중인 경우이며, 2명은 출산을 앞둔 사례(남1, 여 1)이다. 이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현재 중퇴 1명, 중졸 1명,

고재 2명, 고교중퇴 5명, 고졸 9명(검정고시 5명 포함), 대재 1명, 대졸 1명으로서 고졸 미만이 9명이며, 재학중인 경우는 3명(대1, 고 2)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및 경기도(일산, 군포, 하남, 평택), 충청권(대전), 호남권(전주), 영남권(칠곡)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면접 시 15사례는 자녀가 1명, 2사례는 첫 자녀 임신(커플 1), 3사례는 자녀가 두 명이었다⁵⁸⁾.

원가족배경을 살펴보면, 20사례 중 원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8사례이고⁵⁹⁾, 12사례는 부모의 사망, 이혼, 재혼, 방임 등으로 인해 함께 거주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경제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면접대상자 대부분은 정부지원과 시설 원조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고, 근로 중인 5사례의 경우도, 2명만 고용형태가 정규직이었을 뿐(C10M, C17F) 3사례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임시직이었다.

표 III-48 심층면접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양육 1년 이상 한부모)

고유 번호	성별	나이	자녀 나이 (개월)	시설 /재가	기초 생활 수급 여부	학력	근로 여부 /직종	근로 형태	지역	면접 장소	비고
C1F	여	24	여23	재가	0	고졸 (검정고시)	x	x	서울	집	독립
C2F	여	22	남31	재가	x	고졸 (검정고시)	x	x	서울	카페	독립
C3F	여	22	남12	재가	0	고 중퇴	x	x	경기	집	독립/검정고시 준비
C4F	여	20	여20	재가	x	대재	x	x	서울	공원	친부모와동거
C5F	여	19	남20	재가	x	고중퇴	x	x	경기	카페	친부모와동거/ 검정고시준비
C6F	여	19	여30	재가	x	고졸 (검정고시)	x	x	경기	카페	친부모와동거

58) 이중 2명은 동거커플이며, 나머지 한명은 첫 번째 자녀를 입양 보낸 상태에서 두 번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59) 이 중 한사례는 모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였고(C8M), 3사례는 현재 시설에서 생활 중이어서, 실제로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는 4사례에 불과하였다.

표 III-49 심층면접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동거 사례)

고유 번호	성별	나이	자녀 나이 (개월)	시설 /재가	기초 생활 수급 여부	학력	근로 여부 /직종	근로 형태	지역	면접 장소	비고
C7F	여	17	임신9	재가	x	고중퇴	x	x	대전	공원	연번8과동거
C8M	남	18	임신9	재가	x	고중퇴	근로/유통	임시	대전	공원	모, 연번7과 동거
C9F	여	18	남8	재가	0	고졸	x	x	대전	집	연번10과 동거
C10M	남	20	남11	재가	0	중졸	근로/판매	정규	대전	집	연번9와 동거
C11F	여	18	남16 /남1	재가	0	고졸	x	x	대전	집	연번12, 친남매와 동거
C12M	남	18	남16/ 남1	재가	0	고졸	x	x	대전	카페	연번11과 동거

표 III-50 심층면접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청소년 미혼부·모)

고유 번호	성별	나이	양육 자녀 나이 (개월)	시설 /재가	기초 생활 수급 여부	학력	근로 여부 /직종	근로 형태	지역	면접장 소	비고
C13F	여	20	남17	재가	0	고졸	근로 /미용	임시직	대전	집	독립
C14M	남	20	남34	재가	x	고졸 (검정고시)	x	x	경북	카페	1년간고정 직근로경험/ 현재무직
C15M	남	24	남23	재가	x	대졸	근로/ 父지원	임시직	전북	카페	가업도움/ 부모와동거
C16F	여	19	남39 (입양보냄) 여3	시설	x	중중퇴	x	x	대전	시설	1회입양/ 친부와동거/ 母사별
C17F	여	19	남25	재가	x	고졸 (검정고시)	근로/ 사무원	정규직	서울	카페	독립
C18F	여	16	남10	시설	x	고재	x	x	경기도	시설	친조부모, 친부 동거
C19F	여	20	여47	시설	x	고중퇴	근로/ 판매원	임시직	서울	시설	친부모, 자매 동거
C20F	여	17	여7	시설	x	고재	x	x	서울	시설	

3) 1년 이상 양육 경험자

(1) 전반적인 생활환경

① 생활안정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작년에 비해 점차 생활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을 받거나 원가족이나 자조모임과 같은 지지기반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C1F: 안정이 됐구요....작년에 또 중요한게 10월부터 희망마루라는 사업이..그것 때문에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구 .. 어느 정도 저축도 하구 안정적으로 좀 살고 있는거 같아요.

② 엄마역할에 대한 적응과 아기의 발달

면접대상자들은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양육환경에 잘 적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자녀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양육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엄마로서의 역할도 점차 익숙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C1F: (얘기하고) 여행가는거 신청해서 , 네..... 캠프같은 거요.. 여름캠프나.. 그런거.. 뭐 횡성도 갔다 오고 무주도 갔다 오고 이랬어요. 하하....딸한테 많은 경험을 좀 시켜줄려구..

C6F: 지난 1년 동안.. 어린이집 보내구.. 그리고 저는 KT 콜센터에서 4개월 일하다 그만뒀어요. .. 말로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 되어 있는데.... 늦으면 8시가 넘을 때도 있고 ... 어린이집은 5시에 끝나는데.. 제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엄마, 아빠. 오빠 셋이 번갈아 가면서 아기 하원을 시켜요. 이러다 보니까 아빠도 오빠도 약속이 있을 수 있구.. 일하는데 (아빠 오빠가) 전화해서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두 신경쓰이구.. 콜센터 관두고, 아기가 어린이집 가거나 밤에 잘 때 틈틈이 알바하면서 지내요. 지금은 힘든 일은 별로.. 돈 빠곤 힘든 게 없거든요(웃음) .

또한 아기가 커가면서 아기 발달에 맞는 엄마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C4F: 애가 조금 언어발달이 제가 보기엔 느려서.. 지금까지진 .. 책은 있는데 별로 안 읽어줬거든요..
이제는 책을 많이 읽어줄려고 해요.. 하루에도 한 시간 두 시간 좀 집중적으로 놀아줄려고 하고..
..애기한테 책보는 습관이 중요할 거 같아서 책을 보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도.. 사교육비 절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아기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그 동안 아기가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은 없으며, 신체발육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자녀의 나이는 12개월에서 31개월까지로서 이 중 세 명(C2F, C5F, C6F) 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아기들은 어린이집에도 잘 적응하고 있었다.

C6F: 아기가 우량아예요. 좀.. 애들보다 조금 더 나가요. 애기가 자라면서 뭐 힘들어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픈 적도 없던 거 같고.. 간단한 감기빼고는.. 성격도 밝구..

③ 원가족과의 관계

면접대상자들과 원가족과의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훨씬 더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혹은 양육을 반대하고 면접대상자들을 냉대했던 원가족들도 아기가 자라면서 교류를 재개하고 양육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대상자들 중 3명은 친부모와 함께 살면서(C4F, C5F, C6F), 양육과정에서 친부모(아기의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있었고, 친부모와 떨어져 자녀와 살고있는 경우도(C1F, C2F, C3F), 원가족과 교류하면서 양육과정에서 친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원가족 중 부모(아기의 외조부모)와는 갈등이 계속되더라도 아이는 예뻐하여(C1F, C2F), 학원에 가거나 일이 있을 때, 육아에 도움을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었다(C1F, C3F, C5F.).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출산 시나 1년 전에 비해 원가족들이 자신에게 더 잘 대해주며, 아기로 인해 관계가 더 원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C3F: 엄마랑(아기 외할머니) 애기 가졌을 때는 인연 끊었다가 지금은 다시 엄마랑 애기해요.
엄마가 애기 되게 예뻐해주셔서 자주 만나요. 엄마는 아기를 하루라도 안보면 난리나요. 보고싶다고
...그리고 엄마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나보고 애기 낳지 말라고 했는데.... 애기한테 미안하
다고

C4F: 계속.. 그 엄마아빠랑 같이 여기서....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그 동안 (부모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웃음) 처음엔 시설에 들어가라고.. 근데 막상 .. 못 들어가겠는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눌러앉게 됐어요.. (웃음)그래서 나중에는 엄마아빠도 일단은 그냥 순산하구(입양보내자) ..그리구 애 넣고.. 애기얼굴을 보니까 또 차마 못 보내시겠는거죠.. 원래 입양 보내고 집에 들어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받아준다고.. 근데 일단은 같이 살게 되면서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신거죠. 뭐 넣고 나서는 입양말씀 절대 안 꺼내셨죠.. 애기두 지금 너무 재롱도 잘 부리구.. 엄마아빠가 너무 좋아하세요.

④ 엄마 자신의 발달에 대한 관심

면접대상자들은 지난 1년동안 자녀양육환경에 점차 적응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발달을 위한 생활을 다시 구성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C4F는 다니던 대학에 복학을 하였고, C5F는 내년 대학입학을 목표로 검정고시와 수능준비를 동시에 하고 있었으며, C1은 딸이 3살이 되면 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C2F와 C6F는 대학진학엔 관심이 없으나,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아기가 어린 C3F도 고졸자격을 따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섯 사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C4F: 그 전보단 확실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복학하면서 학교생활을 많이 하다보니 까.. 주 양육자도 제가 아닌 저희 엄마가 된 것 같고.. 조금.. 학생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애기 위주로 살았다면 요즘엔 조금.. 저를 위해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C1F; 하하.. 지난 일 년 간 어.. 자격증도 이제 몇 개 따고..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 주셔서지구 네일아트를 따고.. 방과 후 지도사도 따고 그랬거든요.. 바쁘게 살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애기랑 또.. 여행 같은 게 또 많이 들어와서 신청해서 또 많이 다니고.....

C5F: 저는 공부만 하는 거 같아요. 그 동안 청소년한 부모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그러한 교육으로) 전문적인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잘 키우려면 전문적인 일을 해야 해요. (일산에 있는 학원에서) 하루종일 공부.. 검정고시 보고 수능을 봐서 대학에 진학할거예요.

⑤ 청소년한 부모 자조모임의 기능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청소년 한부모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자조모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정기적인 모임은 한달에 1회 모이거나 분기별로 모였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지원을 제공받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자녀들 간 교류의 장을 만들거나 함께 야유회나 여행을 가는 등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었다. 또한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지원과 양육 및 제반 영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교를 나누며,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C1F: 네 같은 애 엄마들 끼리 모여서, 00이 또래의 애들 다 같이 여행도 신청해서 가구..
또 이제 모임 같은 거 자주 모임면서 또 만나서 (즐겁게) ...한 달에 한 두 번씩

C4F: 애란원에서 엄마들끼리 한 달에 한번 정도 모여서 ... 그날 애기도 나들이 하구.. 엄마들도
엄마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런 거.. 문화생활처럼.. 그냥 좀 쉴 수 있는 그런 것두
괜찮은 것 같아요..

C5F: 중앙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에 갔어요. 아이랑 같이 키즈캠프에 참여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조모임에서 회원 간 갈등도 일으키는데, 타인에 대해 비방하거나 뒷담화를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서로 간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C1F: 힘들었던 거는 미혼모들 모임.. 좀 화가 난 게 미혼모들 모임이 있으면 꼭 남의 말을
하고 다니면서 . 남이 뭐를 받느니.. 자기는 뭐 이거 안 받느니 이러면서 불평불만 하고 남의 홍보고..
웃긴 거는 A가 B랑 있으면 C욕을 하면서 또 A가 C한테 가면은 또 B욕을 하고 이런식으로.. 어느
센터에 가든지.. 꼭 그런 엄마들이 한두 명씩 있어서.....

(2) 기본권 보장 실태

면접대상자들은 지난 일 년 동안 양육과정 및 자신의 발달과 관련된 문제해결과정에서 의사결

정능력은 증가하였으나, 주변에서 차별을 받고 학습권에서도 제한을 받았으며,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서비스 받을 기회를 일부 놓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생존과 발달과 보호 및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해당된다.

①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양육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은 양육과 취업사이의 선택, 진학문제, 아기아빠와의 교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부터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취업을 하도록 권유받았으나, 아기의 초기발달과정(최소 3년)을 엄마가 직접 양육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양육을 선택하여, 취업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대신에, 현재 모두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있었다(C1F, C2F, C3F, C6F). C4F와 C5F의 경우도 자녀양육을 최우선시하고 있었으며, 비록 부모 혹은 자신의 의지로 학업과정에 있었지만, 부모님이 양육을 전담하고 있어서 양육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였다. 한편 C2F나 C6F는 초기에 취업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취업 여건이 아기 양육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취업을 포기하고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결정능력을 모든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취업을 선택하고자 하였으나, 취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은 오히려 취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권유나 정책방향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양육을 위해 자신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측면은 양육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5F는 아기가 1살이 지나면서 취업대신에 대학진학의 길을 선택하였고(현재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에 다님), C4F는 휴학 중이던 대학에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이 두 사례도 취업보다는 아기양육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고, 자녀와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대학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경우였다.

C1F: 어린이집은요 아직 세 돌까지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다는 신념이 강해서 (웃음).. 왜냐면 저도.. 두 돌전에.. 엄마가 어린이집에 보냈거든요... 그때 애착불안이 되게 좀 심해서.. 그계.. 사실.. 평생 좌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애착관계가.. 그런 거 때문에 불안감도.. 전혀

없진 않고.. 그 정서적인 면을 좀 안정시키려고 ..어린이집은 3살 가서 보내려고

또한 아기 아빠와의 교류문제에서도 의사결정능력은 증가되었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아기아빠와의 교류여부, 교류방법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였는데, C1F와 C5F는 아기 아빠와 교류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연락을 단절하였으며, C2F와 C6F는 교류는 하지 않더라도 아기에게 필요한 경우 연락만 하고 있었다. C3F는 아기 아빠와 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기 할머니의 요구에 의해 할머니와 교류하고 있었으나, 교류를 계속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었고, C4F도 아기 아빠와 비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었으나 아기 친할머니의 반대로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빠와의 교류를 지속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증가되었더라도 아기 아빠와의 교류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섯 사례 모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자기 결정권이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는 여전히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다. 집주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인 이들의 약점을 이용한 일로 상처를 받거나 (C1F),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와 굵지 않은 시선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으며(C4F), C2F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교사가 미혼모 엄마를 둔 자신의 아이를 성의껏 돌봐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상처를 많이 받았다. 한편, C5F는 학원 또는 주거지역에서 친구관계가 소원해지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자신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C1F: 더 큰 상처는 심리적인거 같아요 물리적인거는 뭐 어쨌든 버텨나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집주인이 제가 미혼모인걸 아세요. 이런저런 지원을 받는단 걸 알고 쌀도 들어오고 김치도 들어오고.. 그거를 자기한테 싸게 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기가 막혀서) 며칠 전에는 보일러 새 거 달았거든요. 근데 보일러 기사가 저보고 수리비 5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아 집주인한테 받으시라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바꿔드렸어요. 스피커폰으로 켜봤는데 집주인이 아 뭘 돈을 받아 그 여자 미혼몬데 불쌍해 받지마 이런식으로 얘길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가 내야 되는 걸 나를 팔아가지고 안 내려고... 너무 화가 나서 바꿔달라... 집주인한테... 미혼모라는 얘기 거기서 왜 나오냐고 막 따졌어요 아저씨가 내야 되는 돈을.. 내가 미혼모인걸 왜 팔아먹냐.. 그런 식으로

이용 해먹는게 너무 황당하고 아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너무 좀 힘들었어요.

C4F: 사회적 시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 같아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한번은 보건소에 갔었어요. 산전검사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말하자마자 혼인신고가 안 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그대로 나왔었죠.. 후에 애기 낳고 나서 BCG예방접종하러 가니까... 그때(그분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를 찾으러 나왔는데 제가 없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었죠.. 문전박대를 당해가지구 아주..(웃음) 그때 이후론 진짜 보건소를 아예 안 갔죠.

C5F: 제가 말하면... 학원에서도 사람들이 멀리할거고... 더 이상 친구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소문이 짝 돌고 그럼 고등학교 아이들도 알게 될거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동네에서는 아기가 엄마(아기의 외할머니)의 아들인 줄 알아요.

③ 학습권

면접대상자들 중 세 명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임신사실을 숨기고 고등학교를 다니거나(C6F), 다니던 고등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거나(C5F, C6F), 일정기간 휴학을 한(C4F) 경우였다⁶⁰⁾. C6F는 임신 8개월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자퇴를 하였는데, 자퇴이유를 쓸 때에도 임신사실을 숨긴 채 ‘학교를 다니기 싫다’고 기재하였다. C5F는 임신으로 인해 시설 안의 대안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위탁교육이 너무 단순하고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였다. 한편 C4F는 당시 대학생으로서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학교와 주변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을 하였다. 현재 C4F는 복학하고, C6F는 검정고시로 고졸학력을 취득하였으며, C5F는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혼전임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특히 학교는 학생의 임신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퇴 사유에서도 임신사실을 말하기 힘든 분위기라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C6F: (임신 8개월까지 학교에 다녔는데) 한 교실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실과 과학실, 이 건물 저 건물 이동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배가 부른데(허리를 복대로 동여매고), 일층에서

60) C1F, C2F, C3F는 고교 자퇴 후 임신을 하게 된 경우이다.

오층까지 왔다갔다 하는 게 힘들고, 졸리고... 졸린데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서 잠도 못자고...

한편,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에 임신한 C1F와 C2F는 고졸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C3F는 고졸학력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검정고시에 합격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C1F C2F C5F C6F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을 받아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C5F는 현재 학원에서 검정고시와 수능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과 희망마루(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C1F: 저는 대학교를 꼭 가고 싶어서 1년 후에는 아마 (수능)시험 볼 거 같아요. 애기가 세 살이 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공부해서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시험 준비를 일 년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요. 취업준비 하고 있으면 또 유지가 되고... 저 같은 경우 수능시험 준비 하겠다고 일 년을 학원 다니는 증빙이 있으면 된대요. 단과반이라도 조금씩 다녀서 내면 애기는 어린이집 다니고 저는 공부하고 수능시험 치르고 그렇게 대학교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면접대상자들은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나 주민센터 및 지역사회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연계나 자격증 취득 및 취미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었다.

C1F: 지난 일 년 간 자격증도 몇 개 따고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주셔서 네일아트 따고 방과 후 지도사도 따고 그랬거든요. 바쁘게 살았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은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보장되지만, 학교와 같은 교육제도 안에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정보제공과 참여기회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지원제도를 찾아내고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상황이었다. 정보력이 부족한 사례의 경우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C3F와 C6F는 희망마루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에 살고 있었으나 사업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도 C1F를 제외한 네 사례(C2F, C4F, C5F, C6F)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면접대상자들은 평소에 자조모임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사회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사례에 따라 해당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C1F: (지원제도에 대해)제도적으로 정확하게 누군가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가 정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공식적인 루트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찾거나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C4F: 동사무소 뭐 구청 솔직히 그런데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다 찾아서 했거든요. 진짜 그러고 담당 공무원이 지원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책을 찾아보시기도 하고 제가 동사무소에 가면 제가 한부모라는 걸 아세요. 아시는데 좀 능동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세요. (담당직원)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너무 무지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⑤ 서비스 내용과 접근성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지원은 지역사회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대상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3) 일산(1) 군포(1) 하남(1)이었는데,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서비스 내용과 이용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C5F: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카페도 만들어서 온갖 정보를 다 공유하고 한부모들에게 정보제공도 많이 하고, 엄마들이 뭐 신청하면 바로바로 다 알려주고 해주는데 여기는(일산지역) 그런 거 전혀 없어요.

C3F: 영양플러스 그거 신청하려고 보건소에 연락해도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언제 보라고 해서 그때 들어가도 (날짜)안 나오고 결국신청하지 못해 뭐 제대로 말해주는 게 없어요(하남시)

(3) 아기 아빠와의 관계 - 양육책임 공유문제

① 교류 상황

아기 아빠와의 교류는 사례마다 달랐는데, 아기아빠와 전혀 교류가 없는 경우(C1F, C5F), 엄마가 아빠와의 교류는 원치 않으나 아기와 아빠(혹은 아빠의 부모)는 교류하는 경우(C2F, C3F, C6F),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사이는 나쁘지 않으나 아기할머니(친할머니)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경우(C4F) 등이 있었다.

C4F: 말하자면 시댁? 그쪽이랑 성격이 좀 유별나셔서 잦은 마찰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애기를 한두 번 보여 드리니까 애기는 좋아하시니까 가끔이지만 그래도 아빠하고는 교류를... 애가 가끔씩 아빠를 봐도 아빠인 줄을 알아요. 가끔 전화통화도 하고...

C1F와 C5F는 아기 아빠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서, 아빠의 존재가 자녀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엄마 쪽에서 연락을 먼저 끊은 경우인데, 현재도 이와 같은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C3F의 경우 아기 아빠와는 전혀 교류하지 않고 있으나⁶¹⁾, 아기 아빠의 부모가 손자를 예뻐해서 한 두 번 할머니와 만나거나 전화교류를 하고 있었다. 반면, C2F, C4F, C6F은 아기와 아빠 간에 자주는 아니지만 비정기적으로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대부분 아기 아빠 쪽 요구에 의해서였다. 또한 아기가 아프거나 명절 혹은 아기 생일 등 특별한 날이면 아기 아빠가 약간의 현금이나 아기 선물을 사 주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는 아기 아빠가 자발적으로 했다고보다, 엄마가 다급한 상황에서(예, 아기가 아플 때 등) 연락하여 응한 경우가 더 많았다.

C6F: (아기아빠가 지방에서 근무) 1년에 한두 번? 명절 이때나 가끔 (아기아빠 원가족이 C6F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음) 오면 가끔 만나기도 해요 이번 년도엔 설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만나서 제가 애기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신발이랑 애기 옷 하나 이렇게 사주고 가고... 현재 아빠호적에 아이가 올라가 있어서 갈등 중...

61) 임신 6개월 쯤 되었을 때 아기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C3F를 내쫓았다고 한다. 출산 후 근래까지 C3F가 연락을 하면 폭언을 일삼으며 자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그동안 C3F는 아기아빠가 자신과 아기에겐 돌아오기를 소망했으나 지금은 마음이 돌아선 상태이다.

② 양육비지원

한편, 면접대상자 모두 아기 아빠로부터 정기적으로나 혹은 비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늘어나게 되므로 앞으로 증가하는 양육비를 걱정하고 있었다.

C4F: (아빠 쪽에서는 전혀) 양육비 그런 건 없어요. 얘기는 하기도 했었는데 아빠 쪽도 사람이 참 딱한 게 월급을 (아기 아빠의)엄마가 관리를 하세요. 자기도 용돈을 받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줄 여력이 안돼요.

C6F: 이곳에 왔을 때 뭐 신발이나 옷 사준 거 말고는 따로는 없어요. 작년에 제가 돈 달라고 해서 한 달, 세 달에 십만원, 이십만원 이런 정도는 있거든요. 몇 번. 총 합해도 백만 원은 안돼요.

③ 양육비 공동책임 강제집행에 대한 태도

그러나 이들은 아기 아빠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C4F는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기 아빠가 양육비를 강제로 책임지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였으나, 각자의 입장에 차이를 보였다. C1F와 C5F는 아기와 아빠와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마련되어도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C2F와 C6F는 양육비는 받고 싶지만 양육비를 받으면 상대방의 요구가 많아질까 봐 걱정이라고 진술하였다(아이와의 잦은 만남 요구, 아이 양육권 등).

C1F: (앞으로 아이 아빠에게 양육을 책임지게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해도)청구할 생각이 전혀 없는거죠. (현재 아기 아빠가 아기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 막상 자기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하고는 결합하긴 싫으니까... 양육권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법적인 제도가 더 좋아진다고 해도 저는 좀 특수한 경우라 연락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C2F: (양육비를)받고 싶는데 돈이라는 게 받으면 그쪽에서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주기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한다던가. 그런데 이제 마주치고 엮이기 싫으니까... 내가 벌어 자립하고 싶고 그래도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은 할 거 같은데...

C4F: 아빠가 양육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어떤 제도... 들어봤는데 대불제라고. 먼저 월급이 나오기 전에 월급에서 빼간다고... 그 제도가 확정이 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의사가 있어요.

④ 아기 아빠에 대한 감정

면접대상자들의 양육을 하면서 아기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다소 완화되어 있었다.

C6F: 옛날엔 너무 싫어했는데 지금은 감정도 없어지더라구요. 그냥 개는 개대로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만 해주면 맘 편하게 알아서 살 것 같으니까.

C1F: (작년에는 아기 아빠에 대해서 큰 분노를 보임. 땅에 묻어버리고 싶다고 표현함) 그런데 제가 작년에 그렇게 분노했나요?(웃음) 저는 애 아빠한테 인생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다가 가는 곳이 교도소 밖에 없는... 내가 왜 이런 남자랑 엮혀가지고 애를 낳았나 싶고... 그 사람이 약간 좀 측은 한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한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심하다 뿐이지. 그 사람이 밉고 싫고 이런거는 아니에요. 애가 커나가면 커 나갈수록 자기 자식을 평생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불쌍함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C4F: 아기 아빠하고는 그렇게 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출산 전부터 애기 할머니랑 마찰이 많지... 자기 아들 잘 키워놨는데 제가 중간에서 발목 잡았다고... 그렇게 막 하시면서 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욕먹고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애기 아빠가 좀 이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지방에서 근무) 뭐 그냥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생물학적 아빠일 뿐이에요. 별로 감정은 딱히 없어요

⑤ 추후 교류에 대한 태도

면접대상자들은 대부분 앞으로 아기 아빠와의 교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 아빠가 폭력적인 특성과 무책임한 태도(C1F, C4F, C5F, C6F)를 가졌거나 변심하여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C3F), 아기 친할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C4F) 등으로 인해 계속 교류하면 자신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C4F: 아기아빠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할머니 쪽의 얘기가 나오면(아기아빠와)서로 말싸움도 찾아지고... 그 어머니 내가 아들인생 망쳤다 생각하시니까... 솔직히 아기아빠가 없어도 지금은 큰 문제가 안돼요. 부모님 곁에 사니까 오히려 더 편하고...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아기아빠와)결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쪽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끊어야 되나...

C6F: 작년까지만 해도 개가... 몇 달에 한 번씩 연락 와서 구미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제대로 정신이 되어있는 애면 애기를 위해서라도 그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서 막 깡패 한다는 소리도 들리고, 몇 번을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파양신청 거거 안 해 준다고 이런 식으로 저는 뭐 개랑 다시 합치거나 이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⑥ 추후 아기와 아빠간의 교류에 대한 태도

그러나 자신과 아기아빠와의 직접적인 교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아기가 커서 아빠를 찾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선 대부분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일부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가능한 아기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C1F: 아기하고 아빠의 교류 지금도 여전히 갈등 중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 평생 모르게 한다는 게 아빠와 아이 양쪽한테 죄를 짓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이제 독립을 했고 애를 혼자 키울 수 있는 도전을 하게 됐고 하지만 애가 커나갈수록 아빠를 찾을 것이고... 애한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내가 살기 싫다고 그렇게 막 찢어 놓은 거 아닌가... 애한테도 아빠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거... 진짜 이건 인지상정 아닌가 싶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엄마(C1F의 모)한테 하면 엄만 평생 후회할 짓 하는 하는 거라고 이제 와서 얘길 하면 그동안 속였던 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서 폭력 전과가 있는데 너한테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제 인생의 평생 걸림돌이 된다고 절대 안 된다 애도 망치고 너도 망친다... 아 평생 고민일 것 같아요.

C4F: 일단은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하니까 일단 없으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아기한테는 아빠

가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보다도. 애기 아빠랑 애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애기가 좀 정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보여줄 의향은 있어요. 애기아빠가 싫어하면 또 아닌 거 같고 두 사람의 의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기가 아빠를 물으면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해야 할 거 같아요. 상황을 먼저 얘기해주고 애기 빠를 만나게 해줄 거 같아요. 아빠랑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할 거 같아요.

C6F: 아기가 아빠인 걸 모르거든요. 제 친구 남자애들을 더 많이 봤지 아빠는 깁해야 1년 손에 꼽을 정도로 보니까... 나중에 뭐 커서 아빠 보고 싶다 이러면 뭐 연락을 해서 만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애기 때문에 억지로 아빠랑 애랑 살아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뭐 아빠노릇 못하는 애랑은 차라리 있는 것 보다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내가 아빠 뭇까지 더 잘 하면 될 거 같아서...

(4) 사회적 지원

① 수혜 내용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지원 중 양육수당, 출산 전 의료비지원,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은 여섯 사례가 모두 받았으나, 그 외 사회적 지원 내용은 사례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C1F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생활수급지원, 의료수급권자 신청 및 건강보험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자산형성계좌지원, 영양플러스 지원 등의 지원을 받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지원 관련정보 안내 및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나, 나머지 사례에서는 사회적 지원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C3F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이지만 기초생활수급지원과 의료수급권자 신청 및 건강 보험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것이 전부였고, C2F는 영유아보육료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을, C4F는 보호시설 양육수당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및 예방접종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반면, C6F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을 받고 있었고, 현재 검정고시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C5F의 경우는 양육수당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친가정양육지원사업의 하나인 '희망마루'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는 C1F, C2F, C5F였는데, C4F는 희망마루를 신청하였으나 탈락되었고 나머지는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각 사례마다 사회적 지원 내용이 다른 이유는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한부모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가 지원내용을 인지하고 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사전에 지원내용을 미처 인지 하지 못한 경우엔 지원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상 원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가족의 경제능력에 따라서도 사회적 지원은 제한되었다. 한편, 행정구역에 따라서도 사회적 지원 내용은 달라졌는데, 희망마루는 실거주지가 서울과 경기 및 인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중앙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는 서울의 경우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면접대상자들은 사회적 지원내용 중 출산비 지원과 희망마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기초수급권과 아동양육수당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과 같은 현금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였다.

C1F: 00가 아플때 의료급여 제도때문에 되게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고 사실 살다보면 현금이 제일 필요하니까 수급권이 제일 도움이 되죠. 애기 어린이집 안보내서 양육수당을 받고 그거는 동작구청에서 오는거고 희망마루는 저기 보건 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중앙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받고... 근데 희망마루는 9월이면 끝나고 이제 후원물품 들어오면 나눠준다든가 이런거는 저기 역삼동에 있는 대한사회복지회에서 교육도 받고 물품 지원도 받고 이거는 비정기적인거고 구로에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자조 모임에 가고..

C4F: 제가 많이 찾아봤죠. 출산 전엔 그냥 고운맘카드 정도... 어떻게 하다 카페에서 알게 됐어요. 시설 같은 것도 알아보면서 그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게 돼서 등록을 하고 출산비를 지원받았어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죠. 그 이후로 많이 알아보면서 애란원 알게되고 지금도 계속 왕래하고 혜택도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외에도 뭐 나라에서 하는 것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② 자립요인 - 성공사례⁶²⁾

면접대상자들은 자립을 하기 위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먼저 양육에 대한 자립여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다. 여섯 사례 모두 자녀 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는데 C1F, C2F, C3F, C6F는 양육을

62) C1F는 2012년도와 2013년도 두 번의 면접을 통해 살펴본 사례들 중 가장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이다. 현재 자립에 성공했다기보다는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자립에 대한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게 기대되어 성공사례로 다루었다.

전담하고 있었고, C4F와 C5F는 친부모가 부모님이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다. 주거문제는 C1F, C2F, C3F는 친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월세에 살고 있었고, C4F, C5F, C6F는 친부모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C1F, C2F, C3F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서 주거상황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C1F는 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었다. 취업은 여섯 사례 모두 자녀가 3살이 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C1F는 미래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과 기술연마를 틈틈이 하고 있었고, C4F, C5F는 보다 나은 직종을 위해 대학까지의 과정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C2F와 C6F는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직업준비는 못하고 있었고 C3F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아직 아르바이트나 취업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생활력이 강했고, 자립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았다. 그 가운데서도 C1F는 생활력이 단연 돋보였는데 자녀양육과 부모의 역할 및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탐색하면서 현재까지 부딪힌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탐색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그때그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시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C1F는 지금까지 혼자서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자립능력이 크게 기대되는 사례로서 C1F를 통해 도출된 자립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목표설정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장단기적 인생목표를 세운다.

C1F: 저는 일단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대학도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서 애를 잘 키우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인생전체적인 목표 큰 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장기적 단기적 계획과 한달 계획 일주일 계획 이렇게 세우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예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 미래를 위한 저축

자녀교육과 주거마련을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한다.

C1F: 애기 교육비 문제는 꿈나라 통장 조금 하고 있어요. 7만원씩... 이제 매칭이 7만원 들어오니 까 5년간 만기되면 한 800만원 좀 넘게 될 거 같아서 조금 한시를 덜었는데 제일 시급한 건 주거 문제죠. 지금 월세 임대보증금을 좀 더 마련을 해서 임대아파트로 얼른 이사하고 싶어요 주거 문제... 저축을 계속 하는데도...

다. 다양한 정보탐색과 적극적인 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해당되는 사회지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C1F: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대한주택보증에서 돈을 받아서 오백만원을 지원해줘요. 임대보증금으로 개인이 신청하면 안 되고 기관추천을 반드시 받아야... 제가 대한사회복지회에 부탁을 했는데 그 돈을 받아서 기관이 2년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중간에 보증금이 공중분해가 되면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측에서 부담스러워서 안 해 줄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관과 조율중이에요.

라. 지속적인 자기개발
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기술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전반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력을 쌓아나간다.

C1F: 임신부 때 일을 처음 했어요. 컵케익 스쿨 다녀서 베이킹을 배웠는데 3개월 정도... 임신 7개월쯤부터 시설에서 운영하는 엔젤스토리라는 카페에서 베이킹 보조로 일을 좀 하고 아르바이트비 받고... 직업훈련이 취업에 그대로 연계되는 게 유용 했었어요. 지난 일 년 간 자격증도 몇 개 따고 네일아트 기술, 방과 후 지도사자격증도 따고...

마.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매사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즐거운 마음을 갖는다.

C1F: 아쉬웠던 점은 없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왜냐면 시설에 있는 엄마들 일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수급자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알바비 받으면서 오히려 임신기간 동안 무료로 게 안지내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고 좋았어요.

바. 가족 지지체계 구축

소원했던 원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양육과 생활전반에서 지지체계를 구축한다.

C1F: (부모와 분리하여 독립된 생활을 하는 중 엄마 아빠는 이혼함)엄마는 애도 좀 봐주고 교류가 잦고요. 아이를 수요일, 금요일마다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엄마가 음식을 잘하시니까 반찬하고 국 만들어서 갖다주시고 식생활 완전 책임져 주시고 재료를 사다 드리면 엄마가 만들어서 갖다 주시는 거죠. 그리고 00이를 되게 이빠 하시고 (친)아버지는 연락만 하구요. 진짜 아버지 생각하면 짜증나지만 금은 그냥 연락만 하면서 그러고 살고있어요.

C1F를 통해 나타난 성공적 자립을 위한 요인은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목표, 미래를 대비한 저축, 적극적인 정보탐색능력,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자기발전과 취업을 위한 끊임없는 자기개발(교육 및 기술훈련 참여), 가족 지지체계 구축 등이었다.

(5) 정책 요구

면접대상자들은 현재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의 경우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①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가운데 희망마루,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매뉴얼 책자 보급 등에 대해 만족한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양육수당과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지원 내용 중 불필요한 것은 없고 모두 유용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현재 지원되는 서비스 중 청소년 한부모 교육비지원, 자립촉진수당, 아이돌보미, 임대주택지원, 위기지원아이의 입원접종비 지원, 영양 플러스 지원, 희망마루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았다.

C1F: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성공 패키지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데서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요. 인력개발센터에서 수급자는 수강료가 무료고 재료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주더라구요. 그런 정책은 참 좋고 또 한부모 가족 지원 센터에서 지원 매뉴얼을 발간했어요. 그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 걸 좀 많이 배포를 해서 (지원센터에 온 사람들만 알 수 있어서) 그 매뉴얼에는 웬만한 건 진짜 다 다 들어가 있던데요.

C2F: 희망마루가 큰 의지가 되요. 어떤 엄마는 남편 같다고 얘기해요. 딱딱딱 월급주는...

C4F: 일단은 양육수당이랑 청소년한부모수당이... 매달마다 쌓이니까 힘이 되는 거 같아요..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②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이 많았다. 특히 자방자치단체 담당부서나 자치단체 부속 전달체계(예, 보건소 등)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컸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신청과정에서의 불편함

서비스지원을 신청할 때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구청이나 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에서 지원신청을 할 때 불편함을 많이 겪었는데, 담당자들이 서비스내용을 잘 모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안내하며 신청 후에도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C5F: 영양플러스를 전화로 알아봤는데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다음에 연락하라고 하면서 신청기간은 안 알려줘요. 보건소에도 알아봤어요. 거기서도 신청기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또 정확한 기간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전화로 두 세번씩 문의하다가 못했어요.

C4F: 희망마루 신청을 했었어요. 사회복지사분이 원가족이랑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가정 방문날을 잡고는 안 올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도 잡았는데 왜 안오고 따지듯이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알겠다고 해서 왔는데 원가족이랑 원래 같이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알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됐어요.엄마들이 말이 많은 게 직장다니는 엄마들도 있고 가게가 있는 엄마도 희망마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만 들어보면 지역마다

다른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담당 공무원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공무원이 지원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C1F: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은) 한부모 가족 특성이나 지원제도에 대해 딱히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꿈나라 통장 신청하러 갔을 때도 꿈나라 통장 지원 기간이 아니라고... 근데 가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신청하니깐 미안해 한 경우도 있었고... 그냥 잘 숙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냥 보고 지원 기준에 맞으면 신청 받아주고 그정도지 알고 먼저 말해주는 건 아니예요.

C4F: 보건소에 처음 아기 예방 접종을 하러 갔을 때 담당자가 미혼모는 안된다고 해서 그냥 나온...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되는 것이어서...

반면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C1F: 제가 지원받은 것 중에 가장 맘에 드는 것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림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처음에 상담도 시켜주지만 이런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자세하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제일 좋았어요.

C4F: 아무래도 사회복지회는 엄마들 마음도 잘 헤아려 주고 선생님들이 많아요. 전화도 오고 그 안에서 활동도 은근히 많아요. 부모교육도 매달 한 번씩 있고 베품시장도 있고.. 여름캠프도 있고 봄소풍도 있고 그런 게 꽤 있어서 괜찮아요.

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원센터와의 연계 부족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지자체와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간의 연계가 전혀 없다고 느끼고 있고 서비스 전달과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C1F: 딱히 연계가 되어있다는 느낌은 없어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건강 관련 지원센터 이거는 센터대로 또 민간 사회복지 단체는 또 사회복지 좀 따로 놓고 있긴 하죠. 제가 봤을 땐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각 알아 봐야해요.

③ 제도 개선 요구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반응하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가. 지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정보를 파악하느네 어려움을 호소하고 모든 지원내용을 청소년 한부모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신청해야하는 현 제도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관련부서 공무원이나 해당기관에서 먼저 사회지원내용을 정확히 알려줘야 하고 편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나. 청소년 한부모 등록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서비스 전달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관련 서류나 정보를 확인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름이 등록되면 원스톱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하였다.

C1F : 당연히 복지는 아무나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정 실사도 나오고 서류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한 과정인데 좀 복잡한건 있죠. 그니까 좀 원스톱으로 전담 사회복지사가 해결을 해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한 애기 돌전까지는 특히 6개월 전에는 엄마들이 사소한 거 신경 못쓰고 또 정신도 없고 또 미혼모들은 애 아빠랑 막 싸우고 복잡하게 연루되는 일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복지 서비스 알아보고 신청하고 이럴 경황이 없어요 구청이나 보건소에 이름을 등록하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제공하는 보건소 영양 플러스도 누가 안 알려 줬으면 전 몰랐을 거예요. 원스톱으로 다 해결해 줬으면... 그런게 필요해요.

다.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도 원적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우리 사회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임신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계속 다니기를 원하는 경우엔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분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C4F: 웬만하면 진짜 그 학교나 학부모나 주변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고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그게 최선일 거 같아요 그리고 검정고시 교육비 말고 대학 등록금도 지원 해주셨으면 좀 더 전문적인 여성이 되는 게 아이를 위해서두 좋을 거 같아요.

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엄격하게 해야

일부 대상자는 동거커플들(사실혼)에게도 청소년 한부모와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동거커플은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서류상 미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걸러 낼 방법이 없다는 허점이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모자시설을 확대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C2F, C5F).

C2F: 청소년 미혼모같은 경우는 다시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금방 같이 사는데 그걸 알리지 않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아기가빠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아요. 센터에서 당연히 한부모인 줄 알고 집에도 놀러가고 막 도와주고 그랬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온 거예요(분노). 센터에 다 막 고자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거짓으로 돈을 타먹는 사람이 많으면 진짜 한부모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마. 비수급권자에게도 지원혜택을 늘려야

한편, 현재의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모든 혜택이 집중되어 비수급자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자립의 기회를 잃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 한부모는 주민등록상 친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으면 대부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데, 동거를 하더라도 청소년 한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2F: 이해가 안되는게 수급자는 수급비를 받는데 희망마루를 제공하는게 이게 수급자들을 우선 선정하더라구요. 수급비도 받고 상품권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서 수급자도 못되고 어려움이 큰데...

바. 원가족과 동거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청소년 한부모들은 친부모와 함께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원가족과 함께 지내더라도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부모의 생존 및 동거 여부를 떠나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1F: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고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건 안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부담이 커질뿐더러 그런 거를 예산을 하기 때문에 애를 뭐 지우라느니 입양을 보내라느니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 안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에게 초점을 맞춰서 경제적인 지원을,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생계지원과 학업지원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할거 같아요.

사.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우리 사회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용기와 격려를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복지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원제도가 양육하면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C1F: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혼모 복지가. 근데 홍보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시설에 있었을 때도 지원책을 서로 입소문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키우는 엄마들이 점점 많으니까 그때 전원 다 양육으로 바뀌었거든요. 지원책에 대한 홍보.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거를 나라가 좀 보장해주고 알려주고... 양육을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람을 느꼈던 건 정말 애를 키우길 잘했다. 내 새끼데... 정말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후회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보람되죠. 지금 키우고 있는 게 애를... 애를 키우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보람을...

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멘토링 제도 도입
청소년 한부모는 어린나이에 부모 역할과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과 삶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4F: 일대일로 해서 좀 조력자가 멘토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도 있고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거 같고...

지금까지 양육 1년 이상 경험자들의 면접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II-51이다.

표 III -51 1년 이상 양육 경험자 면접조사 내용 결과 요약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전반적인 생활 환경	지난1년간의 변화	전반적인 생활환경은 보다 안정됨. 부모역할이 보다 성숙해지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람, 엄마자신의 발달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학업이나 미래계획 세움. 대부분 자녀양육을 매개로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됨, 지지체계로서의 청소년자조모임 활용하나 자조모임의 역기능도 존재함.
	기본권	양육과 학업 및 배우자 교류에 대한 의사결정능력 증가, 학교밖에서는 학습권 보장되나 학교 내에서는 제함됨. 생활 주변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차별 경험, 사회지원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참여기회 제한 됨. 서비스 내용 및 접근성 은 지역의 거점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미혼 부와의 관계	교류현황 및 양육비공유	대부분 교류 안함,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1년 전에 비해 다소 완화됨. 양육비 지원은 거의 없으나, 강제 집행 요구에는 소극적, 대부분 아기 아빠로서의 자질 불신, 양육비를 지원받을 경우 미래 친권에 대한 불안을 보임.
	앞으로의 관계	앞으로 당사자인 부와 모간 교류는 대부분 원하지 않음. 자녀와 부의 교류에 대해선 원치 않거나 고민 중.
사회 지원	수혜내용	양육수당, 출산전 의료비,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은 모든 사례에서 혜택받음. 나머지 서비스는 사례마다 수혜내용 크게 차이남. 기초생활수급권자, 서울 강서권(거점기관) 개인 정보력이 높은 경우 사회지원을 많이 받음.
	자립요인	대부분 자립의지 강하고, 자녀양육을 최 우선시함. 여섯 사례 모두 3세이전까지는 자녀양육에 전념할 생각. 청소년한부모의 개인적 자립요인은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목표설정, 저축, 취업훈련참여 및 기술연마, 주변에 지지체계구축,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나타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가 충분하진 않지만 대부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느낌. 기초생활수급권, 희망마루, 양육수당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해 체감 효과 높음. 개인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하는 어려움 호소. 정책과 서비스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 지적. 사회지원 신청과정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편함을 호소.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불만 큼. 특히 주민센터나 보건소 담당공무원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불친절에 대해 불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정책요구	사회지원내용에 대한 홍보강화, 청소년 한부모 등록을 통해 서비스 일괄전달, 청소년 한부모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 엄격하게, 학교 내에서 학습권 보장,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격려가 가능한 사회 분위기 조성, 수급자에게 집중되는 지원정책 개선, 원가족과 동거 시 청소년에게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멘토링 제도 도입 등.

4) 청소년 한부모 동거가족

본 면접에 응한 동거커플은 모두 세 커플로 6명이고, 나이는 18세에서 19세 사이였다, C7F와 C8M(이하 커플 1)은 현재 임신 8개월째인 예비 부모이고, C9F와 C10M(이하 커플 2)은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있고, C11F와 C12M(이하 커플 3)는 16개월, 1개월 된 아들 2명이 있다.

(1) 전반적 생활환경

①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

커플 1은 B군에서 살던 여자가 고1 때 자퇴하고 D시에 있는 이모 집에 가서 거주하다가 이웃에 있던 아기 아빠를 사귀고 후 남자 집에 같이 살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현재 커플 1은 남자 집에서 남자 엄마와 함께 셋이서 동거하고 있다. 커플 2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에서 이성친구로 사귀다가 잠시 동안 헤어진 후 고등학교에 와서 다시 사귀게 되었는데, 자주 어울려 놀면서 술을 먹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 후 한 달 동안 여자 엄마 집에서 살다가 그 후 남자 할머니 댁으로 가서 아기를 낳은 후, 현재의 D시로 왔다. 커플 2는 아들 1명과 셋이서 살고 있다. 커플 3의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친구소개로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남자가 먼저 G사에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D시에 있는 특수학교에 입학 하였고, S시에 있던 여자에게 연락하여 여자도 남자와 같은 학교에 입학한 후 남자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고등학교는 동거를 하면서 함께 다녔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졸업하였다. 현재 커플 3의 집에는 16개월, 1개월 된 아들 두 명과 여자의 언니와 남동생 등 5명이 함께 살고 있다.

커플 1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자의 이모와 큰 엄마가 낙태를 종용하여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나, 여자는 아기 낳기를 원하였고, 남자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여 출산과 양육을 결심하게 되었다. 남자의 엄마와 여자의 엄마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커플 1을 지지하고 있다. 현재 커플 1은 임신 8개월째이며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 커플 2는 임신사실을 7개월이 되어서야 처음 알게 되었는데, 남자의 엄마가 출산을 극구 반대하였으나, 낙태를 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도 하였고 생명을 지켜야겠다고 판단하여 출산을 결심하였다. 커플 2의 남자는 처음엔 임신사실이 몹시 당황스러웠으나 아빠로서 책임을 느꼈고 아기를 키우겠다는

마음엔 변함이 없어 출산을 결심하였다. 커플 3의 경우는 동거 중 학교를 다니면서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첫째를 낳았으며, 현재 둘째 출산 한 달이 되었다. 커플 3은 임신 중에도 학교를 다녔고 무사히 졸업을 하였는데,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 여자는 시설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녔다. 출산을 할 때에는 일주일 동안 무단결석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고, 일주일 후 다시 학교를 다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② 원가족과의 관계

동거커플은 모두 원가족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커플 1은 현재 남자의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두번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사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주거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도 없다고 하였다. 커플 1 여자의 어머니는 B군에 살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지만 가끔 교회에서 보내주는 반찬을 아껴 보내 주고 있다. 여자는 근래에 오랫동안 어머니를 못 본 상태여서 그리움과 어머니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다.

커플 2는 근처에 여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 가끔씩 왕래를 하고 있었다. 커플이 함께 볼일이 있을 땐 아기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일을 보러 가기도 하고 가끔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커플 2는 남자의 부모와 거의 왕래가 없고, 남자의 조부모가 가끔 왕래를 하고 있었다.

커플 3은 여자의 언니와 남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여자의 부모가 월세를 지원하고 언니가 산후조리와 살림을 도와주고 있었으며, 여자의 어머니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반찬을 챙겨주었다.

또한 G시에 있는 남자의 조부모와 교류하며 지냈는데 커플 3의 남자는 아버지와 가끔 연락은 하지만 왕래는 거의 없었고 어머니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동거커플들은 대부분 원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돌봄과 생활적인 부분에서 일부 도움을 받고 있었다.

③ 자신의 발달과 미래에 대한 관심

이들 동거커플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현재 노력하는 부분도 차이가 보였다. 남자의 경우 커플 1은 유통업체 임시직원, 커플 2는 휴게소 정규직 판매원, 커플 3은 부사관이 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여자들은 자신을 위한 진로나 계획 없이 자녀 양육만 담당하고 있었다.

커플 1은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신의 발달이나 장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커플 1의 남자는 현재 유통업체 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았다. 학업에 대해서도 커플 1 남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상황에서 검정고시를 봐야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시험에 대한 동기화는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C8M: (면접원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묻자)계획 같은 거 없는데... 준비는 해야 할 거 같은데 아직...

여자의 경우 자신에 대한 관심이나 특별한 계획은 없었고 출산 후 양육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볼 생각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아기 아빠가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불안해 하였다.

C7F: (걱정되는 것은?)남자친구가 좀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러니까 꿈같은 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때 가봐야지... 그때 가봐야 알지 막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반면, 커플 2의 남자의 경우는 아들과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C9M: 아이는 안 빠돌리지게 잘 키워야죠. 엄하게 키울거예요. 저처럼 되면 안되니까. (그렇게 산 것을 후회하세요?) 후회되죠. (앞으로의 계획)전 장사체질이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게 잘 맞고 일을 계속해서 잘 배워서... 나중에 제가 꾸려가려구요.

커플 2의 남자는 어린나이에 학교를 그만 두고 놀면서 함부로 생활한 것을 매일 후회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친구들은 학교 다니고 자유로운데 일과 양육에 얹매이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아빠로서 고졸학력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여 검정고시를 보았으나, 59.6점으로 불합격하여 속상하다고 하였다. 지금은 공부가 싫지만 나중에 고졸학력은 취득할 생각이라고 하였다.

커플 2의 여자는 고졸학력으로 학업과 취업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참여할 의사가 없고 특별히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없다고 대답하였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것도 없으며 현재의 생활에 별 불만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여자의 경우 커플 2는 남자만 있으면 되고(걱정할게 없다는

의미), 아이를 키우면서 자유롭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것 외에는 힘들지 않다고 하였다.

커플 3은 남자는 중 1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떡볶이, 고구마 장사, 미용보조, 막노동, 택배알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지냈고 현재 혼자 힘으로 원룸을 구해서 지낼 만큼 생활력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직업 군인인 부사관이 되는 것이 꿈이어서 현재 부사관이 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해병대 부사관 시험에 통과하였으나 둘째아이의 출산으로 장기 훈련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어 포기하고, 다시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C12M: 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사관이 되겠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직업 군인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원래 시험을 봤다가 합격을 했는데 애기 엄마가 둘째가 생기다 보니까 포기하고...

커플 3의 남자는 어린나이에 아빠가 되어 일과 자녀양육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을 후회한 적이 많았고, 특히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 못할 때 일찍 결혼하고 사는 걸 후회했다고 진술하였다.

C12M: 후회한 적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일단은 애기 아빠가 되다보니까 친구들이랑 멀어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희 때는 이제 한창 친구들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게 싫어가지구... 좀 일찍 결혼한 게 싫다... 후회도 많이 하고 생활도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일찍 안 돼 있었으면 생활이 좀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커플 3의 남자는 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아기 엄마가 자신보다 더 힘들거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추스르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C12M: 일단 애기들이 재롱떠는 거 보면서 이겨내고 저보단 애기엄마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현재 커플 3의 남자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1, 2, 3차 상담이 끝나고 집단상담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취업과 관련하여 학원을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부사관과 관련된 학원프로그램은 없어 일단 회계업무 분야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커플 3의 남자는 현재 취업중이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수급비가

줄어들 염려 때문이었다.

C12M: (취업을)안 하고 있는 이유는 수급자 돈이 깎일까봐... 뭐 저희는 돈이 깎이면 안정된 직업이 없는데 힘들어지니까... 알바는 언제 짤릴지 모르고, 4대 보험 다 들어져 있다는데 저희 청소년들은 아예 그 조차도 못 받거든요...

한편 커플 3의 여자는 둘째아이를 출산 한지 1개월이 지난 상태여서 산후조리 중이며 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커플 3의 여자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공부를 다시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사이버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떤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도 없고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④ 자조모임의 기능

동거커플들에게 청소년 한부모 자조모임은 큰 기능을 하지 않았다. 커플 1, 2의 여자들은 자조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았고, 커플 3의 여자만 한 달에 한 번 자조모임에 참여했는데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랑 지내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다시 충전된다고 하였다. 동거커플 1, 2의 여자들은 주로 저녁에 남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생활하였는데, 아기 때문에(C11F) 혹은 배가 불러서(C7F)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여 낮에 집에서 지내는 것을 답답하다고 하였다.

동거커플 1, 2의 남자들은 서로 형 동생하며 지내는 친한 사이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만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주말에도 커플 1의 남자는 친구들과 어울려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하여 다툼 적이 많다고 하였다. 이들 동거커플들은 서로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특히 여자의 경우 남자에 대한 정서적인 의존이 커서 특별히 자조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또한 커플 1, 2, 3의 여자들은 모두 내향적인 성향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었다.

(2) 기본권 보장 실태

동거커플들은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을 갖고 행동하였으며, 학업문제에서도 대부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그러나 커플 내 의사결정과정이나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참여권의 문제에서는 동거커플 모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

동거커플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주변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커플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서 커플 모두 여자들은 모두 자기결정에 의해 행동하였고, 남자들도 부모나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결정 하였다. 또한 학업을 계속하고 중단하는 문제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C11F: 애기를 지우기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애기를 키우고 싶기도 했고 제가 설날 때 집에 내려갔는데 큰엄마가 저를 막 (애기 지우라고)너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로) 오빠 생각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오빠는 내편이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그랬어요. 그래서 애기 낳자고..

그러나 커플 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은 결정을 하고 있었다. 특히 커플 2의 남자는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커플 3의 여자도 매사 남자의 눈치를 보고 있고 남자의 결정에 주로 따른다고 하였다. 이들은 출산과 양육 선택에서는 여자의 자기결정능력이 일부 발휘되었으나 출산 후 커플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자기결정권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COM: (어떤 일이 있을 때 애기 엄마와)의논 안 해요. 내가 결정하는데 뭐든 내가 다 결정해요. 내가 다 주도하고 사야할 거 해줘야 할거...

②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동거커플은 이웃이나 주변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경험하거나 상처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였다. 동거커플 1, 2, 3은 남자와 여자 모두 이웃이나 직장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커플 1, 2의 남자는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커플 3의 남자도 예전 직장이나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커플 2의 남자는 아기가 출생할 때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 큰 불편이 없었고, 커플 1, 2, 3 모두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동사무소나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도 별히 차별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이 외부와의 교류가 많지 않고 남자들의 경우 판매나 유통직이 많아 주변에서 차별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커플 2의 여자는 학교에 취업을 했다고 속이고 출산을 하였고 커플 3의 여자도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면서 출산사실을 숨긴 뒤 출산을 하였는데, 이들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학교를 쫓겨나고 졸업을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였다.

C11F: (첫아이 임신사실을)학교에서 아무도 몰랐었어요.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일주일간 무단결석 했었어요. 애기낳고 일주일 쉬고 (학교에 다시)나왔어요. 학교에서 전혀 몰랐고, (학교에 애기를 안 한 이유는?)퇴학당할까봐 (말안하고) (학교에서 이해를 안 해주시나요?) 네. 대부분 그러는데 무서웠어요. 그냥 무서워서...

③ 학습권

동거 커플 중 커플 1은 남녀모두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아기를 가졌고, 커플 2, 3은 여자가 임신과 출산을 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커플 2의 여자는 임신사실을 알리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까봐 임신사실을 숨기고 다녔으며, 출산이 가까워졌을 때는 취업을 했다고 속이고, 학교를 나와 출산을 하였다. 커플 2 여자의 경우, 사실이 알려지면 졸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사실을 숨겼다. 커플 3의 여자도 임신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으며, 출산 시에는 일주일 동안 무단결석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며 끝까지 학교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졸업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까봐 염려되어서였다.

커플 2, 3의 여자가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학교라는 환경이 청소년한부모를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학교에서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커플 2의 여자는 학교에서 청소년의 임신, 출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C9F: (임신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못 다녀요. 못 다니게 해요. 다녀봤자 애들이랑 선생님 눈초리도 그렇고 (불편없이 다닐 수 있게 하려면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할까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학교에서 (허용하지 않는 거)당연한 거 아닌가? 임신한 애들이 별로 없고 전교에서 한 두 명도 없는데, 개네 때문에 학교가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커플 3의 남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청소년이 임신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조금 일찍 사랑을 나눈 거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반드시 학습권을 보장하여, 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르게 잡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12M: 청소년이 애기를 가졌다 해서 불량 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남들보다 좀 일찍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안되고... 사회에서는 또 문제 있는 학교다 하면서 그 학교 안 보낸다고 하시지만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좀 더 일찍 사랑을 나눠서 일찍 아기를 가진 것 뿐 인데 그거 갖고 학교가 학생을 자른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것만 헤아려주면 그 학생들도 충분히 더 나아갈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안 빠질 수도 있고 학교에서 붙잡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④ 정보제공과 참여기회

동거커플은 본인들이 한부모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지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또 그 동안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커플 3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서 주변의 정보를 탐색한 결과, 청소년 한부모와 관련된 사회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낸 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동거커플 1,2는 자신들과 관련된 사회지원은 없는지 탐색하려는 동기가 거의 없었고, 정보 부재에 대한 불편도 별로 느끼지 않고 있었다. 반면, 평상 시 정보탐색에 관심을 가졌던 커플 3의 남자의 경우, 늘 관련정보를 탐색하면서,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이나 사회에서 쉽고 정확하게 홍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C12M: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미혼모들이 미혼부도 있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애기를 돌봐주는 뭐... 교육과정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모르니까 홍보도 안 되었고

그런 거를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든가 일자릴 만들어 줄 순 있잖아요. 그걸 공부할 수 있게 좀 홍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도 없고 저희가 이렇게 뒤져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 하는데 그게 홍보가 된다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저희를 도와주는 시설이 없다 해야 되나 지원이 없다 해야 되나 그것만 좀 개선 해주면 저희도 살만할 것 같은...

⑤ 서비스 내용과 접근성

동거커플이 받는 사회지원은 출산전 진료비와 의료비 및 아동양육수당 등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없었고, 접근성도 비교적 용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에겐 청소년 한부모와 같이 이들을 관장하는 지역사회에서의 허브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자문과 도움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커플 1, 2는 어느 기관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의논하고 도움을 받아야할 지 모르고 있었다. 커플 3은 미혼모인 남자의 누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 제도 안에서 본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관련기관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3) 배우자(동거)와의 관계

① 혼인신고와 혼인관계

동거커플1, 2, 3은 모두 아직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커플1, 2, 3 모두 결혼식에 대한 계획은 없고, 혼인신고는 스무살이 되면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은 남자들이 명확히 대답을 한 반면, 여자들은 우물우물하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남자들은 모두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 때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반면, 여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과 함께 남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커플 3의 여자는 아기 아빠와 혼인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아기아빠가 나중에 마음이 변할 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C12M 결혼식은 아직 (계획이)없고 혼인신고는 내년정도로 왜냐하면 지금은 애기엄마가 너무 여러다보니깐 동의서를 구해야하지만, 내년이 되면 성인이 돼서 동의서 필요없이 할 수 있으니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C11F: 걱정되는 거 (애기아빠가)변할까봐 (언제 그런 거를 느껴요?)자주 나갈 때 안 들어오거나 연락 안 될 때도 있어요. (혼인신고 계획은?)제 나이가 되면? (아기아빠와) 혼인신고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은 없어요.

②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동거커플은 상대에 대한 기대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였다. 커플 1, 2, 3은 모두 현재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고 사이가 좋았고, 특히 남자는 여자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다. 그러나 커플 1, 3의 여자는 상대방이 변심할까봐 불안해 하였고 커플 1은 남자가 게임 중독으로 매일 밤 게임 하러갈 때, 커플 3은 남자가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하여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먹고 안 들어올 때 불안하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커플 2의 여자는 남자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있었다. 한편 커플 1, 3의 남자는 여자의 불안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C7F: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역할이 달라지고 그럴 텐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남자친구가 뒤에 빠지면 뭘 잘 못 들어요. 다른 생각도 잘 못하고.. 근데 지금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중독에 가까워요. 저녁에 잠 잘 때도 그 게임 꿈꾸고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번 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거의 맨날 간단 말이에요. 애기 태어나면 PC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다고 하기는 했는데 맨날 말만 알았다고 하고 잘 안 지켜요. PC방 안가고 컴퓨터를 산다던데 컴퓨터를 사면 애기가 태어나서 배고파서 울거나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서 울거나 그럴 때 못 듣고 혼자 게임할까봐...

(4) 사회적 지원

① 수혜내용

동거커플이 받은 사회적 지원 내용은 전반적으로 매우 빈약하였다. 커플 1의 경우 출산 전이므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었고, 커플 2의 경우, 36개월 미만 아동양육수당과 출산전 진료비 및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을 통해 분유와 기저귀 및 예방접종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커플 3의 경우는 이 보다 다양했는데, 36개월 미만 아동양육수당,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지원, 기초생활수급권, 의료수급권, 출산전 진료비, 출산 양육시 위기지원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② 자립여건

동거 커플은 모두 자녀양육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었다. 커플 1은 아직 출산 전이며, 출산 후에도 커플 1이 자녀양육을 전담하게 된다. 커플 2, 3은 양육 과정을 원가족이나 친부모의 도움없이 그들이 전담하고 있었는데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호소하였다. 남자의 경우 경제적인 부분과 아내와 아이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한 반면, 여자의 경우, 자녀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자유롭지 못하며 하루 종일 얹매이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하였다. 커플 2의 여자는 남자가 휴일에 아기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놀러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고 커플 3의 여자는 한 달에 한번 청소년 한부모 자조모임에 나가서 지내는 일이 기분전환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주거와 생활비에 대한 문제에서는 커플 1, 2는 현재 주거와 생활비 마련엔 큰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 비록 어머니 댁 혹은 임대 주택이라도 주거환경이 마련되어 있었고 남자가 일을 하고 있어 현재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걱정이 많고 미래에 대한 계획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커플 3은 비록 임대주택에서 여자 부모의 도움으로 월세를 해결하고 남자가 취업전이라(기초생활수급자)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미래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특히 남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부서관 시험을 통해 장차 직업군인이 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고 자녀양육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실감하고 있었다.

③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

동거커플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 이들 동거커플이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도 많지 않았는데, 커플 1, 2의 경우 진료비와 양육수당 등의 지원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였다. 커플 3도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고 대체로 만족한다고 하였다. 다만 커플 3의 남자는 정보제공이 보다 원활했으면 한다고 응답하였다.

C12M: 마음편한카드랑 고운맘카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00은행에 가서 저희가 만드

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00은행이나 00은행은 친절하게 다 해주시고요... 말씀도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편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서)나이가 적든 많은 모든 사람을 대우를 해주고 존댓말로 시작해서 존댓말로 끝나는 편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무슨 꿈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줘요. 친절한 거 같아요.

(5)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동거커플은 평소 청소년 한부모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해 특별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 커플1, 2, 3의 여자는 특별히 필요한 제도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커플 1, 2의 남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면접원이 문제점이나 필요한 조치를 생각해보라고 요구하자 커플 1 남자는 막연히 아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커플 2 남자는 ‘그래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커플 3의 남자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였고, 특히 수급자들이 일을 해도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 줄 것은 요청하였다.

C12M: 일단은 수급자이면서 일하고 싶은 거는 그거일거 같아요. 몇 개월 동안은 수급자 유지를 해주면서 일자리가 딱 정상에 잡혀 있으면 거기에서 빼도 좋지만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빼야 된다 하면은 언제 일터에서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딱 인제 안정화됐다 싶으면 그 때부터 깎이는 건 상관없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나타난 동거커플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II-52이다.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전반적 생활 환경	임신과 출산 및 양육 환경	원가족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은 열악함. 가출, 학교 자퇴, 타 지역에서 자취 등을 하며 이성교제, 동거 및 임신과 출산을 함. 대부분의 원가족과 친척은 낙태와 입양 권유. 아기에 대한 소중함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커플 모두 처음부터 출산과 양육 결심. 청소년자신의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적고 미래생활에 대한 계획도 대부분 미약함. 현재 원가족과의 관계는 원만한편이며 특히 여자의 원가족지지체계가 상대적으로 보다 강함. 일부 여자의 경우, 청소년자조모임 참여하여 도움 받음.
	기본권	여자의 경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매우 높으나, 커플 내에서의 의사결정능력은 매우 약함. 주변에서 청소년 한부모로서 차별 받은 경험은 거의 없음. 학교권내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커플 1,2는 별 불만 없고 현실을 받아들임. 커플 3은 청소년임신과 출산은 비행이 아니므로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는 부당함을 주장. 대체로 정보 제한되고, 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 떨어짐. 커플 1,2는 정보탐색 관심 없고 정보력도 매우 낮음. 커플 3은 정보탐색능력 높으나,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에 대해 불편함 호소.
배우자와의 관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	모두 혼인신고 안 함. 결혼계획도 없음. 남자는 20세가 되면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나 여자와 의논한 적은 없음. 혼인신고와 혼인관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커플 1,3여자는 궁금해 하고, 커플 2 여자는 관심 없음.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남자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기대나 불안감 없음. 커플 1,3 여자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 존재. 커플 1,3 여자는 상대방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까봐 걱정. 커플 2 여자는 불안감 없고, 별 관심 없음.
사회 지원	수혜내용	양육수당(커플 1은 현재 출산전, 지원내용 알고 있어서 출산 후 받을 것임.), 출산 전 의료비,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은 모든 사례에서 혜택받음. 그 외 서비스는 사례마다 차이. 커플 1,2는 정보력이 약하고 관심이 적어 수혜 내용이 매우 제한됨. 커플 3의 남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취업성공패키지과정을 밟고, 정보력이 높아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음.
	자립여건	커플 1,2, 주거해결되고, 현재 돈을 벌고 있어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음. 그러나 자녀나 가정에 대한 미래계획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날 그날 살아감. 커플 3의 남자는 생활력 강하고 자녀양육과 미래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나, 자립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커플 1,2,3의 여자는 커플내 발언권 약하고, 특별히 취업활동에 나서지 않으며, 대부분 남자의 의견을 따르고 있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커플 1,2는 제한된 수혜내용으로 현재까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함. 커플 3의 남자는 정보력이 높아 다양한 지원들을 신청함. 전달체계 담당자들의 불친절이나 차별과 같은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으나 정보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
	정책요구	커플 1, 2는 관심이 없고 특별한 정책요구사항도 없음. 재차 질문한 결과 피상적으로 그냥 혜택이 많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줌. 커플 3의 남자는 정보에 대한 호보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하게 되어 수급을 중단할 때, 일정 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는 유연한 정책을 요구함.

5) 청소년 미혼부·모 면접 결과

(1) 전반적 생활환경

①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

2013년도에 처음 면접에 응한 대상자들은 모두 8사례이며, 남자가 2명, 여자가 6명이다. 이 중 여자 4명은 현재 모자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⁶³⁾. 이들의 나이는 만 16세에서 23세이며, 시설거주 4명 중 두 명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다. 이들 사례 중 부모가 모두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두 사례였으며(C15M, C20F), 나머지 여섯 사례는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친모부재 혹은 친부부재인 상태였다. 이들이 임신을 하게 된 배경은, 상대방이 좋아서 사귀다가 임신을 한 경우(C14M, C15M, C16F, C18F, C19F, C20F)가 가장 많았고, 그냥 만나다가 만난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거나(C13F), 아르바이트하던 식당 배달직원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쫓아다니다가 일이 벌어져 임신하게 된 경우(C17F) 등이 있었다. 임신 당시 이들은 한 사례만 부모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C20F), 나머지는 부모와 떨어져 자취를 하거나(C13F), 학교 같은 반 여자친구와 사귀다가 집을 나와 여관에서 여자친구와 지내거나(C14M), 알바일터에서 여자친구와 동거하거나(C15M), 중학생 때 불량한 친구들과 놀면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거나(C17F), 부와 함께 지내지만 거의 방치되거나(C16F, C18F), 새엄마 문제로 가족기능이 상실한 상태(C19F) 등 대부분 가족기능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여자 사례는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대부분 아기 아빠한테 제일 먼저 말하였는데, 아기아빠는 임신사실을 듣고 대부분 당황하거나 절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처음부터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경우와 처음에는 낙태를 생각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낳게 된 경우, 그리고 출산 후 입양을 보내려다 양육을 결심 한 경우 등이 있었다. 특히 C16F는 현재의 아기가 두 번째 아기인데, 고2 때 첫째를 낳아 가족의 의견대로 입양을 보낸 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둘째의 임신사실을 안 후에는 반드시 낳아서 키우려는 생각에 임신 4개월까지 아기아빠한테까지 비밀로 하면서 주변에 말을 하지 않은 채 임신 6개월에 미혼모자의 집으로 들어왔다.

63) 두 명은 미혼모자의 집에 입소하여 출산하고 양육 중이며, 두 명은 중간의 집(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C16F: 2010년도에 고2 때 첫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입양을 보냈어요. 그 땐 10대고 무서운 것도 있었고, 가족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거든요. (그 이후로)피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애를 가졌는데 첫째를 그렇게 보내고 임신하기 전까지 애기들만 보면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막 우리 애기도 저 정도로 컸을 텐데 그런 생각 밖에 안 들고 그런데 애기를 가지고 나서 너무 지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4개월까지 아무한테도 비밀로 하고 아기 아빠한테까지 비밀로 했거든요. 그리고 잠수를 탔어요. 지우기 싫으니까요.

반면 C17F은 원치 않은 임신이었고 아기 아빠에 대한 신뢰도 없어서 낙태하려 했으나 시기를 놓쳤고 출산 전에는 입양을 보내려고 경로를 알아보았으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출산하여 양육을 하고 있다.

C17F: (중학생 때 심하게 놀고, 노는 애들 다니는 특수 고등학교 입학, 학교도 제대로 안다니고...) 중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서 일하는 열 살 많은 직원이 저를 쫓아다녀서 그냥 만나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애기 임신했다고. 낙태하러 가자고 애기 했어요. (미혼모인)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임신이 되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하고 지워야 된다고 교육을... 애기아빠가 데려가줬으면 했는데 “....한 달 두 달지나고. 낭 방치해놔다고 해야 하나? 배가 좀 불러오니까 집에 못 있어서 엄마한테 되게 상처를 준다는 느낌? 그래서 아기 아빠랑 집을 나와서 친구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바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엄마한테는 “엄마, 친구네 가서 살게.” 통보만 하고 나가버린 거죠. 애기가 점점 커 가는데 애기아빠는 출산비용 이런 거 마련할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넣으면 입양을 보내자 그랬더니 아기아빠도 그러자는 거예요. 미혼모센터에 전화해서 겨우겨우 알아봤어요. 입양을 보낼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서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데요. 그래서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하다가 만삭 때까지 산부인과는 한 번도 못 갔어요.

한편 C20F는 임신사실을 모르고 내과나 한의원의 처방을 받고 약을 먹다가 임신 7개월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남자친구가 피임중이여서 임신될 거라 생각지 못함. 병원에서도 위염이라고 진단), 임신사실을 알고 부모님이 수소문해서 일주일 만에 시설에 들어오게 되었다. 양육문제에 대해서 아기아빠와 친부는 입양을 권유하였으나, 본인이 양육을 고집하였고, 출산 후 남자친구의 부모가 키우자고 허락하여 키우게 되었다. 남자 사례의 경우, C14M은 여자친구가 좋아서 집을 나와 여관에서 지내다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사실을 듣고 처음부터 낳아서 기를 생각으로 무조건 일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C15M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첫째 아이는 여자친구가 낙태하고 둘 째 아이는 임신을 안 후 낳아서 키우자고 약속하고 낳았다고 하였다.

C14M: 지금 21살, 17살 때 여자친구를 만났거든요 서로 좋아하다가 집을 나왔어요. 여관에서 여자친구랑 계속 그냥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임신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때부터 그냥 일만 했고요 지우라는 말은 절대 안했어요. 서로 사랑했으니까... 바로 낳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을 때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나 C14M은 여자친구가 아기를 낳고 떠났을 때 혼자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하나 고민하면서 입양보내기를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였다. 주변인들은 임신을 안 때부터 낙태나 입양을 권유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C18F의 시어머니는 임신 30주에 임신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에도 전국의 낙태 가능 병원을 알아보면서 낙태를 종용하였다고 하였다. C20F의 남자친구 부모도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처음엔 아기를 지우라고 권하였고(임신7개월인 상황) 본인의 친부는 입양을 보내라고 권하였다. 한편,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대부분은 신체적 고통(특히 여자)과 경제적 어려움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14M, C15M과 C13F, C16F, C17F는 임신 기간 동안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했고 여자들은 만삭이 되어서까지도 피시방이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C16F: 가족들 몰래 사는 거다 보니까 좀 숨기느라 힘들었고. 배는 이제 서서히 불러오는 시기가 되는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PC방에서. 담배연기 맡으면서 일을 해가지구 허리 막... 새벽마다 청소도 해야 하니까 너무 허리도 아프고...

C14M: 그냥 많이 힘들었을 아기 때문에 혼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아무런 도움 주는 사람도 없었고 모든지 다 제 힘으로 해야 할 상황이었었는데 그 때가 제 나이가 17살 18살 이럴 때 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간다던지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기록 때문에 (군대)4급을 받게 되었어요.

C15M은 부모집에서 원가족과 함께 살면서 아기를 키우고 있고, C14M, C13F, C17F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아기를 키우고 있었으며 나머지 네 사례는 시설에서 출산하여 아기를 키우고 있었다.

② 원가족과의 관계

면접대상자들의 원가족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가족과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였다. 특히 아기출산 후 원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아기로 인해 원가족과의 교류가 증진되고 있었다. C15M는 출산 후 여자친구가 한 달만에 친권을 포기하고 떠난 후 부모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아기 할머니인 친모가 자녀양육을 도맡아 해주고, 아기로 인해 집안에 웃음소리가 난나고 하였다.

C15M: 좋은 거는 솔직히 평상시에 가족이 웃지도 않았을 때 애기 애교 한방에 가족들이 다 터질 때. 진짜 저희 부모님 가끔씩 그러거든요. 너보고는 못살아도 니 아들 보고 산다고,,, 아기가 저희 부모님 사이 가운데서 자거든요. 아버지 팔이 다 뜯어졌어요(애기가 물어서). 저희 애기는 우선 좀 웃긴 게 저녁 8시 되면 딱 자요. 그리고 새벽 6시면 딱 일어나요. 일어나서 가족 다 깨우고... 우리가족은 모두 아기 때문에 6시에서 7시 기상...

C17F의 어머니도 미혼모였고 아버지랑 이혼한 상태이며 아버지는 재혼을 하여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출산 후 친모 친부에게 연락하고 다시 교류하게 되었다. C17F는 임신 후 집을 나와 출산 전까지 임신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지냈는데, 출산 후 시설에 입소하여 지낼 때 친모가 찾아와 그때부터 다시 교류가 시작되었고, 아버지와 원래 안 친했지만 새어머니와 시설에 찾아와 아기 용품을 사주고 아기를 예뻐해 주는 것을 보고 교류를 다시하게 되었다. C16F도 친모는 고3때 돌아가셨고 친부는 임신 6개월에도 낙태를 강요하며 화를 내었으나 현재는 경상도에 살면서 가끔 시설에 오셔서 아기를 보고 가신다고 하였다.

C17F: 명절 때마다 집에 가고 새엄마도 계세요. 새엄마가 좋은 분이시기는 한데 그래도 아빠자체가 별로 안 친했어요. 새엄마가 우리애기를 두리훔에 오셔서 봤는데 막 기저귀 가방도 사주시고 뭐도 사주시고 했었던 말예요. 아빠도 애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애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제가 아빠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아빠가 난 너 아직 용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애기는 하시지만 손주를 보면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드러워지시고 화도 못 내시고 아빠한테 도움 많이 받고 했죠. 저희 아빠가 돌잔치에 와서 아빠가 그래도 살 만은 하세요. 그렇게 많이 주실 걸 예상을 했죠.

C13F은 어릴 때 친부모가 이혼하고 현재 주로 아버지와 자주 만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없으며, 이웃에 살고 있는 남동생가족(청소년 한부모)과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C18F도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친조부모와 주로 함께 생활하였고, 임신과 출산과정에서는 친부가 아기문제를 학교선생님이랑 아기 아빠의 부모와 의논하면서 해결해주셨다. 출산시 고모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할머니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아기엄마와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을 양가부모가 허락한 상태여서 퇴소 후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아기 아빠의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도 없고, 퇴소 후에도 (아기아빠)집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여자의 할머니도 아기아빠를 (자립능력이 없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다. C19F도 부모가 이혼하여 친부와 새어머니와 살았는데 새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서 집을 나와 공동생활가정에 들어왔고, 친모와 주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친모가 주거문제며 여러 가지 사회지원에 대해 알아보면서 조언을 해주고 있었다. 한편 C14M은 친부모가 매우 가난하여 도움을 청할 처지가 아니며 오히려 현재 자신에게 아버지가 손을 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 C20F는 현재 시설에 있지만 부모님이 모두 함께 살고 있고 시설에 있는 자신을 많이 챙겨준다고 하였다.

③ 자신의 발달과 미래에 대한 계획

이들의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많고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아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C20F: (대안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진학계획)학업을 다 마쳐야되겠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떳떳하고 당당해야 제 딸한테도 당당하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왜 일찍 애 낳아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애만 키웠다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려고 제가 사회에 대해서 떳떳하려고... 여기서 퇴소를 하고 대안학교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모자의 집으로 갈거예요. 모자의 집으로 가면 나라의 지원이 그대로 되니까 거기서 애를 키우고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려고 목표를 삼고 있고...

C14M: 우선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꾸준히 다니고 일 다니면서 검정고시 땔거든요. 그냥 철이 없을 때 집이 싫어서 나왔고 애를 낳고 종졸로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획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25살까지 얼마를 모아서 집을

구하고 27살 때까지는 뭐 차를 사고 이렇게 계획이 딱 정해서 있고 그러니까 저는 계획은 우선 25살 때까지 군대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집을 지금 주거지를 구하는 거거든요.

C16F: 대흥동에 검정고시 학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시설에서 버스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바로 앞의 복지관에 애기를 맡기고 (중졸 검정고시 준비하는 이유)창피한 엄마가 되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제 딸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엄마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좀 그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했다 쓰기에는 너무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딸 입장에서는 저희 아빠가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셨어요. 아빠가 근데 무슨 서류 작성하라 그러면. 그게 뭔가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또한 이들은 자신과 아기의 미래를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었다.

C16F: 요번 검정고시를 끝내고 바리스타를 바로 들어갈거예요. 8월달부터. 준비하는 그런 단계 인데 바리스타가 기회가 온 거는 잡아야 되잖아요. 취업 패키지를 하면서 미용을 할 수 있는 건 좀 기간이 걸려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바리스타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못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바리스타 (총)9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취업 성공 패키지로 미용이랑 뷰티쪽 하려구요...

C17F: 시설선생님 권유로 검정고시 준비, 공부를 처음 해 보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처음 본 검정고시 98점 받고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제가 검정고시 볼 때 수학이 제일 재밌었어요. 수치가 딱딱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취업패키지 상담 선생님이)그럼 회계 어떠시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결하여 회계사쪽 공부하면서 자격증 6개 따고...

C19F: 검정고시 패스, 취업성공패키지 과정 여러 가지 임시직종 일함, 후에 대학에 진학, 사회복지과 졸업 후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최종 목표...

그러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도 미래 생활이 현재와 같을까봐 두려워한 경우도 있었다.

C13F: 고졸 후 시설 들어가 아기 낳고 피부미용 자격증 취득 취업성공패키지 중 어릴 때에는 연예인이 꿈이었으나, 지금은 다른 거... 현재 아기 24시간 보육 맡기고, 화장품 방문판매 인턴

중... 이걸로 성공하고 싶은데 살이 찌서 둔해지고 일년, 이 년 후도 이렇게 제자리걸음만하고 있을까봐 걱정...

C15M: 미래불안 여친 사귀고 싶어도 아기 있어서 어려움... 실제로 새 여친과 아기문제로 헤어짐... 아버지일 돕고 월급 안 받으나, 경제적 어려움은 없고 부모집에 동거... 부모님이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만큼 적금 같은 거 따로 넣어주시고 아기 20살 때 까지는 아기를 열심히 키우고, 제가 45살 정도 되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친구들과 여가 생활, 낚시를 간다던가 취미생활 일단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 이제 뭐 좋은 인연 만나면 결혼도 하는 거고, 00이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거 가르치고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걱정)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애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더 심한 것 같아요.

한편,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후에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흡연 등도 하지 않고 학교 야간자율학습까지하면서 자신과 미래를 위해 공부에 전념한 경우도 있었다.

C18F: 아기 태교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인문계니까 야자까지 하면은 11시에 끝나요. 그래서 아빠가 웬일이냐고 야자도 하고... 아빠에게 잘보이려고 배농사 하시는데 사다리타가지고 올라가서 도와드리고 제가 흡연을 했었는데, 끊고 중학교 때부터 놀던 친구들과 노는 것도 아예 피했어요. 개네가 왜냐면 술 먹고 남자들이랑 놀고 그러니까. 난 임신한 상태였고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깐 반에서 평범한 애들이랑 놀고 그러고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아빠가 이제 데리러 오면 가고 잠수타고 애들 연락 오면 연락만 받고 나오라고 그러면 아빠가 못나가게 한다고(현재 시설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퇴소 후 고3 복귀, 졸업 후 대학 진학 계획)... (고등학교와 대학을 마치려는 이유) 장차 아기가 컸을 때 '엄마가 사고쳐서 아기 낳고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소리듣지 않게 하려고

C18F는 현재 대학진학까지 원하는 바, 위탁대안학교를 다니면 내신이 좋지 않아 퇴소나 자립을 고민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외 시설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진로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었다.

C18F: 시설에서 낮에는 수업이 인문학 있고, 퀼트, 종이접기, 여기서 POP수료증 따고, 아기돌보미 자격증 따고 이제 성강사 자격증 이번에 따려고...

④ 청소년한부모 자조모임 활동

이들은 청소년 한부모 자조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C13F는 자조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나 지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었고 C14M, C15M은 자조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참여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 없었고 C17F는 시설을 나와 자립한 경우로, 주로 시설에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나 선생님들과 교류하고 있었고, 나머지 네 사례는 현재 시설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었다.

C13F: 한 달에 한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조모임 교육, 물품(장난감 지원, 기저귀 등) 모임 참석자 1/n 로 계산해서 그때 그때 다르게 나누어줌... 교육은 별 도움 안 되고, 물품도 부족하여 별 도움 안됨. (우리는)양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거 안하고 경제교육, 저축하라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축을... 취업교육은 매회 단편적인거(경제, 메이크업 등) 분기마다 같은 거 돌아가면서 반복해서 도움 안 되고...

C15M: 미혼부와 미혼모끼리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 간에 서로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도 할거고, 같은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니까 그런것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2) 기본권 보장 실태

이들은 양육 및 자신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해결과정에서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여전히 청소년 한부모로서 차별을 받고, 일부는 학습권에서 제한을 받았으며, 정보제공이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참여의 기회가 많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 한부모들의 생존과 발달과 보호 및 참여에 대한 기본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다.

① 의사결정능력과 자기결정권

면접대상자들의 의사결정 능력은 주로 출산과 양육에서의 선택, 학업문제, 진로에 대한 결정 등에서 나타났다. 이들 중엔 처음에 출산과 양육을 주저하였으나 아기의 심장소리를 들은 후 바로 양육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C17F), 아기아빠와 친부는 입양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양육을

고집한 경우도 있었다(C20F). 이들은 대부분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C16F: 두 번째 아이인데 출산과 양육하려고 주변에 비밀로 하고 (첫째아이는 얼떨결에 부모권유로 입양시킴).

C17F: 원래 아이 안 좋아하고 우물쭈물하다 임신개월수 많아져서 처음엔 낳아서 입양시키려고 생각했는데... 막달에 처음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애기 심장소리를... 그 때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애기에 대한 애착이 하나도 없었는데. 심장소리를 들으니까 막 미친 듯이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엄청 울고...

미혼부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기결정능력은 무엇보다도 정신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였다.

C14M: 아기를 잘 키우려면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줘서 애를 키우기 보다는 자기생각이 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회가 뭐 애기 학교 뭐 양육비 1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부모 마인드가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어떤 지원을 주더라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신 마인드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C15M: 항상 " 포기하면 안 된다" 는 생각을...

또한 학업이나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에도 면접대상자들의 의사결정능력은 높게 나타났다.

C17F: 시설에서 검정고시반, 취업성공패키지 등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정하는 건 제가 정하는 거죠.

②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례마다 차별에 대한 경험은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은 사례에서는 대부분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반면, 외부와의 교류가 많은 사례에서는

주변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은 주로 양육과정이나 취업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부안하고 사고 친 아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가장 많았고, 양육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이 많아서 취업 자체가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C14M, C15M, C17F).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잘 해 나가는 것을 본 후엔, 실력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였다(C14M, C17F, C19F). 학업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임신 때문에 자퇴를 권유하거나, 학교를 못 다닐까봐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경우 등 차별이 두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일부사례에서는 학교에서 임신과 출산사실을 알고도 원적 학교에서의 졸업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한부모를 배려하고 있었다.

C13F: 아르바이트나 주변,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서 한부모라 차별받은 경험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출산 시까지 임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차별 받은 적 없다.

C18F: (현재 시설위탁대안학교)원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실을 안후에도 차별안하시고... 오히려 대안학교 후 본 학교에서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C14M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생활주변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하였다.

C14M: 제가 나이가 어리다보니까 신생아때부터 안고서 키웠거든요 안고서 병원을 간다던지 하면 솔직히 다들 하나도 빠짐없이 수근 대는 것들 그런 것도 엄청 많았구요. 어린나이에 혼자 키우는 애아빠다. 그런 시선들이 따라워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반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C15M은 생활주변에서는 차별을 거의 못 느꼈으나, 취업 면접에서 아기 문제로 번번이 차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C14M도 직장이나 취업면접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14M: 회사를 가게 되더라도 18살인데 애가 있습니다 말하면은 학교에서 좀 문제가 된 아이구나 이런 것도 많았어요. 인식 자체가 솔직히 안좋은 말이에요.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아기들 병원도 가야되지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도 가야되지 그런게 엄청 많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꺼려지죠. 그런 거 좀 불이익 받았죠. 병원을 가야되는데, 시간을 안 내주던가... 00이가 엄청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봐줄 사람은 없고 그거 때문에 일주일정도 회사를 쉬면 그날로 그냥 잘리고... 근데 애를 혼자 키우니까 빠질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C15M: 서류전형에서는 다 붙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거예요. 그 면접에서 등본하고 초본을 떼어 오라고 그래요. 제 밑에 애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 다 떨어뜨려요. 애기 엄마가 없다보니까 제가 애기를 키워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진짜 애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어서 애기를 먹여 살리려고 지원을 하고 이력서를 낸 건데 상대방 측에서는 ‘애기 있고 애기 엄마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라고 하지?’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럼 전 기분이 좀 안좋잖아요. “제가 여기 이력서 넣은 이유가 애기를 먹여살리고, 애기 엄마도 없다보니까, 애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지원한거지. 제가 뭐 일이 불가능한데 이력서를 넣겠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알았다고는 하는데 연락주겠다고 해도 연락이 항상 없어요.(그런 경우가)최근에 한 스무번 되요. (애기낳은 걸 사고친 걸로 생각하는 듯해요)

또한 미혼모라는 말 자체가 부당하고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C17F: 미혼모라는 말 자체가 차별아닌가요? 기혼이면 그럼 기혼모라고 부르나?

여자사례에서는 특히 아기를 안고 밖에 나가거나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시선이나 차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16F : 첫째 낳았을 때 임신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배로 목욕탕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게 생겼는데 왜 아이를 낳았지? 이런 생각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애기를 낳는다는 게 사실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여자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시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애기 안고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막상 나가면 시선이 다 안좋으니깐.....

C17F: 제일 충격적이었던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때 마침 제가 학원다닐 때여서 아기가 되게 예민했어요. 엄청 울었던 말예요. 근데 재평가 기간에 저희 사정 알면서 00이를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없나요? 이렇게 애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뜻을 못 알아 들어갔고 아이돌보미요?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왜요? 하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상황파악이 된 거죠. 일단 제 상황도 알고 있었고 나이도 어리고 제가 착하게 하니까 딱 봐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부모님 있는 엄마들한테 가서 애기 운다고 애기

집에서 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그때도 제가 많이 충격을 받았죠. 아 이게 바로 내가 착하게 보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할 말 다하고 있어야 겠다. 누가 싸가지 없게 해도, 어려서 사고 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더 착하게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역효과인 거 같더라고요. 저를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한편, 시설퇴소 후 일반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문의하였는데, 애기 때문에 모두 거절당한 경우도 있었다(C19F).

C19F: 이걸 통계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런 미혼모를 보면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저렇게 힘들게 다니고 있으니깐 나는 안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한다는 데,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안받아주는지 (선생님들이)그건 그냥 자기만의 틀인 것 같아요.

③ 학습권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된 면접대상자들은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하거나 다음 단계 진학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다. 모두 검정고시를 보거나 시설 내 위탁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는데, 대부분 사회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하였다. 특히 시설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본인이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다른 지역의 일반학교에 전학가기를 희망하는 경우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의 학습권은 학교 밖에서는 대부분 보장되었으나, 학교 내에서는 대학을 제외하면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

C19F: (개인적인 이유로 경기도 원학교로 복귀 못하고)서울의 시설근처 일반고등학교로 전학하고자 지역의 모든 학교에 전화해서 학교 다닐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처음엔 전학된다고 했다가 얘기있다는 얘기하면 모두 거절해서 할수 없이 검정고시를 봐야 (꼭 일반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이유는?)나중에 아기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못한 거 없고, 너가 있었어도 난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C20F: 임신사실 알고 교장, 담임선생님이 바로 자퇴 권유... 아빠가 학교에 가서 겨우 설득하여 시설 입소하고 위탁대안학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일부사례에서는 청소년 미혼모의 입장을 배려하여 자퇴를 권하지 않고 대안학교를 통해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C16F, C18F, C19F).

C18F: 아빠가 학교로 찾아갔어요. 근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그냥 단번에 허락하셨다고. 단번에 도장 찍으시고 말도 없으시고 그냥 다니게 하라고. 저희 교장선생님께서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 다니는게)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 안하시고 만약에 밖에서 알게 돼서 학부모들이 항의하면 법으로 우리는 대처하겠다고 우리보고 걱정말라고. (시설퇴소후 고3복귀예정)언제든지 복귀하라고.... 학교이미지 안 따지고 학생우선이세요.

한편 시설 위탁대안학교의 경우도 시설마다 운영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대안학교에서 수업과 시험을 모두 치루는 경우와 수업은 대안학교에서 하고 시험은 원적 학교에 가서 치루는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 만족도가 높았으나, 후자의 경우, 시설에서 원적 학교로 시험 보러가는 게 불편하고, 시설에서의 수업 진도와 원적 학교에서의 시험범위가 맞지 않아 원하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C20F: 시설 탁아방에서 아기 돌봐주고, 공부하러가고 (나래 대안학교)에서 자체 시험보고 원학교에서 성적 반영하여 졸업 할 수 있음. 시설에서의 공부가 매우 만족스러움...

C18F: 임신한 상태에서 학교 다니고 야자까지 함. 신체적으로 매우 힘들었음 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임신사실이 선생님께 알려진 후, 자퇴하려 했으나, 학교 선생님들이 야자까지 하면서 바르게 생활한 것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계셔서 대안학교 다니며 학교마치도록 도와주심. 시설 대안학교에서 고2 과정 수업 중, 그러나 시험은 원학교가서 봐야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시설에서 애기 보면서 수업듣고, 학교가서 시험치는게 힘들고 진도가 안 맞아서 시험성적 안 좋고 내신 걱정...

또한 대학진학을 원하는 경우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입시를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워, 입학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다양한 입시 전형이 있기를 기대하였는데 예를 들어 한부모자녀 전형에 자녀뿐만 아니라 한부모 자신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C19F).

④ 정보제공과 참여기회

청소년 한부모들은 인터넷 탐색을 통해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병원이나 시설, 혹은 복지관의 관계자 등을 통해서 정보의 일부를 얻거나, 청소년 한부모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원정책과 지원내용을 찾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 정보가 부족했고 평소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지원제도를 찾아야 했으며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루트가 다양하여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을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C14M는 사전에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내용에 대해 전혀 몰라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정보를 찾아서 동사무소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해당 행정부서나 전달기구에 문의하면 담당직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았고, 다른 부서나 기관에 책임을 미루거나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자세한 설명은 해주질 않아서 불편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정보제한이 가장 심한 곳은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들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는데, 지원정책과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체계를 관장해야 할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달체계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⁶⁴⁾.

C13F: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문의해도 모른다. 홍보가 잘 안되고 부서마다 모른다 다른데 문의해라 해서 아예 문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C19F: 인터넷으로 (정보를)혼자서 다 알아본다... 문의해도 주민센터는 잘 모르고 잘 안알려주고 등초본(떼는 것)도 청소년 한부모는 무료라는 걸 최근에 알게되었다. 우연히 주민센터에 있는 책자 보고 알게 되었는데 서류 떼는 것도 만만치 않아... 취업할 때나 지원 신청할 때나 서류가 많아서 안내서가 있는데도 동사무소직원도 몰라서 그 동안 (내게)돈을 다 받았다.

6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2013년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 길라잡이!”를 제작, 배포하였다. 생활영역별(상당, 주거, 법률, 교육, 양육, 자립, 여가, 의료비, 위기, 기타 생활지원) 종합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나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전달체계의 담당자들은 이 안내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C14M: 면사무소에서는 스스로 이야기도 안 해주고요. 솔직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이런 게 있다고 면사무소에 가서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설명을 해 주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없거든요. 제가 갔던 곳은 친절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기를 데리고 혼자 가니까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 어린나이에 왜 저랬을까 이런 눈초리가 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기분은 많이 나쁘죠.

⑤ 서비스 내용과 접근성

지원 서비스 내용과 과정은 편차를 보였다. C13F, C14M, C15M은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의료수급자 외에 영유아보육료, 출산 및 양육 시 위기지원,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간단한 상담안내 등이 전부였다. 반면, C16F, C17F, C18F, C19F, C20F 등은 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대부분 학업, 자립, 아이돌봄 서비스나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정보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이 어렵고, 서비스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접근성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여기에 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었으며, 또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규정이나 자체 내 분위기가 생활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은 있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 받는 과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설 내 컴퓨터가 대부분 오래된 것이라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고 사용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C16F: 시설에서 모든 거 안내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세요. 현재 검정고시 학원다니고 근데, 시설 내 컴퓨터가 느려서 정보이용하기 너무 불편해요. 아마 (시설은)다 그럴 거예요.

(3) 아기 아빠(혹은 엄마)와의 관계

① 교류 상황

아기 아빠(혹은 엄마)와 현재 까지 좋은 관계로 교류하고 있는 경우는 두 사례인데(C18F, C20F) 현재 시설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고 퇴소 후 아기아빠랑 함께 살기를 소망하였다. 나머지 사례는 교류가 전혀 없거나, 간혹 연락만 주고받거나, 아기 아빠가 사망한 경우(C13F)였다.

C13F은 임신 후 두 세 달 후에 아기아빠가 사고로 사망하였다. C14M, C15M는 아기엄마가 친권을 포기한 경우로 C14M의 여자친구는 아기가 생후 5개월일 때 자유를 찾는다며 떠났고, C15M의 여자친구도 아기엄마인 자신의 처지를 힘들어하다가 아기가 한 달 쯤 되었을 때 친권을 포기하고 떠났는데, 두 사례 모두 현재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다. C16F는 아기아빠가 도박 등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여 연락은 되지만 교류를 원치 않았고, C19F은 현재 아기아빠와의 교류가 모호한 상태이며, C17F는 아기아빠가 무책임하고 무능하여 아기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앞으로 교류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C17F는 초기에는 홀로 아기를 키우기가 두려워 연락을 끊지 못하고 미련을 가졌었다고 진술하였다.

C17F: 처음엔 (시설에 있으면서)애기아빠랑 연락을 끊지 못했어요. 그렇게 능력 없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데도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혼자 키우겠다는 생각은 못하겠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무섭고 자신이 없으니까 애기아빠랑 계속 연락을 했어요. 처음엔 전화로 하는 말이 애기 다 낳을 때쯤 됐을 때 어쩔 수 없다 그냥 키우자 했었던 말예요. 그런데 애기를 낳고 막상 키우게 되니까 전화로 “애기 그냥 입양보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유수유도 다하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 키우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너는 지금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한다는 소리가 애기 입양 보내자는 소리냐. 엄청 화났죠. 근데도 제가 애기아빠를 놓지를 못했어요. 무서워갖고...

② 양육비지원 상황

이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한 사례 뿐이었는데 C18F의 아기 아빠는 일을 하면서 시설에 있는 아기엄마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다. C13F는 이미 아기 아빠가 사망한 상태로 아기 아빠의 부모가 아기의 존재를 알고 한 두 번 아기를 만나기는 했으나, 양육비를 지원한 적은 없다. C14M, C15M, C16F는 아기엄마가 아기를 버리고 떠났거나, 아기아빠로서의 책임감 없이 도박에 빠져있어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C20F는 비록 시설에서 지내고 있지만 현재 아기아빠와 원만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기아빠가 아기에게는 지극정성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었다. 한편, C17F는 시설에서 지낼 때 아기아빠가 처음에는 월 5만원 씩 몇 번, 30만원씩 한번을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일도 안하고 아기에게 애정도 보이지 않고 아기 돌반지를 탐내기도 하였는데, 얼마 전까지 양육비를 보내주기 보다는 오히려 아기양육 수당에서 일부를 매달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C17F: (시설에 있을 때 처음엔)진짜 젓꼭지가 필요하다 할 때는 제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진짜 간단한 거는. 그래서 애기아빠한테 5만원씩? 받아서 저는 저 먹을 거 안 먹고 애기 것 사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도 애기아빠는 한 달에 180만원 버는데 배달을 하면 그 정돈 벌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5만원만 줘놓고 자기는 힘들다고 자기 다 먹고 그러면서 나는 다 굶고 그랬는데 나중엔 오히려 놀면서 양육수당에서 5만원씩 가져가고...

③ 양육비 공동책임 강제집행에 대한 태도

이들은 (현재 아기 아빠 혹은 아기엄마와 헤어진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를 공동 책임지도록 강제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14M, C15M, C16F, C17F). 이러한 사례에서는 근본적으로 상대방이 아기아빠 혹은 아기 엄마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교류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만일 양육비를 받으면 교류하면서 아기도 만나게 해주어야 하고 아기를 뺏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양육비를 받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C14M: 아이엄마 이야기를 해야될까 말아야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이를 버린 엄마잖아요. 양육비를 제가 받는다고쳐요 그러면 나중에 00이 엄마가 00이 보고싶다 그러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이 엄마니깐 양육비를 줬다는 핑계로 그런 상황이 올까봐 저는 그것 때문에 피하고 있구요 저는 아이 보여주길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핏덩이를 버린 사람인데 그건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보여주길 싫어요. 아예 연락을 안하고 있어요. 연락도 안오구요 (어디 사는지?) 알아요, 서로 알죠. 연락처는 제가 일부터 바꿨거든요 다 바꾸고 지금은 그냥 거주지만 아는 상태...

C17F: 아기아빠가 공주 내려가서 진짜 가끔 연락 오는데 매번 똑같이 했어요. 너랑 못살고 만약에 한 달에 500만원씩 벌어서 살 집 구해온다면 같이 살 생각할 수 있다. 그랬더니 첫 달에만 30만원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안 보냈어요. 그런데 언제는 또 갑자기 00이를 내놓으래요. 그런 말 들으면 심장이 퍽퍽 거리죠. 만약에 애기 아빠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중에 아기를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달같은 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찍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 소송을 해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소송을 하는 건 괜히 시간낭비, 돈낭비, 머리만 아프고... 제 생각에는 양육비소송을 하게 되면 꼭 남편한테 받아야 되는 거 말고 그 쪽 집안을 연결해서 그 쪽 집안에서 뭔가 돈을 받게 해 준다던가...

한편, C20F는 원가족이 아기 아빠를 상대로 친자확인 및 자녀양육비이행소송을 거는 것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받고 장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

④ 추후 당사자간 교류에 대한 태도

1년차 면접대상자들은 앞으로 당사자 간(아기아빠와 아기엄마) 교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현재 호의적인 감정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C18F, C20F 외에는 더 이상 교류를 원치 않았다. 특히 C14M과 C15M은 아기를 버리고 간 엄마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에 앞으로 교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기아빠가 사망한 C13F는 아기할머니가 가끔 연락하고 아기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출산 시 상처도 받고(내 아들 자식 맞느냐?)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 전화번호도 바꾸었는데, 자동으로 전화번호가 안내되는 바람에 또다시 연락이 오고 있으나 받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C17F는 자립을 한 후 아기아빠와의 교류를 단호하게 끊은 상태이다.

C17F: 저는 애기를 낳고 나서 애기아빠를 못 뵈는데, 지금은 뵈어요. 애기 끝에 나 이제 너랑 못 산다 연락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버렸어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제가 이제 뭔가 해냈을 때거든요. 뭔가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만약에 진짜 고등학교까지만 딱 해서 나온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뭔가 없어요. 절망감에 다 빠져버리거든요. 이 나이에 졸업해 놓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애 때문에 진짜 인생 망친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⑤ 추후 아기와 아빠(엄마)간의 교류에 대한 태도

상대방과 당사자 간 교류를 원치 않는 사례들에서는 아기와 아빠(혹은 엄마)와의 교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C14M, C15M, C16F, C17F). 대부분 앞으로 아빠(엄마)와 아기가 만나는 것도 반대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아이가 커서 아빠를 찾거나 혹은 아기아빠(혹은 엄마)가 아이를 찾을까봐 불안해하였다.

C17F: 가끔씩 00이 데려가겠다는 소리 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데려가 보라고.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고. 나랑 얘기하지 말고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제가 막 열 받아 갖고 전화하지 말라고.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고. 와보라고. 막 큰소리로 땡땡 치거든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나중에

걱정되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 갖고 또 불안하고...

C15M: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를 찾으면)제일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개(아기엄마)에 대한 모든 걸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저랑 만나는 걸 완전 반대하셨는데 부모님 몰래 만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이번에 독한 마음먹고 00이는 충분히 크게 될 놈이니까 절대 엄마 못 찾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막 20살 까지 딱 키워놨는데 “아빠 저 엄마한테 갈게요.” 그러면 하 진짜로 그때는 저도 대놓고 말할꺼 같아요. “니네 엄마가 너랑 나버리고 갔는데 넌 그래도 엄마냐 나보다?” 전 막 그런식으로 이야기 할꺼 같아요. 왜냐면 스무살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러니까.

한편 아기아빠와 현재 호의적인 관계에 있는 C20F는 아기와 아빠와의 교류에 대해 고민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C20F: 퇴소 후 함께 살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음. 군대문제 해결 안 되서 걱정. (앞으로 애기아빠랑 합가하는 거)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욕심으로는 같이 살고 싶어요. 왜냐면 미혼모로서 살아가는 것도 험난하고 애기한테는 엄마도 있어야 되지만 아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애기를 위해서는 좀 같이 살기를 바라고 저도 기댈 곳이 더 필요하고 저는 (같이 살 생각인데) 마음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지켜보고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 사회적 지원

① 수혜 내용

이들은 그 동안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은 사례마다 매우 달랐다. 양육수당 혹은 보육비 지원혜택은 모두 제공받았으나, 그 외의 수혜내용은 지역에 따라,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정보력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특히 남자의 경우 정보력은 매우 낮았는데, 이들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제공되는 고은맘카드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해, 자신이 모은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하였고, C14M은 검정고시 학습비지원이 있는 줄 사전에 알지 못하여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시설에 있거나, 퇴소 한 경우, 그리고 정보탐색력이 뛰어난 사례에서는 사회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활용하여 자립여건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17F, C19F는 현재 자립의 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사례로 다른 사례에 비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서비스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17F는 미혼모 보호시설과 미혼모공동 생활가정을 거쳐 현재 자립을 한 경우로서 정규직(회계사)에 종사하고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취업과 주택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다. C19F도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고 있지만 임시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이미 마련하여 자립여건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다. 이들은 모두 자녀양육과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여 자기발전은 물론 자립여건을 보다 견고히 만들어가고 있었다.

② 자립요인⁶⁵⁾

이들은 대부분 자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도 매우 강했다. C14M은 주변의 도움 없이 그 동안 혼자서 아기를 키우면서 경제 활동을 해왔는데 미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대로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가면서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있었다. C17F, C19F도 자신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력을 쌓는 다양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련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임대아파트도 마련하는 등 자립여건을 착실하게 쌓아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립요인은 자신들의 정신력이라고 응답하였다.

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정신력이 중요

"포기하면 안된다(C15M)",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C17F)",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아빠는 정신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C14M)"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립여건의 필수요소인 주거마련과 경제 능력 또한 청소년 한부모들의 정신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하고 견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C14M: 아기를 잘 키우려면 사회가 어떤 도움을 줘서 애를 키우기 보다는 자기 생각이 서 있어야 되요. 사회가 뭐 애기 학교 뭐 양육비 1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부모 마인드가 안 됐다고 하면 저는 어떤 지원을 주더라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걸 사회문제가 아니라 정신 마인드 저는

65) 본 장에서는 1년차면접 대상자들 중 자립의지가 강하고 현재까지 자립여건을 가장 성공적으로 쌓아가고 있는 사례 C17F 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C17F: 저희 집이 힘들다보니까 저는 진짜 잘 살아야겠다.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시작도 좋은 게 검정고시 할 때, 너무 성적도 잘 나왔고 나도 이제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는 이제 우리 00이랑 먹고 살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무조건 스텝스를 해서 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 창업이고 뭐고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한다. 내 적성에 안 맞아도 난 무조건 안정적이고 오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우리 00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거면 된다. 계속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이러한 정신력은 삶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C14M: 저는 제가 말을 하면 21살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계획이 약간 딱 정해져 있거든요 25살까지 얼마를 모아서 집을 구하고 27살 때까지는 뭐 차를 사고 이렇게 계획이 딱 정해져 있고 우선 25살 때까지 군대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거지를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집을 구하려 하는 거거든요.

C17F: 회계사 공부 시작.... 너무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서 거의 막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 아침에 열 시까지 갔다가 두 시에 끝나면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빵 한 조각 먹고... 학원언니들이랑 6시까지 공부하면서 청량리까지 가고 끝나면 00이 데리러 7시 반까지니까 7시쯤 도착하면 00이 데리고 집에 와서 바로 밥 먹이고 그 다음에 애기 씻기고 재우면 한 밤 10시 되요. 10시 되면 그 때 애기 것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렇게 하면 12시 되요.

나. 주거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해결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는 자립을 위해 주거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C15M은 부모와 동거하면서 아버지 일을 돕고 미래에 대비한 적금을 들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C17F, C19F는 취업활동을 하고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다. 자녀발달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케어

한편, 1년차 면접대상자들은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선 아기가 건강하고 바르게 잘 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C14M: 어린 나이에 어떻게 키우겠냐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솔직히 남자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 까 애를 막 키운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진짜 싫거든요. 저는 00이 학업에 대해서도 엄청 관심도 많구요. 00이가 어린이집에서 오면 하루에 했던 걸 다 체크를 하고, 오늘 뭐했어 이렇게 다 물어보고, 학습지 가끔가다 가져 와요 같이 복습도 하고 그래요 저는 여태까지 그걸 못 받아왔거든요 어린시절에... 저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깐 편견을 깨고 싶어요. 미혼부이니까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쳤으니까 그 자식도 애비처럼 클 거다 ... 그런 편견 자체를 깨고 싶어요. 그리고 00이가 지금처럼만 잘 크면 좋겠다.

C16M: 자식이 건강하게 크기를 바라잖아요. 예의가 좀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좀 눈치도 빠르고...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자)지금 중졸 검정고시 하고 있고 내년 8월 달에 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딸 거거든요. 자격증도 이번에 바리스타, 미용 뷰티랑 다 딸 꺼예요.

라. 취업 대비 교육참여 및 기술 연마

이들은 취업을 대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받고 언제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⁶⁶⁾.

C16F: 제가 이번년도 1월에 입소해가지구요. 12월달 쯤 되면 나갈 준비를 해야... 그때 되면 모자시설로 옮겨서 2년 정도 생활하다가... 제가 취업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는 미용 쪽..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로 나갈건데...거기 있는 동안 고졸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바리스타랑 준비도 하고... 기회가 온 거니까 그거부터 끝내고 나서 미용을 배우려고 해요. 어쨌든 1순위는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시설에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지면은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용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바리스타 배운 걸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C17F: (취업성공패키지 적극적으로 활용)이력서에 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 나이쓰고 주소쓰고 학력 검정고시 딱하나고 밑에 경력하나도 없지... 안 되겠다 취직 잘해야 하는데. 무조건 자격증을 따자... 이래갖고 6개월 동안 자격증을 7개를 땀어요. 전산세무2급, 회계1급, 세무회계, 세무관리, 회계관리 따고 1급 2급 이런 식으로도... 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따서 취업해야 된다고 학원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집에 가서도 복습하고 걸어 다니면서 선생님 강의 녹음해가지고 이어폰

66)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C19F)는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선택한 과정이 적성에 안 맞아 별 도움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제한적이고, 한번 선택하면 1년 후에 다시 선택해야하므로 최종 진로를 선택하기 전까지 보다 심화된 상담과 탐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으로 듣고 계속 달달달달... 그 때는 저도 대단한 게 몇 페이지에 뭐가 적혀있다는 걸 다 알고...

마. 안정된 직장

자립을 위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려면 사원복지와 급여가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C17F: 여러 사무직 전전하다 전공 살려 회계사 업무 담당 직으로 취직 청소년 한부모 차별안하고 오히려 격려해주셔서 현재 연봉 1600만원... 2년 후에 연봉협상해서 미리 1900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정도면 완전 좋잖아요. 일 년에 200씩 오르는 거니까 3년 있으면 2000은 넘고 제가 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얘기 해주시는데 야근 좀 자주하는 직종이라 면접 때 제가 야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 했더니 그래도 얘기 아프면 얘기하라고 얘기 아픈데 어떻게 출근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 해주시고 알고 보니까 (자녀가)다들 초등학교 1학년이예요. 과장님도 다 셋이 똑같으세요. 제가 가장 어린 그래서 더 이해해주시고 저희 점심 먹으면 다 얘기 얘기만 해요.

바. 지지체계 구축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주변에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C17F: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임신 9개월까지 산부인과에)한 번도 못 갔어요. 애기아빠도 무관심... 보건소에서 검사 공짜라고 연락해봤더니 이미 개월 수가 오래 되서 소용없다고 (알바)피시방에서 담배연기를 너무 맡았으니까 제발 기형아만 아니길... 그 땐 애기에 대한 애착도 없고 단지 건강하게 나와서 입양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만 했던 말예요. 그러다 배가 불렀는데 애기아빠가 배달하던 가게 사장님의 사모님이 저를 보시고 불쌍하니까 한 번이라도 병원에 가보자고 산부인과에 데려가고 한 달 후 사모님이 절 데리고 병원에 와서 애기 낳았어요. 사모님이 지켜주시고... 첫 선물을 손싸개, 발싸개, 겹싸개, 속싸개 하나, 배넛저고리 2개 이렇게 사주셔서 다행히 그거 하고 3일 후 갈 데가 없어서 걱정하는데 어떤 사회복지사 분이 진짜 (제가)갈 데가 없다는 걸 느끼시고 아는 사람 연결해주셔서 두리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울러 주변의 격려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C17F: (현재 회계사 자격증 따고 관련회사 취업)그 때 시설에 회계사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돈을 꽤 번다고 안정적인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회계를 할까 하니까 다들 회계 진짜 어렵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다 절 못 믿은 거죠. 선생님들마다 넌 그거 못한다. 그런데 스텝스 상담선생님은 처음 배우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주셔서 학원을 다녔는데 자격증을 하나 딱 따니깐 진짜 막 내 세상이다 이제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도 생기고 자격증 많이 따서 이력서 꽉꽉 채워야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자격증 7개)다 땀쥔.

사. 적극적인 정보탐색 및 정보제공 요청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C14M, C17F, C19F는 평소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해당부서에 반복적으로 문의하면서 필요한 지원내용을 그때 그때 바로 받을 수 있었다.

C17F: 희망플러스 등 신청 다 하고 전화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뭐 해야 하는 게 많고 귀찮죠. 동사무소에 가서 다 알려달라고... 있으면 우편 다 보내달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해봤거든요. 그래야지 보내주지. 우편으로 문화바우처 이런 거 있는 것도 다 디딤돌 언니들이 먼저 하고 있어서 알았어요.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삶과 자녀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정보탐색 및 교육과 훈련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 등이 가장 중요한 용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들 중에는 자립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도 있었는데 주거문제(C13F, C14M, C18F)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C14M), 결혼(C15M, C16F)에 대한 것이었다.

C13F: 월세부담이 크고 야기24시간 보육 맡기고 낮엔 화장품 방문판매, 밤엔 바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내가 무력하게 느껴지고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봐 두렵다.

C14M: 아빠역할 힘들어... 결정적으로 혼자 키우는게 돈도 벌어야하고 애까지 키워야하는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회사를 가게 되더라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일하는데 군대문제 해결 안 되서 아직 불안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 자리를 잡는다하더라도 내년에는 산업체를 가야하기 때문에 또 그만둬야 해요. 평생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오래 죽 다닐... 근데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자리가 안 잡힐

것 같아요.

C15M: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양육에 어려움은 없으나 결혼에 대한 소망과 두려움이 있어 이미 새로운 여친과 결혼까지 생각했으나 아기 문제로 헤어짐... 결혼해서 안정된 생활하고 싶어요.

C16F: 일차적으로는 경제적인게 제일 두렵구요. 이차적으로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젊으니까... 만약에 남자가 나타나면 그것도 두려울 것 같아요. 애기를 먼저 일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애기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날지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5) 정책 요구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는 현재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들도 양육을 1년 이상 한 대상자들과 동일하게 정보가 제한되고 전달체계상의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가장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① 서비스내용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내용에 대한 만족은 주로 시설입소와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경험한 사례들은 대부분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진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시설에 있으면서 아직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 못한 사례들도 시설에서 나가기 전에 이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싶어 했다. 또한 출산과 초기 양육과정에서 시설에 들어와 생활하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C16F: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미혼모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병원비 이런 것도 다 국가에서 해 주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여기 온 건데 그런 도움을 받으니까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필요한 정보도 알려주고...

그러나 시설 내 위탁대안학교의 규정 중 모유수유 엄마와 분유수유 엄마를 구별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과(C20 F)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가

자조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 제공되고, 참석인원수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양이 달라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반응도(C13F) 있었다.

C20F: 대안학교 다닐 때 애기가 아플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도 하고, 모유수유 하는 엄마들은 모유수유라는 이유로 출석처리가 되요, 근데 분유수유 하는 엄마들은 애를 떼놓고 학교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이돌보미를 쓰든가 아니면 가족분들이 따로 돌봐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여의치 않고 애가 아픈 데 어떻게 떼놓고 오겠어요.

한편, 면접 대상자 가운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현 제도는 일을 할수록 지원내용이 줄어들어서 일할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립하려는 의지를 꺾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었다.

C17F: (취업해서 소득이 차상위계층이나 청소년 한부모 기준 보수월액을 초과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더 힘들어질 뿐이고 만약에 한부모 이런 것도 끊기면 도시가스 경감 이런 것도 안 되고 오히려 돈만 더 줄줄 나가죠. 그니까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뭔가 그런게 있으면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잘 살겠다는 욕심이 생길텐데 어쩔 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막 힘들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복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포기도 하고...

②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만족도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이 많았다. 특히 주민센터(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대한 불만이 컸다. 전달체계상의 만족도에 대한 1년차 면접대상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지원신청 과정에서의 불편함

서비스지원신청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서비스 내용별로 해당 기관이나 시설이 제각각이어서 매번 따로따로 준비해야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또한 전달체계상의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C13F: 서비스 주는 기관이 다 달라서 서류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전달체계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다... 동사무소, 건강지원 따로따로... 복지관은 친절한데 건강지원센터는 불친절해서 모든

한부모들이 불만이 많다(대전) 물품도 담당선생님이 자기 멋대로 정해서 지급하고 동사무소 직원도 불친절하고...

C15M: 동사무소에 양육수당신청, 수혜 받음...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었으나, 똑같은 내용의 서류를 너무 많이 작성하는 게 불편...

C17F: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아이돌보미같은 경우도 신청하고 뭐해야 되고 절차도 꽤 복잡해요. 모든 게 다 절차가 복잡해요. 한부모라고 등록을 하기까지도 A4용지 몇 장을 써야 되고 애기 낳고서 동사무소 가서 그렇게 막 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되게 힘들고 한부모 신청하고서 되는 기간도 한 달인가 걸려요. 되게 까다롭고...

그러나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에 연락하여 임대주택신청에 대해 안내해주고 신청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해주어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⁶⁷⁾. 따라서 지역마다 또 담당자 마다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17F : (새로 이사간) 관할 동사무소에서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을 잘 알고, 임대주택 신청에 대해 안내해 주셨어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시고 시간이 촉박했는데, 빨리빨리 처리를 잘 해주셔서 무난하게 신청하고...임대주택 당첨되어 계약금 400만원을 지급했어요.(취업패키지에서 회계공부 하고, 회사에 회계사로 취직되어) 장려금 400만원 받은 걸로 ..⁶⁸⁾⁶⁹⁾

나.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1년차 면접대상자들은 지원내용에 대해 주민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담당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청소년 한부모들은 서비스를 놓치거나 매우 제한된 서비스만 받게 된다. 사례 중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도, 면사무소 담당자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67) 이 사례는 C17F가 서울의 P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C17F는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큰 불편을 겪었는데, 전에 살던 E동사무소에 아이돌보미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공무원이 내용을 전혀 몰라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68) 공동 생활가정에서 2년동안 생활하거나 6개월 동안 학원(취업 프로그램)을 다니고 관련 분야 취직을 하면 자립지원금 400만원을 받는다.

69) 청소년의 경우 임대주택 계약은 친권을 가진 보호자가 해야 한다. C17F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등록된 친권자는 친부였기 때문에 평소 소원했던 친부에게 연락하여 친부가 계약을 하였다.

C14M: 1년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알게 되어 청소년 한부모지원내용을 알게 됨... 그런데 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소득 많다(200만원)는 이유로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못 받았음... 매우 불친절...

C17F: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그런 게 있다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아이돌보미같은 것도 오히려 동사무소가 더 몰라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아이돌보미 신청할게요. 하니까 네? 어떤 거요? 어린이집 보육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진짜. 동사무소 사람보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도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그니까 일단 처음 얘기를 낱고 들어오면 그런 것부터 다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왜 해산급여 있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그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려주지도 않고 어디서 알 길도 없고 그래서 출산 후에 이야기 하니까 얘기를 낱아서 받을 수가 없대요.

③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이들은 사회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반응하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가. 전달체계의 개선

-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주민센터와 건강지원센터 등의 담당자가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과 서비스 내용을 숙지하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전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C14M, C16F, C17F, C19F).

- 사회지원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안내 및 서비스 전달

청소년 한부모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과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C13F, C14M, C15M, C16F, C17F, C18F, C19F, C20F). 특히 공공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하여 등록이 되면 관련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결하여 전달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하였다.

C14M: 이런 제도가 있는 거 자체를 몰랐고, 이런 제도가 있으면 솔직히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을거거든요. 면사무소에 가도 알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자체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게 크죠.

C17F: 신생아, 산후조리 시스템 그거 저는 못 받았어요. 몰랐거든요.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희들한테는.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에서 알려 주면 좋을 텐데 동사무소에서 보내는 우편물도 좀 잘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희망 플러스 통장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디딤돌에서 언니들 얘기하는 것 얼핏 듣고 제가 알아본 거죠. 희망플러스 이런 거는 엄마들끼리 경쟁률도 너무 치열해서 잘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왜 이렇게 안 알려주냐... 이랬더니 자기네는 동사무소 포스터로 홍보도 하고 다 했대요.

나. 자립지원에 대한 정책요구

이들은 자립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거문제와 취업문제가 해결되어야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 경제적 지원확대

C16F: 애기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는 게 돈이잖아요. 어쨌든 저출산인데 애기를 낳겠다는 의지와 함께 애기를 키우고 있는 건데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 없으면 미혼모들은 지금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애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은 애기를 키울 마음이 조금 더 생기거든요.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생기고... 좀 안심되게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 주거문제 해결

재가 대상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고(C13F, C14M, C17F) 시설 생활인은 퇴소 후의 거처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C16F, C18F, C20F).

-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자격에 대한 제도 개선

현재의 제도에서는 미성년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와 관련된 친권은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에게 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집을 계약하거나 자녀의 보험을 계약할 때 청소년 한부모가 직접하지 못하고 친권을 가진 청소년한부모의 모나 부가 개입해야 한다. 따라서 원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C17F: 자녀보험 계약 직접 못 하고 친모가 와서 대신 해주고 임대주택 계약 못하고 친권이 등록되어 있는 친부가 와서 겨우 해주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다 한건데 힘든 건 미성년이라고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 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도 개선

청소년자립지원금은 제도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 지급되는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교권내에서의 학습권이 대부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20F: 현재 학교에 재학중이어야 월 10만원 지급...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퇴를 권유하거나 학교를 못 다니게 하면서 학교 다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은 모순... 모든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립지원금 지급해야...

- 자립 후 자립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사회지원은 대부분 청소년이 자립을 하는 시점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립초기엔 아직 전반적인 생활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지원을 바로 중단하게 되면 자립을 하기 전 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자립이 안정되게 정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이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의욕을 갖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C17F: 저는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이게 기준보수월액이 있어요. 2인 가구는 126만원인데, 청소년한부모는 뭐 140만원인가 그래요. 제가 월급 세금 떼고 125만원을 받아요. 거기다가 (청소년한부모양육수당)15만원 더해서 한 달 동안 식비, 임대료 다 내고 사는데 단돈 5만원만 월급이 올라도 그게 끊겨요.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계층이 끊긴단 말예요. 그러면은 애기 의료비가 제일 급하고 쌀 같은 거 동사무소에서 사면 더 싼데 그런 것도 안 되고... 15만원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급이 올라도 똑같거든요. 진짜 뼈빠지게 일하는데 자립하고 나서 다 끊겼고요. 지금, 내 돈으로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나라에서도 애기 낳고 기르라고 해놓고 정작 일하면서 양육하는 사람들한테는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하고 놔버리면...

C14M: 지원되는 제도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소득을 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원을 받으려면 한 달에 80만원 벌어야 되데요. 구미가 임금이 짠 곳인데 솔직히 지금 어느 회사를 들어가도 다 200만원 넘어요. 편법을 쓰지 않지 않는 이상은 지원 받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애기 두고서

막 생활하는 남자도 있을 거 아니예요 개네들은 그냥 놀고 먹고 하면서 대충 피시방 알바하면 세금도 안 떼니깐 소득 그런 문제도 없고 나라에다가 일 안한다고 지원금 80만원씩 타먹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뼈 빠지게 일하고 200만원 받아(혜택을 못 받고)...

- 취업성공패키지제도 보완해야

취업성공패키지는 청소년 한부모로부터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도이나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담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인데, 상담 담당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의 진로상담이 차질을 빚기도 하고 적성탐색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진로결정 후 적성 때문에 고생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진로상담 외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많이 요구되는데, 현재는 심리상담부분이 매우 약하고, 때로는 일선에서 상담실습생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요구하였다.

C17: 자립훈련 받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다지 노력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는데, 선생님이 관두셨어요. 남을 이렇게 취업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자기네가 막 더 관두고 새로 들어오고 관두고 좀 이상해요. 알선도 시켜주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텝스는 한 번 정하면 그 길로 계속 나가야 되고. 일 년 뒤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하는 걸 되게 잘 해야 되고. 그게 좀 부담스럽죠.

C19F: 선택 프로그램 한정되고, 상담 후 바로 한 두 가지 선택해야... 일년을 그대로... 만약 적성에 안 맞으면 다시 일 년을 기다려... 나는 웹 프로그램 했는데 잘 안 맞아서 고생... 전문적 상담 필요... 실습생 말고(별도움이 안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겐 특히 평일 야간이나 토요일 주말에 상담 할 수 있으면...

한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대부분 피상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취업성공패키지는 반드시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C13F: 피상적인 경제교육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양육방법, 바느질 등 교육...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연결해주는 것까지 해줘야...

- 서비스지원체계 간 빈틈이 없어야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은 시설에 입소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숙식과 양육과 학업 및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바, 해당지원이 끝나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체계사이에 틈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C17F: 두리훔에 들어가서 필수코스처럼 검정고시를 했잖아요. 시설에서 빨리 해라 억지로 밀어 주지 않았으면 저 스스로는 검정고시 도전을 못했을 거 같고... 학원 지원해주는 건 되게 좋은데 (시설)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기를 맡겨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애기 5개월 때인가 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그게 엄청 힘들었거든요.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 때가 제일 힘들었고... 학원 다닐 때는 식대랑 교통비 받으니까 괜찮지만 그 후 취업사이에 아무런 지원도 없어서 그 비어있을 때 뭔가 체계적으로 방향을 이끌어주는 게 필요...

다.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요구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미혼모, 미혼부들은 엄마(아빠)가 건강해야 아기도 잘 키울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며 일을 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12시간 혹은 24시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영양플러스는 치료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며,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현재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야 이용 가능)의견 등이 있었다.

- 아기뿐만 아니라 아기엄마에게도 의료비지원을

C17F: 차상위계층에 의료비를... 애는 되잖아요. 엄마가 안되거든요. 애기가 아프면 병원에 당장 뛰어가겠지만 내가 아파도 애기를 봐야 되니까 병원 갈 시간이고 뭐고 다 없어요. 근데 돈까지 더해가면서 병원에 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도 애기 놓고 병원 안가봤어요. 한번도. 애기를 잘 키우면 뭐해요. 엄마가 진짜 어딘가 아픈데...

-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 개선

선정기준이 빈혈 등 아기가 아파야 지원대상이 되고, 건강한 아기는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보통 생후 1년 동안 지급되는 영양 플러스는 그야말로 이유식의 개념으로 생각해야하며, 건강한 아기로 자라나게 하기 위한 영양공급에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C14M: 가장 걸림돌은 우선 24시간 어린이집이 이곳에는 없거든요. 12시간씩 해주는 어린이집도 없구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키우는 입장인데 회사는 구했는데 어린이집이 만약 그 시간까지 안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회사 못 들어 가기 때문에...

- 아이돌보미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앞당겨야

C16M: 아이돌보미 자체가 출산하고 3개월 이상부터 되거든요. 저희 아기는 지금 89일 두 달 전부터 계속 학원을 다녔었는데 한 달째부터 아기 띠 차고 9시까지 복지관 맡기고, 버스타고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아기 띠 하고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문제있고 애기도 고생... 9시 20분에 수업이 시작하는데 항상 수업시간 1교시 때 늦어요. 아기 돌보미 지원자체를 조금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 시설 생활인 지원에 대한 정책 개선요구

시설 생활인들은 시설에서 숙식이 해결되고 아기 양육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체로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일부 변경된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시설입소자들에게 경우에 따라 양육수당, 교통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 시설 생활인에 대한 지원비 변경 내용 재검토

C16F: 이번에 바뀌어서 시설에 있으면 교통비지급이 안되더라구요. 또 애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이 안 들어오고 저희는 솔직하게 말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시설에 있으면 20만원 가까이 돈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바뀐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시설에 있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 시설 생활인에 대한 수급비지원은 100%로

C16F: 시설에서 수급자를 신청하면 전액 지원을 다 안 해 주더라구요. 주거비용을 빼고 지원... 제 친구도 지금 부모님과 연락을 안 하고 모자시설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원래는 80만원이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주거비용 빼고 64만원인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미혼모들한테 16만원은 완전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되도록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마. 학업지원에 대한 정책 요구

이들은 학업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았다. 이들은 양육으로 인해 중단된 학업을 검정고시나 시설위탁대안학교 등을 통해 지속하고 있었으며,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학습비나 교육비를 제공 받고 필요한 공부를 한 사례도 많았다(C16F, C17F, C18F, C19F, C20F). 그러나 이들은 학교 밖에서 보장되는 학습권 뿐만 아니라, 학교제도안에서도 학습권이 보장되기를 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들이 도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학 입시 방안이 마련되기를 소망하였다. 또한 중단된 학업을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 다니던 학교(혹은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일부사례에서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도 학교에서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임신과 출산은 비행이 아니며 따라서 이로 인한 자퇴권유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혼한부모만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는데, 대안학교는 오히려 미혼 한부모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C19F: 통계에도 나왔는데 청소년미혼모를 보면 학생들이 나도 저렇게 되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저렇게 힘들게 다니고 있으니깐 나는 안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하고 있다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렇게 안받아주는지... (청소년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따로 있다면?) 그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 그냥 일반학교에 탁아시설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일반학생들과 어울려서 지내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에 그 어디지 탁아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엄청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던데 검정고시 대신 일반학교 다닐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 청소년한부모들 만을 위한 대안학교도 필요

반면, 일부사례에서는 낙인에 대한 위험보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18F: 여기 시설 내 위탁대안학교는 진도가 안 맞으니까 만약에 특수학교처럼 (따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학교가 있으면) 기숙사도 있고 학교 안에 놀이방처럼 이렇게 좀 넓게 있으면 애기들 거기서 놀고 쉬는 시간에 잠깐 애기들 보러 갔다가 교실왔다... 이런 식으로...

- 시설위탁대안학교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시설위탁대안학교는 지역에 따라 운영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시험은 원학교에서 보고 모유수유하는 사람과 분유수유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은 시험을 원학교에 가서 보는 것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시설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이 진행되기를 바랐으며, 출석에 대한 규정에서도 모유수유자와 분유수유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유연하게 진행해야

현재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매일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들의 경우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매일 접속하여 수업듣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시설 내 컴퓨터 환경은 열악하여 접속이나 진행상태도 원활하지 못했고 청소년 한부모들도 아르바이트나 아기양육으로 인해 매일 접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수업출석을 매일매일 접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접속하여 수업을 들으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 보완을 요구하였다.

C16F: 원래 내년 8월 대입 검정고시를 안보고 한국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학교를 하려고 했다가 방송통신고등학교라는게 하루에 한번 접속해서 봐야하는데 컴퓨터 사정이 안 좋아서 하루에 한 번씩 못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60개면 기간을 정해서 60개를 다 볼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죠. 기간을 정해놓고 안 보면 거기서 뭐 마이너스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정해놔요. 좋겠어요.

-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마련

이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을 희망하였다(C16F, C17F, C18F, C19F, C20F).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진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내신이나 수능 성적 때문이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청소년 한부모를 배려하는 입시전형이 따로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는데, 현 입시전형 중 한부모 자녀전형에서 한부모 당사자 자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C20F).

사. 청소년 한부모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회분위기 조성

면접대상자들은 어린나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고 아기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기를 원하였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우리사회가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를 소망하였다.

C16F: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요. 기분이 많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애기를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해 저는 당당하거든요. 주위 사람들에게 애기 혼자 키운다고 그러면 ‘아빠 없이 어떻게 키워?’ 이렇게 막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싱글맘들은 키우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키우는거거든요. 그러니깐 ‘그러냐? 그럼 예쁘게 열심히 키워라’ 그런 반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 보면 ‘젊은 나이에 사고 쳐서 애 낳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고 쳐서 낳은 건 맞는데, 어쨌든 애기를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기 새끼가 얼마나 예쁘지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모성애라는 게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애를 키우겠다는 건데 그걸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대한민국 솔직히 인구가 없어서 지금 애기 낳고 열심히 키우겠다는데 응원을 해줘야지. 너무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고...

C17F: 청소년 엄마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애기를 낳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걸. 저 같은 경우는 애기 낳고 잘 됐잖아요. 힘들지만 더 새로운 세상이 있고..보통 한부모가 된 청소년들은 가정이 안 좋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집도 안 좋았고 다 부모님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그런 상황을 더 안 만들기 위해서 엄마들이 내가 아기의 보호자고. 내가 지켜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사회가 그렇게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그런. 무조건 니네 애기 낳으면 나라가 지원해 줄게 이런 것 보다는 애기를 낳으면 누군가의 한 생명을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그런 위로의 말을 먼저 해주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펴본 1년차 면접대상자들의 면접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II-53이다.

표 III-53 청소년 미혼부·모 면접조사 내용 결과 요약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전반적 생활 환경	임신과 출산 및 양육 환경	일부사례를 제외하고 원가족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은 열악함.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가출, 학교 자퇴, 집을 떠나 타 지역에서 자취 등을 하면서 이성교제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됨. 대부분의 원가족과 친척은 낙태와 입양 권유. 청소년한부모들은 처음부터 출산과 양육을 결심한 경우와 낙태시기를 놓쳐 출산을 한 경우 및 입양을 보내려고 출산을 한 경우 등이 있음. 그러나 출산 후 엔 모두 아기에 대한 소중함과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 양육을 선택하고 충실함. 사례 모두 자신의 발달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큼. 미래생활에 대한 계획도 대부분 구체적임. 원가족과의 관계는 아기로 인해 대부분 회복됨. 남자, 시설입소사례 등 청소년 한부모 자조모임은 활발하지 않음.
	기본권	대부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높음. 혼자서 아기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음. 여자의 경우 시설입소가 큰 도움이 됨. 남자의 경우, 정보력이 약해 제한된 서비스를 받음. 주변에서 청소년 한부모로서 차별 받은 경험이 많음. 사례모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었으나, 학업을 마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함.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을 통해 학업을 유지함. 학교 내의 학습권 침해에 대해 일부 반발함. 일부사례에서는 출산후에도 학교 내 학습권이 보장됨. 사례대부분 정보탐색에 적극적이거나, 서비스 이용과 접근성은 지역과 개인에 따라 제한됨.
배우자와의 관계	교류 및 양육비지원 상황	C18, C20은 현재까지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함. 나머지 사례는 상대방이 떠나거나 의도적으로 교류 중단시킴. 특히 남자 두 사례는 엄마가 아기를 버리고 떠나 아기엄마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음. 현재 교류중인 두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대방에 대해 불신. 부모로서 자질이 없다고 판단. 한 사례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양육비지원은 거의 없음. 친권행사에 대한 불안으로 대부분 양육비청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나타냄.
	앞으로의 관계	두 사례를 제외하고 부와 모 당사자 간 교류는 원치 않음. 아기와 친모(부)와의교류도 대부분 원치 않음. 일부사례는 아기가 커서 아빠(엄마)를 찾을까봐 불안해함. 후에 상대방이 친권을 주장할까봐 가능한 교류를 끊고,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으려함.
사회 지원	수혜내용	양육수당, 출산전 의료비는 모든 사례에서 혜택받음. 그 외 서비스는 사례마다 차이. 남자의 경우 정보력이 약해 서비스를 매우 제한적으로 받음. 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시설입소자의 경우, 많은 정보를 공유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받음. 교육지원과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한 만족도 높음.
	자립여건	대부분 생활력 강하고 양육과 삶에 대한 의지 강함. 아기와 자기발전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과 훈련을 받음. 주거문제해결과 경제문제 해결위해 대부분 매우 적극적으로 도전함. C14M, C17F, C19F는 인생목표가 뚜렷하고 자립여건을 차근차근 쌓고 있어 성공적인 자립이 기대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취업성공패키지와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 높음. 전달체계상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큼. 특히 주민센터(동사무소)공무원에 대한 실망이 큼. 지원신청서류의 많고 절차가 복잡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 그러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고, 상대적으로 시설과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 높음.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내용 요약
	정책요구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안내요구. 전문적이고 절차가 용이한 전달체계 요구. 전반적인 경제지원 확대 및 양육지원 확대 요구.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 주거문제해결,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 자격에 대한 제도 개선, 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도 개선, 자립 후 자립유지를 위한 지원필요, 취업성공패키지제도 보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 개선, 아기뿐 아니라 아기엄마에게도 의료비지원,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보미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앞당겨야, 시설입소자들에 대한 지원비 변경 내용 재검토, 시설 생활인에 대한 수급비지원 100%로, 임신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도 학교내 학습권 보장, 시설위탁대 안학교 운영을 보다 유연하게,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방식을 유연하게,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학입학전형 마련,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3. 전문가 집단 면접조사(FGI)⁷⁰⁾

이 절에서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면접 및 의견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 및 진로·취업지원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면접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의견조사 개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의 중요한 조건인 학업 및 진로·취업지원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수요 파악을 통해 현실적합성 있는 정책 대안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집단 면접조사는 논의 주제의 특성을 고려해, 학업 지원과 진로·취업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회씩, 총 2회에 걸쳐 간담회 형식의 표적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이루어졌다(표 III-54). 첫 번째 조사는 2013년 6월 10일 학업 지원을 주제로 현장 교사,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한부모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두 번째 조사는 6월 11일 진로·취업 지원을 주제로 관계기관 담당자,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청소년 한부모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각 면접은 2~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70) 이 부분은 황여정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모든 면접 내용은 면접참여자의 동의를 구해 녹음한 뒤, 전사하였다.

표 III-54 전문가집단 면접조사 참여자

1차 면접조사		소속	2차 면접조사		소속
학업 지원	A1	서울00교육지원청	진로· 취업 지원	B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A2	서울00고등학교		B2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A3	서울시교육청 지정 대안위탁교육기관		B3	경기도 여성가족과
	A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B4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A5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5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A6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면접내용은 크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상의 애로사항, 청소년 한부모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정책 개선 요구 등으로 대별되지만, 세부적으로는 논의 주제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학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편견이나 차별의 영향,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 수준, 제도적 개선사항,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돕기 위한 교육당국의 개입방안 등에 관해 면접이 진행되었다. 한편 진로·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사례,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원 정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2) 분석 결과

관계자 대상 집단면접 조사 결과는 크게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및 정책적 요구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전자는 학업 지원 및 진로·취업지원 영역별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후자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개별 영역별로 제기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1) 문제점 및 애로사항

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교의 배타적 풍토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주로 언급된 부분은 학교의 풍토 및 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제도권 학교를 벗어나 학업 중단이 발생한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대안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직 학업 중단을 경험하지 않은 학교의 울타리 안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직 학업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 지속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학교의 배타적 분위기와 학교 구성원들의 편견이 청소년 한부모로 하여금 학교를 마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학교의 배타적 분위기는 단지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안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는 데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 관리자들은 학교에 임신한 학생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학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우려해 임신한 청소년이 그 학교에 학적을 유지하는 데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미혼모를 위한 대안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위탁하는 데도 비협조적인 사례가 다수 언급되었다. 학생들 역시 학교에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서 수군거림을 당하거나 친구를 잃게 되는 것이 두려워 결국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쪽([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위탁을 해줘야 아이들이 여기서 정상수업을 하고 그걸 수업 받은 걸 인정을 받고 학교로 돌아가든지 졸업을 하면 검정고시 보는 게 아니라 정상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될 텐데, 학교가 자기네 학교 아이가 미혼모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B3)

“애들이 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위탁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문이 계속 나고 너무 알려지고 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그 위탁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가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거기([대안위탁교육기관])가면 너무 금방 표가 나는데 어떻게 가냐. 차라리 우리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래서 거의 안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A2)

주지하는 것처럼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친구들은 대표적인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은 물론 학교생활, 학업 성취에 까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임신·출산으로 인해 학교 친구들과로부터 받게 될 차별이나 편견,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청소년 한부모로 하여금 임신·출산을 유지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임신·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 학업 중단이라는 선택으로 귀결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었다.

“너무 심한 거예요. 애들 사이에서도 이게 너무 심하고 학부모님 사이에서도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다르게 봐요. 같이 논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임신했다고 하면 다르게 보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친구를 같이 도와주거나 돌볼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낙인이 딱 되는 거 같아요. 애들 사이에서 이게 커요. 근데 또래 안에서 임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래 애들 압력이 문제가 되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거죠. (중략)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해마다 미혼모가 생겼는데 한 명 빼놓고는 하나도 안 낳고 다 낙태를 했죠.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학교를 다니기 힘들니까. 아무리 학교에서는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애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 모진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한 번 소문이 나면 너무 아무데도 친구도 다 잃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A2)

그런데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은 추후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한다. 낙태를 경험한 후에는 생명을 버렸다는 데 대해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로 인해 무척 괴로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죄책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꿈에 나타난다는 등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해 하고.” (A2)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조리가 또 안 되잖아요.” (A4)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겨우 수술비용을 모아서 낙태를 한 이후, 몸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방치하는 바람에 건강을 해치는 등 심각한 2차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었다.

“대부분 이렇게 임신을 지속하지 않기 위해서 낙태를 하죠. 요새는 또 낙태가 불법이 돼서 비싸서 알바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같이 알바를 몇 달 해갖고 (낙태를) 했는데 해보니까 막상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먹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몸조리를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몸조리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조차도 약값이 없어서 방학 때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A2)

② 대안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력 인정 과정의 애로 사항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 제정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대안학교로 장기 위탁을 통해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이를 인정받아 원적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법령에서는 다른 학교 학생을 대안학교에 위탁받아 교육하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장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장과 교육청의 재량으로 해당 학생의 학업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스템이 아닌 개인의 재량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제도도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속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습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이처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이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관계자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이었다. 만약 개인의 판단과 재량에 의존한다면, 우호적인 교장을 만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학적을 유지하며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이를 인정받아 원적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제도의 미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을 이루었다.

"학교장이 아이 학업지속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이 개인이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한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법제도의 미비죠. 정확히 법제도의 미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철은 학교장을 만나면 이걸 말도 안 되죠. 그건 제도가 아니죠." (A1)

한편, 미혼모 대상 대안학교를 운영 중인 관계자들은 대안학교로의 장기위탁교육이 결정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애로사항으로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처리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교마다 요구하는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안학교 입장에서는 한 개의 원적학교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학생 인원수만큼 학교를 상대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시험을 치를 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학교는 시험지를 보내고 직접 학교 교사가 대안학교에 와서 시험 감독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시험지만 보내고 대안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가장 난감한 것은 반드시 원적학교에 등교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였다. 이 경우, 임신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임신을 숨기기 위해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가면 임신사실이 알려질까봐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원적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임신한 몸으로 시험기간 동안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시험 볼 때 저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봐주고 해서 보내는데 어느 학교는 그냥 시험지를 보내고 선생님이 오셔서 감독해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느 학교는 그냥 시험지만 보내서 저희가 감독을 해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감독을 해서 보내고, 또 어느 학교는 전에 충청도에 있는 학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임신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며칠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디 친척집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 우리 봉사자가 따라가서 시험을 보고 또 끝나고 데리고 오고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A4)

한편 미혼모 대상 대안학교는 학생 모집도 어렵고 소수로 운영되며 규모가 작다보니 근무하는 인력도 무척 제한되어 있는데, 이처럼 학교마다 요구하는 학사처리 규정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업무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 행정업무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사무처리가 아니라 비교적 전문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은데 현재 예산 여건이나 지원 규모로는 이러한 일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청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 사항을 토로하면, 인턴이나 보조원을 채용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월 백만원 남짓한 급여로는 이 같은 일을 수행할만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대안위탁교육기관])에 미혼모 학생이 7명이다 그러면 7명이 다 달라요. 학교가.... 그러면 선생님이 다 일곱 개의 학교를 다 상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행정적인 게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때로는 학교를 방문해야 하기도 하고 왜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시험을 보려면 데리러 가기도 해야 하고 또 성적처리하려면 거기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해야 되는 게 할 일이 너무 업무가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부분이 다 달라요. 출석을 어떻게 해 달라 뭐 대안교과과정은 어떻게 해달라 이런 부분까지 요구하는 부분이 다 다르게 되니까.... (중략)... 사실 학교 내 기관들로 상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이니까 이직율도 많고 또 그만큼 학교에서는 또 신뢰로운 직원이 아니더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을 수 있죠.” (A5)

“뭐 인턴 한 사람 쓰라고 그래서 쓰는데 인턴 해봤자 수당이 얼마나 돼요? 한 120만원? 이 정도 되니까 누가 하루 종일 와서 그 전문적인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주 기초, 기본적인 일만 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A4)

③ 양육에 대한 부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주로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 즉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었다면, 양육과 관련한 부담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원격교육을 통해 학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장애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는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부모라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성격을 지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현재 당장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면 부모로서의 역할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업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런 문제는 아이가 아플 때 자주 발생한다.

“학교 운영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학생이기는 한 건데 아기엄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할 때는 아기엄마로서의 욕구가 먼저 충족을 해야 해요. 학생이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인데 아기엄마는 당장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애기가 아프다든지

밤에 열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학교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렇게 아기랑 관련한 예상치 못한 일이 가장 장애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A3)

청소년 한부모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제도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시설 관계자들이 돌보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2013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에 속하면 시간당 1천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며, 종일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5개월 미만이면 30만원, 16-24개월 미만이면 40만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2013.10.13.인출). 그런데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학력을 취득하여 취업을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시간 당 천원, 월 30~40만원의 본인부담금도 무척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보유한 기부금 등으로 이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재가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돌보미도 아이들이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경우에 천원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천원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 국가가 지급을 한다던지... 경기도에 한 시설에서는 그 천원 부담을 시설에서 후원금으로 해서 대주기도 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개네들이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시설에서 후원금 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예 그거를 국가가 어차피 다른데 다 뭐 애기 돌봐주는데 들어가는 거나 양육비나 뭐 이런 거 쓰고 있는 마당에 아이를 그냥 맡기고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활동을 한다든가 교육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런 것 정도는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B3)

한편, 아이돌보미의 지역적 편차 문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로 거론되었다. 어떤 지역은 수요 대비 아이돌보미 공급이 많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서비스 신청을 해도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부족하지만, 연령대가 높거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과잉 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역 간에 교차 이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는 아이돌보미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아이돌보미 활용이 제가 미혼모시설을 이렇게 가보니까 아이돌보미가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돌보미가 모자란 지역이 있는가 하면 돌보미는 많은데 이용자가 없거나 이용자가 한정적이고...” (B3)

“같은 서울이라도 저희는 공동생활가정이 ○○동에 있고 저희 시설은 △△△에 있어요. 근데 △△△ 건강지원센터에서 저희는 요청을 하는데 거기는 항상 시설이 그쪽에 몰려 있으니깐 뭐 저소득 그런 세대들도 많다보니깐 어려운 사람이 많다보니까는 거기는 항상 부족하다고 대기상태고 너무 힘든데, ○○동에 있는 거기는 (아이돌보미가) 널널하데요. 남는데요. 거기는 아이들이 부유층이다 보니깐 어린 세대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그리고 한부모 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깐 그쪽은 여유가 있고 그 쪽 아이들은 신청하면은 수월하게 나오는데 저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같은 서울이라도 지역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B4)

(2) 진로·취업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① 낮은 학력

진로·취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경우, 우선 다수의 청소년 한부모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학력 수준을 갖추지 못해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2년 기준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 ‘고졸’ 학력 정도는 갖추어야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이다.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만 고교 1학년에 해당하는 10학년까지가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2012년 기준 99.7%에 이를 만큼 국민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고졸 미만 학력을 보유하는 것이 노동시장 진입에 무척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물론 도구적 목적과 관점으로 학업과 학력 취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진입 가능한 직종을 결정짓고,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종사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과 취업에서 낮은 학력이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실제로 직업알선이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담당자는 기본적인 학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업교육을 의뢰하거나 취업 알선을 하는데 무척 제한이 크다고 하였다.

“정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졸업장이 없으면 어디다가 알선 자체가 안되고 직업교육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A6)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우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진행 상황에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까지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제 처음에는 멋모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성공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참여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인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다가 분리를 시켰어요. 일단 청소년 한부모, 24세 미만이라기보다는 주로 십대죠. 청소년들에게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상담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저 왔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진로 상담. 상담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자기 탐색하고 진로상담, 탐색 이런 걸 많이 갖고 또 검정고시, 일단 자격을 취득, 학력을 취득해야 하니까.” (B4)

“그러니까 진로, 검정고시를 하고 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취업을 선택할 폭이 좁아요.” (B5)

② 진로계획(career plan)의 부재

명확한 진로계획이 부재한 것도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과 자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로계획은 진로 발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 진로계획이 뚜렷해야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고 그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 청소년 한부모들은 다수가 이 같은 진로계획이 부재한 경우가 많고, 본인의 흥미나 적성 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진로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데는 이들의 가정배경과 같은 성장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흥미와 적성을 찾아가는 데는 부모, 교사와 같은 유의미한 타인을 비롯해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역할모델의 영향이 크다. 특히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자녀에게 많은 직간접적 경험을 제공해주는 주체이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가족체를 경험한 비율이 높고 부모로부터 이 같은 자극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진로 발달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진로 계획이 부재할 경우,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방향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자기가 자기거취를 어떤 형태로든지 뭐 시설에 가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자기가 일단 자기거취를 정하는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진로를 정했을 때, 학습권도 공부를 계속 할 지 안 할지 아이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결정이 없고...” (A6)

이처럼 스스로 명확한 진로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못한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를 개발해나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이익이 되는 것을 좇는 경향도 보였다. 그래서 본인이 크게 관심이 없는 분야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참여 시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받은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은 장기적인 직업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립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노동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성취해나가기보다는 다시 일을 하지 않거나, 후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중략) 그런 걸 보면서 중간에 그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미혼모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십대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애기를 갑자기 낳다 보니까 돈 되는 거 여기서 또 뭘 하면 뭘 준다 저희도 그렇거든요. 너 이거를 하나의 성취를 하면 자격증을 따면 20만원 준다 30만원 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니까 당장 보이는 걸 하다보니까 저희도 인제 자립가게가 있는데, 그쪽에서 알바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요. 하는데도 당장 나는 거기 커피하고 제빵하고 흠패션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나는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나가서 기껏 훈련시켜서 내보내요. 자립시키는 거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대우받으면서 매니저급으로 생활해라고 내보내면 대부분 다 그 일 안하고 있고 수급자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든가 그래서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고 애길 하고...” (B4)

③ 복지혜택 수혜로 인한 자립의지 약화

진로·취업 등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복지혜택 수혜로 인해 자립 의지가 약화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다는 점이었다. 예컨대 기초생활수급자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본인과 자녀만으로도 2인 가구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2013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은 771,408원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3.10.13. 인출). 따라서 아무런 소득이 없더라도 매달 약 80만원 가량의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일을 해서 현금급여기준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올리게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잦은 의료비 지출이 요구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수급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이나 경력이 양호하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급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자립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저희 친구들도 고민해요. 인제 그 아까 말한 친구도 일년 이년 경력이 되다 보니깐 급여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야근 수당 같은 것도 좀 해라 하면은 조금 더 받게 되면은 거기에 다 걸려버리니까 의료비마저도 지원 못 받게 되면 애기는 아픈데 차라리 난 그거 포기하고 안하겠 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난 차라리 수급 받겠다 돈 100만원 타느니. 그 최저임금이 90얼만데 딱 그냥 그거 하면서 살짝살짝 아르바이트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청소년 한부모 들은 대부분 급여 많이 안타잖아요. 보통 100만원에서 120사이 왔다 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들은 그 범위 안에서 차상위든 국민기초수급이든 2인 가족으로 지원될 때 큰 차이가 없으니까 는 그렇게 크게 진로에 대한 취업에 대한 의지가 상실되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라고 해도 경력 같은 걸 쌓으라고 해도 또 그렇게 까지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 (B4)

“자활했던 경우들 보면은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혜택이 취업했을 때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제 오히려 적극적인 취업의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제 제가 했던 예인데요. 그 아빠가 심부전증으로 투석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인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월소득이 신입사원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 날 이게 종료가 되고 그 다음 달에 아빠병원 비가 2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료비, 교육비, 주택지원 이런 것들이 중지되어 있게 되니까 오히려 그걸 받는 것 보다는 취업을 안 하고 유지하는 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취업보다는 복지혜택 을 누리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게 되더라고요.” (B2)

사실 이 같은 공적부조에 따른 도덕적 해이 문제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빈곤 상태를 탈출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맹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지 제도가 오히려 자립 의지를 약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④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자립 여건 미비

비단 진로·취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과 관련하여 광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이들의 주거 불안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차근차근 자립을 준비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면담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원가족의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원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경우도 많고, 부모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경우에도 부모의 이혼 등 가족해체를 경험한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거비 마련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진로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미래를 막막해하며 한 곳에 머물지 못한 채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제가 미혼모뿐만 아니라 일반 한부모들이 ‘아 이 사람은 정말 모델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엄마들을 몇 분을 이렇게 만나서 언제부터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게 됐냐 물어봤을 때 주거에 대한 걱정이 줄었을 때예요. 내가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다가 또 어디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지속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커요.” (A3)

청소년 한부모가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거지원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제공되는 주거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 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 연계로 이루어지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존주택 임대 및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등이 있다(백혜정 외, 2012a). 이와 관련하여 앞 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들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임대주택지원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으로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되어도, 연령 조건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미성년자가 많은데, 미성년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원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놓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애가 하나의 문제를 짚는 게 영구임대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전세가 됐어요. (임대주택 당첨) 대상으로는 돼가지고 가서 계약하러 갔는데 십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LH공사에서 홈페이지를 보고 등록을 했는데 아니 거기에 십대 미혼모라는 규정이 있냐? 그랬더니 없지만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미성년자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공고에다가 미성년자는 안 된다고 해놓고 추첨 해놓고는 또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합격시켰냐? 그건 전산에서 오류가 난 거다. 그러면 애가 그 전에 한 아이도 그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십대 아인데... 근데 개는 두 달 후에는 성인이 됐대요. 담당자가 그거를 감안해서 봐줬대요. 근데 애도 그런 상황인데 담당자는 안 봐주는 거예요.” (B4)

(3) 개선방안 및 정책적 요구사항

관계자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문제점 개선방안 및 정책적 요구사항에 관한 내용은 크게 학업 및 진로·취업을 막론하고 자립지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개별 영역별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① 공통 사항

○ 효과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 및 자립의지 제고

학업지속이든 진로교육, 혹은 취업준비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건은 청소년 한부모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동기와 자립의지를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직업교육을 시키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견지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상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심리·정서적 개입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단기 프로그램이 많아 상담자와 내담자가 긴밀한 래포(rapport)를 형성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고, 그로 인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가급적 장기간에 걸친 상담적 개입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의 필요성을 스스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강고한 자립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주기를 고려한다면,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같은 심리·정서적 지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에는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거나 근로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 이 같은 심리·정서적 개입을 통해 자립을 위한 동기가 확고하게 부여되면, 이후 자립 준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 상담을 감정조절프로그램을 해가지고 1년 코스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엄마(청소년 한부모)들이 거기를 참여하는데 굉장히 싫어하고 안하려고 하고 그러죠. 매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했는데 일년 코스를 끝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주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여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석하고 하더니 이젠 맛을 들어서 본인들이 끝까지 가게 되고 끝나고 난 뒤에도 상담을 하고 싶어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치료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는 거 같아요. 인제 물론 다른 곳도 치료프로그램을 많이 하긴 하지만, 단기로 하니까 그냥 오픈하고 저희가 엄마들이 변화했을 때 거의 일년이 지나야 조금 공부할 의지도 있고 배워야 할 의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B5)

아울러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주민과 일대일 멘토링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사회적 지지층을 조성해주는 것도 유효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발달과 지역수준 사회자본(social capital)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기능이 급격히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가정 이외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가정의 역할 중 상당 부분을 대신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김준호 외, 2009; 황여정, 2012에서 재인용). 또한 실제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내·외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황여정, 2012). 특히 이 같은 지역사회의 지원 효과는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그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Sampson & Groves, 1989; 황여정, 2012에서 재인용).

실제로 앞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바 있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 중에는 가족, 친구, 교사 등 청소년기에 관계를 맺는 대표적인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기대하기 힘든 사례가 많다. 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는 함께 생활하는 동료나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지만, 재가 거주자의 경우에는 이 또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역사회 주민과 바람직한 멘토링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러한 단점을 상당 부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시설 관계자는 이 같은 접근 방법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엄마들이랑 멘티-멘토 연결을 해가지고 친정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엄마가 또 양육자가 되는 거죠. 그 지역주부가.... 그래서 일단 애가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역량. 엄마의 역량, 진로 자립역량을 강화를 한 후에 그러면서 인제 공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저희 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B4)

○ 진로계획 수립 지원

다음으로, 스스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커리어 개발을 위한 뚜렷한 계획 없이 직업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을 받기보다는 좀 더 명확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커리어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직업교육 이전에 ‘진로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진로교육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야 학업이나 취업준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 만큼 성과도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주변에서 접한 직종이 제한되어 있고, 직업에 대한 지식도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직업을 택하고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이 시행착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 관련 시설에서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진로교육을 통해 충분히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진로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앞서 1·2회의 진로·적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소 피상적이고 기계적으로 진로를 제시하기보다는 가급적 여러 번의 진로상담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로교육 8회기 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변화가 돼서 자기가 인제 인생에 대한

설계, 진로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나자 학업에 대한 것도 의지를 찾게 되고 학업교육도 진로의 연장선 상에서 취업의 연장선상에 진로가 있게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게 되는 좋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A6)

“장기적으로 가지 않으면 네 번 상담 갖고는 뭘 하는지 재밌는 것도 못 찾은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성실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고 애들도 문제거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B2)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기능 확장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지원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수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시간 당 천원, 종일제의 경우 월 30~4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이나 진로·직업교육 등 자립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보미도 아이들이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경우에 천원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천원도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다 국가가 지급을 한다던지...” (B3)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즉, 만 3개월 이하 영아를 두었으나 자립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로 인해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데 아이 돌봄 문제로 곤란을 겪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한편 아이돌보미가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강화하는 것도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제고시킴으로써 양육을 돕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이돌보미나 그렇게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찌면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사람이 어찌면 자립으로 갈 수 있는 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립이라는 게 경제적 자립도 있지만 이 사람은 부모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이잖아요. 청소년 한부모는 아직 성인으로서 다 정착도 안 된 상황에서 부모역할까지 다 같이 해야 하니까

그걸 같이 알려주는 역할을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돌보미 역할이 조금 확장 되서 이 부분이 파급될 수 있다면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정말 친정엄마 같은 역할. 친정엄마 같은 역할을 멘토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센터 건강가정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해서 오랫동안 계속 해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프로그램 속에서 건강센터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친정엄마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매칭을 해서 미혼모 한 가정과 연결을 해서 꾸준히 정말 엄마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거기서부터 정서적으로 힘을 얻고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거점사업은 안 해도 그 사업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B1)

“돌보미 선생님이 멘토링 역할을 아주 잘 해주고 계세요. 늦게 들어오는 엄마들은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오시는 세 시간 그 파트타임으로 오시는 분이 청소까지 다 해주시고 애 간식까지 다 해놓고 재워놓고까지 어떤 때는 가시고 또 자기네 주말 농장하는데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모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가거든요. 이 부분을 애한테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 늘 와서 이모처럼 해주니까는 다른 분은 안 따르고 엄마하고 그 두 분만 따르게 되는 거죠. 그니까 이 엄마도 안정되게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B4)

○ 주거지원 강화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립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이를 준비해나가는 데는 주거안정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임대주택 지원을 받기에도 사정이 녹록치 않다.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점 기준이 적용되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이라는 점에서 가점을 받지만, 세대주 나이, 가족 수 등에서 가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구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한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라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안정은 자립과 직결되며,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안정적 양육, 건강 등에도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안정은 추후 발생 우려가 있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임대주택 아까 말씀하신, 임대주택이 배점기준이 있는데 가족수, 노부모를 모시느냐 이런 것들이 배점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한부모는 식구도 작고 노인을 모시는 것도 아니지 이러다 보니까 ...(중략)... 배점기준을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따로 별도의 세대를 청소년

한부모 이거는 장애인은 몇 프로 하듯이 청소년 한부모 몇 프로 뭐 이런 배점기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고....” (B3)

② 학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요구사항

○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모성보호 기준 적용

여기에서는 관계자 집단 면접조사를 통해 논의된 사항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지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선방안을 차례로 정리하였다. 무엇보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풍토와 분위기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학 중에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의 지원과 배려가 학업 중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되는 바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는 문제를 일으킨 비행 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 법령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급으로 90일의 휴가를 제공하는 출산휴가 제도를 비롯해 육아휴직, 수유시간 제공, 임신한 여성의 유해업소 근무 제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성의 모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이는 청소년인 여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을 비롯해 사회 전 분야에서 모든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학생의 2.1%, 일반계 고등학생의 5.4%, 특성화 고등학생의 10.4%가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질병관리본부, 2012.11.1). 또한 ‘2012년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7.7%는 피임을 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피임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조선일보, 2013.9.25.). 이 같은 최근의 통계조사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임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학교의 배타적 분위기와 학습권 보장 제도의 미비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양산하는 우를 범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여성의 모성보호라는 원칙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학업지속을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인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의 위탁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성생활을 시작하는 시점들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가 보면 그 중에 몇 퍼센트 아이들이 임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지수가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신이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중략) 출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이 이 아이들에게 달라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A1)

○ 청소년의 임신·출산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교사교육 및 연수 실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계 고등학생의 5.4%, 특성화 고등학생의 10.4%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청소년의 성경험이 일부 극소수 학생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임신·출산 및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의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교사교육 및 연수는 교사의 커리어 단계를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예비교사교육을 담당하는 사범대학에서도 교육과정(curriculum)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임교사 직무연수를 비롯해 학생 인권에 관한 연수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집단면접에 참여한 관계자 가운데 현직 교사는 임신·출산한 학생의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 등 학교관리자의 의지와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장연수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예비교사교육, 초임교사 연수, 다양한 직무연수, 교감·교장 등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풍토를 변화시켜 가야 한다.

“저는 교장선생님 생각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연수나 이런 거 할 때에도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A2)

“그 이외의 교사 연수체계 속에서 지금 이런 독자적으로 느끼기는 힘들겠지만 100시간 이수하게 해라 이렇게 할 때 (청소년의 임신·출산 및 학습권에 관한 내용)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 (중략) 직원연수, 가끔 직무연수도 있죠. 해당 과목 외에 교양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영역들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가 그런 지점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접근하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꼭 좀 말씀 드려야겠고.” (A1)

○ 입양모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

한편, 임신·출산을 경험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집단으로 입양모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자녀를 입양 보낸 청소년 한부모들은 입양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다. 그런데 쉽게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관계자들은 입양모가 양육모에 비해 자립 의지가 더 강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다. 이렇게 본다면 입양모에 대한 자립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들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입양모의 경우에도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나 고교생 교육비 지원 등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돕고,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어 자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육모랑 입양모가 있는데 입양하는 친구들보다 양육모 자기들이 직접 양육하겠다고 결정한 아이들이 그런 교육에 참여하는 의지가 더 높았고요. 그리고 훨씬 성과도 좋았고 그리고 입양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참여도 자체가 매우 낮았고 계속 안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양육모 중에서도 자기 혼자서 내가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혼자 양육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진도가 빨랐어요.” (A6)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습권이니 교육권이니 얘기하는 주대상자가 양육하는 엄마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양육하는 엄마들이 맘이 바뀌어서 입양을 하겠다 그러면은 양육한 엄마들은 청소년 한부모 교육,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교육에서 검정고시나 교육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애가 입양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한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애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육지원의 대상이 안 되요. 굉장히 애도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그래서 실제로 양육하는 엄마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지원이나 자립지원이 나 그런 식으로 취업지원이 막 되는데 입양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 이렇게 가정기반이 취약한 아이들은 애네들의 학습권은 어디서든 보장되기 사실은 어렵다는...” (A5)

③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요구사항

○ 직업체험 강화

청소년 한부모의 진로·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요구로는 직업체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대두되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접해 본 직업 내에서 진로를 택하고 그로 인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진로선택이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그와 관련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실제로 직접 해당 직업을 체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대와 현실을 확인하고,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재점검하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회비용과 직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단계에서 나를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애네들이 가서 미용도 해보고 네일아트도 해보고 그런 어떤 경험적인 것을 많이 쌓아서 애네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진로를 찾아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훨씬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B4)

“예를 들면, 이제 이 친구가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실제로 유치원에 가서 일 개월, 삼 개월 정도 일해 보면 ‘아, 유치원교사가 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하든지 뭔가 자격증을 따야지 되는구나, 이 학업중단 상태로는 안 되는구나’ 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알고 보려면 검정고시를 따야지에 대한... 또 실제로 이미용 분야 같은 경우는 미용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실제로 미용실에 취업을 해요. 근데 가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하는 경우. 왜 그랬니? 그러면 학교 때는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60만원도 안 되는 월급과 13시간을 서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머리하는 게 좋은 거죠.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하는 것과는 분류를 시켜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좋아하는 게 바로 직업으로 확 빠져 들어가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먼저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하고 경험해보고 맞는 걸 선택해야지 중도탈락률이 낮아요.” (B2)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은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의욕을 높이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해당 일자리를 탐색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취업상담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다. 그러므로 여타 경로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한부모들도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관은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패키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일단 가는데 그걸 하게 되면 8시간 정도가 저희가 기본 40시간 기준에서

만 오천 그거를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비용 없이 사람들을 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2명까지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6개월 동안 최장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을 국가에서 내는 비용으로 이 사람들은 일 경험을 하고, 아까 거기 가서 경험도 하고 이 사람 기관에서도 무료로 이제 그 분들을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정말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일 년에 860만원까지도 지원 돼요.” (B2)

4.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 조사⁷¹⁾

1) 조사 개요

청소년 한부모는 우리사회의 소수자(minority)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사회 내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과 환경 여건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유의미한 타자(significant others)인 또래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경우 여전히 제도권 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법제를 통한 학습권 보장 못지않게 또래와 같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인식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고교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문항에 대하여 청소년 한부모, 중·고교생, 학부모간 인식 비교를 시도하였다.

(1) 중·고교생 조사

학생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조사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표본설계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통합조사 형태로⁷²⁾

71)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학생조사의 모집단 분석 및 표본설계 부분은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강현철 교수(호서대 응용통계학과)의 집필 원고를 발췌·요약한 것임.

72)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통합 진행하는 방식으로 6개 조사를 변형비례배분방식 및 단순비례배분방식 조사로 이원화하여 3개 조사씩 총 2개의 유닛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가 속한 유닛은 변형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모집단은 총 3,745,611명이며, 급별로 보면 중학교 1,836,377명(49.0%), 고등학교 1,909,234명(51.0%)이며,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 1,373,956명(36.7%), 자율고 142,710명(3.8%), 특성화고 341,294명(9.1%), 특수목적고 51,274명(1.4%)이다. 지역과 학교를 층화변수로 하여 층화집락추출법으로 6,182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204개 학교, 6,543명(중학생 3,036명, 고등학생 3,507명)을 조사하였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모집단을 2012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광역시도 16개)과 학교구분(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5개)을 층화변수로 고려하였다. 단, 고등학교 중 자율고와 특성화고는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하고, 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과 학교급을 교차하여 산출된 43개 각 층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하고,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약 200개, 목표 학생수가 6,200명을 넘도록 하였다.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여 각 학년별로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고,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학급 학생을 전수 조사하였다. 단, 추출된 학교의 조사가 불가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고,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여 원 표본 유지율은 대략 68.0%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출된 지역별 조사대상 학교 수 및 학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III-55).

(2) 학부모 조사

학부모 인식조사는 대표성과 예산을 고려하여 전문조사기관의 Master Sample 패널⁷³⁾을 활용하

표본 유지율은 중학교 70.5%, 일반고 72.5%, 특성화고 66.7%, 자율고 60.0%, 특수목적고 66.7% 수준이다. 표본설계 및 실시 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3년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사업결과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73) 이하 MS패널이라 하며, 본 조사에서 활용한 MS패널은 전국 국민을 지역, 성,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분포에서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277,688명의 집단으로, 설문을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약속한 사람들이다. 전화번호부를 표집틀로 활용할 경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조사 성공률이 낮고, 가구방문 대면조사 역시 조사비용과 시간, 인력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 MS패널 활용하였다.

였다. MS 패넬을 모집단으로 지역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총 510명을 조사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표 III -55 지역별 조사 대상 학교 및 학생 수

구분	중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서울	485(18)	370(12)	64(3)	467(9)	97(3)
경기	696(27)	522(18)	163(6)		
인천	202(6)	106(3)			
강원	88(3)	99(3)	89(3)		
충북	97(3)	102(3)			
충남	105(3)	111(3)			
대전	94(3)	108(3)			
경북	194(6)	86(3)	149(6)		
경남	188(6)	208(6)			
부산	186(6)	90(3)			
대구	195(6)	105(3)			
울산	93(3)	107(3)	85(4)		
전북	109(3)	83(3)			
전남	102(3)	79(3)			
광주	99(3)	104(3)			
제주	103(1)	113(1)			
합계	3,036(100)	2,393(73)	550(22)	467(18)	97(3)

* 주: 1) ()는 학교수임.

2) 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① 일반 청소년

조사대상인 중·고교생은 총 6,543명이다. 남학생(53.7%)이 여학생(46.3%)에 비해 다소 많고,

고등학생(53.6%)이 중학생(46.4%)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표 III-57). 조사대상 학생의 가족유형을 보면 85.4%가 양친가정이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가정은 10.2%로 2012년 현재 한부모가족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며, 본 연구의 청소년 한부모 표본에서 한부모가족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5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 청소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543	100	
개인	성별	남	3,513	53.7	
		여	3,030	46.3	
	교급	중학교	3,036	46.4	
		계열	고등학교	3,507	53.6
			일반계고	2,393	36.6
			특성화고	550	8.4
			자율고	467	7.1
			특수목적고	97	1.5
		주관적 성적	상	1,631	24.9
	중		2,668	40.8	
	하		2,215	33.9	
	모름/무응답		29	0.4	
가족	가족 유형	양친가정	5,590	85.4	
		한부모가정	667	10.2	
		조손가정	74	1.1	
		기타	161	2.5	
		무응답	51	0.8	
	경제 수준	상	744	11.4	
		중	5,383	40.8	
		하	381	33.9	
		무응답	35	0.4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	2,757	42.1	
		중소도시	2,987	45.7	
		농산어촌	799	12.2	

② 학부모

학부모 응답자는 총 510명이다. 성별을 보면 남성(50.4%)과 여성(49.6%)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연령은 40대 이하(81.2%)가 다수를 차지하였다(표 III-57). 자녀 교급은 중학생이 29.6%, 고등학생이 70.4%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았는데, 이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하였기 때문이다. (1인당)가구소득은 6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65.9%)가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응답자가 47.5%로 가장 많았다(표 III-57).

표 III-5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학부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10	100	
개인	성별	남	257	50.4	
		여	253	49.6	
	연령	40대 이하	414	81.2	
		50대 이상	96	18.8	
	학력	고졸이하	154	30.2	
		대학재학 이상	356	69.8	
가족	자녀 교급	중학교	151	29.6	
		고등학 교	일반계고	277	54.3
			특성화고	43	8.4
			자율고	20	3.9
			특수목적고	19	3.7
	(1인당) 가구 소득	60만원 미만	37	7.3	
		60~150만원 미만	336	65.9	
		150~300만원 미만	119	23.3	
		300만원 이상	18	3.5	
		평균(편차)	135.55(143.55)		
지역	거주 권역	수도권	242	47.5	
		충청권	54	10.6	
		전라권	57	11.2	
		경상권	136	26.7	
		강원/제주	21	4.1	

(2) 청소년의 임신, 출산 관련 인식

① 청소년 임신, 출산 경험 여부

‘주변에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학생)를 만난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는 응답률이 93.9%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있다’는 응답률은 6.1%로 임신 또는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는 최소 1명, 최대 20명이었다. 다만 최대수의 경우 조사대상 학교 및 지역이 동일하여 사례의 중복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학생(평균 2명)이 여학생(평균 1명)보다, 중학생(평균 2명)이 고등학생(평균 1명)보다 많았으며 이는 청소년의 임신 또는 출산 고민이 여학생에 국한되는 사안이라 보기 어렵고, 저연령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III-58

주변에서 임신 또는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학생) 접촉 경험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다(%)	있다(6.1%)		
					최소(명)	최대(명)	평균(명)
학생	전체		6,543	93.9	1	20	1.85
	성별	남학생	3,513	94.0	1	16	2.06
		여학생	3,030	93.9	1	20	1.63
		χ^2		4.216			
	교급	중학생	3,036	97.8	1	20	2.13
		일반계고	2,957	91.0	1	13	1.77
		특성화고	550	87.8	1	10	1.98
		χ^2		186.050***			

*p<.05 **p<.01 ***p<.001

② 임신, 출산 관련 부정적 인식

미혼부모, 십대 미혼부모, 혼전임신, 낙태, 자녀 입양하기, 자녀 입양보내기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한 학부모와 청소년의 인식을 비교하였다(표 III-59). 그 결과 입양하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부모가 학생에 비해 부정적 응답률이 높고, 학부모와 일반 청소년 모두 십대

미혼부모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각각 94.7%, 81.0%로 가장 높았다. 한편 입양보내기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도 높은 수준을 보여 학부모의 80.6%, 학생의 65.7%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자녀를 입양보내는 것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입양이 아닌 자녀양육을 선택한 십대 미혼부모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율배반적인 특성을 보인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십대 미혼부모에 비해 낙태(84.5%)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임신이 낙태보다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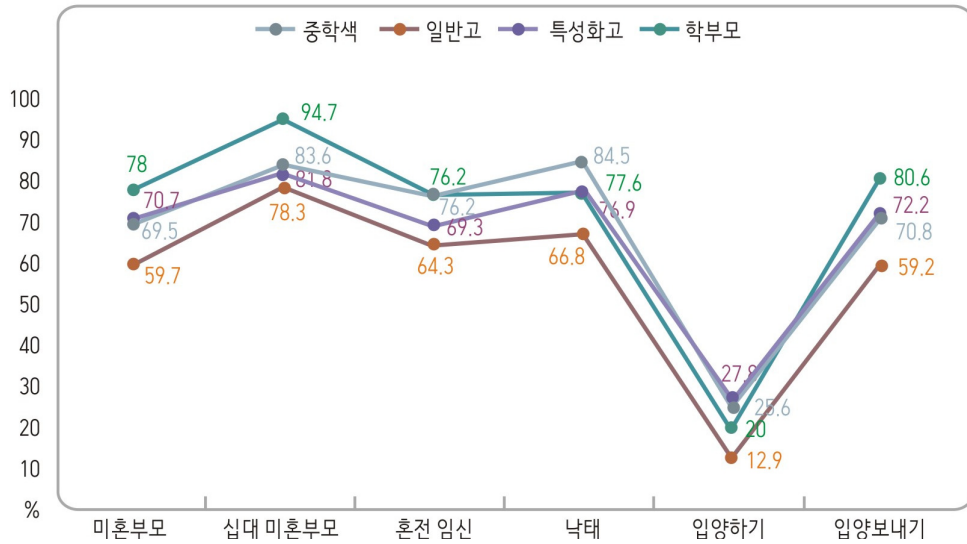
표 III-59 임신, 출산 관련 부정적 인식(절대안됨+안됨) 비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명)	미혼 부모	십대 미혼 부모	혼전 임신	낙태	입양 하기	입양 보내기
학부모	전체	510	78.0	94.7	76.5	76.9	20	80.6
	연령	40대 이하	414	77	94.7	76.1	19.3	81.9
		50대 이상	96	79	90	78.1	22.9	75
		$\chi^2(3)$		4.361	.617	9.278*	3.441	1.603
	성별	남성	257	73.5	94.6	74.3	19.5	75.1
		여성	253	82.6	94.9	78.7	20.6	86.2
		$\chi^2(3)$		6.553	.739	2.056	4.953	3.821
학생	전체	6,543	65.2	81	70.2	75.9	20.1	65.7
	성별	남학생	3,513	66.6	78.6	67.9	27	65.1
		여학생	3,030	63.6	83.8	72.9	12	66.3
		$\chi^2(3)$		22.292***	55.884***	109.605***	33.411***	272.325***
	교급	중학생	3,036	69.5	83.6	76.2	84.5	25.6
		일반계고	2,957	59.7	78.3	64.3	66.8	12.9
		특성화고	550	70.7	81.8	69.3	77.6	27.8
		$\chi^2(6)$		146.174***	52.575***	160.647***	357.512***	203.590***
	주변 경험	있음	375	56.3	69.9	60	60	17.6
		없음	6,145	64.1	81.7	70.9	76.9	20.1
		$\chi^2(3)$		79.814***	102.815***	92.103***	154.048***	57.441***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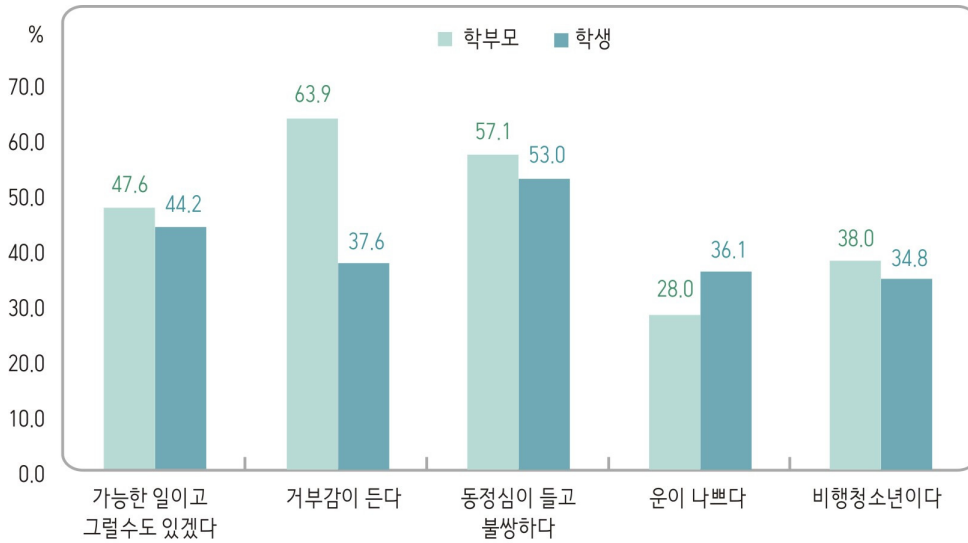
- * 주: 1) 각 항목은 절대안됨, 안됨, 괜찮음, 언제든지 괜찮음 4점 척도임.
 2) 일반계고는 자율고, 특목고를 포함함.
 3) 주변경험은 임신, 출산경험이 있는 친구를 접촉한 경험여부임.
 4) 학부모의 경우 학력, 자녀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그림 III -50】 임신 및 출산 관련 집단별 부정적 인식

② 중·고교생의 임신에 대한 느낌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중·고교생)의 임신에 대한 느낌을 각각 질문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거부감이 든다(63.9%)는 부정적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학생은 동정심이 들고 불쌍하다(53.0%)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여학생은 동정심(57.9%)과 거부감(43.6%)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학생은 가능한 일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46.5%), 운이 나쁘다(39.0%)고 인식하여 성별 격차를 보였다. 또한 임신 또는 출산으로 고민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 경우 학생 임신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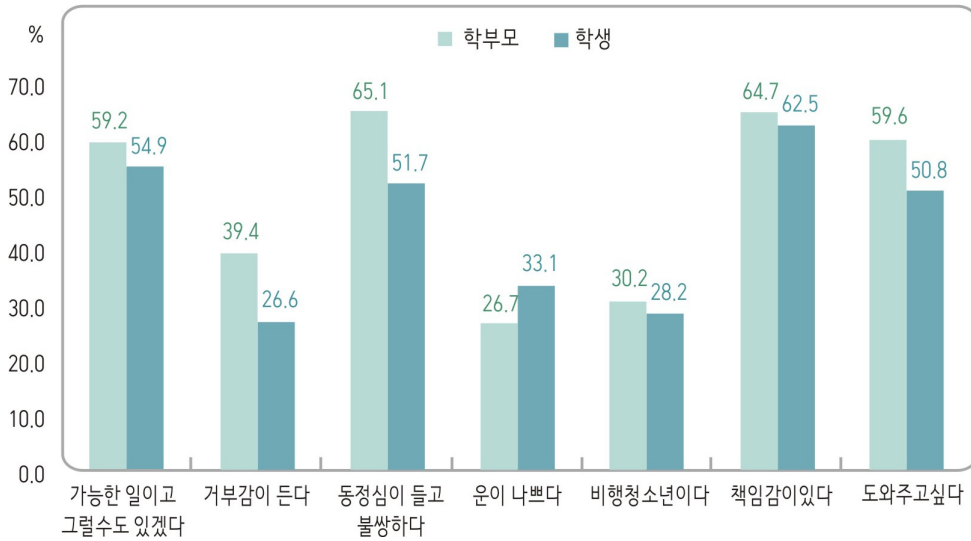
* 주: 1) 학부모의 경우 '운이 나쁘다' 성별 응답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01$)

2) 학생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성별, 교급, 경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p < .01$ *** $p < .001$).

【그림 III-51】 학생 임신에 대한 느낌('그렇다' 응답)

③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느낌

다음으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느낌을 각각 질문한 결과 학부모의 경우 동정심이 들고 불쌍하다(65.1%), 책임감이 있다(62.5%)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학부모와 일반 청소년 모두 '학생(중·고교생) 임신'에 대해 거부감, 운이 나쁘다, 비행청소년 등 부정적 응답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능한 일이고 그럴 수도 있다, 도와주고 싶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부모나 청소년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임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할지라도 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상대적으로 수용적이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임신과 양육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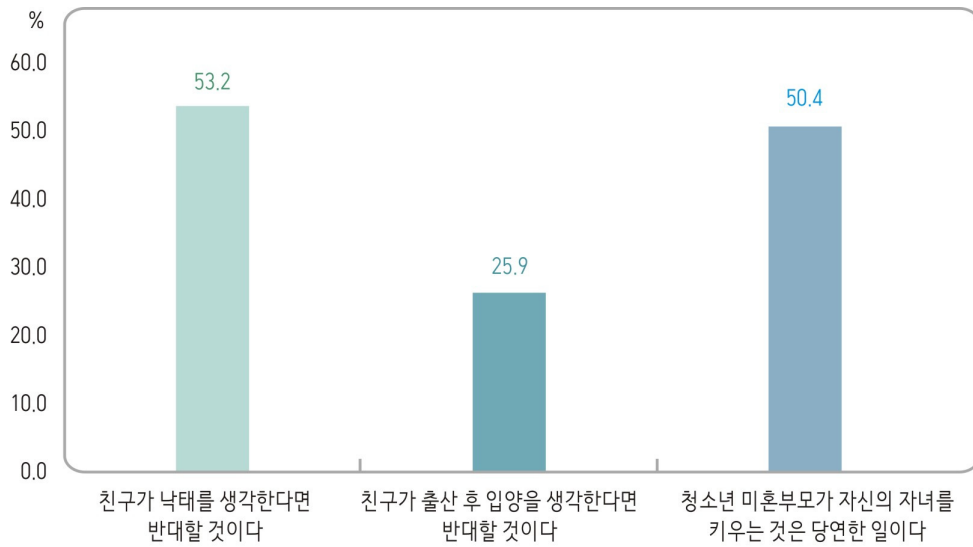


* 주: 1) 학부모의 경우 '가능하다' , '운이 나쁘다' 성별 응답률, '동정심이 들고 불쌍하다' 학력에 따른 응답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p<.001)
2) 학생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성별, 교급, 경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p<.01 ***p<.001).

【그림 III -52】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느낌('그렇다' 응답)

④ 청소년의 낙태, 입양, 양육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청소년의 낙태, 입양, 양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친구가 낙태를 생각한다면 반대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긍정 응답률(53.2%)이 중도적 태도(30.5%)나 부정 응답률(16.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반면 '친구가 출산 후 입양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부정 응답률(31.5%)이 중도적 태도(42.4%)나 긍정 응답률(25.9%)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낙태보다는 출산을 지지하더라도 출산 이후 자녀의 양육이 아닌 입양보내기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허용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림 III-53】 청소년의 낙태, 입양, 양육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표 III-60 친구가 출산 후 입양을 생각한다면 반대할 것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학생	전체		6,543	7.1	24.4	42.4	18.6	7.3	0.2
	성별	남학생	3,513	7.3	21.3	44.1	18.7	8.3	0.4
		여학생	3,030	6.9	28	40.3	18.5	6.2	0.1
		$\chi^2(4)$	53.011***						
	교급	중학생	3,036	7.1	20.6	45.6	17.9	8.5	0.3
		일반계고	2,957	7.4	29.5	38.9	18.4	5.6	0.2
		특성화고	550	5.5	17.6	43.9	23.8	10	0.2
		$\chi^2(8)$	111.591***						
	주변 경험	있음	375	9.1	22.1	37.6	21.1	10.1	0
		없음	6,145	7	24.5	42.7	18.5	7.2	0.1
		$\chi^2(4)$	1780.139***						

* 주: 1) 5점 척도임.

*p<.05 **p<.01 ***p<.001

다음으로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의 경우 긍정 응답률(50.8%)이 중도적 태도(39.9%)나 부정적 응답률(9.5%)에 현저히 높았다. 특히 주변에서 임신 또는 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였으며, 중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61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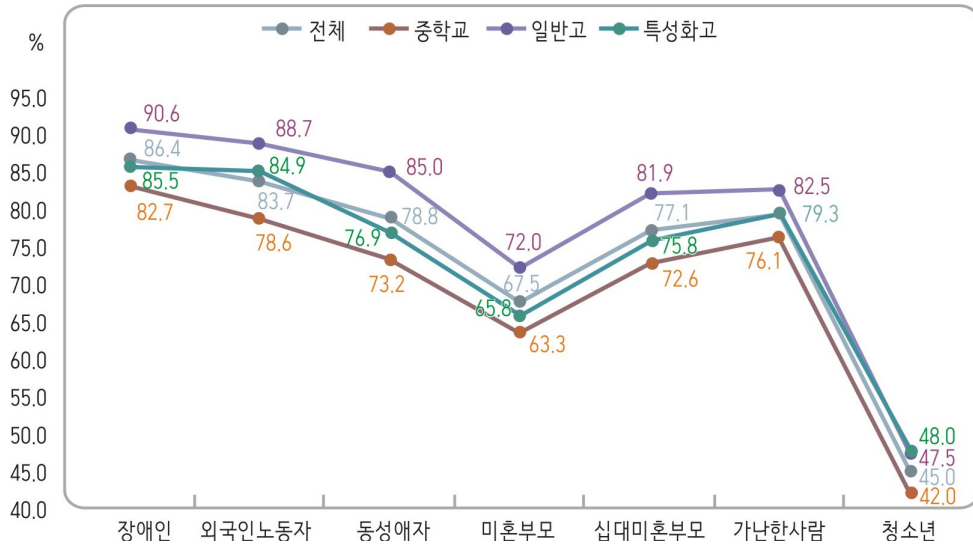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학생	전체		6,543	2.7	6.8	39.9	34	16.4	0.2
	성별	남학생	3,513	2.9	6.4	42	31.7	16.7	0.3
		여학생	3,030	2.4	7.2	37.5	36.7	16.1	0.1
		$\chi^2(4)$	111.591***						
	교급	중학생	3,036	3.1	8.3	46.1	27.5	14.8	0.3
		일반계고	2,957	2.5	5.4	34.3	39.6	18.1	0.2
		특성화고	550	1.6	6.2	35.8	39.6	16.7	0.0
		$\chi^2(8)$	159.342***						
	주변 경험	있음	375	5.3	3.7	26.9	34.7	29.1	0.3
		없음	6,145	2.5	7.0	40.8	34	15.7	0.0
$\chi^2(4)$		2718.901***							

* 주: 1) 5점 척도임.

*p<.05 **p<.01 ***p<.001

(3) 차별 및 보호 대상에 대한 인식

먼저, 장애인, 십대 미혼부모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포함한 각 대상 집단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차별 지각을 살펴보았다.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86.4%가 차별을 받는 집단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부정 응답률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십대 미혼부모의 경우 미혼부모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십대 미혼부모가 연령으로 인한 차별, 청소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여학생, 고등학생, 주변에서 임신, 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를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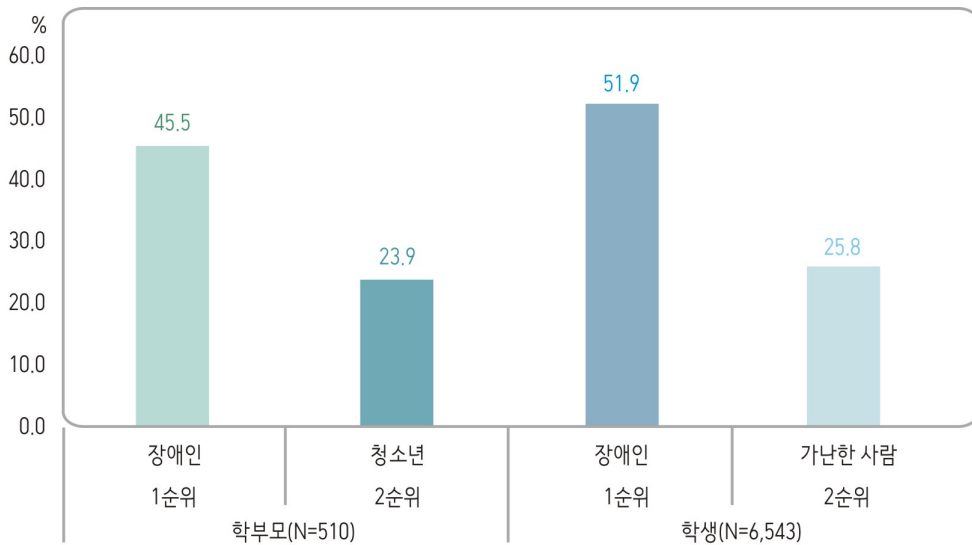


* 주: 1) 모든 대상 항목에서 성별, 교급, 경험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p<.01 ***p<.001)

2) 십대 미혼부모의 경우 여학생, 일반계고, 목격 경험에 있는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음(**p<.001)

【그림 III-54】 대상별 차별여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청소년 각각에 대하여 우리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질문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1순위는 장애인, 2순위는 청소년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의 경우 1순위는 장애인, 2순위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연령, 성별, 학력, 자녀의 교급에 따라 2순위 응답에서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III-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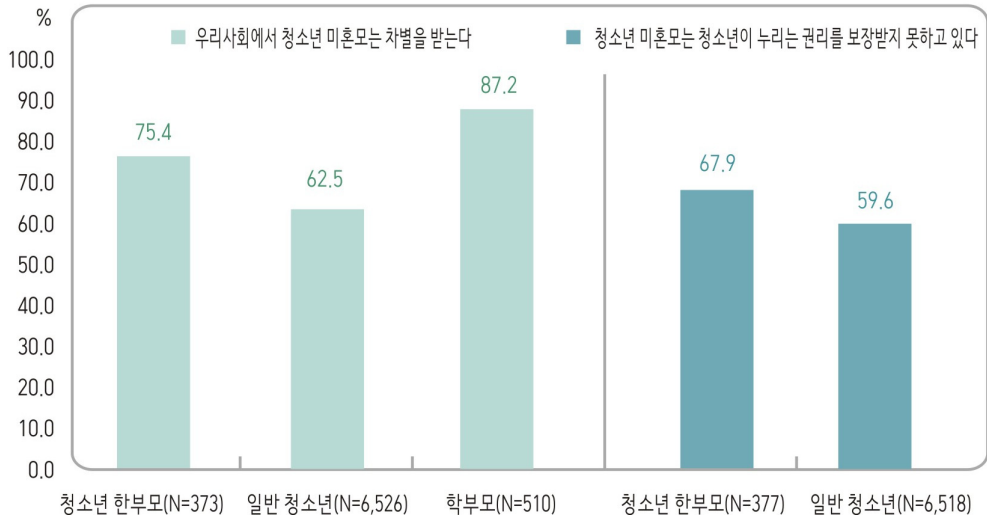


* 주: 1) 학부모 n=510
2) 학생 n=6,543

【그림 III -55】 우리사회의 우선적인 보호대상

다음으로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학부모 등 세 집단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차별을 받는다’는 질문에 대하여 청소년 한부모, 일반 청소년(중·고교생),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매우 포함)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75.4%, 62.5%, 87.2%로 나타났다($\chi^2=306.167^{***}$ d.f.=8.). 즉,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가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은 학부모 집단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는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67.9%), 청소년(59.6%)으로 나타나 응답자 2명 중 1명은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 역시 청소년 한부모(6.9%)가 일반 청소년(5.3%)에 비해 다소 높았다($\chi^2=73.292^{***}$ d.f.=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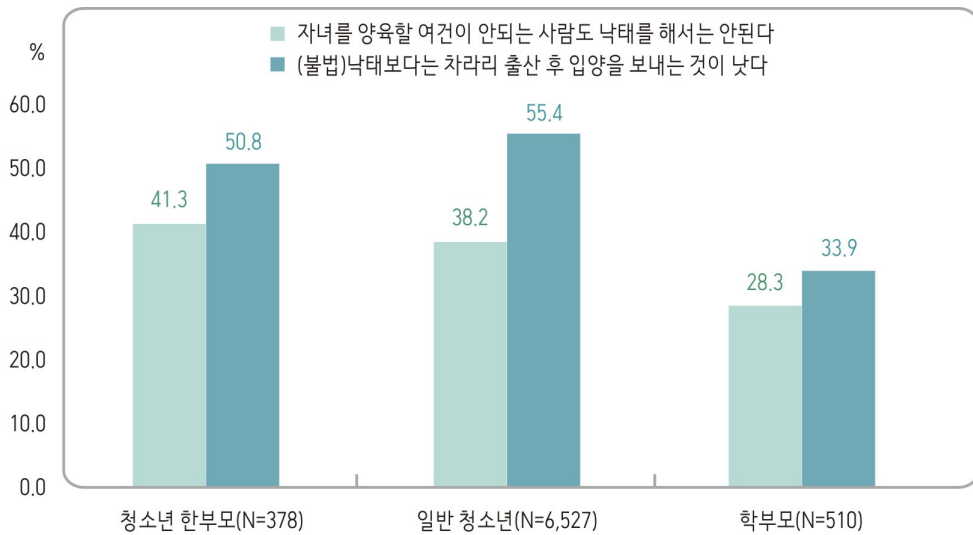


- * 주: 1) 청소년 한부모 n=378
 2) 일반 청소년 n=6,526
 3) 학부모 n=377
 4) 일반청소년 n=6,518

【그림 III-56】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서는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응답은 청소년 한부모(41.3%), 청소년(38.2%), 학부모(2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학부모(45.7%), 청소년 한부모(36.3%), 청소년(30.8%)순으로, 청소년 한부모가 낙태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이고, 학부모 집단에서 낙태에 대해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chi^2=86.867^{***}$ d.f.=8).

‘(불법)낙태보다는 차리라 출산 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청소년(55.4%), 청소년 한부모(50.8%), 학부모(33.9%) 순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불법적인 낙태보다는 출산 후 입양 보내기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hi^2=212.953^{***}$ d.f.=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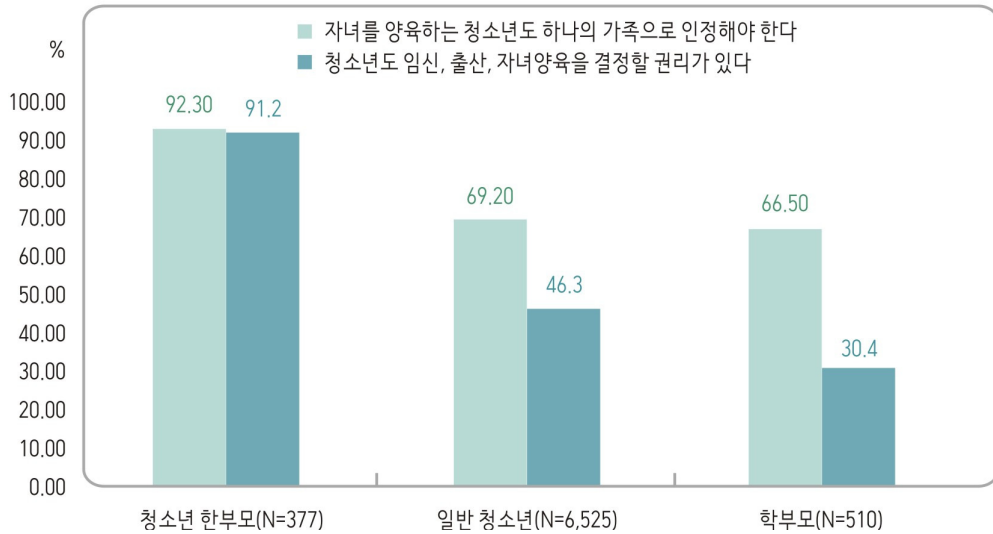


* 주: 1) 청소년 한부모 n=378
2) 일반 청소년 n=6,527
3) 학부모 n=510

【그림 III -57】 낙태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응답은 청소년 한부모(92.3%), 청소년(69.2%), 학부모(66.5%) 순이었다.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9명이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 집단의 경우 10명 중 6명 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상 집단 간에 이견을 보였다($\chi^2=332.825^{***}$ d.f.=8). 최근 소년소녀가정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의 폐지와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로의 전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그간 18세 이하 아동만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보호와 양육의 부재로 인해 심리·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 취약성이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제도 폐지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연령에 대한 고려와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청소년도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질문에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91.2%), 일반 청소년(46.3%), 학부모(30.4%) 순이었다. 반면 ‘(전혀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학부모(43.5%), 일반 청소년(20.3%), 청소년 한부모(1.1%)순으로 부정 응답률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791.525^{***}$ d.f.=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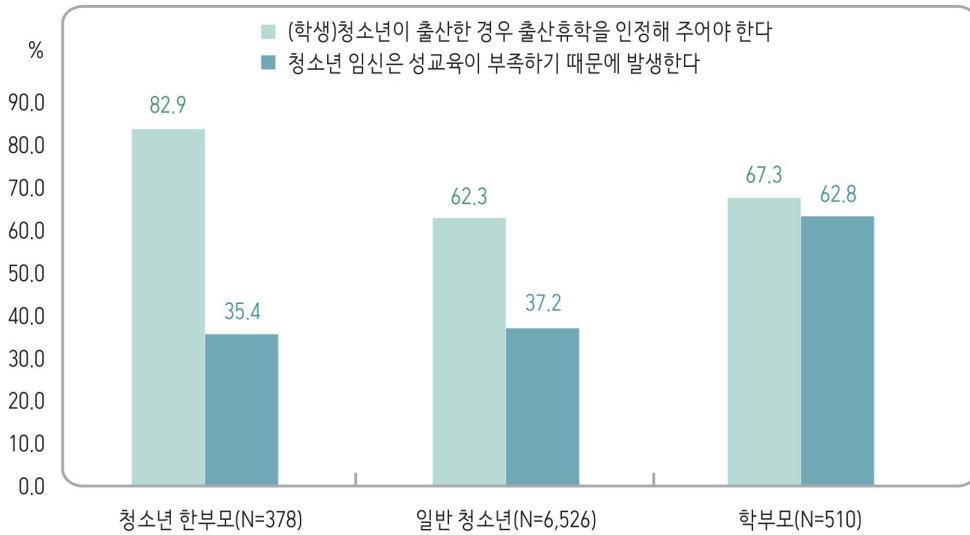


- * 주: 1) 청소년 한부모 n=377
 2) 일반 청소년 n=6,525
 3) 학부모 n=510

【그림 III -58】 청소년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학생)청소년이 출산한 경우 출산휴학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82.9%), 학부모(67.3%), 일반 청소년(62.3%) 순이었으며, 세 집단 모두 출산휴학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비율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학부모(15.3%), 일반 청소년(10.1%), 청소년 한부모(3.2%) 순으로 집단 간 응답률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chi^2=188.418^{***}$ d.f.=8).

이와 함께 ‘청소년 임신은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학부모(62.8%), 일반 청소년(37.2%), 청소년 한부모(35.4%) 순이었다. 반면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41.8%), 일반 청소년(33.4%), 학부모(23.5%) 순으로, 응답률에 세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chi^2=167.750^{***}$ d.f.=8). 즉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청소년 임신은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동의하는 반면,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청소년 세대는 성교육의 부족보다는 다른 사유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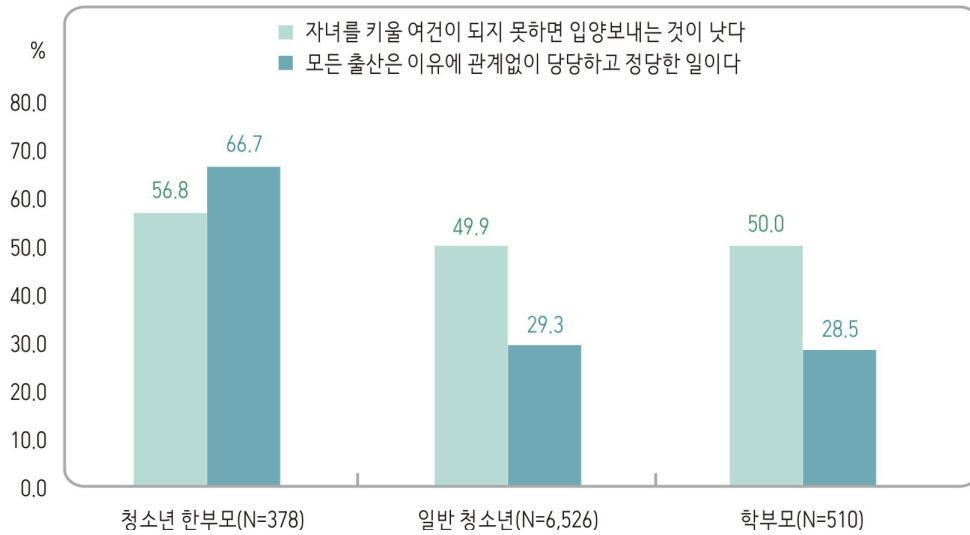


* 주: 1) 청소년 한부모 n=378
2) 일반 청소년 n=6,526
3) 학부모 n=510

【그림 III -59】 출산휴학 및 성교육 부족에 대한 의견('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하면 입양보내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56.8%), 학부모(50.0%), 일반 청소년(49.9%) 순이었다. 반면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학부모(20.6%), 청소년 한부모(16.6%), 일반 청소년(16.1%) 순으로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입양보내는 것에 대하여 세 집단 모두 2명 가운데 1명은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chi^2=61.821^{***}$ d.f.=8).

‘모든 출산은 이유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정당한 일이다’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66.7%), 일반 청소년(29.3%), 학부모(28.5%) 순으로 나타나 집단 간 응답률에 차이를 보였다($\chi^2=369.065^{***}$ d.f.=8). 특히 학부모 10명 중 4명이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기성세대가 법적인 혼인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출산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주: 1) 청소년 한부모 n=378
 2) 일반 청소년 n=6,526
 3) 학부모 n=510

【그림 III -60】 입양보내기 및 출산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자녀는 마땅히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학부모(72.7%), 청소년 한부모(51.1%), 일반 청소년(39.8%) 순이었다. 반면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청소년 한부모(18.8%), 일반 청소년(18.7%), 학부모(10.0%) 순으로, 이는 앞서 세 집단 모두 입양 보내기에 다소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입양보내기와 친부모의 양육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는 학부모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III -62 자녀는 마땅히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소년 한부모	378	3.2	15.6	30.2	28.3	22.8
일반 청소년	6,526	3.8	14.9	41.4	26.8	13.0
학부모	510	1.4	8.6	17.3	48.2	24.5

$\chi^2=239.351^{***}$ d.f.=8

(4)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에 대한 일반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학교의 임신, 출산을 한 학생의 학업지속 방법’에 대한 질문에 응답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6.5%)’는 의견과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한다(4.5%)’, ‘대안학교로 옮겨야 한다(3.4%)’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I-63 임신, 출산한 학생의 학업지속 방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학교를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	대안 학교로 옮겨야 한다	자퇴후 검정 고시를 준비한다	기타	무응답
일반 청소년	전체	6,543	83.4	6.5	3.4	4.5	1.2	0.9
	성별	남학생	3,513	82	6.8	4	4.4	1.4
		여학생	3,030	85	6.2	2.7	4.6	1
		$\chi^2(4)$	24.016***					
	학교급	중학생	3,036	79.6	7.8	4.3	6.1	1.1
		일반계고	2,957	87.5	4.8	2.8	2.8	1
		특성화고	550	82.5	9.1	2.5	5.1	0
		$\chi^2(8)$	90.876***					
	주변 경험	있음	375	84.5	7.2	2.7	4.3	1.1
		없음	6,145	83.6	6.5	3.4	4.5	1.3
		$\chi^2(4)$	1022.456***					

*p<.05 **p<.01 ***p<.001

* 주: 1) 각 항목은 전혀 차별받지 않는다, 별로 차별받지 않는다, 다소 차별 받는다, 매우 차별받는다, 모름.

‘임신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뒀야 한다면 인권침해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일반 청소년(61.3%), 학부모(39.6%), ‘(매우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학부모(19.0%), 일반 청소년(10.2%) 순으로 집단 간 응답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I-64 임신을 사유로 한 학업중단은 인권침해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반 청소년	6,527	3.2	7	28.4	37	24.3
학부모	510	2.5	16.5	21.4	29	10.6

$$\chi^2=119.796^{***} \text{ d.f.}=4$$

청소년 임신부의 재학에 대한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학생 임신부가 내가 다니는 혹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긍정 응답은 일반 청소년(60.5%), 학부모(45.9%), 부정 응답은 학부모(22.0%), 일반 청소년(10.4%)로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생 임신부의 학습권 보호에 있어 동료 학생들보다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III-65 학생 임신부의 재학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반 청소년	6,532	3.6	6.8	29.1	42.9	17.6
학부모	510	6.1	15.9	32.2	39.2	6.7

$$\chi^2=95.960^{***} \text{ d.f.}=4$$

* 주: 1) (일반 청소년)임신한 학생이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 (학부모)임신한 학생이 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의 응답임.

이와 함께 청소년 미혼모의 재학에 대한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가 내가 다니는 혹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긍정 응답은 일반 청소년(62.7%), 학부모(50.8%), 부정 응답은 학부모(19.6%), 일반 청소년(9.6%)로 청소년 임신과 비슷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다만 주목할 점은 임신과 비교할 때 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임신과 양육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가 일부 존재하며, 이는 임신 단계에서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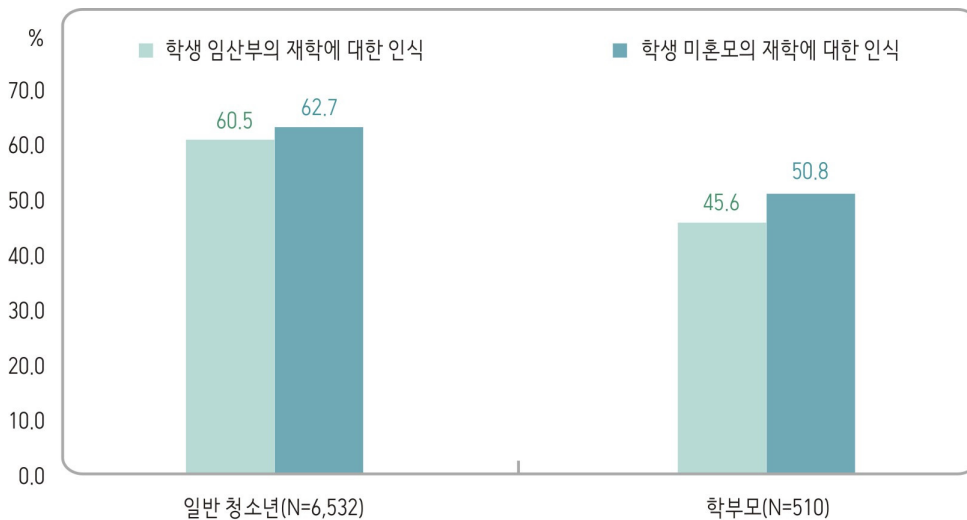
표 III-66 학생 미혼모의 재학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일반 청소년	6,531	3.2	6.4	27.7	44.9	17.8
학부모	510	4.7	14.9	29.6	43.9	6.9

$$\chi^2=86.774^{***} \text{ d.f.}=4$$

* 주: 1) (일반 청소년)자녀를 키우는 학생이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 (학부모)자녀를 키우는 학생이 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의 응답임.



* 주: 1) 일반 청소년 n=6,532

2) 학부모 n=510

【그림 III-61】 학생 임신부 및 미혼모 재학에 대한 인식('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이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한 학생이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59.6%, ‘(전혀 포함)그렇지 않다’는 부정 응답은 11.2% 정도였다. 즉 10명 중 6명에 달하는 청소년은 학생 임신부의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임신한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남학생보다 여학생,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주변에서 임신 또는 출산을 경험한 친구(학생)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응답 경향이 더욱 뚜렷하였다.

표 III-67 임신한 학생이 나와 같은 학교에 다녀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학생	전체		6,543	2.8	8.4	29	38.5	21.1	0.3
	성별	남학생	3,513	3	7.1	31.4	36.9	21.2	0.4
		여학생	3,030	2.5	9.8	26.1	40.4	20.9	0.2
		$\chi^2(4)$	40.518***						
	학교급	중학생	3,036	3.2	9.8	35.4	32.3	18.9	0.4
		일반계고	2,957	2.6	6.9	22.3	44.6	23.4	0.3
		특성화고	550	1.5	8	29.6	40.4	20.5	0
		$\chi^2(8)$	187.213***						
	주변 경험	있음	375	4.3	9.3	19.5	35.2	31.7	0
		없음	6,145	2.7	8.3	29.6	38.9	20.5	0.1
		$\chi^2(4)$	1755.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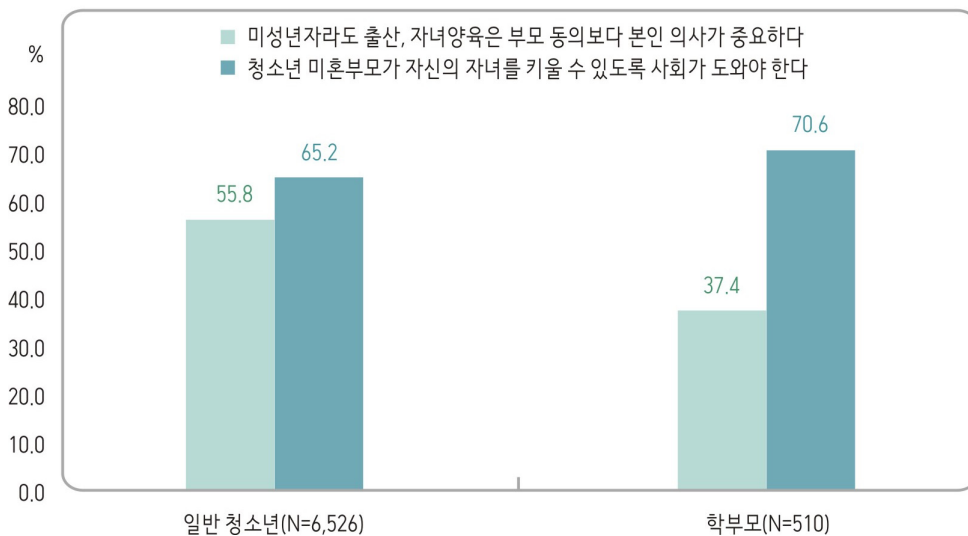
* 주: 1) 5점 척도임.

*p<.05 **p<.01 ***p<.001

(5)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사회지원

‘미성년자라도 출산, 자녀양육은 부모 동의보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는 질문에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응답은 일반 청소년(55.8%)이 학부모(37.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chi^2=248.384^{***}$ d.f.=4). 법적으로도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5조 제1항) 미성년자의 출산, 입양, 자녀양육 결정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출산과 자녀양육의 결정에 있어 본인(미성년 청소년)과 부모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 정작 친생부모인 본인들의 의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거나,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할 경우 부모의 지지와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등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반면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포함)그렇다'는 긍정 응답은 학부모(70.6%)가 일반 청소년(65.2%)에 비해 더 높았다($\chi^2=45.270^{***}$ d.f.=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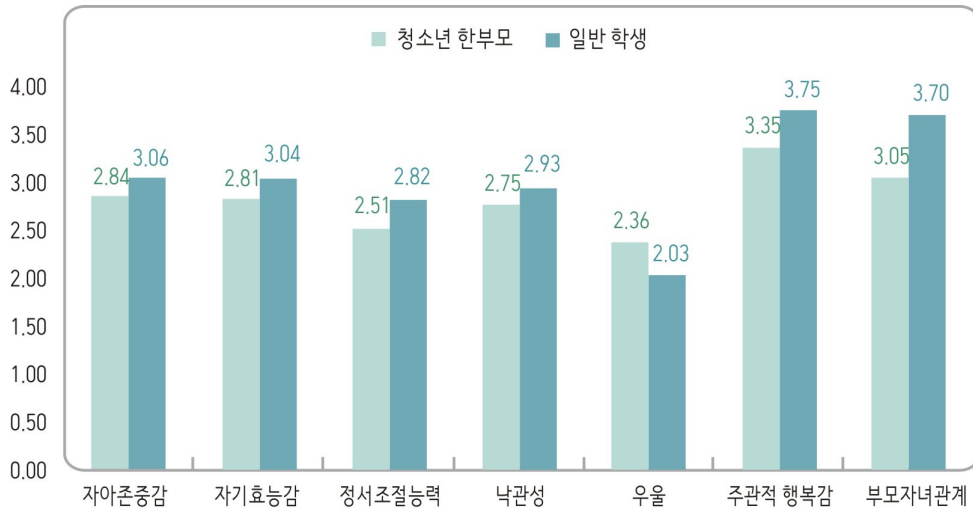
* 주: 1) 일반 청소년 n=6,526
2) 학부모 n=510

【그림 III -62】 본인 의사 및 사회지원에 대한 의견('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6) 청소년 정신건강 비교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일부 항목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관계 등 6가지 비교 항목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우울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그림 III-63).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정신건강이 또래 청소년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들은 양육, 경제, 학습지원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임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19세 이상인 경우 19세 미만에 비해 부모-자녀관계가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생활인과 재가 대상자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 부모자녀관계 항목은 낮고 우울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주: 1)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은 $p < .001$ 에서 유의함.

2) 우울은 $p < .01$ 에서 유의함.

【그림 III-63】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정신건강 비교

다음으로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위기 경험 정도를 비교하였다. 여기에는 학업중단/자퇴 고민, 학교폭력(피·가해 경험),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가출, 자살시도,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자살생각, 인터넷중독, 청소년쉼터 입소 등 총 9개의 '상황적 위기'를 포함하였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9개의 위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54.0%에 달하는 반면, 청소년 한부모는 2.4%에 머물렀다(표 III-68). 반면, 위의 위기상황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일반 청소년은 1인당 평균 1.09개의 위기 상황을 경험한 반면 청소년 한부모는 2.78개의 위기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64). 청소년 한부모 가운데 성폭력(성매매 포함)을 경험한 비율도 11.1%에 달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현재 양육이라는 성인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집중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그간 이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경험한 위기에 대한 치유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Ⅲ-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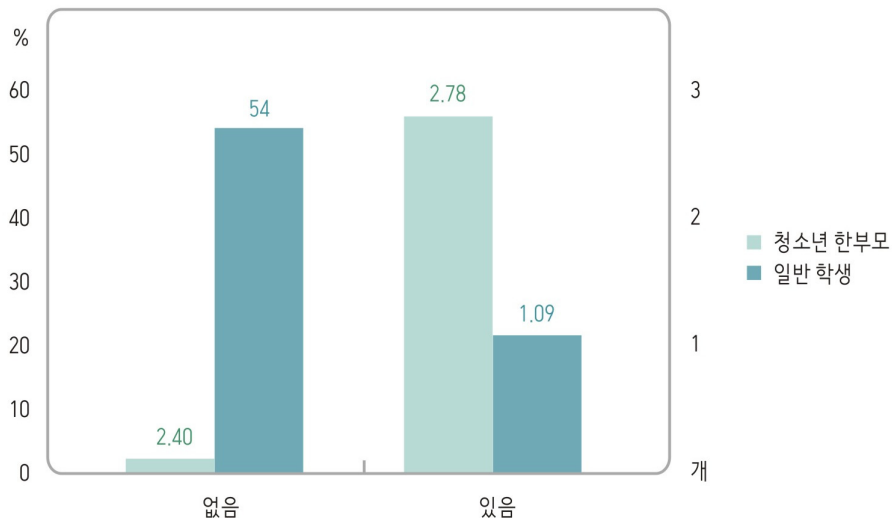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 경험(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없음	학업 중단	학교 폭력	가정폭 력	가출	자살 시도	성 폭 력	부모 이혼 별거 사별	자살 생각	인터 넷 중독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 한부모	전체	378	2.4	57.7	20.6	16.3	61.2	24.4	11.1	66.7	48.0	12.7	16.5
일반 청소년	전체	6,543	54.0	14.8	12.4	2.8	18.6	6.0	－	10.9	25.4	16.0	1.0
	중학생	3,036	50.8	6.9	13.9	2.3	18.0	6.6	－	8.6	26.1	15.0	1.0
	고등 학생	3,507	56.8	21.6	11.1	3.1	19.2	5.5	－	12.9	24.8	16.9	0.9

* 주: 1) 학업중단은 일반 청소년의 경우 자퇴고민을 질문함.

2)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은 가해·피해경험을 포함하며, 성폭력은 성매매를 포함함.



【그림 Ⅲ-64】 청소년 한부모와 일반 청소년의 상황적 위기 경험 비교

5. 요약 및 시사점⁷⁴⁾

1)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와 정책요구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학교폭력, 가정폭력, 가출, 자살 생각 및 시도, 성폭력,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인터넷 중독, 청소년 흡터 입소 등 '상황적 위기' 경험이 높고 정신건강이 현저히 취약하였다. 이들은 부모로서 양육이라는 성인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호와 지원이 우선 필요한 고위기 청소년임을 의미한다. 원가족이 대부분 빈곤하고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등 가족해체 경험도 높게 나타나 가족기능의 문제가 학업중단, 이후 임신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보였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수준과 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하였다. 월 평균 총 소득이 5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과반이었고,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하는 등 10명 중 7명이 정부 지원과 부모 및 가족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16.6%에 불과하였고, 이 가운데 정규직은 44% 수준이었다. 다수가 자녀 양육과 자격 부족으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중졸 이하가 가장 많았고(40.7%), 특히 19세 이상 청소년 한부모 4명 중 1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자였다. 어떤 형태로든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례는 10명 중 2명 수준에 불과하였고, 학업중단은 임신, 출산 이후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학업중단 이후 임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이 연구의 1차년도 조사와 같은 결과로 학교에 재학하는 것 자체가 원하지 않는 임신에 대한 안전망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편, 임신, 출산 이후 학업을 중단한 경우 대부분 임신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교사와 친구에게 임신, 출산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교사에게 임신, 출산 사실을 알린 이후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학업중단자의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경우보다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고,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거나 고민중이라는 부정적, 유보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74) 이 부분은 황여정 부연구위원,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달하였다. 상당수가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학업을 지속할 경우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경제적 지원 확대, 양육과 학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검정고시 외에 정규 학교를 졸업하거나 원격교육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학업 지속을 위한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진로, 직업교육(훈련) 경험은 임신, 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4에 달했다. 진로, 직업교육(훈련)의 장애요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에 대한 부담,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들은 취업, 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로,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였고 진로탐색과 적성과악을 위한 진로상담, 진로교육, 그리고 심리상담에 수요도 확인되었다. 또한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준비와 자립 성공은 정서적 안정, 심리적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학업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진로발달수준과 양육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정서적 안정에는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은 낮고, 우울은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 대상자 10명 중 1명이 자녀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고, 10명 중 2명은 현재 입양을 고려중이었다. 이들은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1차년도 연구에서도 입양 보낸 경험으로 인해 후유증을 호소하면서도 적극적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청소년 한부모 대상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율과 수혜율, 만족도, 정책적 요구에 대한 분석 결과, 양육지원제도와 출산지원제도의 경우 인지율과 수혜율도 높은 편이었으나, 위기청소년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인지율과 수혜율이 모두 낮았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 인지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제도를 인지한 경우 수혜율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다만 면접조사에서 제도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과 정보제공 미흡,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에 대해 불만이 일부 제기되었고, 경제적 지원과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2)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의 인식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의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중학생 3,036명, 고등학생 3,507명(일반고 2,393명, 특성화고 550명, 자율고 및 특수목적고 564명) 및 학부모 510명(중학생 학부모 151명, 고등학생 학부모 359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변에서 임신, 출산으로 고민하는 학생을 접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1%로 나타나,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결코 간과할 만한 수치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중·고교생) 임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수용 정도를 확인한 결과 학부모와 일반 청소년 모두 임신보다 양육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수용정도가 높았다. 즉 청소년 임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한 경우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향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입양보내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는 일반 청소년의 69.2%, 학부모의 66.5%가 동의하였고, (학생)청소년이 출산한 경우 출산휴학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데는 일반 청소년의 62.3%, 학부모의 67.3%가 동의하였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임신, 출산을 경험한 학생의 학업지속 방법에 대해 일반 청소년 10명 중 8명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신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인권 침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청소년의 61.3%, 학부모의 39.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 임신부가 내가(혹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문항의 경우, 상관없다는 의견이 일반 청소년 60.5%, 학부모 45.9%로 긍정 응답이 많았다. 또한 임신한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녀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견이 59.6%로,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의견(11.2%) 보다 많았다. 아울러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데는 학부모의 70.6%, 일반 청소년의 65.2%가 동의하였다. 연구결과 일반 청소년, 학부모 모두 우리 사회가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전문가 의견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실시한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도출되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장·교감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학교의 배타적 풍토가 가장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또한 대안위탁교육기관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대안위탁 교육기관으로의 위탁 여부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적 미비와 성적처리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가 직접 원적학교에 등교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문제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도 도출되었다. 한편 진로·취업과 관련해서는 고졸 미만의 낮은 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과 체계적인 진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문제도 거론되었다. 아울러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자립의지가 약화되는 경우도 관찰되므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며, 청소년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충분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에 대한 동기 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육 부담으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은 바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기능을 확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지원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주거 지원을 강화하되 현행 정책에서 청소년 한부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에게 적용되는 모성보호 기준을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여성이 임신·출산 시 받는 지원과 배려로부터 청소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임신·출산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교사교육과 연수를 통해 학교 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입양모는 사실상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을 정책 대상으로 포섭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제언되었다. 더불어 청소년 한부모의 진로·취업 시 시행착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실 있는 직업체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장에서 검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 표 III-69이다.

구분	사례수
생활 환경	• 일반 청소년에 비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비율이 훨씬 큼 • 원가족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 가족해체를 경험한 비율이 높음
자립실태 및 자립준비도	• 자립수준이나 자립준비도 미흡 •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스스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에, 일자리를 얻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이나 스스로 자격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수위를 차지함 • 최종 학력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중졸 이하라는 응답이 40.7%, 만 19세 이상 집단에서도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경우가 25.7%)
학습권	• 학업중단은 임신·출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음 • 임신·출산 이후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대부분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그만 둠 • 학교에 다니면서 임신·출산을 경험한 경우, 대부분 학교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학업 중단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업 지속 방법에 대한 정보가 무척 부족해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함 • 학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양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검정고시 외에 정규학교 졸업, 원격교육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진로·직업 교육(훈련)	• 임신·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사례는 1/4에 불과 –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데 주된 애로사항은 경제적 문제와 육아에 대한 부담 – 관련 정보 부족은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 • 직업교육 이전에 진로탐색, 적성파악 등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대한 수요 존재
정신 건강	• 청소년 한부모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정서조절능력, 낙관성, 주관적 행복감은 낮고, 우울감은 높은 편임 • 청소년 한부모의 성공적인 자립에는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을 경우, 학업지속 가능성 및 진로발달수준, 양육효능감 제고에 도움
지원정책 경험 및 정책적 요구	• 양육지원제도와 출산지원제도는 인지율과 수혜율이 높지만, 위기청소년 지원제도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제도는 인지율과 수혜율이 낮은 편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체계 점검이 필요

구분		사례수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편 • 서비스 전달체계나 정보 제공의 미비,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개선 의견 제기 • 경제적 지원 확대, 양육 지원 확대, 주거 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수요 존재
	청소년 한부모 접촉 경험 및 이미지	• 일반 청소년 가운데, 주변에서 임신·출산으로 고민하는 학생을 접해 본 경험 있다는 응답 비율은 6.1% • 학생 임신에 대한 태도보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더 수용적이며 친화적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모두 60% 이상이 긍정하는 의견 • (학생)청소년이 출산한 경우 출산 휴학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데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모두 60% 이상이 긍정하는 의견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의견	• 임신·출산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업지속 방법에 대해 일반 청소년의 80% 이상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응답 • 일반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임신 때문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인권 침해라는 의견과 학생 임신부가 내가(혹은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녀도 상관없다는 데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보다 우세 • 청소년 미혼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는데 학부모의 70% 이상, 학생의 65% 이상이 동의
전문가 및 관계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관련 문제점	• 학교의 배타적 풍토 •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의 위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일부 사항이 교장의 재량에 의존(제도의 미비) • 대안위탁교육 실시 과정에서 성적 처리 애로사항 제기 • 청소년 한부모의 낮은 학력(고졸 미만)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 체계적인 진로계획 부재 • 복지혜택 수혜로 인한 자립의지 약화 • 자립을 위해 주거 불안정 문제 선결 필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개선 사항	• 충분한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인해 자립을 위한 동기 강화 • 명확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입 필요 • 양육부담 경감(아이돌보미 지원 강화) • 주거지원 강화 및 기존 제도의 장벽 완화(임대주택 선정 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미성년자 요건 완화 등) • 모성보호 기준을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 • 청소년의 임신·출산과 학습권 보장에 대한 교사교육 및 연수 강화 • 입양모를 학습권 보장 및 자립지원 제도의 정책 대상으로 포섭 •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업 체험 강화

4)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 10명 중 6명이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별거·사별 등의 위기를 경험하였고, 청소년기에 한부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응답도 10명 중 3명에 달하였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문제 역시 계층의 문제일 수 있어 취약계층의 가족기능 회복과 가족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의 취약성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고, 미래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출산 극복과 우리사회의 신사회적 위협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정서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당수가 아동, 청소년기에 상황적 위기를 경험한 데다 현재의 빈곤, 양육 부담이 더해지면서 또래에 비해 정신건강 전반에서 취약성을 보였다. 특히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경우 학업지속, 진로준비,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립동기와 의지가 더욱 확고하였다. 또한 가족, 친구, 시설 종사자 등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심리·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양육, 자립지원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 상담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원가족과 주변 지지체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선제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래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도 십대 미혼모의 학습권 보호,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과 자녀 양육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당사자 스스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사회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을 지닌 주체임에도 소수자(minority)인 청소년 한부모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세력화하기가 쉽지는 않다. 따라서 제도로써 이들의 인권, 기본권을 보호해야만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예방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과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연령에 따른 보호지원 내용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이 아동을 양육하는’

상황이며 아동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아동, 청소년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로 분류하고, 특별보호조치에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까지 포함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한부모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검토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임신, 출산(낙태), 자녀양육(입양)의 전 단계에 걸친 인권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특별보호조치와 적극적 우대를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는 당사자가 ‘요보호아동’이라는 점에서 전향적인 보호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제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산지원, 양육지원, 취약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제도 전반의 인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학업중단 중인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학업을 지속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진로 및 직업교육과 훈련에 대한 정보도 매우 빈약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대민서비스의 최일선인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족·보육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여 지원제도와 지역사회 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제도가 복잡하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신단계부터 초기상담(gate-way)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에 편의를 제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권’에 대한 보장과 돌봄 서비스의 확충이 요구된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싶어 했고 이는 학업, 직업교육(훈련),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래 청소년이 경제활동보다 학업에 전념하는 것처럼 청소년 한부모 역시 초기 아동기 자녀 양육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자립준비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재가 청소년가 월세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상황에서 이는 가계 부담의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지원 등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수혜율이 낮는데 비해 수혜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주거지원제도에 있어 청소년 한부모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자립을 위한 전제로 학습권을 보장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정규 학교,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검정고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수요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학업수행을 위한 동기부여와 개별적인 진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본인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저학력, 미숙련 상태에서 육아까지 감당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과 근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 적성 및 진로 탐색활동과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소년 한부모 4명 중 3명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는 상대 남성의 75%가 청소년인 것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등 섬세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아홉째, 청소년기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임신은 반복되는 문제임에 반해 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임신, 출산, 양육단계에서 선택과 출구는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명윤리, 아동인권,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예방적 접근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IV 장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모색

1. 유형에 따른 지원: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지원 확대
2. 생활주기에 따른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

제 IV 장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모색⁷⁵⁾

1. 유형에 따른 지원: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지원 확대⁷⁶⁾

이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범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정책 대상 뿐만 아니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과 입양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와 입양, 가정위탁 등으로 현재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미혼부·모와 사실혼을 포함한 동거가족, 그리고 거주하는 곳에 따라 시설 및 재가 생활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동거 여부 및 시설 생활 여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입양 미혼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 이후 입양 아동과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 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입양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입양허가제도, 입양숙려제도를 포함하여 입양을 보내는 청소년 한부모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요약한 것이 아래 표 IV-1이다.

75)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 김수혜(뉴욕주립대, 박사수료)가 집필함.

76) 이 부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신운정 외)의 협동연구 세부보고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을 요약·발췌한 내용을 포함함.

표 IV-1 개정 입양 관련 제도의 쟁점과 의견

구분	학계 전문가	시설 전문가
입양 특례법 개정	• 긍정적인 변화로서 개정된 법에는 문제가 없으며 재개정은 후진적인 발상임 • 베이비박스 아동 유기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입양 특례법을 재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아동유기는 입양허가제 도입 때문이 아니라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임 • 현행 입양특례법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 법 개정의 방향성은 맞으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성급하게 추진되었음 •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망 없이 시행되어 아동 유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 아동의 권리는 강화시켰지만 친생모 인권은 존중되지 않았음
헤이그 협약 가입	• 아동 인권보호측면에서 당위성 있음 •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는 여성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함 • 입양허가제도와 입양숙려제도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헤이그 협약의 요구 사항이 아님	• 아동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친생모가 보호받고 가정이 건실해야 함 •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해 입양 관련 제도들이 현재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음 • 입양기관 운영 한부모자시설은 2015년에 폐쇄되는 상황이라 큰 문제 발생될 우려가 있음
입양 허가제도	• 출생신고는 개인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 •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문제로서 공식 정보가 지나치다는데 있음	• 한부모 입양에서는 출생신고가 부담스러운 상황임 • 취업에서의 불이익, 불법 입양의 부작용 우려 • 입양 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계속 남아 있게 됨
가족관계 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부증명제도에서 “일부 증명” 문구 기재 삭제 필요 • 입양특례법에서와 같이 친모 동의 하에서만 친모 인적사항이 공개되도록 “친양자입양관계등록부” 요건 개선 필요	• 입양인이 정보 열람을 청구했을 때 친생모가 어느 정도까지 정보 공개를 원하는지 수준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파양되는 경우 친생모 가족관계등록부에 다시 기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정법원의 개입을 통한 판단이 필요
입양숙려제 도	• 입양 결정 후 의사가 달라질 수 있어 양육 선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 입양숙려기간 현금 70만원 산후조리지원보다 의료비 등 현물 지원이 더 적절함 • 입양숙려기간 중 한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 • 청소년 한부모를 입양숙려제로부터 제외시키는 방안 고려 필요	• 이미 사전에 내린 입양 결정은 입양숙려기간 일주일 동안 별로 크게 바뀌지 않음 •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맞지만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픔을 두 번 주고 있음 • 양육을 원하지 않는 원가족 부모들도 입양숙려제도에 반대하고 있음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익명 출산제도 도입 고려 • 기아호적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입양인이 친부모를 찾을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른 행정 절차의 복잡성 • 미성년자 한부모가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 출생 신고시 친생모 이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문제

* 출처 : 본 과제의 협동연구 세부보고서 p.38.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하면 「입양특례법」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고 방향성 자체는 맞으나 제도 실현과정에서 친생모의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 ‘현상’이며 현실성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입양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출생신고가 친생모의 입장에서 부담스럽더라도 출생아동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공시 정보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입양숙려제도의 경우 양육을 선택하지 않는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을 감안할 때 산후조리 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출생아동과 청소년 한부모 보호 차원에서 부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개정된 입양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 않았으며, 이들 제도가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출생신고 자체에 대한 부담보다는 임신, 출산 사실에 대한 공개와 이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였다(표 IV-2). 이는 개정된 입양 관련 제도가 양육을 선택하는 유인이 되는 만큼 선택 이후 양육에 대한 책임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낙태권의 연장에서 익명의 출산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2 개정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청소년 한부모)

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 입양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두 집단 모두 높음(입양허가제도 약 70%, 입양숙려제도 약 80%) • 입양숙려기간에 대해서 입양 경험 청소년은 길다고, 입양 경험 없는 청소년은 짧다고 인식함 • 입양숙려제도에 대한 개선점으로 입양 경험 청소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임 • 국내/해외 입양 간 유보적인 태도 • 자녀 입양 보낸 후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이에 대한 정보 제공	• 입양허가제도에 따른 출생신고 및 입양숙려제도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음 (입양허가제도) • 출생 신고에 대한 우려는 출산 후 당장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임(부모에게 알려짐, 취업 불이익 등) • 본인에 대한 정보 노출 및 성인이 된 자녀가 다시 찾아 올 것 등 미래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고 있었음 • 출생신고 시 양성차별에 대한 부당성 경험 (입양 숙려제도) •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양육하도록 마음을 바꾸게 하는데 효과적임. • 양육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순간적으로 양육을 선택하는 문제가 지적됨. • 양육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한부모에게 부담 (공개입양에 대한 의견) • 본인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함

* 출처 : 본 과제의 협동연구 세부보고서 p.157.

이와 함께 입양 경험이 있거나 고려중인 청소년의 경우 시설 퇴소 이후 일체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생계, 자립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상황적 특성상 현재는 복지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저학력, 미숙련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실제적인 자립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3 입양 청소년 미혼모의 지원 요구

구분	양적 분석	질적 분석
시설 퇴소 후 생활	-	• 시설 퇴소 후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미혼모는 돌아갈 곳이 마땅하지 않음 • 양육을 선택한 한부모들은 시설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입양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퇴소 후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임 • 학교를 중퇴하고 취업 경험이 취약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이 약함 • 검정고시보다는 학교로의 복학을 희망 •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강하나 희망하는 직종은 단순 기술직이며, 전문 직종을 갖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음 • 본인 적성에 대한 인지 부족 • 미래 결혼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정부 정책 관련 사항	•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자녀양육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입양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더 높음 • 일반적인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50% 내외 • 청소년 지원 정책 중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상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남	• 자녀 양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 • 자녀 양육의 질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이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됨 • 미혼모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유형의 공동거주지 희망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자녀의 건전한 발달, 또래 엄마 집단과의 어울림, 취업에 불이익 영향 •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기대 혹은 부정적 시각 • 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 및 근로 의욕 저하 • 지자체 전달 체계 및 미성년으로서의 제약 요인 개선

* 출처 : 본 과제의 협동연구 세부보고서 p.158~161.

2) 정책 개선 방향

(1)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친생모 지원

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모니터링

현행 우리나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부모의 양육과 입양은 사실상 연장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중앙부처 위주의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 2012년에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재가 생활인의 경우 산후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50만원), 가족·친구 등 지인 활용(35만원), 시설 생활인인 경우 산후지원인력 인건비(25만원), 산후조리원 이용(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7일 간의 숙려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하면서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입양숙려기간 동안 제공되는 산후조리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입양숙려기간 동안 입소할 시설이 있는지,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나 사설 산후조리원 이용비가 현실적인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숙려기간 동안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은 미혼모자시설(여성가족부)로 입양숙려제도 대비 추가 지원인력과 서비스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2015년 이후 입양 기관의 시설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시설 수가 감소할 예정에 있어 제도 안착과 효과성 측면에서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입양숙려기간 동안 양육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가족에 대한 상담을 병행하는 등 입양숙려제도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② 입양 이후 사후관리체계 제도화

현행 입양제도에서 입양 이후 친생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이 연구에서 입양보내기를 경험한 청소년 상당수가 후유증을 경험하고, 심리·정서 상담 욕구가 크며, 입양 이후에도 취약·위기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모성보건 차원에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입양 청소년 미혼모 상당수가 학업중단, 빈곤 등 고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나

위기청소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입양을 보낸 뒤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을 제도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입양절차가 종결된 이후 각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욕구와 필요성에 대한 사정(assessment)을 통해 학교복귀, 상담, 진로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정보 공개 시 성 차별적 요소 제거

현행 입양절차 내에는 성 차별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등록할 때 친생모(親母)를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출생자는 친생 ‘부모(父母)’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친생모에 관한 정보만을 등록하여 성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미혼모는 취업, 결혼 등 생활전반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홀로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미혼부에게도 일부 장애 요소로 작용했는데, 미혼부가 병역 이행과 관련한(병무청)상담 과정에서 기 등록된 출생자의 친생모로부터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지원이 없음을 미혼부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혼부는 자신의 통장 내역은 물론 출생아동 친생모의 통장 내역까지 확보해서 양육비 지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친생모와 연락이 두절되어 증명 자체가 쉽지 않은 사례를 심층면접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기재되는 ‘일부사항’, ‘전부사항’이라는 정보 자체가 불필요한 의혹과 낙인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사항’, 혹은 ‘기초사항’으로 개선하고 기록사항의 열람 범위와 청구가 가능한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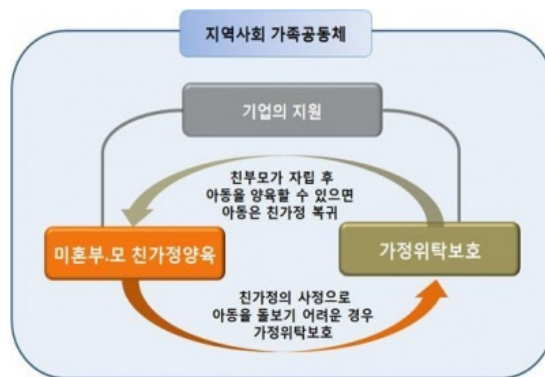
다음으로 친양자관계등록부 상에서 친생모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이다. 친생모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생자가 친모의 개인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입양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현행 친양자관계등록부는 「입양특례법」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이 친생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입양인이 친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④ 단기 양육지원제도 확대 운영

단기 양육지원제도는 두 가지 맥락에서 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입양숙려제도와 관련하여 1주일간의 숙려기간은 입양을 숙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지만⁷⁾,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거나 양육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유기, 방임 등 또 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출생아동에 대한 ‘보호동의’와 ‘입양동의’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즉 친생모가 입양숙려기간 동안 아동을 돌볼 수 없어 출생아동에 대한 보호동의를 할 경우 아동을 위탁가정 등에서 대리 보호하고, 이를 입양동의를 요건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숙려기간이 끝난 이후 입양동의를 이루어지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제도를 포함한 단기 양육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제도를 폐지하고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가정보호제도가 추진 중에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소년소녀가정에 비해 취약성의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자(母子)를 함께 위탁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출생아동만 위탁할 경우 기존의 위탁가정(친인척위탁, 일반위탁)을 활용하되 출생아동과 청소년 한부모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들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섬세한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희망마루사업’⁷⁸⁾의 대상자 만족도와 제도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전면 확대 검토가 요구된다. 본 사업은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업, 지역사회, 정부가 협력하는 사회공헌사업 형태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확산이 가능한 운영 모델로 평가된다.



* 출처: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ostercare.or.kr> (2013.10.24 인출)

【그림 IV-1】 희망마루(보건복지부) 사업 내용

77) 현행 학업중단숙려기간도 15일이며, 이혼숙려기간도 4주에 달한다.

78)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양육비 지원(월 45만원), 아동발달지원(장난감, 도서 등 15만원), 산후조리지원(입양숙려기간 미혼모), 부모교육(양육기술, 생활법률교육 등), 생일 축하금(15만원), 아동보험 가입 및 납입(월 5만원 이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매칭 후원금 지원, 가족여행비 지원,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의 위탁가정에서 양육한 뒤 친생부모가 자립한 후 아동을 다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심층면접 결과 청소년 한부모의 제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⑤ 영아 유기 합법화 검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베이비 박스 운영에 대한 진정에 대하여 ‘아동이 들어온 직후부터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극한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베이비 박스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베이비 박스의 찬반 논란을 넘어 영아 유기 합법화 여부와 이에 따른 관리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안전한 장소에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운영의 주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청소년 한부모의 ‘부모권’ 보장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OECD 국가들과(평균 47.2%)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자가 크게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2011년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81천명이며, 이들 중 재학·수강(학교 통학, 학원 수강) 인구가 87.1%로 압도적으로 많고,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83천명(1.8%) 정도이다(여성가족부, 2012: 311). 즉 청소년 한부모와 동일한 연령대의 상당수 청소년 역시 경제활동보다는 학업에 전념하거나 부모나 사회에 의존해서 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존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하여 이른 ‘자립’을 강조하는 면이 없지 않다. 이는 학업 → 자립 → 혼인 → 출산을 이행 경로로 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묵시적인 선입견이 작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먼저 되었지만 자녀를 양육한 후에 공부하고 자립해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삶의 방식(life style)이다.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는 ‘아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본인이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즉 이 기간은 학업, 직업교육(훈련), 자립준비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양육지원제도의 분절, 편차 해소

출산 이후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하더라도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양육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지지체계가 미흡하여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 강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 설치를 통한 원스톱(one-stop) 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기능 강화 및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양육 지원제도 확대 등과 연동되는 문제로 양육을 선택한 순간부터 양육지원제도가 분절되지 않고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는 관리만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나 품질 관리에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선 담당공무원조차 지원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청소년 한부모의 제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 시각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편차를 해소하여야 하며,⁷⁹⁾ 보육지원제도에 있어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도 친화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가 시설 생활인에 비해 보육기관, 돌보미지원제도 이용률이 오히려 낮은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지만, 이용 시간에 제한을 없애고 수요자의 추가 비용부담 문제를 개선한다면 청소년 한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다.

79) 지방자치단체별 청소년 한부모가족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서울 168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광주 60개, 부산 122개, 인천 69개, 대구 44개, 대전 12개, 울산 32개, 경기도 113개, 충남 46개, 충북 39개, 전남 25개, 전북 38개, 경남 102개, 경북 48개, 제주 5개의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백혜정 외, 2012b).

2. 생활주기에 따른 지원: 지역사회 지원체계 개선⁸⁰⁾

1)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현금급여 지원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다. 첫째, 최저생계비가 10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립지원 등이 제공된다. 둘째,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의 경우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된다. 셋째,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및 고교생교육비, 자립지원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이들 공공기관을 통해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은 모자가족복지시설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 124개 민간위탁 시설을 통한 지원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탈시설화 추세에 따라 정부도 생활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재가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1년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2015년부터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할 수 없어 시설수가 90여 개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던 기관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82.8%)과 구청·주민센터(65.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를 특화 지원하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경우 이용률도 매우 낮고, 이용하기까지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직접적인 도움(3.7%)을 제공받는 경우도 매우 낮아 제도 접근의 관문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급여 수급에 있어서도 인터넷 검색(13.7%)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5.6%) 등 비공식 통로가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설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에 한해 정보나 자원이 집중될 위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을 퇴소했거나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구청·주민센터 이용 시 행정서류가 너무 많고 지원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절차 상의 문제와 공공행정 일선 담당자의 편견과 태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학업중단

80) 이 부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은지 외)의 협동연구 세부보고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을 요약·발췌한 내용을 포함함.

등으로 진로·자립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한부모의 13.0%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안전행정부 산하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급여 제공 전달체계 내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제도 접근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정책 개선 방향

(1) 복지행정 전달체계 내 전담인력 배치

공공복지행정 최 일선에서 업무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적절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통해 복지급여를 수급받는 비율 자체는 낮지 않으나, 전달과정에서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정책 무지와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급여 신청과 제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폭증과 인원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여성·청소년·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아동·보육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며 정책의 연계 지점과 변화속도도 상이하고 복잡하여 행정안전부 중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내에서 효과적인 정책 전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단위에서 여성·가족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또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보육 및 여성·가족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과 같은 노인·장애인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가족을 단위로 서비스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들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전담하는 ‘청소년 한부모 행정도우미(가칭)’의 신설을 제안한다. 유사 제도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 이용률을 높이고 각종 급여 신청 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advocacy)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2) 청소년 한부모의 초기 상담창구 설치

본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 전달은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전달도 일부 집단에 한정된 경우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며, 청소년 한부모가 된 후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최초로 접했느냐에 따라 임신과 출산 이후 단계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관문으로서 초기 상담창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 상담전화 설치 시 상담전화 인력 중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할 때 문자 상담, 인터넷 상담 등 다양한 상담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현재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상당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경험과 이용률이 낮고 서비스 연계에도 적지 않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홍보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기존의 주된 서비스 전달체계인 구청·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인터넷 등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직접 서비스 제공이 긴급/일시 지원과 정보제공에 국한하고 있어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주기별 욕구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등 네트워크 기능 보강이 필요하다.

(4) 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지원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 한부모가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대체로 시설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제공받고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소 전에 퇴소 이후 주거, 생계, 양육에 대한 지원 욕구가 큰 것에 비해 퇴소 후 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지역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아웃리치 서비스와 사례관리,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기관 연계를 위한 매뉴얼을 일선 시설에 제작·보급하여 연계 업무의 효율성,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필수 연계기관 지정 확대

현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법률 및 경제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CYS-Net의 필수연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거점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서 조기에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양육지원 뿐만 아니라 학업, 진로·진학, 자립 등 취약·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이며 임신 단계에서부터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CYS-Net의 필수연계기관에 포함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 V 장

정 책 제 언

1. 정책제언 배경
2. 정책과제 및 제언

제 V 장 정책 제언⁸¹⁾

1. 정책제언 배경⁸²⁾

이 연구에서 정책 대상인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뿐만 아니라 임신 및 출산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하여 ‘원가정을 보호’하자는 것이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낙태와 입양을 통해 출산과 양육을 포기했다라도 이들은 임신과 출산 경험을 통해 짧게나마 부모됨을 경험한 바 있고, 임신과 출산은 반복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실상 청소년기의 원치 않는 임신은 예방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 인식,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여건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한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청소년기, 성인기의 발달 과업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제언은 4장에서 제안한 청소년 한부모의 유형 및 생활주기별 지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한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을 이론적 기반으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결과, 일반 청소년 및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그리고 각계 전문가 의견과 OECD 주요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토부와의 정책협의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국회 및 여성가족부 주관의 정책세미나와 토론회, 협동연구기관 간 세미나와

81) 이 장은 김지연 연구위원, 황여정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해외 사례 중 프랑스 사례는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 미국 사례는 김수혜(뉴욕주립대, 박사수료)가 집필한 원고를 발췌·요약한 것임.

82)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함.

연구진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정책과제는 먼저 청소년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과 관련한 기본권 보장과 주요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①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② 위기가족 지원 강화, ③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④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⑤ 입양 미혼모 인권 강화, ⑥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⑦ 학습권 보장 및 자립지원 강화 등 7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각각의 추진과제별로 정책방향과 세부 정책과제, 그리고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정책과제 추진 기반
1.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체계 정비 ◦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충 ◦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지원 강화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 ◦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제도 접근성 강화
2.위기가족 지원강화	◦ 양육비 지급 이행 모니터링 ◦ 제한적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 근거 법제 정비 ◦ 이행 강제기관 설치
3.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임의규정 개선 ◦ 위기청소년과 가족지원 인프라 간 연계 ◦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	◦ 청소년 피임실천율 성과 관리 ◦ 성평등 피임교육 및 피임접근성 강화
4.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 설치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보장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계 기능 강화 ◦ 청소년 한부모 공동주거시설 확보 ◦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제도 신설	◦ 취약가족 기능회복 및 기능보강 예산확보 ◦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반영
5.입양 미혼모 인권보호	◦ 입양 미혼모 상담 및 지원 마련 ◦ 보호동의와 입양동의 분리 운영 ◦ 베이비 박스 국가 관리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가정위탁 지원제도 개선
6.양육 및 자립지원강화	◦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부활 ◦ 맞춤형 생계지원	◦ 돌봄서비스 확대
7. 학습권 보장 및 취업 지원 강화	◦ 출석 대체 인정 ◦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 개선 ◦ 학습권 보장 매뉴얼 개발·보급 ◦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 및 운영 개선 ◦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내 기구 설치 ◦ 미혼모 대안학교(기숙형 국립 대안학교) 설치 ◦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제도 개선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평등교육법 제정	◦ 보건교사 배치 확대 ◦ 교육청, 학교 평가 시 학습권 보장 관련 지표 반영 ◦ 교사 연수 시 학생 및 소수자 인권 보호 내용 포함

【그림 V-1】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 기반

2. 정책과제 및 제언⁸³⁾

1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정책방향

한부모의 빈곤, 가족 유형 등 취약성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 등 가족을 단위로 하는 통합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돌봄 지원제도와 복지지원,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방적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2) 정책과제

(1)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체계 정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은 현금급여와 현물 및 서비스로 구분하여 현금급여는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물 및 서비스는 주민센터와 위탁기관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로 일원화하여 지역 내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한부모가족 혹은 미혼모 전담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초기상담(gate-way)을 강화하고 서비스 신청 내용이 주민센터로 자동 이관되어 주민센터는 정보 제공과 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로서 사실상 청소년 한부모를 ‘찾아가는(out-reach)’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주민센터는 종합 복지상담서비스 및 정보 제공,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민서비스의 최일선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력과 조직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행정도우미’와 같이 읍·면·동에 ‘청소년 한부모 행정도우미(가칭)’를 배치하여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거점기관과의 연계를 담당하고 급여와

83) 이 부분은 김지연 연구위원, 황여정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H. R. Kim-Lescarret 연구위원(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 김수혜(뉴욕주립대, 박사수료)가 집필함.

서비스 수혜 여부를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2)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충

현행 지역사회 내 통합서비스는 「아동복지법」 제37조를 근거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은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아동을 ‘초등학생 이하’로 제한하여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의 중학생 이상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은 법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이양사업으로 인해 기초지자체 대비 드림스타트 설치 비율은 83%(191개)에 불과하여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기관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

(3)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지원 강화

현행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또래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존감,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측정 항목 전 영역에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업중단 등 청소년기 위기 경험과 원가족의 취약한 가족기능,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양육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지원할 경우 양육, 자립 등 다른 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감안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 시 청소년동반자(YC)를 활용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정책과제 추진기반

위의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서는 현 국정과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주요 추진과제인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를 연내 추진하도록 한다

(1)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정부는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를 연내(2014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거점형, 기능보강형, 통합형 등 선택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동 단위에 여성·가족복지 담당자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아동·보육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2)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확대

현행 복지지원 체계를 중앙부처 위주의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전향하고 일선기관(street level agency)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복잡하고 분산된 복지제도를 표준화하고 사회보장정보 통합·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속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전자는 소득보장기능을 중심으로 주민센터가 주축이 되고, 후자는 욕구와 문제를 중심으로 주민센터와 민간기관이 연계하여 통합성을 제고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내실화와 함께 복지 담당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소수자인 청소년 한부모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현재와 같은 지원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3) 모바일 미디어를 통한 제도 접근성 강화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위드맘 사이트’와 같이 향후 모바일 미디어(스마트폰, 태블릿PC 등)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문자, 채팅 등 상담 방법을 다양화할 경우 이용 편의와 대상자 발굴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위드맘 사이트’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소득평가액, 자산, 거주지역, 가구 인원 등)를 입력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신청과 조회가 가능하고 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서 대상자 발굴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정책방향

여성가족부는 친자확인소송비용 및 법률 지원을 통해 비양육친부 혹은 친생모의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가사소송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전담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여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섬세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2) 정책과제

(1) 양육비 지급 이행 모니터링

청소년 한부모의 절대 다수가 상대 남성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다가 점차 지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즉 양육비 지급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한부모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이행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기관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제수단 및 행정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한적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이 연구의 표본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상대 남성 75%가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대 남성이 미성년자이고 청소년 한부모가 수급자로 지정 받지 못해 생계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한적 선지급 제도’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상대 남성의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상대 남성이 성인이 된

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 등의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정책과제 추진기반

앞에서 제안한 양육비 지급 이행 모니터링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주요 추진과제인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기관 설치’의 우선 추진이 요구된다.

(1) 근거 법제 정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법안 등이 의원발의 된 상황이며,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행정 및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근거 법제를 연내(2014년) 정비한다.

(2) 이행 강제기관 설치

근거 법제 마련 이후 양육비 이행 강제기관을 연내 설치하고, 법률 서비스를 포함한 관련 지원을 총괄 운영한다.

-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의 역할 : 비양육 한부모 찾기(location), 양육비 분쟁 상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소득·재산 등 금융정보 인지절차(paternalty), 양육비 지급여부 모니터링, 양육비 이행을 위한 강제수단(enforcement) 및 행정제재(obligation), 양육비 지급(distribution) 등을 총괄한다(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의 제공, 재산압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포함).
- 양육비 채무자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이며, 단, 양육비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양육비 채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 ※ OECD 국가 중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등 17개국이 한부모가족 자녀의 복지 차원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운영

1) 정책방향

청소년 한부모 다수가 빈곤, 가출, 학업중단 등 취약·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상당수는 학업중단 이후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취약·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여 대물림 예방과 출발점 평등을 실현하고 관련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임 접근과 실천율을 제고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2) 정책과제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임의규정 개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는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지원은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 지원과 취약·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에도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 등 다른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의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강행규정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합적인 욕구와 다양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 입양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추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5. (추가)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른 24세 이하 친생부모

(2) 위기청소년과 가족지원 인프라 간 연계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여자 청소년의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CYS-Net의 필수 연계기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들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은 위기청소년의 발굴에 용이하고 CYS-Net 대상자 가운데 임신, 출산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직접 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가족지원 인프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할 때 동거가족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선 기관에서 묵인 하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미혼부나 미혼모와 동거가족(사실혼 커플)은 양육 및 가사 부담,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은 공통적이지만 가족 내 역동과 갈등 면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동거가족 내 상당수의 청소년 미혼부는 학업중단 상황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진로, 진학에 대한 지원이 부재하여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이다. 따라서 원가족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미성년 한부모의 경우 사실혼 상태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양육자가 아닌 미혼부·모 1인이 ‘해탈’, ‘두드림존’ 등 기존의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육지원을 하는 등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의 대상자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추가)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추가) 1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위기청소년에 대한 중·장기적 보호 및 지원 협조

(3)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

청소년의 건강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은 낙태의 범죄화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임신부이며 불법 낙태 시술로 인한 후유증, 영아 유기 및 살해, 원정 낙태, 입양 강요 등 다른 범죄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43차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출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생명권, 생명존중은 임신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조되어야 한다. 아동, 미성년 청소년의 임신은 그 자체가 위기 상황임에도 이를 죄의식과 범죄로 낙인하는 것은 낙태의 전면 허용 못지않은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권, 생명존중과 함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단체 중심의 낙태 예방 노력에서 벗어나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

※ 프랑스 사례

- 18세부터 성인으로 완전한 독립성을 인정받으나, 18세 미만 미성년의 경우에도 부모 혹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독립성(자기결정)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①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을 통제할 권리

② 피임약(응급피임약) 사용 권리

③ 낙태 결정 권리(다만 본인이 선택한 성인 한 명이 동행하여야 하며 부모(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가족계획센터 담당자가 낙태 상담과 수술에 동행해야 하고, 전문상담가와 의무적으로 면담하여야 함)

④ 비밀 출산 권리

⑤ 출생아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권리(남, 여 모두 해당)

- 1975년부터 ‘Veli 법’ 을 통해 낙태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낙태는 임신 12주 마지막 날까지 허용되며, 임신 당사자만 요구할 수 있다.**

- “어느 누구도 여성의 임신을 중단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공공위생법 2222-1)

- “어느 누구도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 (Neiertz 법, 1993)

- **낙태 전 두 차례의 의무 상담이 있으며, 낙태 전에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첫 상담 후 최소 7일 이후 두 번째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낙태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게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3) 정책과제 추진기반

국정과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주요 추진과제인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의 일환으로 법교과 과정으로 성교육 시수를 확보하고 선택교과인 보건교과 채택률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피임실천율을 제고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1) 청소년 피임실천율 성과 관리

청소년의 출산율은 낙태 비율과 연관해서 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소년 낙태의 규모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모성보건 차원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청소년의 피임실천율 성과 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정부 승인통계로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조사는 2004년 국가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어, 전국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행태를 포함한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내용에 이미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실천율, 임신 경험률, 인공임신중절수술 경험률 등 성행태 관련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에 대한 국가간 비교, 횡단 및 종단 결과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피임실천율을 별도로 관리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성평등 피임교육 및 피임접근성 강화

이 연구에서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이미 성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성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성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으나 젠더 역학을 고려한 성평등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사전·사후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프랑스 사례

- 프랑스는 청소년의 성적 본능에 대한 관용(수용) 정도, 청소년의 피임 실천률이 가장 높고, 낙태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함.
- 모든 고등학교에 최소 1대 이상의 콘돔자동판매기 설치
- 학교에서 부모 동의나 의사 처방없이 무료로 응급피임약(pilule de lendemain)을 지급받을 수 있고, 약 지급 시 상담을 실시, 복용 양과 복용 여부에 대한 기록 보관
- 미성년자도 약국, 가족계획센터에서 피임약, 피임기구를 부모동의 없이 익명으로 구입 가능하며, 15~17세 미성년자의 경우 자부담 비용 발생 시 이를 면제함.

4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1) 정책방향

임신 단계의 초기상담 기능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 시설퇴소 후 지역사회 안착 등 각 단계별로 틈새 없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청소년의 연령, 성숙정도, 가족의 수용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보호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2) 정책과제

(1)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 설치

청소년이 임신, 출산 등의 사안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초기 상담과 대응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청소년 전화 헬프콜 1388’, ‘보건복지콜센터 129’, 관련 시설 등으로 상담 문의가 분산되고 있고, 서비스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할 경우 임신 단계의 초기 상담과 제도, 서비스,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관문(gate-way)으로 기능하여 재가(在家) 청소년 한부모의 서비스 이용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부모가족 전담 상담전화’를 설치할 경우 상담전화 인력 중 미혼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자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2)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보강

현재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출산 후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현물지원 등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거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타 기관과의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위드맘 사이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연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추가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사례관리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31개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데, 다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요자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연계 과정에서 누락, 분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는 거주지 변동이 잦고, 자녀의 성장 등 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의 기능 보강이 요구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계 기능 강화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은 숙식제공 등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제도를 안내받고 퇴소 후를 준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시설 내 서비스만을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희망복지 129센터, 학교(위탁교육기관 등 포함), 원격 교육기관, 외부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퇴소 이전에 주거, 양육, 생계 등 자립지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자립지원계획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사업을 통해 시설 퇴소 후 아동의 자립을 위해 대상 아동과 시설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18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등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 시설에 정책 홍보자료를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서비스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연 1회 이상 연계와 관련한 교육 실시, 연계 업무 매뉴얼 보급, 시설 평가 시 자립지원계획 수립 여부를 반영하도록 한다.

(4) 청소년 한부모 공동주거시설 확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주거지원제도 수혜율이 매우 낮다.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의 경우 1순위, 국민임대는 우선공급 대상이며, 매입·전세임대의 일반 공급도 1순위에 해당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나,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 상 거주지 변경이 잦고 부양가족 수가 많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하여 지원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한부모가구에 공급된 임대주택 15,836호 가운데 청소년 한부모가구에 공급된 주택은 28호에 불과하다(국토부, 2013).

전세자금 대출도 소득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어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금자리 매입임대주택 원룸 공급 시 대학생에 준하여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우선 공급하고, 공동주거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동주거시설은 3~4세대의 또래 청소년 한부모가 함께 거주함으로써 자조집단(self-help) 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주거 문제와 양육에 대한 부담, 심리·정서적 지원이 동시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은 상환여력이 없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OECD 주요국의 경우와 같이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제도 신설

18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을 가정위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인의 지도감독 없이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가 인권 보호에 취약한 것과 같이 ‘아동이 아동을 키우는’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세대의 상황이 이들에 비해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전에 「아동복지법」에 준하여 우선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18세 이하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를 함께 위탁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원가정’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성인의 지도감독 하에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인 양육지원비를 상향조정할 경우 친인척, 지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도 일부 작용할 수 있다. 둘째, 19세 이상 성년에 달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준비기간 동안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경우이다. 이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희망마루’ 사업을 일부 참고할 수 있다.

3) 정책과제 추진기반

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주요 추진과제인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와 관련하여 2015년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공동주거시설을 확대 설치하도록 한다.

(1) 취약가족 가족기능 회복 및 기능보강 예산 확보

기존의 ‘가족역량강화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예산 내에서 한부모가족 전담 상담창구 설치 예산을 국비로 확보하고,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보강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확대에 따른 예산은 현행대로 국비, 지방비를 50%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도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확보, 임대료 지원,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추진이 요구된다.

※ 프랑스의 주거수당

- **주거수당(Les allocations de logement)** : 프랑스 국적자에 한 해 자녀 출산과 동시에 주거수당 수급권이 생기며 미혼모의 경우 임신 5개월부터 주거수당 수급이 가능함. 수당액은 자녀 수, 소득, 주거비(월세), 집을 소유한 경우 은행 상환액 등에 따라 변동되며 호텔, 하숙, 유사 시설 거주시에도 지급함. 단, 이 경우 월 평균 주거비의 2/3만을 주거비로 인정함. 주거수당은 가족의 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① **개별지원수당(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 : 국적, 자녀 유무, 직업에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수준과 주거지역, 거주비용, 가족 형태, 직업유무 등에 따라 주거수당 액수는 차이가 있음.
- ② **가족 주거수당(ALF: 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ère familial)** : 개별 가족수당을 수급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급여수준은 자녀 수, 가족 소득수준, 거주비용, 거주지 등에 따라 달리 지급
- ③ **사회적 주거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à caractère social)** : 자녀가 없는 가족(저소득 퇴직자, 장애인, 청년층 근로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수준은 주거비, 소득 수준, 독신 등 가족 구성 형태 등에 달리 지급
- 한부모가족(미혼모가족 포함)의 경우 활동적 연대수당(RSA) 수급자인 경우에도 위의 주거수당을 일부 공제하고 지원 가능(공제액은 1인 가족 56.04유로, 2인 가족 112.08유로, 3인 이상 가족 138.70유로)
- 출산 시 산부인과 소속 사회복지사가 산모가 퇴원할 경우 거주지를 확인하고, 거주할 곳이 없을 경우 모자센터(centre maternel), CHRS(사회재통합과 거주를 위한 센터), 긴급전화 115센터(SAMU social) 등에 연락하여 거주지 제공
-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DALO 법(la loi DALO: Droit au logement opposable)**을 근거로, 거주지가 없거나 주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국가가 정해진 기간 내 적절한 거주지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행정재판을 통해 주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반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 영역 지표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취약계층 공동주거시설 확보 비율을 반영하는 등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1) 정책방향

국내입양 관련 법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입양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여 궁극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2) 정책과제

(1) 입양 미혼모 상담 및 지원 마련

임신과 출산은 반복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입양 보낸 입양 미혼모의 정신적 후유증을 고려할 때 입양 이후 미혼모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과 위기개입 및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미혼모는 입양을 포함한 요보호아동 발생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는 입양 미혼모 개인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2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입양절차가 종결된 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사안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성교육, 상담, 진로 및 자립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2015년 이후 입양기관의 미혼모자시설 운영이 금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입양인 사후관리 업무와 입양 미혼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연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프랑스의 입양 절차 사례

- 완전입양 : 입양을 결정한 입산부는 입양 담당 기관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해야 하고, 입양결정 이후 2개월 이내에는 입양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음.
- 단순입양 : 친생모가 입양 가족을 알고 지내며 입양된 아동은 생모와 입양모의 이름을 모두 가짐. 단, 친권은 입양 가족에게 있고, 아동은 친생모와 입양 가족 양쪽으로부터 상속권을 가짐.
- 후견인제도(parrainage) : 입양과 달리 미혼모를 포함하여 빈곤 가정의 아동을 주말, 방학 등 일정 기간 동안 돌봐주는 제도로 친권은 친생모에게 있음.

(2) 보호동의와 입양동의 분리 운영

입양숙려기간 중 아동양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출생아동은 위탁가정 등에서 대리보호하는 것에 ‘보호동의’ 하면 이를 ‘입양동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입양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다만 ‘보호동의’ 할 경우에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산후조리와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와의 만남 등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동의와 입양동의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인도의 입양 시 보호조치 사례

15_2. 만약 입양을 의뢰한 부모가 아동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입양기관(specialized adoption agency)의 보호소에서 아동의 초기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

15_3. 입양을 의뢰한 부 혹은 모에 대한 지원에는 이와 같은 요보호아동 발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 인도 여성아동부 중앙입양원 입양 가이드라인

Ministry of Women & Child Development Government of India Central Adoption Resource Authority
<http://adoptionindia.nic.in/index.htm> (인출일: 2013.11.4)

(3) 베이비 박스 국가 관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베이비 박스가 아동 인권 침해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제 베이비 박스에 대한 찬반 논란에서 벗어나 유기아동의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동의 문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양육 여건과 원가정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년 내 비준을 목표로 올해 5월 서명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입양과정에서 아동의 인권 보호 뿐 아니라 요보호아동과 미혼모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베이비 박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의 마련도 포함한다. 베이비 박스가 아동의 생명권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은 운영 방식은 관리감독의 부재로 인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부차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정책과제 추진기반

국정과제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주요 추진과제인 ‘입양아동의 안전·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입양 미혼모에 대한 상담을 제도화하는 등 지원을 내실화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정정보 보호의 일환으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부사항’, ‘전부사항’이라는 용어를 ‘일반사항’, ‘기초사항’이라는 용어로 개선하고, 기록의 열람 범위와 열람 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양자관계등록부 상의 친생모에 대한 정보도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입양인이 친모의 인적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2) 가정위탁지원제도 개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과 입양 미혼모 지원을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친생모가 입양숙려기간 이후에도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갈등할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가정위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한 후 양육할 수 있을 때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및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부양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출생아동과 친생모를 함께 위탁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6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국정과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 정책방향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한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돌봄, 생계 등 생활의 전 영역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이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 정책과제

(1)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현행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은 시설 입소자 및 재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제한, 자부담 부분에 있어 일부 개선이 요구된다. 만 3개월 이상 아동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시간제 돌봄은 1일 최소 2시간 이상, 영아종일제 돌봄은 1일 최소 6시간이상 사용원칙이 있고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발생한다. 아이돌봄은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의 목적이 있어 수요자의 욕구 맞춤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출산을 맞고 생활 여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양육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3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간제한 등 이용원칙에 일부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운영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종자돈(seed money)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사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보호할 경우 사실상 자산형성과 탈수급이 쉽지 않아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 한부모가 생계비 및 근로소득 일부를 저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24세까지 예치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현행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사업과 연동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 맞춤형 생계지원

원가족(부양의무자)이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를 부양할 경우, 이들을 부양하면서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이 만 3세에 달할 때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고, 이후 교육 및 자활급여를 조건부로 제공하는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를 적용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양육비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5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7만원이 제공된다. 여기에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게 월 12만원, 입양아동에게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됨을 감안할 때 원가정 보호 차원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 ※ 프랑스의 아동이 있는 가정(임신 포함)에 대한 지원 사례
- 모든 임신한 여성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가족(미혼모가족 포함)의 경우 자녀수에 따른 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 1자녀(46,014 유로/년), 2자녀(52,978 유로/년), 3자녀(61,335유로/년), 자녀 추가 시 8,357유로/년
 - 위 소득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출생수당(prime a la naissance) : 임신 8개월째 되는 초기에 한번 지급, 금액은 일정하게 923.08유로(130만 원 내외)
 - 기초가족수당(allocation de base) : 출산일로부터 자녀가 만 3세가 되기 직전까지 매달 184.64유로(26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단, 자녀가 출생이후 8일째, 9개월째 그리고 24개월째의 의무적 의료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 장기실업자, 근로빈곤층,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활동적 연대수당(RSA: Revenu de Solidarite Active)⁸⁴⁾**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활동적 연대수당은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나 25세 미만 여성이 임신한 경우 예외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학생 신분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나 원 가정에 거주하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본 수당이 최저생활 보장과 근로와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한부모가정(미혼모) 수당 지급 기준
 - 미혼임신상태 562.55유로
 - 한부모 가정+3세 미만의 1자녀 711.41유로
 - 한부모 가정+2자녀 (그중 1자녀는 3세 미만) 890.72유로
 - 한부모 가정+3자녀 (그중 1자녀는 3세 미만) 1097.57유로
 - 이후 한 자녀 당 206.85유로씩 추가

84) 활동적 연대수당(RSA: Revenu de Solidarite Active)은 기존의 최소통합수당(RMI: Revenu minimum d'insertion)과 한부모 수당(API: Allocation parent isole),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취업지원수당을 대체하여 2009년부터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3) 정책과제 추진기반

국정과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요 추진과제인 ‘돌봄서비스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양육인프라 확충 및 양육여건 개선을 중·장기적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1) 돌봄서비스 확대

영아종일제 지원, 시간제 이용대상 확대 등 돌봄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 24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보육교사가 방문하여 1 대 1로 아동을 돌봐주는 가정보육교사 제도 포함(※ 경기도 사례)
- 「영유아보육법」 개정 : 기존 보육에 가정보육을 포함하여 보육료 세제혜택 부여, 보육교사의 경력 인정 반영, 기존 아이돌봄에서 가사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이용 형태 신설 등 아이돌봄 서비스 다양화 반영

7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1) 정책방향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청소년의 자립과 성인기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청소년 한부모 상당수가 낮은 연령과 학업중단 등 저학력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습권 보호와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한다.

2) 정책과제

(1) 출석 대체 인정

재학 중인 학생이 산전 진료 및 산후 건강관리를 이유로 정규 수업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사이버 교육 및 별도의 과제 제출, 산모교실(보건소 등) 등 교육 참석으로 출석을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참고 사례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수업일수 등)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 미국 사례

○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 Vera Casey Teen Parenting Program

- 10대 청소년 부모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이들의 학업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Vera Casey 센터와 버클리 고등학교 헬스센터의 협력을 통해 10대 청소년 부모를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부모교육, 육아서비스 제공, 행정지원 및 재정운영은 버클리시 내 학교구(School District)에서 주관

- 주요 프로그램은 개별상담, 산전관리, 고교졸업 지원 및 이후 학업지속을 위한 맞춤형 학사 프로그램 운영
예시) 매주 목요일 Vera Casey 센터에서 실시하는 육아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 육아수업은 출산, 긍정적인 양육, 일상에 필요한 기술과 장래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 또한 청소년 부모들이 학교 또는 교외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는 Vera Casey 센터 내 무료 탁아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음.

○ Philadelphia Education Leading to Employment and Career Training(ELECT)

- 필라델피아에서 시행되는 학교기반 프로그램으로 임신과 출산을 앞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해주고 학업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 개선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탁교육은 시·도별 교육감이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학교장이 해당 기관에 위탁교육 대상자를 의뢰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위탁 대상자는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은 2013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서울, 부산, 경기도는 각각 2개소가 설치되어 총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학업중단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해 이들 기관은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홍보 부족, 일선 학교의 인식 부족, 이용 상의 불편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임신과 출산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타 시·도에 속한 위탁교육기관에 입교를 원할 경우에도 학력 인정과 원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보통교과(40%)의 성적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역청 혹은 학교의 재량으로 처리하거나 위탁교육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질병결석 처리하는 등의 사례를 예방하여야 한다.

셋째, 원적학교에 20일 이상 출석 의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학생 미혼모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로 미혼모 대안학교의 경우 3월에 수업 공백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학습권의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시 대안위탁교육기관 설치 여부와 설치 개소수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3) 학습권 보장 매뉴얼 개발·보급

이 연구에서 19세 미만인 경우 재학 중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고, 일반 학생 응답자의 경우 주변에서 임신, 출산으로 고민한 친구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1%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는 학생 간 이성 교제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학칙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생의 임신, 출산에 대한 대응과 처리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규칙 개정을 권고하고 임신, 출산 사안 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컨설팅,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4) 학업중단숙려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강화

2014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도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적실성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학업중단숙려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2012년부터 시범 적용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도는 숙려 대상 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재학 중인 경우보다 학업 중단 이후 임신, 출산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에 재학하는 것 자체가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주 간의 학업중단숙려기간 동안 남, 여 학생의 성별 격차를 고려하여 심리 및 진로상담, 외부와의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여학생의 경우 임신, 출산, 양육 여부에 관계없이 추후 학업 지속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같은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5)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내 기구 설치

학습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도와 연동하여 교내에 학업중단 및 학생의 학업중단이나 학업재개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기구(가칭 학업중단예방위원회) 및 담당자를 교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는 학업중단과 지속,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에의 위탁 여부 결정과 복교 결정(학년결정입학제 운영 등) 등 학생 지원을 담당하며,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는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내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평가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6) 미혼모 대안학교(기숙형 국립 대안학교) 설치

학업지속 방안 중 ‘양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생 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미혼모 대안학교는 전국적 모집과 입교가 가능하여 현행 위탁교육기관 운영과 더불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현행 해양수산부가 설립·운영 중인 국립해사고등학교, 중소기업청이 설립·운영 중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사례를 준용할 수 있다.

※ 사례

-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설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해사에 관한 기술·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이하 "국립해사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②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조(설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7)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제도 개선

현재 검정고시학습비는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연 154만원 이내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학습 의욕과 동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영유아기 자녀까지 돌보는 일부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 운영방식은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대상자의 빠른 학위취득보다 학원 등록기간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원의 상업적 접근과 맞아 떨어질 경우 예산 낭비의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정고시학습비 지원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뿐만 아니라 전체 한부모로 확대 운영하고, 시설 생활인의 경우 시설을 통해 학습비를 지원하여 검정고시 준비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시설 종사자가 논의 하에 개별적인 학습지도가 가능한 튜터링(tutoring)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기초학력이 부진하여 학원 수강이 도움이 되지 않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방법과 학습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대상 청소년 한부모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적성 탐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직단계에서 탈락하거나 갈등하는 등 ‘회전문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청소년 한부모는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경험이 많아 심리상담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적성과 직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진로상담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9) 성평등교육법 제정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은 학습권 향유에 있어 성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가칭) 「성평등교육법」 제정을 제안한다. 다만 차선택으로 현재 의원 발의안인 「아동·청소년인권법」, 「차별금지법」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3) 정책과제 추진기반

(1) 보건교사 배치 확대

보건교사는 성교육을 통한 예방적 접근과 교내에서 발생하는 임신과 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원하고 산전, 산후 건강관리와 모성보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 반영 및 연수

2013년 시·도 교육청 평가지표에 학업중단 예방 지원 노력이 신규로 반영되어 있다. 대안교실 등 대안교육 활성화, 학업중단숙려제도 운영, 기관 간 협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여부 및 시설 수,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규칙 개정 노력 등 학생 미혼모의 학업중단 예방 노력을 지표에 반영하여 책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에 대한 교사, 행정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신입교원 연수, 교사 연수 시 학생 미혼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취약계층 학생의 인권, 학습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국정과제에 따른 28개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안)을 도식화한 것이 표 V-1이다.

표 V-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정책과제 추진계획(안)

	국정과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복지사업 영역 ³⁾	추진시기(안)		관계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중장기	
I 예방 지원	국정과제: 건강한 가정 만들기						
	1. 취약가족의 기능회복 및 자립 강화						
	1-1.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체계 정비	○		생계	○		여성가족부
	1-2. 지역사회 통합서비스 지원기관 확충	○				○	여성가족부
	1-3.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지원 강화	○		돌봄		○	여성가족부
	2. 위기가족 지원 강화						
	2-1. 양육비 지급 이행 모니터링	○	○	생계	○		여성가족부
	2-2. 제한적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	○	생계		○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3. 취약·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	○				○	여성가족부
	3-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임의규정 개선		○		○		여성가족부
	3-2. 위기청소년과 가족지원 인프라 간 연계		○		○		여성가족부
II 개입 지원	3-3.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		○	의료		○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행복한 임신과 출산						
	4. 임신·출산·양육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4-1. 미혼모 전담 상담창구 설치	○			○		여성가족부
	4-2.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능 보강	○			○		여성가족부
	4-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연계 기능 강화	○			○		여성가족부
	4-4. 청소년 한부모 공동주거시설 확보			주거		○	국토해양부
	4-5. 미성년 청소년 한부모 가정위탁 신설	○		돌봄	○		여성가족부

* 주: 1) 단기 정책과제는 기존 정책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중장기 정책과제는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를 기준으로 함.

2)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부처별 사업은 보건복지부 48개, 여성가족부 18개, 교육부 15개, 국토해양부 10개, 지식경제부 6개, 고용노동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3개, 방송통신위원회 2개, 국세청 1개, 농림수산식품부 1개 운영(백혜정 외, 2012b).

3) 복지사업 영역별로는 생계 22개, 교육 16개, 의료 16개, 자활 13개, 보육 12개, 주거 12개, 에너지 6개, 통신 4개, 돌봄 4개, 문화 3개, 기타 2개, 시설운영 1개 등 총 111개 사업 운영(백혜정 외, 2012b).

(앞의 표 계속)

국정과제에 따른 세부 정책과제	예산 사업	법률 제·개정	복지사업 영역 ³⁾	추진시기(안)		관계부처 (지자체 포함)
				단기	중장기	
국정과제: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5. 입양 미혼모 인권 보호						
5-1. 입양 미혼모 상담 및 지원 마련	○			○		보건복지부
5-2. 보호동 의와 입양동의 분리 운영		○		○		보건복지부
5-3. 베이비 박스 국가 관리	○			○		보건복지부
국정과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 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						
6-1.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	○	돌봄	○		여성가족부
6-2.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부활	○		생계	○		여성가족부
6-3. 맞춤형 생계지원	○		생계		○	복지부·여부
국정과제: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7. 학습권 보장 및 자립 지원 강화						
7-1. 출석 대체 인정		○		○		교육부
7-2.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확대 및 운영 개선	○		교육	○		교육부
7-3. 학습권 보장 매뉴얼 개발 보급	○			○		교육부
7-4.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		교육부
7-5.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내 기구 설치				○		교육부
7-6. 미혼모 대안학교 설치	○		교육		○	교육부·여부
7-7.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제도 개선	○		교육	○		여성가족부
7-8.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활	○		여부·노동부
7-9. 성평등교육법 제정		○			○	교육부·여부

* 주: 1) 단기 정책과제는 기존 정책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중장기 정책과제는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를 기준으로 함.

2) 청소년 한부모가족 관련 부처별 사업은 보건복지부 48개, 여성가족부 18개, 교육부 15개, 국토해양부 10개, 지식경제부 6개, 고용노동부 4개, 문화체육관광부 3개, 방송통신위원회 2개, 국세청 1개, 농림수산식품부 1개 운영(백혜정 외, 2012b).

3) 복지사업 영역별로는 생계 22개, 교육 16개, 의료 16개, 자활 13개, 보육 12개, 주거 12개, 에너지 6개, 통신 4개, 돌봄 4개, 문화 3개, 기타 2개, 시설운영 1개 등 총 111개 사업 운영(백혜정 외, 2012b).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혜규 (2012).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성과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189, 35-49.
- 교육부 (2013). 정보공개청구 내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최종견해 평가 및 이행전략 모색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토교통부 (2013). 주거복지기획과 내부자료.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3).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2009). **청소년비행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환식, 류창열 (1993).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그에 관한 요인.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8(2), 102-105.
- 박동혁 (2013). 토론문.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2013.1.29).
- 백종만 (2012).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과 정책과제. **복지동향**, 169.
- 백혜정, 김지연, 김혜영, 방은령 (2012a).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 김지연 (2012b).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연구보고 12-R17-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2).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 <http://stat.mw.go.kr/front/statDB/statDBView.jsp?menuId=11&nPage=1&sttsDataSeq=84&subjCd=B00002&mmrldate=&schSttsNm=>에서 2013.11.8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 국내외 입양통계.
- <http://stat.mw.go.kr/front/statData/publicationView.jsp?menuId=40&bbsSeq=6&nttSeq=20711&searchKey=&searchWord=&nPage=1>에서 2013.5.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3).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06mn.jsp?PAR_MENU_ID=06&MENU_ID=060604 에서 2013.10.13. 인출.

보건복지부 (2013). 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2). 2013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다각적 정보지원 매뉴얼: 한부모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정보 길라잡이.

http://www.seoulhanbumo.or.kr/information/data/data_view.jsp?regNo=1365487352866&nowPage=0&order=DATA_REG_NO&orderDir=desc 에서 2013.9.7. 인출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_____ (2013).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EgovPageLink.do>에서 2013.10.13. 인출.

이광희, 윤수재, 박용하, 전성우, 이정호, 조광우, 왕광익, 정주철, 김미숙, 김혜영 (2009).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재완, 김승용 (201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직, 인력, 사업, 재정의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34, 195-236.

이준일 (2004). 사회적 기본권. **헌법학연구**, 10(1), 453.

_____ (2011a). 영아유기 합법화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제연구**, 40, 337-363.

_____ (2011b). 친권포기각서의 위헌성. **헌법논총**, 22, 177-206.

_____ (2012). 미혼모의 인권과 법정책. **고려법학**, 64, 139-171.

인도 여성아동부 중앙입양원 입양 가이드라인. Ministry of Women & Child Development Government of India Central Adoption Resource Authority <http://adoptionindia.nic.in/index.htm> (인출일: 2013.11.4)

정다영 (2009). **청소년 미혼모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석봉, 석창훈, 차명진, 이혜정, 윤효정 (2008). **학생미혼모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조선일보(2013.9.25.). 인재근 의원, '10대 첫 성경험 연령 15.1세, 피임교육 절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582622> 에서 2013.10.13. 인출.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fostercare.or.kr/>에서 2013.10.24. 인출.
- 지은구 (2012).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 **복지동향**, 168, 21-18.
-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2.11.1.). 우울한 청소년이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더 나빠.
- 차재권 (1998).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승희 (2008). 입양으로 자녀를 상실한 미혼모들의 슬픔 연구. **사회복지연구**, 36, 203-225.
- 통계청 (2010a).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79에서 2012년 2월 22일 인출
- ____ (2010b). 장래가구추계.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A에서 2011년 9월 6일 인출
- ____ (2011). 건강심사평가원 분만건수. http://kosis.kr/abroad/abroad_02List.jsp?parentId=1211035에서 2012년 9월 6일 인출
- 하지영, 서소정 (2010). 영아의 기질과 발달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 특성 변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2), 151-168.
- 한국교육개발원 (2013).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허남순, 노충래 (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홍봉선, 남미애 (2011).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방안. **청소년학연구**, 18(9), 19-52.
- 홍순혜, 김혜래, 이혜원, 변귀연, 정재훈, 이상희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광주: 국가인권위원회.
- 황여정 (2012).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권.
- Barn, R. & Mantovani, N. (2007). Young mothers and the care system: Contextualizing risk and vulnerabi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7, 225-243.
- Breheny, M. & Stephens, C. (2008). Breaking the cycle: constructing intergenerational explanations for disadvantag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 754-763.
- Brosh, J., Weigel, D. & Evans, W. (2007). Pregnant and Parenting Adolescents' Perception of Sources and Supports in Relation to Educational Goals.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4(6), 565-578.

- Budd, K., Hoidsworth, M., Hogan Bruen, K. (2006). Anteced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ing stress in adolescent mothers in foster care. *Child Abuse & Neglect*, 30, 557-574.
- Cooke, J. & Owen, J. (2007). 'A Place of Our Own'? Teenage Mothers' Views on Housing Needs and Support Models, *Children and Society*, 21(1), 56-68.
- Dalla, R. & Gamble, W.C. (2000). Mother, Daughter, Teenager-Who Am I? Perceptions of Adolescent Maternity in a Navajo Reservation Community. *Journal of Family Issue*, 21(2), 225-245.
- Duncan, S. (2007). What's the problem with teenage parents? and what's the problem with policy? *Critical Social Policy*, 27, 307-334.
- Eshbaugh, E. (2008). Potential Positive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Coresidence for Teen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Adult-Supervised Households.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7(1), 98-108.
- Gianakos, I. (2001).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101-114.
- Giullari, S. & Shaw, M. (2005). Supporting or controlling? New Labour's housing strategy for teenage parents. *Critical Social Policy*, 25(3), 402-417.
- Grossesse mineure. <http://www.doctissimo.fr/html/grossesse>.
- Harding, J. & Kirk, P. (2004). The housing and support needs of teenage mothers. *Housing, Care and Support*, 7(3), 16-19.
- Jacques Michel, psychologue, 3eme journee humanitaire de la sante des femmes, organisee le 4 mars 2011. <http://www.doctissimo.fr>.
- Kalil, A. & Ziol-Guest, K.M. (2008). Teacher Support, School Goal Structures, and Teenage Mothers' School Engagement. *Youth & Society*, 39(4), 524-548.
- Lynch, R. (2004). *Exceptional Returns: Economic, fiscal and social benefits of investmen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 OECD (2013).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12. [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_18147364\(2013.2.12](http://www.oecd-ilibrary.org/economics/oecd-factbook_18147364(2013.2.12) 검색)
- Oxford, M.L., Gilchrist, L.D., Lohr, M.J., Gilmore, M.R., Morrison, D.M. & Spieker, S.J. (2005). Life Course Heterogeneity in the Transition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mong

-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4), 479-504.
- Prevention du décrochage scolaire, (날짜), 제목. Retrieved 날짜, from <http://eduscol.education.fr>
- Raatikainen, K., Heiskanen, N., Verkasalo, P. K. & Heinonen, S. (2006). Good outcome of teenage pregnancies in high-quality maternity care. *European Journal Public Health*, 16(2), 157 - 61.
- Reid, V. & Meadows-Oliver, M. (2007). Postpartum depression in adolescent mothers: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1, 289-298.
- Sampson, R.J. & Groves, W.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 Vincent, K. (2009). Responding to schoolgirl pregnancy: The recognition and non-recognition of difference. *Improving Schools*, 12(3), 225-236.
- World Bank (2012).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ADO.TFRT?display=default>에서 2013년 2월 12일 인출
- Yardley, E. (2009). Teenage Mothers' Experiences of Formal Support Services. *Journal of social policy*, 38(2), 241-258
- BBC News. (2013. 3. 13), <http://www.bbc.co.uk/news/magazine-18585020?print=true>

.....

부 록

신문1 귀하는 전년도 조사에 참여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신문2 귀하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년 _____ 월 ➡ 198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조사중단
(※ 전년도 조사 참여자는 1987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만 조사중단)

신문3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이혼
- ③ 사별
- ④ 기혼 ➡ 조사 중단

신문4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 미혼모부자지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를 포함한 센터)
- ③ 집
- ④ 대안위탁교육기관
- ⑤ 기타(_____)

① 먼저 학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 ① 예 ☞문 1-1로 이동
② 아니오 ☞문 1-5로 이동

※ 다음은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1-1 현재 귀하는 어느 수준의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이상

문1-2 현재 귀하가 받고 있는 교육은 어떤 유형입니까?

- ① 일반 정규학교 ② 대안학교
③ 원격교육(동영상 강의, 방송통신학교, 사이버학교 등 등) ④ 검정고시학원
⑤ 독학 ⑥ 기타 (_____)

문1-3 귀하가 학업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학업을 마치고자 하는 나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② 가족의 도움과 지지가 있어서
③ 대안학교 입학이 가능했기 때문에
④ 본래 다니던 학교에서 이해하고 배려해주었기 때문에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1-4 귀하가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② 신체적으로 힘들
③ 교육 비용	④ 적성에 맞지 않음
⑤ 사회적 편견과 차별	⑥ 교육시간 중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음
⑦ 먼 통학거리	⑧ 거주지 및 불안정한 생활환경
⑨ 공부에 대한 동기가 약함	⑩ 스스로 느끼는 또래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문제
⑪ 가족 친구들의 이해부족 대화단절 등 주변인과의 관계 악화	⑫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문1-4 응답 후 문1-12로 이동

(문 1-11) 귀하는 향후 회업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①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	☞ 문 1-11-1로 이동
② 정규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 문 1-12로 이동
③ 원격교육(방송통신학교, 사이버대학 등)을 이용해서 학력을 얻고 싶다	☞ 문 1-12로 이동
④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학력을 취득하고 싶다	☞ 문 1-12로 이동
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 문 1-12로 이동
⑥ 독학을 하거나 학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	☞ 문 1-12로 이동
⑦ 미혼모 시설로 교사가 와서 수업을 받고, 학교에서 받은 수업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 문 1-12로 이동
⑧ 아직 고민 중이다	☞ 문 1-12로 이동
⑨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문 1-12로 이동

(문 1-11) (회업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회업을 지속하고 싶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③ 출산 및 육아 등으로 학업을 지속할 형편이 안되어서	④ 경제활동(돈벌이)를 해야 해서
⑤ 원래 하던 일이 있어서	⑥ 이미 학교를 졸업해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아래 문항은 모든 분들이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2) 임신·출산한 청소년이 회업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 |
|--|
| ① 양육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생미혼모를 위한 대안학교 설치 |
| ② 미혼모시설로 교사를 파견하여 학업을 계속하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학력을 인정 |
| ③ 출산 전·후의 휴학 제도 도입 |
| ④ 성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
| ⑤ 학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확대 |
| ⑥ 교칙에 임신·출산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 명시 |
| ⑦ 임신부를 배려한 교복이나 책상, 체육활동에서의 배려 등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배려 |
| ⑧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
| ⑨ 기타(_____) |

(문 1-13) 귀하가 자립하려면 지금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문 1-14) 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일 때 임신 또는 출산을 경험하십니까?

- ① 예 ☞ 문 1-15로 이동
 ② 아니오 ☞ 문 2-1로 이동

문 1-15 귀하는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학교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알렸습니까? 알렸다면 누구에게 알렸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보기 중 '㉑ ~ ㉑' 중 하나라도 응답하면 문1-15-1로 이동, '㉑ 또는 ㉑' 만 응답 시 문1-16으로 이동

① 학교 선생님 또는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문 1-16으로 이동
② 학교 친구들	☞문 1-16으로 이동
③ 담임교사	☞문 1-15-1로 이동
④ 상담교사	☞문 1-15-1로 이동
⑤ 보건교사	☞문 1-15-1로 이동
⑥ 교감 혹은 교장 선생님	☞문 1-15-1로 이동
⑦ 기타 (_____)	☞문 1-15-1로 이동

문 1-51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을 때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① 별 반응이 없었다	② 전학을 권유했다
③ 자퇴를 권유했다	④ 휴학을 권유했다
⑤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	⑥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후 복학을 권유했다
⑦ 교칙위반이라는 사유로 징계했다	⑧ 기타 (_____)

문 1-16 임신 중일 때, 학교 또는 교사로 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아무런 서비스나 도움도 받지 못했다	② 개인 상담
③ 임신 중 병원진료 및 검진에 대한 배려	④ 미혼모 시설, 입양기관 안내
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밀보장	⑥ 학업지속을 위한 안내와 정보 제공
⑦ 학부모 상담	⑧ 수업에서의 배려(제육시간 참여 조정 등)
⑨ 기타 (_____)	

문 1-17 귀하는 임신 또는 출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또는 친구들로부터 차별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에게 차별이나 소외를 당했는지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차별당한 경험이 없다.
- ② 교장 혹은 교감 선생님
- ③ 담임 선생님 (대학의 지도교수 포함)
- ④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들
- ⑤ 담임 이외의 다른 선생님 (지도교수를 제외한 다른 교수 포함)
- ⑥ 친한 친구 이외의 다른 학생들
- ⑦ 기타 (자세히: _____)

㉔ 다음은 진로 및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1) 다음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각 문항에 해당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7)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결정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진로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귀하는 임신이나 출산 이후 정규 학교 이외의 곳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2-3으로 이동

② 아니오 ➡ 문2-6으로 이동

(문2-3) 귀하가 직업훈련을 받았던 기관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② 직장/근무 장소

③ 사설 학원

④ 공공직업훈련기관

⑤ 미혼모 관련시설

⑥ 통신강좌

⑦ 종교기관(교회 등)

⑧ 기업의 훈련원

⑨ 학교

⑩ 기타 (자세히: _____)

(문2-4) 귀하가 받은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을 받은 기간을 기입해주시시오.

※ 만약 1가지만 받았다면 똑같이 응답함.

구분	프로그램명(구체적으로)	교육 기간
1)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프로그램		()개월
2) 가장 오랫동안 교육받은 프로그램		()개월

☺ 다음은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 현재 귀하는 일(돈벌이)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문3-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3-8로 이동

※ 다음은 현재 일(돈벌이)을 하고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모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3-1 현재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 OO파견업체 소속으로 건설회사에서 경리를 함, OO화장품에서 화장품 판매
(구체적으로) _____

문3-2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 _____년 _____개월 _____주

문3-3 현재 근무하시는 주된 일자리의 근로조건은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형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가) 고용형태	2) 주된 근로시간	3) 주당 근로일	4) 주당 근로시간	나) 근로소득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시간제·아트바이트) ③ 비정규직(시간제·아트바이트 제외) ④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을 도움 ⑤ 내 사업을 함 ⑥ 기타 ()	오전/오후 _____시부터~ 오전/오후 _____시까지	_____일	_____시간	① 연봉 _____만원 또는 ② 월평균 _____만원 또는 ③ 주당 _____만원 또는 ④ 일당 _____만원 또는 ⑤ 시간당 _____천원

문3-4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 ① 공공 민간직업알선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② 공공 민간직업알선기관의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③ 취직시험용시
 ④ 학교 학원 추천을 통해서
 ⑤ 미혼모 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건강가족지원센터 등 추천을 통해서
 ⑥ 사업제 방문
 ⑦ 친구의 소개로
 ⑧ 친지의 소개로
 ⑨ TV, 신문, 잡지, 벽보 등을 보고
 ⑩ 직접 창업
 ⑪ 기타(_____)

※ 아래 문항은 현재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응답해 주십시오.

(문3-11) 귀하는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3-11-1로 이동 ② 아니오 ➡ 문3-12로 이동

(문3-11-1) 직장을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이 좋지 못해서 ② 회사의 분위기가 싫어서
 ③ 봉급(임금)이 적어서 ④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⑤ 너무 멀어서 ⑥ 앞으로 전망이 없어서
 ⑦ 회사가 망해서 ⑧ 자녀 양육이 힘들어서
 ⑨ 직장(직장상사)의 징계 또는 강요로 ⑩ 임신 사실이 알려질까봐 스스로 퇴직
 ⑪ 한부모라는 것이 알려질까봐 스스로 퇴직 ⑫ 출산 후 다시 다니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⑬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3-12) 귀하는 일을 구할 때, 다음 항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금전적 보상 (급여 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업무량과 업무난이도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의 적성과 흥미	①	②	③	④	⑤
5) 직업 자체의 미래 전망	①	②	③	④	⑤
6)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7) 아이를 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8) 출퇴근 거리	①	②	③	④	⑤
9) 자신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문3-13)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일자리를 구해본 적이 없음 ② 취업정보의 부족
 ③ 취업준비 시간 부족 ④ 근무조건(시간이나 환경)이 맞지 않음
 ⑤ 보수(수입)가 맞지 않음 ⑥ 학력, 자격이 맞지 않음
 ⑦ 경력 부족 ⑧ 나이가 맞지 않음
 ⑨ 신체적 조건이 맞지 않음 ⑩ 적성에 맞지 않음
 ⑪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음 ⑫ 사회적 편견 및 차별
 ⑬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 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3-14) 일자리를 구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예) 회사 경리, 헤어 디자이너, 화장품 판매, 텔레마케터 등

㉠ 다음은 현재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귀하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에게서 꼭 이루고 싶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5 지난 6개월 간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안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6 현재 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는 지난 한 달 간 다음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주시시오.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⑤해당 없음'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항	거의 없다	적은 편이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해당 없음
1) 집안일	①	②	③	④	⑤
2) 직장일(학업)	①	②	③	④	⑤
3) 경제적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4) 아이 돌보기	①	②	③	④	⑤
5) 아이 아버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원가족(부모 및 형제자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7) 이웃/주변사람들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8) 사회적 편견 및 차별	①	②	③	④	⑤
9) 건강 문제	①	②	③	④	⑤
10) 미래에 대한 걱정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8 귀하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 ② 부족하다
- ③ 적당하다
- ④ 충분하다
- ⑤ 매우 충분하다

문9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도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불법)낙태보다는 차라리 출산 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청소년이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출산은 이유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정당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하면 입양보내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는 마땅히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청소년 임신은 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임신·출산은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응답)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임신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출산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주변에서 임신의 중단(낙태)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임신·출산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청소년이라서 임신·출산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6) 임신·출산을 이유로 학업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7) 임신·출산을 이유로 생활 전반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제도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9)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출산 및 양육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1 귀하는 출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1-1로 이동
② 없다 ➡ 문 11-5로 이동

※ 다음은 출산 경험이 있는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1) 있다면, 출산은 지금까지 몇 회 하였습니까? _____ 회

(문 11-2) 현재 귀하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_____ 명

➡ 현재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없을 경우 문 11-5로 이동

(문 11-3) 귀하의 자녀는 몇 년 생입니까?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가장 큰 아이부터 둘째 아이까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1) 첫째: _____ 년 생
2) 둘째: _____ 년 생

(문 11-4) 자녀 양육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앞으로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아이와 관계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 아이는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다	①	②	③	④
6) 아이를 돌보느라 내 생활을 포기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내 자녀는 내가 마땅히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구분	11-5-1 해당사항 여부		11-5-2 주변 사람의 도움 정도										11-5-3 도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원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돈이 필요하거나, 아프거나,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부모	①있다	②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형제 자매	①있다	②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지	①있다	②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친구	①있다	②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지인	①있다	②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관 종사자	①있다	②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학교 교사	①있다	②없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Table 1

1) 아버지 ()	2) 어머니 ()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대학교 졸업 이상	⑦ 안 계심
⑥ 모름	

부모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서로의 일상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와 진로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상의하는 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5 귀하 부모님(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은 어떤 편입니까?

- ① 하 ② 중하 ③ 중 ④ 중상 ⑤ 상

문 16 귀하는 지금까지 '주로' 어떤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까?

- ① 양친 가정 ② 계부모 가정 ③ 한부모 가정 ④ 조손 가정
⑤ 위탁가정(친인척 포함) ⑥ 대안 가정(그룹홈, 보호시설 등) ⑦ 기타(_____)

문 17 귀하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 있는 상황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피해, 가해 경험을 모두 포함함)

- ① 학업중단 ② 학교폭력 ③ 가정폭력(아동학대 포함) ④ 가출
⑤ 자살 시도 ⑥ 성폭력(성매매 포함) ⑦ 자살생각 ⑧ 인터넷중독
⑨ 청소년쉼터 입소 ⑩ 기타(_____)

문 18 초등학교·중학교 시기를 돌아봤을 때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경제적 도움	② 방과 후 보호	③ 학습지도
④ (학교적응·또래관계 등)고민상담	⑤ (부모-자녀관계 등)가족상담	⑥ (성·피임 등)보건교육
⑦ 진로·적성탐색	⑧ 인성교육	⑨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교육
⑩ 여가활동 지원	⑪ 기타(_____)	

☺ 다음은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19 각 지원 정책에 대해 귀하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 문19-1의 지원 정책 중 '①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지원 경험 여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19-2에서 지원 경험이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만족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정책	(문 19-1)		(문 19-2)		(문 19-3)만족도				
	인지 여부		지원 경험 여부		19-2에서 ①받았다 응답자만				
	안다	모른다	받았다	받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영유아 보육료/ 학비(만 0~5세)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월 15만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기초생활수급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의료수급권자 신청 및 건강보험료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자립촉진수당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자산형성계좌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아이 돌보미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출산 전 진료비 지원(건강보험공단)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저소득 가구 전세 자금 대출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임대(국민/영구)주택 지원(SH, LH 공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저소득(한부모 가족) 복지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대여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6)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 및 자녀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7) 출산 및 양육시 위기지원(문유, 기저귀 비용,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 결정비 지원 등)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8)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9) 심리상담(개인/집단 상담) 서비스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0) 복지시설입소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1)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2) 영양플러스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3)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4)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5) Wee클래스(학교), Wee센터(교육청)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6) 두드림존 지원(청소년 자립준비 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문20 귀하는 예시에 있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 각 기관 또는 단체를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20-1) 이용해본 적이 있다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경로는 무엇입니까?

(문20-2)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각 기관 또는 단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이용해본 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한 가지만 응답 주시기 바랍니다)

(문20-3)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각 기관 또는 단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줌,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정을 알려줌, 기관 또는 단체 방문시 동행 등)

(문20-3-1) 직접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장 도움이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도움이 된 곳을 순서대로 2순위 까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20번의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정부지원 이용여부에 대해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문20-1-문20-3-1번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20번의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부지원 이용여부 모두에 대해서 '②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문23번으로 이동

※ 문20-3번의 이용과정에서 직접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문20-3-1번에 응답

[응답표]

구분	구청 또는 주민센터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한부모복지시설	보건소	청소년상담기관
설명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지원 등 신청시	출산 및 양육지원(분유, 기저귀 비용, 병원비지원 등) 신청시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등 이용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 등 신청시	헬프콜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이용시
문20 이용여부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문20-1)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경로 (보기표 확인)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문20-2) 이용시 어려웠던 점 (보기표 확인)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문20-3) 이용과정에서 직접 도움을 받은 경험 유무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문20-3-1) 직접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경로 (보기표 확인)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X	

[보기표]

문20-1. 정보를 가장 많이 얻은 경로

문20-31. 직접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경로

- ① 구청 또는 주민센터
- ② 미혼모부자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③ 한부모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등)
- ④ 보건소
- ⑤ 청소년상담기관(헬프콜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ae센터 등)
- ⑥ 지역복지관
- ⑦ 학교
- ⑧ 병원
- ⑨ 대안교육위탁기관
- ⑩ 검정고시학원
- ⑪ 고용지원센터나 새일센터
- ⑫ 미혼모 당사자 카페(한국미혼모가족협회, 무지개다리 등)
- ⑬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복지로, 위드맘 등)
- ⑭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 ⑮ 인터넷 검색(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당사자카페 제외)
- ⑯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 ⑰ 기타(_____)

문20-2. 이용시 어려웠던 점

- ①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 ②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했다.
- ③ 내야하는 행정서류가 너무 많았다.
- ④ 신청 후 지원을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 ⑤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히려 해서 부담스러웠다.
- ⑥ 담당자(담당공무원 · 복지사 등)가 정책을 잘 몰랐다.
- ⑦ 센터·기관의 운영시간과 교통이 불편했다.
- ⑧ 기타 (_____)

문21 다음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 미혼모부자거점기관 및 한부모복지시설을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은 경험 여부 및 안내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청 또는 주민센터	미혼모부자거점기관	한부모복지시설
문21-1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다른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문 21-1-2로 이동) ② 아니오 (☞문 21-2-1로 이동)	문21-2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통해 다른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문 21-2-2로 이동) ② 아니오 (☞문 21-3-1로 이동)	문21-3 한부모복지시설을 통해 다른 기관·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안내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문 21-3-2로 이동) ② 아니오 (☞문 22로 이동)
문21-12 안내받은 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기관·단체를 순서대로 2순위만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문21-22 안내받은 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기관·단체를 순서대로 2순위만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문21-32 안내받은 기관 중 가장 도움이 된 기관·단체를 순서대로 2순위만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문21-13 구청 또는 주민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받았다 ② 다른 기관, 단체에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었다 ③ 전화로 다른 기관, 단체에 서비스 신청을 대신해 주었다 ④ 서비스 신청 시 동행하여 신청을 도와주었다 ⑤ 기타()	문21-23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받았다 ② 다른 기관, 단체에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었다 ③ 전화로 다른 기관, 단체에 서비스 신청을 대신해 주었다 ④ 서비스 신청 시 동행하여 신청을 도와주었다 ⑤ 기타()	문21-33 한부모복지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안내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_____ 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받았다 ② 다른 기관, 단체에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었다 ③ 전화로 다른 기관, 단체에 서비스 신청을 대신해 주었다 ④ 서비스 신청 시 동행하여 신청을 도와주었다 ⑤ 기타()

[보기표]

문21-1-2, 21-2-2, 21-3-2. 안내 받는 기관 중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기관

① 구청 또는 주민센터	② 미혼모부자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
③ 한부모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보호시설 등)	
④ 보건소	⑤ 청소년상담기관(헬프콜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⑥ 지역복지관	⑦ 학교
⑧ 병의원	⑨ 대안교육위탁기관
⑩ 검정고시학원	⑪ 고용지원센터나 세일센터
⑫ 미혼모 당사자 카페(한국미혼모가족협회, 무지개다리 등)	
⑬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복지로, 위드맘 등)	
⑭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⑮ 인터넷 검색(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당사자카페 제외)
⑯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⑰ 기타()

문22 전체적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는 '⑤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담당자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제증가능한 지원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필요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잘 제공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공개된 공간에서 내 정보를 밝힐 걱정없이 마음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근처에 있거나 교통이 편리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신청부터 지원받기까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23 향후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정부지원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어디를 통해 정보를 얻고 싶으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한 개만** 골라 주십시오.

- ① 구청·주민센터
- ② 미혼모부자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③ 한부모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 ④ 보건소
- ⑤ 청소년 상담기관(헬프콜 136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⑥ 지역복지관
- ⑦ 학교
- ⑧ 병원
- ⑨ 대한교육위탁기관
- ⑩ 검정고시학원
- ⑪ 고용지원센터, 새일센터
- ⑫ 미혼모 당사자 카페(한국미혼모가족협회, 무지개다리 등)
- ⑬ 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복지로, 위드맘 등)
- ⑭ 방송보도 및 신문기사
- ⑮ 인터넷 검색(네이버 등 주요 포털 안내, 검색)
- ⑯ 청소년 한부모 전용 전화 핫라인
- ⑰ 기타 (_____)

☺ 다음은 입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4 귀하는 출산 후 아기를 입양 보낸 경험이 있거나, 입양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입양 보냈다 (가장 최근: ____년도 ____월) ☞문 24-1로 이동
 ② 입양을 고려중이다 ☞문 24-2로 이동
 ③ 입양 보낸 경험이 있고, 현재도 입양을 고려중이다 (입양을 보낸 시점: ____년도 ____월) ☞문 24-1로 이동
 ④ 입양 보낸 경험도 없고, 입양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문 24-8로 이동

(문 24-1) 입양을 보낸 경험은 총 몇 회입니까? _____회

※ 다음은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거나, 입양을 고려하고 계신 분만**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24-2) 입양을 보낸다면(혹은 보냈다면) 어떤 유형을 원하십니까(혹은 원하셨습니다)?

- ① 국내입양 ② 국외입양 ③ 관계없음

(문 24-3) 귀하가 입양 보내는 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아이를 키울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② 주위의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③ 아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래서
 ④ 학교(직장)에 계속 다니기 위해서
 ⑤ 나의 미래를 생각해서
 ⑥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⑦ 부모노릇을 잘 하지 못할 것 같아서
 ⑧ 주위의 권유로
 ⑨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⑩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므로
 ⑪ 기타 (_____)

(문 24-4) 입양 보낼 것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나 혼자 결정	② 내 가족	③ 아이 아버지
④ 아이 아버지 가족	⑤ 친구/선후배	⑥ 기관/시설 상담원
⑦ 입양경험자	⑧ 인터넷	⑨ 기타 (_____)

(문 24-5) 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혹은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어려운 점이 없다(혹은 없었다)
 ② 아기에 대한 미안함
 ③ 입양과 양육 사이의 갈등
 ④ 입양 가정(부모)에 대한 불신
 ⑤ 입양 절차의 까다로움
 ⑥ 기타(_____)

(문24-6) 입양 보낸(보내기로 결정한) 후 귀하가 겪은 정신적 후유증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정신적 후유증: 우울, 죄책감, 상실감, 피해의식 등)

- ① 매우 심했다 ⇨문24-6-1로 이동 ② 심했다 ⇨문24-6-1로 이동 ③ 약간 있었다 ⇨문24-6-1로 이동
④ 거의 없었다 ⇨문24-7로 이동 ⑤ 전혀 없었다 ⇨문24-7로 이동

(문24-6-1) (있었다면) 귀하는 정신적 후유증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 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③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④ 전문기관의 상담, 병원치료 등 전문적 치료를 받았다
⑤ 기타 (_____)

(문24-7) 입양을 보낸 후에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①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② 입양 보낸 아이에 대한 정보 제공
③ 피임방법을 포함한 성교육	④ 학습지원(학교복합 절차 안내 포함)
⑤ 직업훈련 및 직장 알선 등 취업 지원	⑥ 숙식제공 등 시설임소 안내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24-8) 귀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③ 잘 알고 있다

※ 입양 허가 제도

최근 입양특별법의 개정으로 자녀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녀를 출생 신고하여 자녀 출생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24-9) 귀하는 “입양숙려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③ 잘 알고 있다

※ 입양숙려제도

정부는 친생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기 전에 직접 양육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이 출생한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문24-10) 1주일이라는 '입양숙려제' 기간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매우 짧다
② 짧은 편이다
③ 적당한 편이다
④ 긴 편이다
⑤ 매우 길다

(문24-11) 이러한 “입양숙려제도”가 청소년 한부모로 하여금 입양이 아닌 자녀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된다
- ⑤ 매우 도움이 된다

(문24-12) “입양숙려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개선이 필요한 점이 없다
- ② 숙려기간(현행 1주일)
- ③ 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④ 숙려기간 중 출생아동의 대리보호 지원(시설, 위탁가정 등에서의 보호)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마지막으로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5 현재 귀하가 생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시설 ⇨ 문25-1로 이동
- ② 집 ⇨ 문25-3로 이동

(문25-1)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현재의 시설을 포함하여 시설에서 생활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정도

(문25-2)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귀하는 현재의 시설에서 퇴소하면 어디에서 거주할 계획입니까?

- ① 다른 시설
- ② 부모님 댁
- ③ 형제나 친척집
- ④ 친구나 아는 사람 집
- ⑤ 내가 마련한 집
- ⑥ 아이 아버지집
- ⑦ 고민중이다
- ⑧ 기타(_____)

⇨ 문25-2을답 후, 문25으로 이동

(문25-3)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귀하의 주거 형태와 주거비 마련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2b-3-1 주거형태	2b-3-2 주거비 마련 방법(주된 항목 1개만 선택)
① 전세	① 가족의 지원
② 월세	② 근로소득(아르바이트)
③ 고시원	③ 은행 대출
④ 숙박업소	④ 지인에게 빌림
⑤ 부모님 집	⑤ 기타(_____)
⑥ 아는 사람 집	X
⑦ 정해진 거처 없음	
⑧ 기타(_____)	

문24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귀하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한다 ➡ 문25-41로 이동
 ② 불만족한다 ➡ 문25-41로 이동
 ③ 보통이다 ➡ 문26으로 이동
 ④ 만족한다 ➡ 문26으로 이동
 ⑤ 매우 만족한다 ➡ 문26으로 이동

문24-1 (문25-4에서 ①, ② 응답자만)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_____)

문25 귀하는 생활비를 주로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아래 보기 항목에서 번호를 골라 응답해 주십시오.

(※ 단, 총수입은 1순위, 2순위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수입의 총합계 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		
①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포함)	② 정부지원금(시설·기관 지원 포함)	
③ 내 부모님과 가족의 지원	④ 아이 아버지와 그 가족의 지원	
⑤ 저축	⑥ 대출(타인에게 빌린 경우 포함)	
⑦ 기타(_____)		

구분	항목 (보기 번호 기입)	금액
1순위		월평균 약 () 만 원
2순위		월평균 약 () 만 원
총 수입의 합계		월평균 약 () 만 원

문26 현재 귀하의 월 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없을 경우 "0")

월 평균 _____만원 정도

문27 현재 귀하는 부채(빚)가 있습니까? (없을 경우 "0")

총 _____만원 정도

<연구참여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이번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설문 응답이 연구에 활용되는데 동의합니다.

2013년 월 일

(서명)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설문지(기관 종사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보장 및 자립여건 실태조사 (기관용)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기관의 서비스 및 연계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고, 개인 혹은 개별 기관에 관한 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청소년의 출산과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정책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2013.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연구 담당자: 김지연 연구위원
전화: (02)2188-8868
이메일: okness@nypi.re.kr

조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조사 담당자: 신성현 부장/임영학 과장
전화: (02)3014-0088
이메일: yhlm@hrc.co.kr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조사 일시	2013년 월 일
기관명			기관 ID		
기관 응답자 성명			기관 연락처		
기관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면/읍				

신문1 기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 미혼모부자지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 등 거점기관)
- ③ 대안위탁교육기관
- ④ 기타(_____)

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 ② 남자

신문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신문4 귀하가 현 기관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정도

신문5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1 청소년부모들이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1-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2로 이동

문1-1 (문1 ①에 응답자만) 어떤 종류의 서비스였습니까? 가장 많은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현금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양육수당 등)
- ② 돌봄·보육서비스(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 ③ 주거지원서비스(한부모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등)
- ④ 교육서비스(대안교육, 검정고시 등)
- ⑤ 취업지원서비스
- ⑥ 가족상담서비스
- ⑦ 청소년상담, 활동서비스
- ⑧ 기타(_____)

문2 실제로 다른 기관에 청소년한부모를 연결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보제공, 서류작성도움, 서비스 대리신청 등)

- ① 예 ➡문2-2로 이동
② 아니요 ➡문2-1로 이동

문2-1 (문2 ②)아니오 응답자만 연계하지 않은(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헌부모들이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았다
② 업무가 많아 연계할 시간이 부족했다
③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몰랐다
④ 주변에 연결해 줄 기관이나 서비스가 없었다
⑤ 다른 기관이 비협조적이었다
⑥ 연계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다
⑦ 기타()
- ☞문3으로 이동

문2-2 (문2 ①에 응답자만) 다음 각각의 기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기관	문221 연계경험이 있으십니까?		문222 연계가 어려우셨습니까? (문221에 ①있다 응답자만)			
	있다	없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구청·주민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2) 미혼모부자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3) 한부모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①	②	①	②	③	④
4) 보건소	①	②	①	②	③	④
5) 청소년 상담기관(헬프콜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6) 지역복지관	①	②	①	②	③	④
7) 학교	①	②	①	②	③	④
8) 병원	①	②	①	②	③	④
9) 대안교육위탁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10) 검정고시학원	①	②	①	②	③	④
11) 고용지원센터·세일센터	①	②	①	②	③	④

문223 (문2-2-1에 ①있다가 히나라도 있는 응답자만) 어떤 방식으로 안내하셨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정보를 제공했다
- ② 다른 기관에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도움을 주었다
- ③ 전화로 다른 기관에 서비스신청을 대신해 주었다
- ④ 서비스 신청시 동행하여 신청을 도와주었다
- ⑤ 기타()

문224 (문2-2-1에 ①있다가 하나라도 있는 응답자만)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 ② 업무가 많아 연계할 시간이 부족했다
- ③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몰랐다
- ④ 주변에 연계해 줄 기관이나 서비스가 없었다
- ⑤ 다른 기관이 비협조적이었다
- ⑥ 연계 절차가 복잡했다
- ⑦ 기타()

문3 향후 다른 기관과 서비스연계를 강화한다면 다음 중 어떤 기관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더 이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
- ② 구청·주민센터
- ③ 보건소
- ④ 미혼모부자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⑤ 한부모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 ⑥ 지역복지관
- ⑦ 학교
- ⑧ 병의원
- ⑨ 청소년 상담기관(헬프콜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⑩ 대안교육위탁기관
- ⑪ 검정고시학원
- ⑫ 고용지원센터·새일센터
- ⑬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3. 설문지(시설 종사자)

청소년 한부모의 권리 보장 및 자립여건 실태조사 (가민용)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기관의 서비스 및 연계의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고, 개인 혹은 개별 기관에 관한 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청소년의 출산과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정책 개선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2013.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연구 담당자: 김지연 연구위원
전화: (02)2188-8868
이메일: okness@nypi.re.kr

조사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조사 담당자: 신성현 부장/임영화 과장
전화: (02)3014-0088
이메일: yhlhm@hrc.co.kr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조사 일시	2013년 월 일
기관명			기관 ID		
기관 응답자 성명			기관 연락처		
기관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동/면/읍				

신문1 기관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② 미혼모부자지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지원센터 등 거점기관)
- ③ 대안위탁교육기관
- ④ 기타()

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 ② 남자

신문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신문4 귀하가 현 기관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정도

신문5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문1 청소년한부모들이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1-1로 이동
- ② 아니오 ➡문2로 이동

(문1-1) (문1 ①에 응답자만) 어떤 종류의 서비스였습니까? 가장 많은 순서대로 2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현금급여(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양육수당 등)
- ② 돌봄·보육서비스(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 ③ 주거지원서비스(한부모복지시설, 영구임대주택 등)
- ④ 교육서비스(대안교육, 검정고시 등)
- ⑤ 취업지원서비스
- ⑥ 가족상담서비스
- ⑦ 청소년상담, 활동서비스
- ⑧ 기타()

문224 (문2-2-1에 ①있다가 하나라도 있는 응답자만)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 ② 업무가 많아 연계할 시간이 부족했다
- ③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잘 몰랐다
- ④ 주변에 연계해 줄 기관이나 서비스가 없었다
- ⑤ 다른 기관이 비협조적이었다
- ⑥ 연계 절차가 복잡했다
- ⑦ 기타()

문3 향후 다른 기관과 서비스연계를 강화한다면 다음 중 어떤 기관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더 이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
- ② 구청·주민센터
- ③ 보건소
- ④ 미혼모부자거점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⑤ 한부모복지시설(미혼모자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 ⑥ 지역복지관
- ⑦ 학교
- ⑧ 병원
- ⑨ 청소년 상담기관(헬프콜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⑩ 대안교육위탁기관
- ⑪ 검정고시학원
- ⑫ 고용지원센터·세일센터
- ⑬ 기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4. 설문지(일반 청소년 : 2013 NYPI 통합조사)

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2013 청소년 참여 및 성가족의식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회 연구기관으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참여활동과 가족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결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번지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김윤희 연구원

(02)2188-8807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박선경 대리/염숙희 팀장

(02)3014-101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 ① 남자 ☐ ②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5(또는 1에서 4)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나는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에 '매우 그렇다'고 생각해서 '⑤'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워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나에게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 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에 각각 응답하였습니다.

성, 가족의식

문 24. 다음의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절대 안됨	안됨	관찮음	언제든 관찮음
1) 동성애	①	②	③	④
2) 낙태	①	②	③	④
3) 혼전 성관계	①	②	③	④
4) 동거	①	②	③	④
5) 혼전 임신	①	②	③	④
6) 미혼부모*	①	②	③	④
7) 십대 미혼부모**	①	②	③	④
8) 입양하기	①	②	③	④
9) 입양보내기	①	②	③	④

* 미혼부모: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의미함

** 십대 미혼부모: 20세 미만 청소년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의미함

문 25. 다음은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각의 대상이 우리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차별받지 않는다	별로 차별받지 않는다	다소 차별 받는다	매우 차별 받는다	모름
1) 장애인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3) 동성애자	①	②	③	④	⑤
4) 미혼부모	①	②	③	④	⑤
5) 십대 미혼부모	①	②	③	④	⑤
6) 가난한 사람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문 26. 보기에서 제시된 대상들 가운데 우리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누구입니까? 순서대로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장애인	② 외국인노동자	③ 동성애자	④ 미혼부모
⑤ 십대 미혼부모	⑥ 가난한 사람	⑦ 청소년	

문 27.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미혼모는 차별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를 양육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도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불법)낙태보다는 차라리 출산 후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6) (학생)청소년이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모든 출산은 이유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정당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자녀를 키울 여건이 되지 못하면 입양보내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10) 자녀는 마땅히 친부모가 키워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8. 여자 중학생 또는 여자 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가능한 일이고 그럴수도 있겠다	①	②	③
2) 거부감이 든다	①	②	③
3) 동정심이 들고 불쌍하다	①	②	③
4) 운이 나쁘다	①	②	③
5) 비행청소년이다	①	②	③

문 29.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과 일치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가능한 일이고 그럴수도 있겠다	①	②	③
2) 거부감이 든다	①	②	③
3) 동정심이 들고 불쌍하다	①	②	③
4) 운이 나쁘다	①	②	③
5) 비행청소년이다	①	②	③
6) (낙태, 입양 보내지 않아서)책임감이 있다	①	②	③
7) 도와주고 싶다	①	②	③

문 33. 우리 사회에서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순위

2순위

- ① 사회의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 ② 학교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 ③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를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 ④ 본인이 학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⑤ 기타()

문 34.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치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나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나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배경 문항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결과 분석에 꼭 필요한 항목이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 O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 O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아래에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3. 부모님께서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없음	있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배문6.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빠뜨리고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Abstract

Research on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Youth Single Parent Family II: Response by type and lifecycle of youth single parent

This is a two-year collaborative study b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he study was also joined by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Korea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Objective of the study this year, which is its second year, is to suggest a tailored policy agenda that supports the need of youth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across life cycle from pregnancy to birth, preparations for adoption and child-rearing based on guarantee of youth single parent's basic rights set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ccordingly, the study was performed in the three following areas depending on the study objective. First, the study identified policy issues required to support independence of youth single parents and suggested comprehensive support solutions based on type and life cycle of youth single parents. To this end, the study performed analysis on youth single parents and their living. Second, the study analyzed issue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domestic adoption policy and suggested solutions to support youth single parents in response to such changes. Third, the study developed solutions to build a support system whereby youth single parents can effectively settle down in the local community they belong to. The study utilized a wide variety of study methodologies to this end including literature analysis of domestic/overseas preceding studies, related laws and precedents, statistics of OECD countries,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of youth single parents, survey on how rest of youths and their parents perceive youth single parents, FGI of relevant parties, advisory from experts, policy council meeting and seminar.

Analysis of related legal precedents indicates that youth single parent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pregnancy, birth, right not to be subject to discrimination due to pregnancy and birth and the basic social rights over pregnancy and birth. However, youth single parents are far from independent, face challenges in pursuing their academic goals and finding a job out of fear that their pregnancy might be known to others according to analysis. This indicates the need to provid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bility to youth single parents for their successful independence. They also have high demand for economic support but lack information needed to stand independent and continue their studies.

Meanwhile, policy transfer mainly by centers taking care of youth single parents, poor promotion of public welfare transfer system, poor service for youth single parents at home and alienation from transferring youth policies keep youth single parent policies from being properly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most of the support policies are transferred to care facilities puts government support to many youth single parents who opt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out of reach.

Policy proposal based on the study findings suggested detailed policy agendas and plans in terms of restoring functions and bolstering independence of vulnerable families, providing more support to families in crisis, expanding youth support infrastructure, strengthening support for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ailored to each stage, protecting human rights of unmarried mothers who opt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reinforcing support for child-rearing, guaranteeing the right to learn and providing greater support for independence.

Keyword: youth single parent, youth pregnancy-childbirth, basic rights of youth single parent, guarantee to right to learn, support for independence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영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해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해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 · 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분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직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헌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토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교육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교육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집필진

H. R. Kim-Lescarret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교 유럽문화연대연구소 연구위원)
김수혜 (뉴욕주립대 박사수료)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김명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팀장)
김민숙 (동방누리학교 교사)
김수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김영삼 (성동교육지원청 장학관)
김은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주무관)
김정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춘옥 (인천자모원 사무국장)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김홍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사무관)
남미애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안효미 (경기도 여성가족과 팀장)
여운자 (구세군 두리홈 사무국장)
이영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호섭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주무관)
이호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임형호 (전,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사무관)
장미경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기관)
정영선 (아침뜰 원장)
최규영 (서울과학고등학교 보건교사)
최성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연구사)
최승희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순 (애란원 원장)
허난영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장)
허명숙 (인천 스텔라의 집)
황승현 (서울고용센터 상담원)

(가나다 순)

감 수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

윤 문

옥수선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사회복지학 박사)

연구보고 13-R17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925-7 94330

978-89-7816-923-3 (세트)